



OECD 규제정책전망 201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

OECD 규제정책전망 2015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발간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본 자료에 명시된 의견이나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자료 및 자료에 포함된 지도는 관련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경의 경계결정 및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OECD (2015),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8770-en>

ISBN 978-92-64-23876-3 (인쇄물)

ISBN 978-92-64-23877-0 (PDF)

이스라엘 관련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관할 당국이 제공한 것이다. OECD는 이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국제법 관점에서 골란 하이츠(Golan Heights), 동 예루살렘 및 웨스트 뱅크(West Bank)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사진 제공자: 표지 ©glenda/Shutterstock.com, hxdyl/Shutterstock.com, iStock.com/wuviveka

OECD 발행물의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OECD 2015

발췌한 출처와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시하신다면, 사용하실 OECD 콘텐츠를 복사, 다운로드 또는 인쇄하실 수 있으며 귀 기관(귀하)의 문서, 프리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및 교재에 OECD의 발행물,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에서 발췌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용도나 상업적 용도의 사용 및 번역 권한에 관한 요청서는 rights@oecd.org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고 자료의 복사 부분을 공공용도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 요청은 저작권정산센터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 info@copyright.com) 또는 Center français d'exploitation due droit de copie (CFC - contact@cfopies.com)에서 직접 문의하십시오.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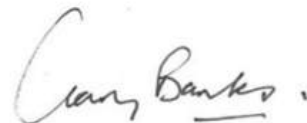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모범규제 (good regulatory)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모범” 규제라는 것은 공공정책에 대하여 타당한 목표를 얻게 되는 유형으로, 커뮤니티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규제를 말한다.

OECD는 수년 간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OECD 활동의 주요 목적을 규제향상이 두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리더십, 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역량 분야의 핵심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규제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각국의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고려하여, 성과 표시 (performance bar)를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한다.

타당한 규제원칙을 모범관행 (good practice)으로 이행하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으로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투명성 (transparency)과 책임 (accountability)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OECD는 OECD 이사회의 합의원칙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제관행 (regulatory practices)에 관한 상세조사를 전개하였다.

본 규제정책전망 (Regulatory Policy Outlook)의 초판에서는 회원국을 아우르는 비교분석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상세조사에 대해서 논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몇몇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규제열반 (regulatory nirvana)”에 이른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조사는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관행을 가리키면서 향상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회원 정부를 도울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 및 앞으로의 전망은 여러 사람으로부터의 상당한 노력과 약속을 포함한다. 성과측정조정위원회 (Steering Group on Performance Measurement)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특히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뒤따르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초기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 또한 큰 보탬을 주신 OECD 사무국을 비롯하여, 특히 본서의 발행에 힘을 쏟아주신 Greg Bounds 씨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올해 초 호주에서 Gred 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의 모국과 전세계는 모범규제를 위해 열정적이면서 세심하게 활동하였던 소중한 한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Gary Banks

규제정책위원회 위원장
호주 · 뉴질랜드교육부

머리말

기후변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및 경제적 불안정성 (insecurity)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기침체 (economic malaise)가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위기의 회피, 성장 촉진 및 시민 보호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환경에서는 규제향상과 개혁을 점점 재정과 세제조치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국가 수준으로 자극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불필요한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을 없애므로써 무역과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나은 국제화 규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규제정책전망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 방법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진척과정에 대해 추적한다. 본서의 내용은 2014년 규제 지표조사 (Regulatory Indicators Survey)를 바탕으로 하며, 이 조사는 모든 34개국의 OECD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정책의 사용실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유례없는 결과물이다. 본 전망은,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이면서 열망적인 국제표준인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OECD 국가들이 채택한 이후, 3년간의 모습을 명시한 것이다.

본 전망을 통해서 전하는 좋은 소식은,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OECD 국가는 보다 나은 규제의 질을 위한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강화하도록 공식적인 책임이 부여된 각료나 고위직들의 직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은 건강한 규제정책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정부의 입법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규제영향평가의 사용, 규제제안 개발 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체계적인 사후평가의 적용은 현재 행정 (public administration)의 공통된 관행 (common practice)이다.

하지만 본 전망에서는 규제정책의 원칙과 제도 및 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관련하는 바른 인재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규칙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일에는, 특히 국회 및 준정부 수준의 정부당국과 규제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부문과 관할권을 불문하고 규제를 개발, 수행, 평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측면을 촉발시키기 위해 행정부의 업무 이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전망에서는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 확인한다.

본 보고서는 3년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최초의 시리즈이며, 여기에서는 독특한 통찰력을 가진 국가에 규제관행과 그 이웃국가의 규제관행을 제공한다. 견실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제한된 규칙의 일관성이나 규제의 영향에 관한 증거의 부족 또는 규제전달 비교하여 규제전달과 시행의 상대적인 방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규제지관을 위한 모범관행을 확인한다.

헬싱키에서 열린 2015년 OECD 공공거버넌스 각료회의 (Public Governance Ministerial) 시에 본 전망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규제의 질을 위한 제도, 수단 및

조건을 수립하는 것은 잘 구축된 공공거버넌스와 행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각국의 규제정책의 진척과정을 모니터링 할 때는, 2012년 OECD 권고와 함께 이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모범규제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본 아젠다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정책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요구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다.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감사의 말씀

본 규제정책전망은 규제정책부 부장 Nick Malysheve의 지시에 따라 Céline Kauffmann이 이끄는 OECD 규제정책부의 분석팀에서 작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지시와 통솔은 공공거버넌스와 영토개발이사회 위원장인 Rolf Alter가 하였다.

본서의 주요 저자는, Céline Kauffmann (제1장과 제2장), Daniel Trnka (제3장), Manuel Flores (제4장), Faisal Naru (제5장), Christiane Arndt, Antonia Custance Baker, Rebecca Schultz 및 Tobias Querbach (국가별 개요, 독자 가이드 및 방법론 부록)으로 구성된다. Filippo Cavassini, Jacobo Garcia Villareal, Nick Malyshev, James Sheppard 및 Minsup Song 등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다. 본 전망은 규제지표조사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에 따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본 전망의 발간을 위한 디자인, 수행, 검증 및 작성 등의 업무는 Christiane Arndt가 팀장을 맡고 있고 Antonia Custance Baker, Tobias Querbach 및 Rebecca Schultz가 팀원으로 구성된 규제성과측정팀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team)에서 실시하였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을 비롯하여 BIAC와 TUAC는 본 전망의 다양한 초안에 대한 실질적인 코멘트 및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였다. 조사와 지표에 관한 방법론은 규제성과측정 조정위원회 (Steering Group on Performance Measurement)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 하에 일련의 회의와 회담을 거쳐서 개발하였다. 호주, 에스토니아, 멕시코 및 스위스에서 시험 삼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OECD는 규제지표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정부 및 경제산업자문위원회 ((Business Industry and Advisory Committee), 그리고 스톡홀름 (2013년)과 헤이그 (2014년) 등과 같이 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였던 주최 워크숍 장소를 제공해주신 스웨덴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전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배경문서를 작성하였던, Alberto Alermanno (École des Hautes Études Commerciales), Lorenzo Allio (독립컨설턴트), Steven Balla (조지워싱턴대학교), Susan Dudley (조지워싱턴 규제연구센터), Martin Lodge (런던경제대학교) 및 Andrea Renda (유럽정책연구센터)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으며, 동반문서인 규제정책의 시각: OECD 규제정책전망 2015에 대한 독자의 동반문서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거버넌스와 영토개발이사회 부위원장인 Luiz de Mello은 본 전망을 전개하는 여러 단계에서 유용한 조언과 견해를 해주었다.

본 규제정책전망의 발간 준비는 Jennifer Stein이 실시하였고, Andrea Unrhammer, Kate Lancaster, William Below는 본 전망의 편집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규제의 질과 규제개혁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원조할

권한이 있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감독 하에 규제정책의 작업을 수행한다. 규제정책위원회는

공공거버넌스와 영토개발이사회 산하의 규제정책부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OECD 공공거버넌스와 영토개발이사회는 제도적 설계와 정책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와 시장 조건의 모범관행의 보급과 상호교육을 지원한다. 그 목표는, 여러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보다 나은 정부시스템과 시행정책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OECD 공공거버넌스와 영토개발이사회의 임무는 모든 수준의 정부의 설계와 시행전략, 증거에 입각한 혁신적인 정책이 공공거버넌스를 강화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와 환경에 관련된 다양하면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견해를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규제정책전망은 2015년 4월 우리의 결을 떠난

우리의 동료였던 Gred Bounds의 선견지명 덕분이며 그에게 이 책을 바친다.

목차

두문자와 약어	13
핵심요약	15
독자를 위한 안내문	19
제 1 장. 규제정책의 세계적인 동향: 새로운 OECD 조사 데이터에 입각	21
주요 결과	22
서론	23
OECD 회원국에서의 규제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광범위한 채택	26
규제정책수단의 체계적인 사용	27
규제정책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	34
참고문헌	38
제 2 장.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39
주요 결과	40
서론	41
규제정책의 난제	42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49
주	65
참고문헌	66
제 3 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규제정책	69
주요 결과	70
서론: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72
이해관계자의 규칙제정 참여 실천	73
효과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난제	86
주	90
참고문헌	90
제 4 장.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93
주요 결과	94
서론: RIA 사례	95
RIA 실천관행	96
RIA 의 거버넌스	100
OECD 국가들의 다양한 RIAC 시스템 탐색	102
RIA 이행 및 운영 시의 난제	107
참고문헌	116

제 5 장. 세계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거버넌스 사이클의 종결	119
주요 결과	120
서론: 정책평가 논거.....	122
사후평가의 특성.....	124
사후평가 관행	127
참고문헌.....	138
제 6 장. 각국의 규제정책현황	141
호주.....	142
오스트리아.....	144
벨기에.....	146
캐나다.....	148
칠레.....	150
체코공화국.....	152
덴마크.....	154
에스토니아.....	156
유럽연합.....	158
핀란드.....	160
프랑스.....	162
독일.....	164
그리스.....	166
헝가리.....	168
아이슬란드.....	170
아일랜드.....	172
이스라엘.....	174
이탈리아.....	176
일본.....	178
한국.....	180
룩셈부르크.....	182
멕시코.....	184
네덜란드.....	186
뉴질랜드.....	188
노르웨이.....	190
폴란드.....	192
포르투갈.....	194
슬로바키아.....	196
슬로베니아.....	198
스페인.....	200
스웨덴.....	202
스위스.....	204
터기.....	206
영국.....	208
미국.....	210
부록 A. 국법 점유율에 관한 각국의 정보	213
부록 B. 2014 년도 OECD 규제지표조사와 종합지표	214
용어 정리	219

표

- 1.1.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31
- 1.2. RIA 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32
- 1.3. 사후평가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33
- 1.4. 관리감독기구의 책임..... 36
- 1.5. 관리감독기구의 직무..... 37
- 2.1.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용어..... 43
- 2.2. 규제정책 아젠다의 4 가지 목표..... 44
- 2.3. 규제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보고된 행위자들..... 48
- 5.1. 설정과 평가체계의 원칙..... 126
- 5.2. 사후평가에 사용되는 임계치/비례성의 사례..... 134
- B.1. 종합지표의 범주와 하위범주의 개요..... 216

그림

- 1.1. 규제의 질에 관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의 채택..... 26
- 1.2. OECD 국가의 규제정책에서 다루는 분야..... 27
- 1.3. 협의, RIA 및 사후평가분야에서의 공식요건..... 28
- 1.4. 종합지표: 규제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29
- 1.5. 종합지표: 규제영향평가..... 29
- 1.6. 종합지표: 규제의 사후평가..... 30
- 1.7. 각국/관할권당 관리감독기구의 수..... 34
- 1.8. 관리감독기구의 위치..... 35
- 1.9. 관리감독기구의 책임분야..... 36
- 2.1. 규제개혁의 스펙트럼..... 44
- 2.2. 정부 핵심부의 책임..... 49
- 2.3. 규제기관이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관할권의 수..... 51
- 2.4. 규제정책을 책임지는 의회기구를 가진 관할권의 수..... 53
- 2.5. 상수도 서비스 전담규제기구의 예의 운영설립년도..... 55
- 2.6. 규제기관의 직무 범위..... 57
- 2.7. 모든 정부 수준에 걸쳐서 일관성을 보장하고 준국가적 수준에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 58
- 2.8. 최고감시기관의 활동과 권한..... 60
- 2.9. 규제관리수단/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표..... 62
- 2.10. IRC 메커니즘의 OECD 유형분류체계..... 64
- 3.1. 종합 지표: 기본법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74
- 3.2. 종합지표: 종속규제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74
- 3.3.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요건: 기본규제와 종속규제..... 75
- 3.4. 이해관계자 참여 실행요건..... 76
- 3.5. 협의 유형..... 78
- 3.6.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의 협의..... 82
- 3.7. 사후평가 시의 이해관계자 참여..... 82
- 3.8. 규제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협의를 위한 ICT 활용..... 85

3.9. 협의를 위한 ICT 도구..... 85

3.10. 공공협의를 위한 최소 기간..... 87

3.11. 수자원 부문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주요 장애물 88

3.12. 제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의무..... 89

4.1. 종합지표: 기본법 수립 시 규제영향평가..... 98

4.2. 종합지표: 종속규제 수립 시 규제영향평가 98

4.3. OECD 국가를 아우르는 RIA 채택 동향..... 99

4.4. RIA 채택: 공식요건과 관행..... 103

4.5. RIA 개시 시의 예외사항..... 104

4.6. RIA 의 비용과 편익분석..... 106

4.7. RIA 의 관리감독..... 110

4.8. 관리감독기구가 개정을 위해 RIA 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토대..... 110

4.9. RIA 에 관한 공공협의를 검토 메커니즘..... 113

4.10. RIA 시의 영향평가..... 115

5.1. 종합 지표: 기본법 수립 시 사후평가..... 128

5.2. 종합지표: 종속규제 수립 시 사후평가..... 128

5.3. 사후평가를 위한 요건..... 130

5.4. 최근 12 년간 수행한 규제저량에 관한 특별검토 131

5.5. 사후평가에 사용한 방법론..... 131

5.6. 대중에게 권고를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 136

5.7. 누가 사후평가를 작성하는가?..... 137

B.1. 2014 년 OECD 규제지표조사의 구조..... 214

B.2. 종합지표의 구조..... 216

OECD 발행물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library>



<http://www.oecd.org/oecddirect/>

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표나 그림의 아래에 있는 **StatLinks**를 보십시오. 해당하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http://dx.doi.org>라고 쓰고 그 뒤에 해당하는 링크문자를 입력해 넣거나 e-북 편집본에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두문자와 약어

AMSDE	경제개발사무국협회, 멕시코 : Associ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ecretariats, Mexico
COAG	호주 정부위원회, 호주 :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Australia
COFEMER	규제향상연방위원회, 멕시코 : Federal Commiss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Mexico
EESC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GIC	의회총독, 캐나다: Governor in Council, Canada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Os	국제조직: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RC	국제규제협력: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MRA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NEDLAC	국립경제개발노동의회, 남아프리카 :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South Africa
OHS	직업안전보건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CA	국회행정통제부, 스위스 :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Switzerland
PIR	시행 후 평가보고서: Post-implementation review
PLS	사후입법 정밀조사: Post-legislative scrutiny
REFIT	규제적합성프로그램 :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IA	규제영향분석 또는 규제영향평가 : Regulatory Impact Analysis 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S	규제영향평가보고서: Regulatory Impact Statement
SAIs	최고감사기구: Supreme audit institutions
SMEs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B	재정위원회, 캐나다: Treasury Board, Canada
TBS-RAS	재정위원회 사무국의 규제관리부문, 캐나다 : Regulatory Affairs Sector in the Treasury Board Secretariat, Canada

* 규제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과도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OECD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발행,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핵심요약

시민과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과 규제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법과 규제는 경제성장, 사회 복지, 환경보호 및 글로벌화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 및 정부지출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법과 규제를 형편 없이 수립했을 때는,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법과 규제가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의 재정침체와 높은 실업률 및 더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각 정부는 추가 지출과 세금감축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과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개혁은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복지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규제정책의 동향: OECD 2014 규제지표조사에서 흥미로운 점

본 전망에서는 처음으로 OECD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각 OECD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진척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국경을 초월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OECD 2014 규제지표조사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의 결과 및 일련의 새로운 지표에서는, 각국이 지난 20년간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각국이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201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기재한 원칙과 수단을 체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34개 OECD 국가와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인 개혁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3개 OECD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29개 OECD 국가에서는 범정부적인 규제정책 발전의 촉진을 책임질 각료나 고위관리자를 임명하고 있다.
- 33개 OECD 국가에는 규제감시 (regulatory oversight) 직무를 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새로운 규제개발 시에 행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식요건으로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와 공공협의 (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 조치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치는 그 적용범위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다. 앞으로 본 전망에서는 대두되는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국이 어떻게 규제정책을 법과 관행으로 확립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동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제정책분야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한다. 보다 체계성을 요하는 경우는,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강조한다.

제도적 맥락과 규제시스템의 완성도는 OECD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제도적인 구성 (institutional settings)이 규제정책을 보다 잘 뒷받침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독기구는 규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은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감독기관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독기관에서는 뚜렷한 임무 할당과 효과적인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전문성 (specialisation)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단편화 (fragmentation)가 초래될 수 있으며 2012년 OECD 권고에 명시한 범정부적 접근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의회, 규제관리기관 (regulatory agency), 준국가 수준과 국제 수준의 정부 등과 같은 다른 기관들은 부문 및 관할권에 걸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개발, 이행 및 평가를 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항상 이 기관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관들의 핵심목표를 양질의 규칙제정의 수립으로 정하고 본 아젠다에 대한 운영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의 질은 더 이상 국가 자체의 책임만이 아니다.

규제체제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규제협력을 보다 깊이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단 1/3만이 국제규제협력에 관한 명시적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규제이행과 시행은 규제거버넌스에서 가장 연관성이 약한 요소이다. 그림과 같이, OECD 국가 중 1/3은 규제준수 (regulatory compliance)와 시행정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증거 및 위험에 기반을 둔 비례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행동경제학에 의거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같이, 규제설계와 전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규제도구의 영향평가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보다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정책결정자와 정치인들에 의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RIA를 사용할 여지도 있다. 이것은 정책형성 (policy formulation) 시에 보다 고차원적으로 RIA를 수행하고, 규제대안을 검토하며, 추정되는 이익이 제안된 규제의 추정비용보다 훨씬 큰지 아닌지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단 1/3만이, RIA 분석의 규제가 예상된 영향에 상응하면서 그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임계치 검사 (threshold test)나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협약에 관한 RIA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고 합의를 수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규칙제정절차의 각 단계에 잘 융합되어 들어가야 한다: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인식할 때, 일련의 규제선택사항을 개발할 때, 규제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한 공식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단기 작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할 때는, 중요한 조언들이 규제제정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종 규제개발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포괄성과 그 규제가 시행된 분야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조언과 참여관행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가 규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대해 실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후평가제도는 다른 정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규제정책에서는 우발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7개 국가는 기본법 (primary legislation)과 종속법 (subordinate legislation)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가는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입법체계와 규제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춘 검토를 훨씬 많이 사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RIA 절차의 한 부분으로써 규제를 평가하는 품질표준을 수립하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시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개정할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각 추가조치가 발전해나갈 것인가는, 2012년 OECD 권고의 첫 번째 원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에 계속해서 의존하게 될 것이다. 회복 가능성은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자 가이드

종합지표를 포함하여 본 전망에서 제시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2014년도 규제지표조사 (2014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의 결과물이다.

이 조사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OECD 전체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201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각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다. 2012년 권고의 3가지 원칙인,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및 사후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는 공식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시행 상황에 관한 증거를 모았다. 이번 조사의 방법론과 종합지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에서 설명한다. 본 독자 가이드는 본 전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적용범위와 지표의 사용과 관련된 일부 한계점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조사 데이터의 적용범위와 본 전망에서의 용도

이번 조사는 정부의 핵심부처인 행정부에서 수행하고 있고 모든 정책분야에 적용되는 규제개발의 프로세스 (주요 절차와 부수적인 절차)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사후평가에 관련하는 질문은, 국가규제가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든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든 상관 없이, 모든 국가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유용한 정보에 따르면, 조사 응답에서는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본 조사 응답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규제를 다루고 있다. 표본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는 의회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기본법은 주로 행정부의 주도 하에서 수립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의 주도 하에 수립된 기본법이 없으며, 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의 경우는 행정부의 주도 하에 수립된 국가기본법의 점유율이 그 외의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멕시코의 국가기본법 점유율은 2009-2012년 4%, 2013년에 30%이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11-2013년에 16%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로지 국가규제에 대해서만 다룬다. 준국가 수준의 관행이나 의회의 관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16개국만이 국가적 비율과 준국가적 비율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치를 모으는 데는 방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전체 기본법에서 국가기본법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100%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을 포함하는 8개국, 2011-2013년)부터 56% (영국, 2012년), 8% (이탈리아, 2013년), 0.9% (미국, 2011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사 결과는 본 전망의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첫째, 특정관행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로 동향 등을 보여주기 위해 개별질문에 대한 결과를 명시한다. 둘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질적 정보와 예는 분석의 질을 한층 높여준다. 셋째, RIA,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종합지표는 각국 관행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종합지표는 4개의 등가범주로 구성된다: 1) 공식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가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채택; 2)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 예 평가한 영향의 유형 또는 얼마나 자주 다른 협의 형태를 사용하는가; 3) 감독과 품질관리 시에는 감독기구의 역할과 공개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평가를 기록한다; 및 4) 열린 정부의 원칙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록하는 투명성, 예 정부결정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사의 한계점과 종합지표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재 조사에서와 같이 범주적 변수에 의거하는 종합지표가 방법론적으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지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Freudenberg, 2003). 하지만 그 특성 상, 국가간 비교지표 (cross-country comparable indicators)는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나타낼 수 없으며 규제정책의 질과 용도 및 영향의 복합적인 사실을 완전하게 포착하지는 못한다. 현재 조사는 이전 발행본과 비교했을 때 각국의 조사 응답을 뒷받침하는 예와 증거에 훨씬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각국 관행의 품질을 면밀하게 평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각국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RIA 시에 요구되는 일부 특정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예를 제공해야 했지만, OECD 사무국은 이러한 평가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질에 관한 RIA의 실제 영향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국가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서는, 각국의 규제정책의 내용 및 강점과 약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개선을 위한 권고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규제관행과 정책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조, 행정문화 및 제도적·입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상호검토 (peer review)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규제관행에 관한 국가간 비교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특정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지표를 규제의 질의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표를 통해서 평가한 조치의 이행은 공공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규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지표 자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답변이 모든 사용실태에 걸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종합지표의 결과는 반드시 방법론적인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점수를 얻은 국가들의 상대적 성과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대신에 종합지표를, 논의의 장을 열고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OECD/European Union/JRC, 2008). OECD 웹사이트에서는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중치제도 (weighting system)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론적 선택에 대한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의 결과를 비롯하여 종합지표와 기초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장

규제정책의 세계적인 동향: 새로운 OECD 조사 데이터에 입각

모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규제지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규제의 질에 대한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질에 관하여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주도 하에 새로운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한 공식 요건으로, 규제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실시하는 상황과 환경은 각국마다 크게 다르다.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에서의 규제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채택 현황, 규제정책수단의 사용 실태, 및 규제정책에 관한 제도적 환경에서의 중대한 차이에 대해 기술한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결과

동향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OECD 국가간에 합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합의 방침에 따라,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전략, 제도, 수단 및 관행에 관하여 여러 지식체계 (body of knowledge)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12년에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가 채택되는데 이르렀다 (OECD, 2012).

본 규제정책전망 (Regulatory Policy Outlook)에서는 처음으로 OECD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각 OECD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진척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이것은, 2012년 OECD 권고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모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본 전망에서는 규제를 설계, 집행 및 개정을 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사후평가와 같은 규제정책수단의 사용 실태에 대해 검토한다.

본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은 2012년 OECD 권고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수립하고 있다. OECD 국가는 일반적으로 고위관리나 각료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발전을 촉진시킬 임무를 맡김으로써 규제의 질에 관하여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많은 국가가 명확한 규제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 또는 다수의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규제정책수단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활용 실태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주도 하에 새로운 규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법으로 부과된 공식요건으로, 규제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당 수의 국가가 이러한 요건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 구체적인 지침을 발행하고 그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조건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

규제정책에 관한 제도적 환경 및 그러한 규제정책이 법률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국가와 관할권마다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수의 정책문서에 규제정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 증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정부 산하에 평균적으로 2.8개의 감시기구 (예, 국무총리 소속부서나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두고 있거나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시기구의 직무와 책임은 RIA, 행정간소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후평가, 법률의 질 및 정부간 조화 또는 법적 요건의 준수 등과 같은 그 외의 임무 등 다양하다.

제도적 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모델 법문서도 없다. 규제정책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역사의 기능, 행정문화 및 규제체계의 완성도. 하지만 다양성 및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제도의 증가는 다양한 책임당국간의 조화에 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다. 각국은 다양한 제도적 조직과의 경험에 대해서 서로 많이 배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정책수단의 사용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RIA의 경우는, 거의 소수의 일부 국가에서만 품질관리와 투명성 분야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앞으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각국의 규제정책수단이 그 목표를 이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사후평가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이행과 견고한 방법론과 지침의 개발 측면에서 각국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사후평가는 앞으로 더욱 개선해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서론

2011년 OECD는, "사회복지와 환경 지속가능성과 같은 대승적인 사회목표의 달성 및 경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에 강력한 규제정책의 등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OECD, 2011). 그로부터 4년 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 긴축 (fiscal stringency)과 더딘 성장 및 높은 실업률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품질의 규제와 규제체계의 우수한 일관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로 이해되었던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생산성과 성장이익을 만들어내며 회복을 약화시키는 위험으로부터 재정건전성을 되찾고자 하는 균형 있는 조치를 취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박스 1.1 규제의 질에 대한 정의를 제안한다).

박스 1.1 규제의 질이란 무엇인가?

규제는 시민과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환경보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규제는 경제와 사회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규제의 질"은 성과, 비용효과 및 규제의 법적 품질, 행정 상의 형식적 차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규제의 질이라는 개념은 프로세스, 즉 규제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며, 이러한 규제는 협의, 투명성, 책임 및 근거 기반이라는 핵심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프로세스라는 개념 이외에, 규제의 질의 개념은 결과, 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제도 내에서 생각했을 때), 단순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시행규칙과 그러한 규제 자체) 규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1995년 "정부규제의 질의 향상을 위한 OECD 권고 (OECD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ECD, 1995)를 토대로 하여 상세하게 기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에 의해 규제의 질을 정의할 수 있다:

1. 명확하게 인정된 정책목표를 제공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2.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실용적이다;
3. 견고한 법체계와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4. 다른 규제 및 정책과 일치한다;

박스 1.1 규제의 질이란 무엇인가? (계속)

5. 사회 전반에 걸쳐서 효과의 분배를 생각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을 정당화시키는 편익을 만들어낸다;
6. 공정하면서 투명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시행한다;
7. 비용과 시장왜곡 (market distortion)을 최소화한다.
8. 시장 우대조치 (market incentive)와 목표기반 접근법을 통하여 혁신을 촉진한다.
9. 국내 수준과 국제 수준에서 경쟁과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원칙과 가능한 한 호환할 수 있다.

출처: OECD (1995), 정부규제의 향상을 위한 OECD 권고, OECD, 파리, <http://acts.oecd.org/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1288&InstrumentPID=124&Lang=en&Book=False>; OECD/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09), "유럽의 모범규제: EU의 15개국 원회원국의 규제역량에 관한 OECD 평가: 프로젝트 용어정의",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4952782.pdf, Radelli C. (2004), "전후 상황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연합에서의 규제의 질",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Special Issue on Policy Convergence.

최근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맥락 속에서 규제협력과 모범규제관행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도, 국경을 넘어서서 글로벌화를 위한 규칙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규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법과 규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형평성 및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회복탄성력이 큰 사회 (resilient societies)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규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침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규제실패 (regulatory failure)는 세계적으로 극적인 영향 (dramatic impact)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인 사업활동에서 기업가의 재능과 열정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즉 경쟁 및 무역거래와 투자를 저해하고 혁신과 경제효율을 제한하며 형평성과 녹색성장을 약화시킨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모두 "규제와 규제체계가 정당한 것이며 품질이 우수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OECD, 2011). 이러한 인식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수년 간 고품질의 규제요소에 대한 각국 간의 합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지식체계 (body of knowledge)가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는 다양한 전략, 제도, 수단 및 관행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1995년 정부규제의 질의 향상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시작으로 "2005년 규제개혁에 관한 APEC-OECD 통합 체크리스트"를 비롯하여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아시아 권고"를 끝으로 많은 수단이 개발되었다 (박스 1.2). 이와 같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에서 규제정책에 관한 원칙과 수단을 채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으며 규제정책이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장은, 지난 10여년 간 각국을 아우르는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전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규제정책에 대한 OECD의 사용실태조사 및 2014년도 규제지표조사 (독자 가이드 및 부록 B를 참조)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 여기에서는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 관행의 개요를 제공하고 OECD 회원국에 폭넓은 관련성을 가진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각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규제정책 아젠다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확인한다.

박스 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이 권고에서는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면서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전파하기 위해 체계적인 규제개혁의 시행과 개선을 지원해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규제를 고안, 검토와 사전·사후평가, 개정 및 집행 등을 하고 적절한 제도로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정책사이클에 통합되어 있다.

1. 규제의 질에 관하여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규제를 행사하는 경우, 경제와 사회 및 환경편익이 그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위한 뚜렷한 목표와 체계를 갖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규제가 공익을 제공하고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규제에 관심이 있는 정부의 타당한 필요성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프로세스의 참여와 투명성을 포함하여, 열린 정부의 원칙에 따른다. 여기에는 규제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프로세스와 지원분석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중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 (온라인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는 규제가 적용되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명쾌하면서 명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
3. 규제정책절차와 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규제정책을 지원·시행하며 규제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한다.
4. 새로운 규제안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정책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를 통합시킨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 및 어떻게 하면 그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규제 이외의 수단을 고려하고 최상의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다른 접근법과의 상충점 등을 확인한다.
5. 규제가 항상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비용적으로 타당하며 비용효율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의도한 정책목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목표에 대해 중요한 규제가 갖고 있는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검토를 실시한다.
6. 규제정책과 개혁 프로그램 및 규제를 적용하는 규제당국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에는 규제영향평가 (RIA), 공공협의관행 및 기존 규제의 검토 등과 같은 규제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이해충돌이나 편견 및 부적절한 영향 등 없이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고 일관된 토대 하에 규제결정을 수립하였다는 강한 자신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당국의 역할과 직무를 다루는 일관된 정책을 개발한다.
8. 규제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의 결정 및 규제가 적법하고 절차적으로 공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그 검토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시민과 기업체가 타당한 비용으로 이러한 검토체계에 접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9. 규제가 목표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의 설계와 시행에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 전략을 적절하게 적용한다. 규제기관에서는,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행 및 집행전략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10. 초국가적, 국가 및 준국가적 수준의 정부 간의 조화 메커니즘을 통하여 규제통합 (regulatory coherence)을 적절하게 향상시킨다. 규제접근법 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규제의 충돌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정부 수준에서 교차되는 규제문제를 확인한다.

박스 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계속)

- 11. 준국가 수준의 정부에서 규제관리능력의 개발과 성과를 발전시켜나간다.
- 12. 규제조치를 개발할 때는 동일한 분야 내에서 협력을 위하여 모든 관련된 국제표준과 체계를 고려하고,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권 이외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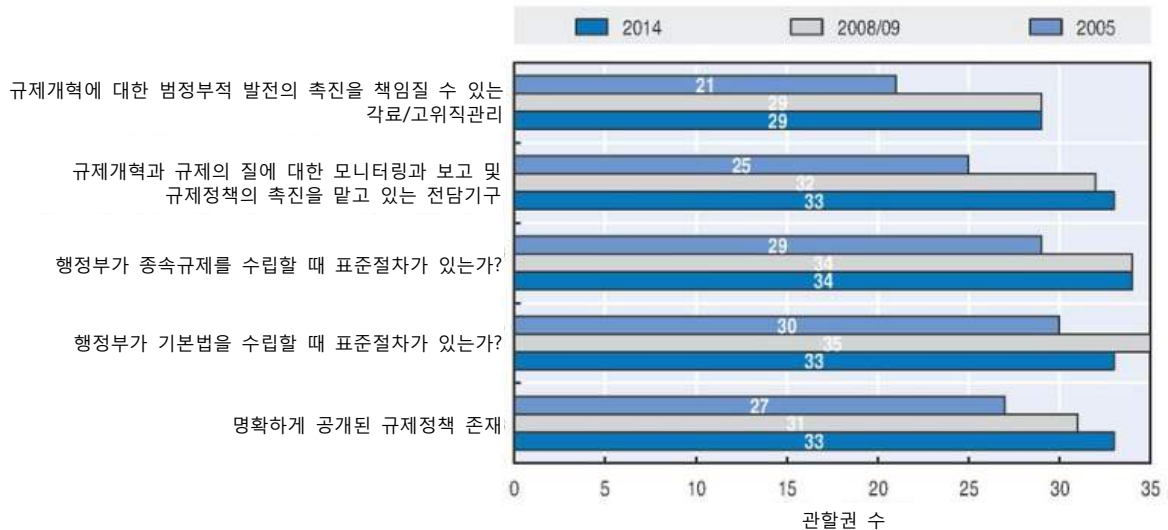
출처: OECD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Publishing, Paris.

OECD 회원국에서의 규제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법의 광범위한 채택

2012년 권고에서는, OECD 회원국은 “규제의 질에 관하여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으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있음을,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향상시키고 이끌어내기 위해 그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각료나 고위관리를 임명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명백한 규제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정책을 촉진하고 규제개혁과 규제의 질을 감독·보고할 책임이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본법 (primary law)과 종속법 (subordinate law)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1.1).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약속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많은 OECD 국가들이 2012년 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백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광범위하게 알리며 높은 수준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부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사실 상의 절차를 수립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는 여전히 명백한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OECD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08년/2009년에 규제의 질을 보고하였

그림 1.1. **규제의 질에 관한 명백한 범정부적 정책의 채택**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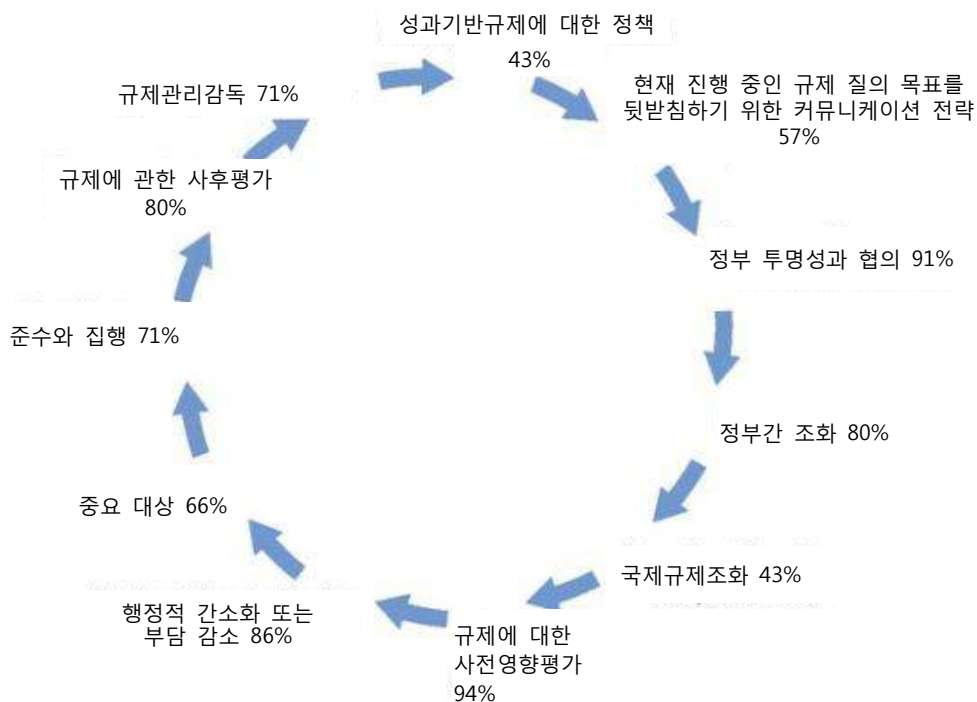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494>

던 국가 중에는 그에 관한 주요 요건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사 데이터에서는 퇴보하기 보다는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정책을 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는 명백하게 발표된 규제정책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나 모델 법 문서는 없다. 규제정책을 고수준의 단독 문서에 명시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대신에 각국은, RIA, 행정간소화 및 사후평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수단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문서에 대하여 (규제관리에 관한 각료지침, 규제개혁에 관한 시행계획 또는 규제계획과 검토에 관한 모범규제와 지침을 위한 체계를 통해) 광범위한 접근법부터 규제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법, 설명서 또는 지침 및 정부전략과 프로그램 등 몇 가지 형식을 취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는 1개 이상의 문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18개국에서는 3개 이상의 문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규제거버넌스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2). 33개국에서는 규제정책에 사전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32개국에서는 정부 투명성과 협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28개국에서는 규제에 관한 사후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준수 (Compliance)와 집행은, 성과기반 규제의 경우처럼, 그리 많지는 않다 (15개국). 이는, 많은 국가의 규제사이클이 여전히 시행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2. OECD 국가의 규제정책에서 다루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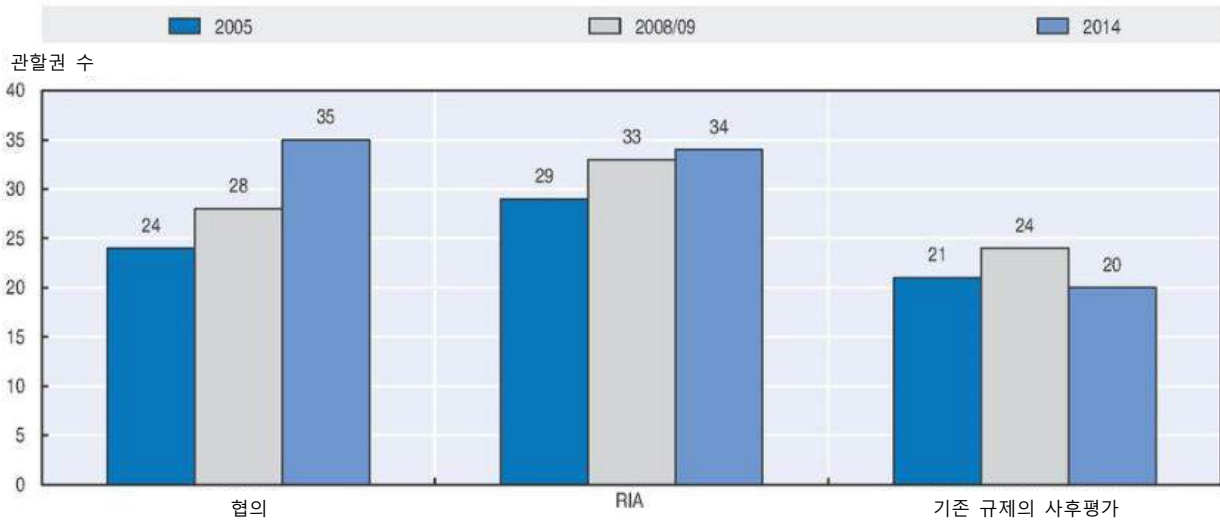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규제정책수단의 체계적인 사용

2012년 권고에서는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핵심부분으로써 사전영향평가와 사후평가를 포함하여 규제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관리의 전형적인 수단, 특히 협의와 RIA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이 두 분야를 채택하기 위해 공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지난

그림 1.3. 협의, RIA 및 사후평가분야에서의 공식요건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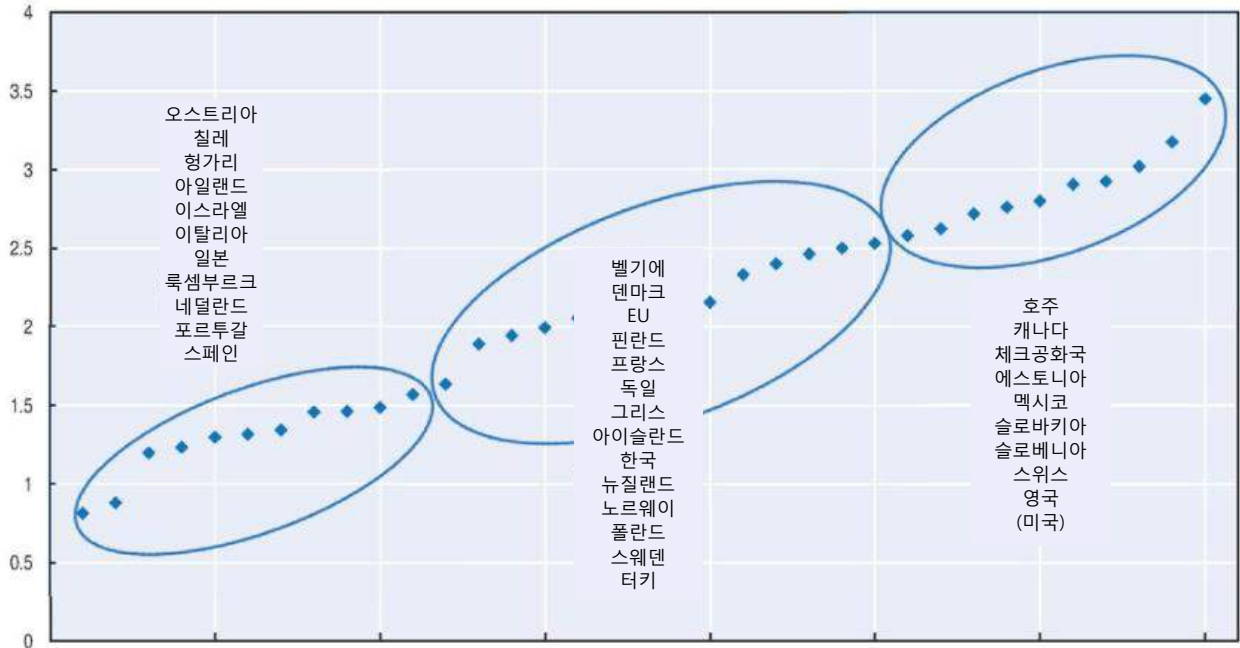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07>

10년간 늘어나고 있다. 협의분야의 경우, 8개국은 이러한 요건을 협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3장 참조). 그에 반해, 사후평가의 경우는 많은 국가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각국이 2012년 권고에 따라 이 분야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5장 참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RIA 및 사후평가의 사용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의 종합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각 지표의 적용범위 및 한계점에 대해서는, 그림 1.4, 1.5, 1.6 및 독자 가이드를 참조). 이러한 종합지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3장), RIA (제4장) 및 사후평가 (제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한다. 종합지표는, 각국이 이 3분야에서 각 분야에 맞는 관행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향상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RIA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모범규제정책의 관행에 관한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하여 이러한 수단이 갖는 최대한의 잠재력 중에서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달성한다. 사후평가분야의 경우는 그 평균치가 더 낮은 편인데, 체계적으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건실한 방법론과 가이드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각국의 수행성과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상당히 향상되고 개선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기본법과 종속규제 (subordinate regulation)에 관한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은,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 분야에서 기본법이 아닌 종속규제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또한 종합지표는 향상되어야 하는 분야를 강조한다. 종합지표의 여러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접근법을 보면, 대부분 국가는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과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1, 1.2, 1.3). 하지만 투명성과 품질관리는,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사후평가에서는 특히 품질관리

그림 1.4. 종합지표: 규제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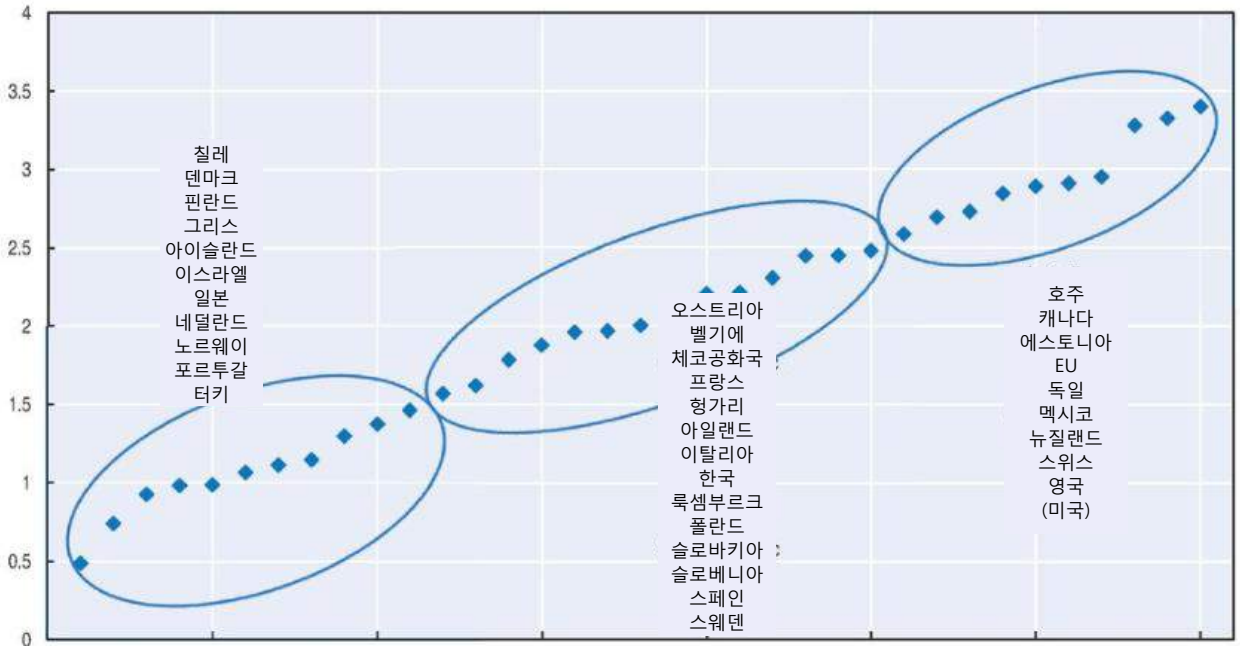


주: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의 개별범주를 아우르는 총합을 나타낸다. 각 범주에 대한 최고치는 1개이며, 종합지표에 대한 최고 총합은 4개이다. 각 점수는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대한 평균 수치를 나타낸다. 단, 종속규제에 관한 결과만을 제시한 미국은 제외한다. 그룹 분류는, 평균점수를 가진 국가, 그리고 평균점수 위로 0.5 또는 아래로 0.5를 얻은 국가로 분류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67>

그림 1.5. 종합지표: 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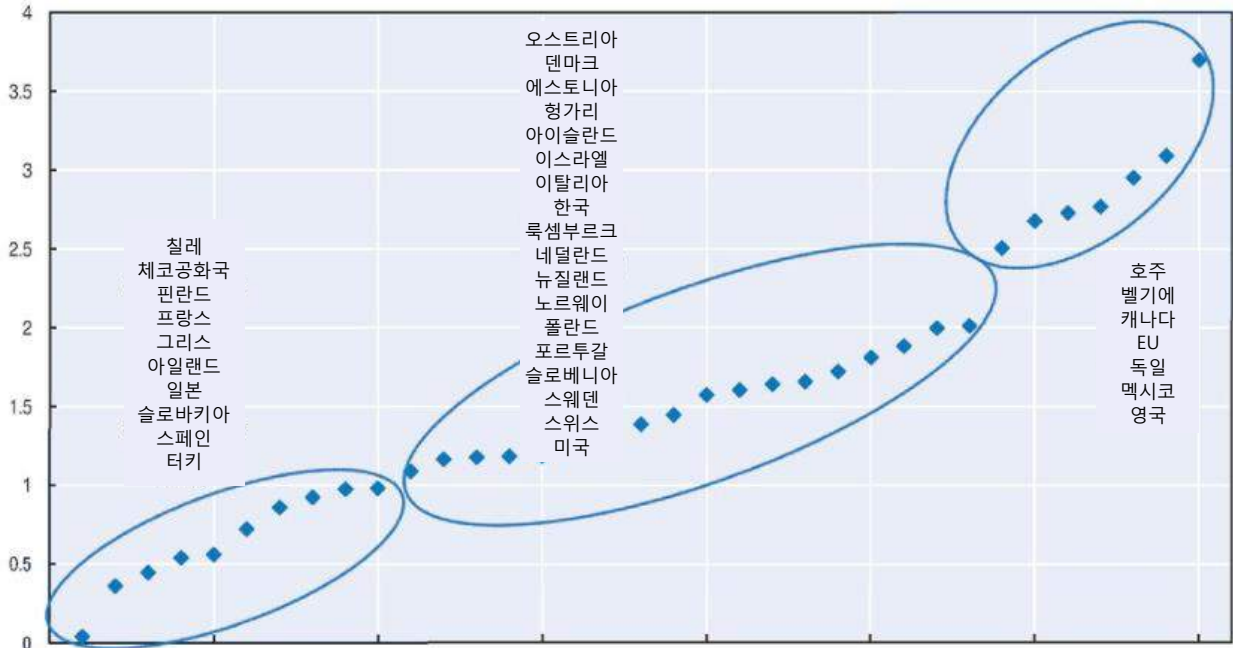


주: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의 개별범주를 아우르는 총합을 나타낸다. 각 범주에 대한 최고치는 1개이며, 종합지표에 대한 최고 총합은 4개이다. 각 점수는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대한 평균 수치를 나타낸다. 단, 종속규제에 관한 결과만을 제시한 미국은 제외한다. 그룹 분류는, 평균점수를 가진 국가, 그리고 평균점수 위로 0.5 또는 아래로 0.5를 얻은 국가로 분류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11>

그림 1.6. 종합지표: 규제의 사후평가



주: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의 개별범주를 아우르는 총합을 나타낸다. 각 범주에 대한 최고치는 1개이며, 종합지표에 대한 최고 총합은 4개이다. 각 점수는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대한 평균 수치를 나타낸다. 단, 종속규제에 관한 결과만을 제시한 미국은 제외한다. 그룹 분류는, 평균점수를 가진 국가, 그리고 평균점수 위로 0.5 또는 아래로 0.5를 얻은 국가로 분류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27>

와 감독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의 규제정책수단이 그 규제목표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3가지의 종합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을 3개의 클러스터 (서로 구성이 다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그림 1.4, 1.5 및 1.6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이것은 기호체계를 사용하며, 표 1.1, 1.2 및 1.3의 하위 범주에도 반영된다. 이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 평균 이하면서 RIA,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사후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요건은 수립되어 있는 국가; ii) (지표에 따라 제3과 제2 사이 샘플 사이에 있는) 표준방법론과 같이 추가 구성요소가 있으면 평균값을 보이는 국가; 및 iii) 평균 이상의 국가이다. 사후평가의 경우는, 평균 이상의 그룹 및 평균이거나 그 이상의 그룹 중에서 극히 일부의 국가이다.

표 1.1.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기본법 (P)와 종속규제 (S)

	방법론		체계적 채택		투명성		감독과 품질관리		합계	
	P	S	P	S	P	S	P	S	P	S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공화국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EU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평균범위 이상

▲ 평균

■ 평균범위 이하

주: 본 표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종합지표의 총점뿐만 아니라 4가지 하위범주에 대한 국가별 점수를 나타낸다. 조사 결과는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총 집계된 지표에서, 원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2.579, 종속규제의 경우는 >2.570). 삼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높거나 낮은 범위 안에 있는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약 2.079, 종속규제의 경우는 약 2.070). 사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1.579, 종속규제의 경우는 <1.570). 총 중간점수의 4분의 1로 계산된 중간값과 함께, 범주 수준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70>

표 1.2. RIA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기본법 (P)와 종속규제 (S)

	방법론		체계적 채택		투명성		감독과 품질관리		합계	
	P	S	P	S	P	S	P	S	P	S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공화국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EU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평균범위 이상

▲ 평균

■ 평균범위 이하

주: 본 표에서는 RIA에 관한 종합지표의 총점뿐만 아니라 4가지 하위범주에 대한 국가별 점수를 나타낸다. 조사 결과는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총 집계된 지표에서, 원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2.582, 종속규제의 경우는 >2.406). 삼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높거나 낮은 범위 안에 있는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약 2.082, 종속규제의 경우는 약 1.906). 사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1.582, 종속규제의 경우는 <1.406). 총 중간점수의 4분의 1로 계산된 중간값과 함께, 범주 수준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83>

표 1.3. 사후평가에 관한 종합지표의 하위범주

기본법 (P)와 종속규제 (S)

	방법론		체계적 채택		투명성		감독과 품질관리		합계	
	P	S	P	S	P	S	P	S	P	S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공화국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EU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공화국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 평균범위 이상

▲ 평균

■ 평균범위 이하

주: 본 표에서는 사후평가에 관한 종합지표의 총점뿐만 아니라 4가지 하위범주에 대한 국가별 점수를 나타낸다. 조사 결과는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총 집계된 지표에서, 원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2.076, 종속규제의 경우는 >2.012). 삼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높거나 낮은 범위 안에 있는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약 1.576, 종속규제의 경우는 약 1.512). 사각형 표시는 중간점수보다 0.5 이상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기본법의 경우는 <1.076, 종속규제의 경우는 <1.012). 총 중간점수의 4분의 1로 계산된 중간값과 함께, 범주 수준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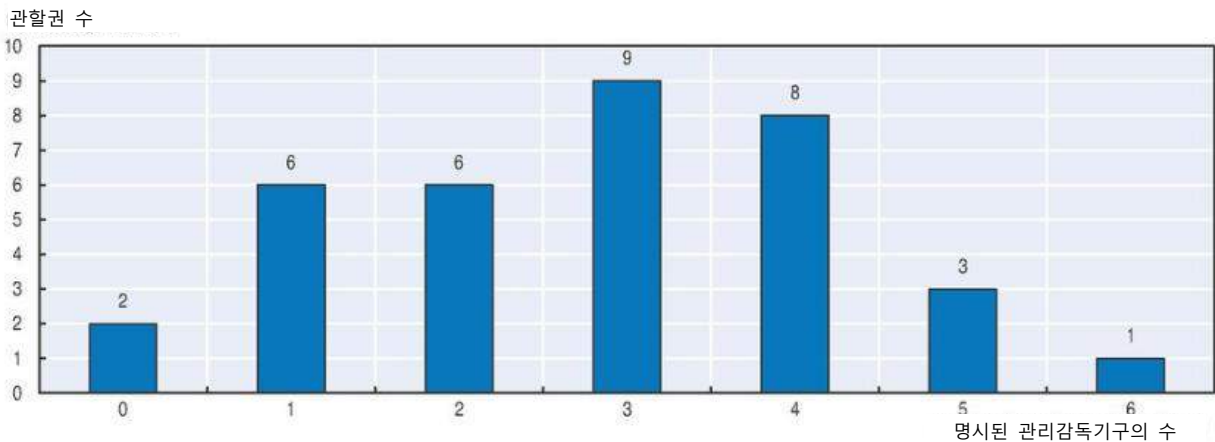
규제정책의 다양한 제도적 환경

2012년 권고에서는, 각국이 “규제정책절차와 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규제정책을 지원·시행하며 규제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서는, 고품질의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규제정책절차와 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공하면서 규제정책을 지원·시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직무와 임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규제가 범정부적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핵심부처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는 (...)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상설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OECD, 2012).

2014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일 또는 여러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35개국 중, 33개 관할권역에서 실시 중). 하지만 관리감독기구의 제도적 환경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기구가 아닌 복수의 관리감독기구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7). 조사에 응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8개의 관리감독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 중에서 21개국에서는 3개 이상의 관리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기구의 책임을 포함하여 각 기구에 부과되는 책임의 할당 및 국제조정에 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된다. 전문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각한 단편화도 범정부적 접근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 (35개국 중 26개국)는 적어도 정부의 핵심부처 (예, 국무총리실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1개의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그림 1.8).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경제부, 재정부 또는 산업부 등에 적어도 1개의 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개국). 이와 같이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8개 국가는 법무부 산하에 1개의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경제영향분석에 따르거나 또는 그와 관계없이) 법률 초안작성 (legal drafting)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후에는 규제정책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형태라 할 수 있는 독립관리감독기구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림 1.8). Renda와 Castro (2015)는 정부와 약간의 거리를 둔 형태로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7. 각국/관할권당 관리감독기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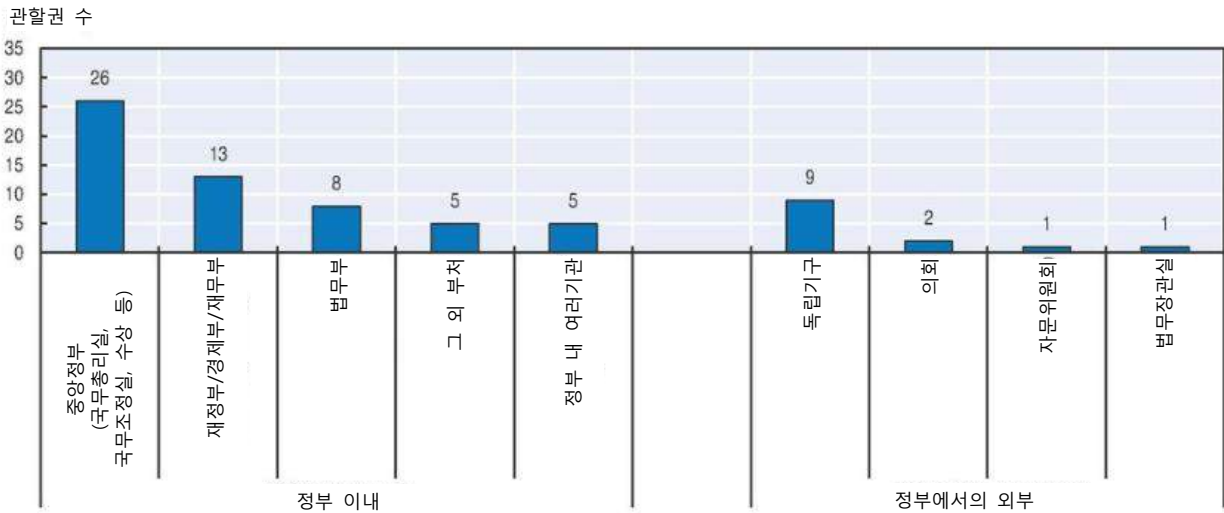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32>

그림 1.8. 관리감독기구의 위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32>

박스 1.3. 독립관리감독기구의 설치 이유

의회제민주주의 (parliamentary democracy)는 특히 RIA와 같이 영리한 규제수단의 범위에 기본법을 포함시킬 때) 정부의 입법법령 (legislative decree)에 관하여 입법기관의 철저한 검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 내에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규제관리감독을 주로 공공비 지출의 질에 초점을 맞출 때는, 감시기관이나 회계감사원 (court of audit)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정보를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때는, 보다 제한된 권한을 가진 완전히 독립된 외부관리감독기구나 혼합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정부가 수준 높은 규제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할 때는, 정부의 선택권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위원회를 지명하는 장려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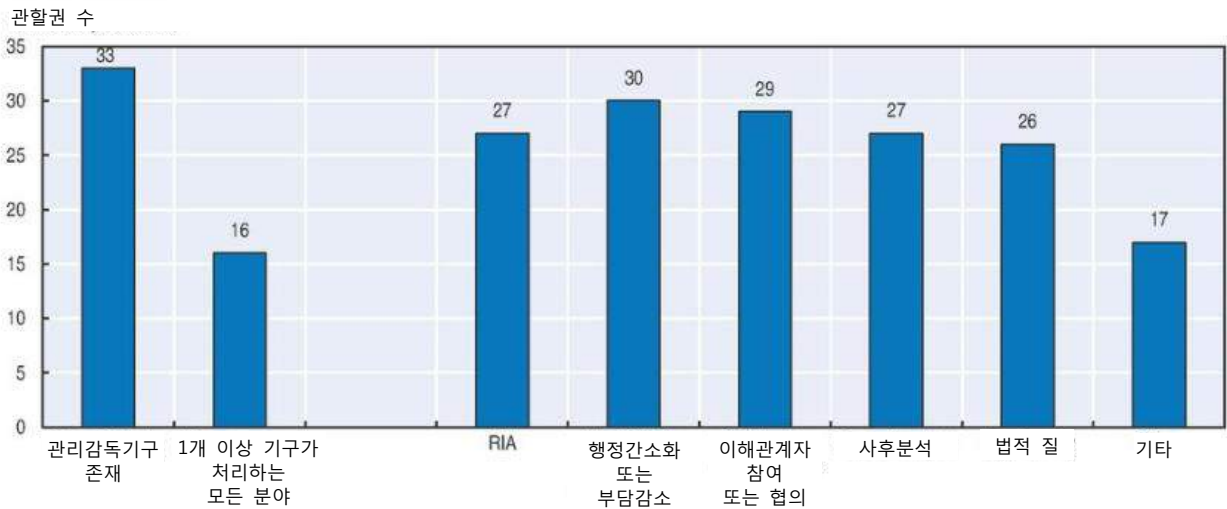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영향평가의 질에 대한 평가와 권고의 기술적 직무를 수행할 때,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서는 관리감독기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관리감독기구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많은 규제개혁이 선거기간 동안의 정부 아젠다의 실현과 규제통합을 목표로 하며 관리감독기구를 정부 산하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출처: Renda와 Castro (2015), "규제관리감독과 조화: 선정한 각국의 사례", OECD, 미공개문서.

또한 본 조사결과에서는 관리감독기구의 책임과 관리감독직무에 관하여 각국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범위는 RIA, 행정간소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후분석, 법적 품질을 비롯하여, 각 정부를 아우르는 조화나 국가의 법적 요건의 준수 확인 또는 전략의 추

진과 규제정책의 계획 등과 같은 과업을 포함하여 “기타”로 분류되는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림 1.9). 이러한 범주는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여러 기구가 수행하는 책임의 깊이와 범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표 1.4). 4개 기구에서는 모든 범주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다. 35개 기구는 규제관리감독 활동을 1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책임업무가 단 1가지뿐인 기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질의 관리감독을 책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12개 기구는 법적 질의 관리감독을 유일한 책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9. 관리감독기구의 책임분야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557>

표 1.4. 관리감독기구의 책임

책임직무 수	관리감독기구의 수
5	4
4	20
3	16
2	19
1	35

주: 책임범주에는 RIA, 이해관계자의 참여/협의, 행정간소화 또는 부담 감소, 사후평가 및 법적 질이 포함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06>

2012년 권고에 따르면, “규제관리감독기구는 고품질의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직무와 책임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규제정책의 결점과 규제의 부족한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리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 규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의 부족을 해결한다; ii) 해당 부처들은 참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 투명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iii) 증거 수집을 뒷받침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규제의 효과성과 반응성을 보다 향상시킨다; 그리고 iv) 규제기관의

담당자가 규제수단의 수단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표 1.5에서는 관리감독기구의 이러한 직무와 책임분야 및 소속에 대해 요약한다. 2012년 권고에 따르면, 이러한 직무에는 첫째로 “품질관리”, 즉 만족스러운 평가를 수반하지 않은 제안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검토함으로써 영향평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임무가 포함된다. 관리감독기구는 (주로 전담법률서비스나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법률 초안의 법적 질을 검토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

표 1.5. 관리감독기구의 직무

책임분야	직무	소속
협의/이해관계자의 참여 법적 질 행정간소화 RIA 사후평가 기타 (예, 규제완화 아젠다 또는 e-정부)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평가와 조사 ● 만족스럽지 못한 수단-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 ● 법적 질의 재검토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분야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개발부서/부처에 제출 ● 기존 규제의 재검토 ● 규제흐름 및/또는 저항에 관한 분석 ● 특정 개혁분야에 대한 지지 규제정책의 체계적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관계. 예, 국제포럼과의 협력 ● 다른 관리감독기구와의 조화 ● 규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회/정부에 대한 진척상황보고를 포함하는, 감독과 보고 규제수단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정책의 다른 측면을 유연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 가이드선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발행 ● 평가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의 담당자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 	정부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핵심부처 (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 재정부/경제부/재무부 ● 법무부 ● 그 외 부처 정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기구 ● 의회 ● 자문단 ● 법무자문단

출처: OECD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Publishing, Paris; Rebda, A. (2015),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정책”, 거시적 관점에서의 규제정책: OECD 규제정책전망 2015의 독자 동반문서, OECD Publishing, Paris; 및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15>

둘째, 2012년 권고에서는,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구가 규제에 잠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Renda와 Castro (2015)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규제개혁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확인함으로써 옹호 프로세스 (advocacy process)에 참여한다; 규제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규제흐름 및/또는 국체에 관한 연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제공한다.

셋째, 2012년 권고에서는, 규제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관리감독기구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Renda와 Castro (2015)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직무를 확인하고 있다: 보고 (예, 관리감독활동에 대한 연간보고서의 발표); 제도적 관계 (예, OECD나 APEC과 같은 국제포럼 내 및 국제수준의 다른 관리감독기구와의 협력 및 관리감독활동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그리고 조화 (다른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감독기구 간의 조화).

넷째, 관리감독기구는 사전평가방법의 개선과 정책개정을 위한 사후평가업무를 조직화하고 정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규제수단을 유연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권고에서는, 규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던스와 훈련을 관리감독기구가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Renda와 Castro (2015)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구는 사전영향평가포럼 및 연장된 영향평가포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 모든 단계에 해당 부처에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적 부담 요건 등의 완화, 비례의 원칙, 보다 심층적인 경쟁력 평가를 제안함으로써 초기 초안 작성업무에 개입하는 등의 "협의기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실제로 관리감독기구가 품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0개국에서는 "상설 또는 중앙관리감독기구에 의한 검토"를 최종 규제의 개발 시 협의내용을 고려하여 규제기관의 담당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11개국은 상설기구의 한 형태를 사후평가를 위한 품질관리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 몇몇 기구는 규제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때 대중이나 정부에 부적절한 평가나 징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관리감독기구는 법률 초안의 법적 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 Freudenberg, M. (2003), "Composite Indicators of Country Performance: A Critical Assessment",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03/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405566708255>.
- OECD/European Union/JRC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3466-en>.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 OECD (2011),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pporting Economic Growth and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6573-en>.
- OECD/APEC (2005),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OECD/APEC, www.oecd.org/regreform/34989455.pdf.
- OECD (1995), OECD Recommendat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 OECD, Paris, <http://acts.oecd.org/instruments/showinstrumentview.aspx?instrumentid=128&instrumentpid=124&lang=en&book=false>.
- OECD/European Commission (2009), "Better Regulation in Europe: an OECD Assessment of Regulatory Capacity in the 15 Original Member States of the EU: Project Glossary",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4952782.pdf.
- Radelli C. (2004), "How Context Matters: Regulatory 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Special Issue on Policy Convergence.
- Renda, A. (2015),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Regulatory Policy",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Renda and Castro (2015), "Regulatory oversight and co-ordination: Selected national experiences", OECD unpublished paper.

제2장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규제정책의 실천과 원리 채택 면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국가들은 규제
의 질적 아젠다를 위한 조건을 확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난제에
직면한다. 이번 장에서는 규제정책을 법과 실천에 내재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들이 직
면하는 난제를 식별한다. 또한 난제를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 촉진을 위해 규제정책
을 이용하는 법에 관해 여러 국가의 야심 찬 아젠다를 식별한다. 그리고 특히, 규제
정책의 최전선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i)규제의 이행과 집행, ii)규
제 거버넌스의 비전통적 행위자들의 미개발된 잠재성, iii)규제정책의 영향에 관한 증
거 강화, iv)국경을 넘어 규제정책 취급.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결과

동향

규제정책의 원리와 실천을 채택하는 일에 진전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러 국가들은 여전히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회의의 2012 OECD 권고(OECD, 2012c)에 제시된 것과 같은 그들의 규제의 질의 아젠다를 위한 여건 확립과 이행 면에서 여러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난제에 직면한 국가들은 전략적 접근법을 갖추지 못했고, 규제의 질이 지닌 영향보다는, 과정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도구들 (일반적으로 상담, 규제적 영향평가, 부담 감소 기획)은 정책과 규제적 결정이 정해진 후, 대개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용된다. 많은 경우, 규제정책의 범위는 규제에 의해 비즈니스에 부과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한된다. 이처럼 협소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은 규제의 질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느라 기울인 노력으로부터 충분한 이득을 얻지 못한다.

여러 국가의 경우, 규제적 정책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그것은 다양한 도구들의 이용, 덜 고압적인 중재를 향한 문화의 이동, 위험과 자원에 대한 보다 나은 고려, 행정 및 국가 영역을 넘어선 규제정책의 범위의 확장 간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많은 국가들은 법적 요건의 확립을 넘어,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기회와 도구들을 충분히 이용하려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규제의 질을 유지하고 그 여건을 확립하는 정치 경제는 난해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을 구하는 일은 복잡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래서 행정의 전반에 걸쳐 규제의 질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잠재적 반대를 상대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지원을 모으려면, 규제의 질의 사례, 규제의 질 개선과 정책목표 이행, 성장 촉진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

규제이행과 집행은 여전히 규제 거버넌스에 대해 가장 약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규제에 대한 준수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목표 달성 시점에 규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규제의 질을 위한 사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나은 준수를 조성하기 위해 준수 전략, 조사들을 추가로 개선하고, 행동 경제학과 같은 규제적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할 잠재성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 거버넌스의 순환(사이클) 내 '루프를 좁히기 위해' 사후평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규제행위자(player)들이 겪는 상황(landscape)은 다양하다, 규제개혁을 위한 청사진이나 이 상적인 제도적 조정은 없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제도 설정 기회를 놓친 적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행위자들, 신흥국의 행위자들, 비정부 행위자들의 미개

발된 잠재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의 하위 국가 차원들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규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법률의 질을 보장할 고유의 절차를 설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국가들은 규제 시스템의 적절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좋은 성과의 견인차와 지표들 및 좋은 규제 결과를 얻기 위한 그것들의 기여도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거 기반의 규제정책을 조성하려면 할 일이 많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선택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대안적 규제개혁의 협정, 비용, 혜택의 식별을 뒷받침할 도구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 대안적 규제정책수단들과 접근법 이용의 영향에 관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앞을 내다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여전히 결정의 근거로 삼을 증거를 수집하고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것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리뷰를 통해, 정부의 개혁 아젠다를 알 수 있다. 일부 국가에는 심층적 리뷰를 수행하고 필요한 분석을 제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위의 역량 존재한다. 새로운 ICT들은 정보가 수집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것들이 규제의 질을 뒷받침할 충분한 잠재성은 아직 탐구되지 않았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효율적인 규제정책을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의 난제며, OECD 국가 이외에는 규제정책의 확산이 한정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규제기관들은 더 이상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다른 관할권의 규제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들의 활동은 교역 및 투자 흐름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래를 생각하면, 규제정책은 규제의 개발 및 이행 과정에서 외부 당사자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규제협력을 토대로, 공동의 이해와 언어를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나라와 섹터의 맥락에서, 가능성 있는 다양한 접근법들, 메커니즘, 각각의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서론

앞 장에서 윤곽이 제시한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은 규제정책의 중요성 및 국내에 내재된 여러 좋은 관습들을 인정해 왔다.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여러 국가들은 여러 요소들 때문에, 그들의 광범위한 규제개혁과 성장 아젠다 내에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일의 복잡성과 씨름하고 있다. 규제행위자들이 겪는 상황은 여러 협력과 관여 문제 등 다양하다. 규제개혁은 복잡한 정치 경제 때문에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장내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규제 아젠다를 이행하고 그들의 규제체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강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영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규제이행과 집행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국회, 경제규제기관, 정부의 준국가적 수준들, 최고감사기관들을 포함해, 규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잠재성이 대체로 미개발된 경우도 있다. 너무 복잡한 것으로 지각되지만, 개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실질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가령, 규제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다 나은 규제의 과정과 도구들을 재정적 결과 즉, 성장, 복지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규제를 받는 대상, 크게 보면 대중들 사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질적 증거를 개발하고, 규제정책에 대한 투자를 재정적 결과와 연결하면, 성공적인 정책의 이행과 설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국가들이 이용해야 하는 새로운 분야의 규제정책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규제기관들이 글로벌화된 경제 안에서 직면하지만 대체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일부 난제들을 다룰 잠재성을 지닌, 국제규제협력의 사례가 있다.

본 장은 2014 규제지표조사 (독자 가이드 및 부록 B 참조)는 물론 OECD와 기타 연구에 의존하여, 규제정책의 체계적 채택과 이행 중 직면하는 난제들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잠재성을 이용하려 하는 국가들을 위한 장래를 감안한 아젠다를 식별한다.

규제정책의 난제

Lodge (2015)는 '규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한다. 완전한 위기가 아니라 해도, 여러 국가들은 빠른 기술 혁신 및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경향 때문에 그들의 규제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제에 직면한다. 하나의 예로서, 인프라 서비스 이행 및 의료와 같은 규제가 심한 영역들은 (국영 독점 기업들을 토대로) 그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그들이 규제를 받는 방식에 따른 중요한 반향(repercussion)들로 인해 도전에 직면한다고 본다. 2008년의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는 개방 경제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규제 실패의 영향을 보여줘 왔다.

이런 난제들은 규제의 여러 '결함'들을 나타낸다. 규제지표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포함해 Lodge(2015) 및 다양한 OECD 연구들에 따라 4가지 결함을 식별할 수 있다.

- 규제의 일관성과 연속성 부재는 물론 규제를 받는 대상에게 비용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집행과 관련된 감독 결함이 존재한다. 앞 장에서 식별된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은 규제정책에 대해 파편화된 접근법을 선보인다. 규제정책에 대한 그들의 제도적 체계는 다양한 감독 기구 및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아우른다. 규제정책 사이클은 너무 자주 와해되며, 집행과 평가의 후속 단계들은 대체로 무시된다.
- 규제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데 있어 난제들과 연관된 참여 결함. 이 결함은 규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여(참여) 과정의 대표성 부재와 포획의 위험을 높인다. 앞 장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들의 관여의 중요성을 파악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참여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관여(참여)는 대체로 너무 늦게 이뤄진다. 그것은 여전히 증거 수집보다는, 투명성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Alemano, 2015). 여러 예상(예측)이 이뤄지지만 반드시 그 예상이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위험이 있다.
- 규제대상, 크게 보면 대중의 예상된 반응성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는 규제의 규범적 특성과 관련된 규제의 효율성 결함. 규제는 모든 상화에서 옳은 도구는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이용하는 건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시장 실패를 다루기보다, 정치적 의무를 나타내기 위해 규제를 이용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가령, 기존 섹션은 실제 규제정책수단보다는, 감독 기구가 부과한 행정 요건으로써 규제정책수단들의 이용을 집중 조명한다. 그 경로를 변경하고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기에, 일단 규제가 너무 많이 진전되면, 그 과정에서 그 도구들을 이용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 RIA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건,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약해진다.

- 규제의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평가 결함. 그 증거는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규제수단이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규제정책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였다. 앞 장에서 집중조명한 바와 같이, 여러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규제이행보다는 설계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보여준다. 가령, 감독 기구들은 조사, 집행, 준수 영역보다는 RIA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사후 분석 영역은 다른 규제정책 분야에 비해 뒤쳐진다.

규제정책의 난해한 전략적 포지셔닝

규제가 목표에 맞춰 조정되고 여전히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려면, 기본규제체계와 규제의 질을 보장할 도구들을 열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OECD 전반에 걸쳐, 규제정책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실질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은 많은 난제에 직면한다. 그 중 하나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내용에 관한 합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의 규제정책 아젠다의 언어, 요소들, 심지어 목표들은 여전히 다양하다. 규제정책 중심의 언어의 지속적인 변화는 한 가지 예이다. 표 2.1은 규제정책과 관련해 이용되는 다양한 전문 용어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용어

OECD	EU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
규제의 질	보다 나은 규제	규제관리
규제개혁	영리한(스마트) 규제	규제 거버넌스
규제정책	규제 정합성	규제개선
		적절한 규제방식
		간소화

출처: OECD 사무국 작성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05>

규제정책 아젠다는 여러 국가에 걸쳐 예측과 이해 면에서 광범위한 다양성을 아우를 수도 있다. 표 2.2에는 '기대와 다른 의도치 않은 효과 감소', '비일관성, 비예측성, 전문성 부족 완화', '규제적 부담 완화', '직업적 대화의 부재와 사일로(siloes)의 완화'를 포함해, Lodge(2015)를 토대로, 규제적 정책의 가장 공통된 목표 4가지가 식별되어 있다. 규제개혁 범위의 4가지 개념들은 그림 2.1에서처럼 종합하고 예시할 수 있다. 그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 협소한 정의를 통해, 규제개혁은, 규제에 의해 비즈니스에 부과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도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쪽 끝에서, 규제개혁은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 하는 공공정책의 목표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같은 기본 논점들을 포함해, 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통

합적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정의에서, 규제개혁은 구조 개혁의 이행을 통해, OECD 경제들의 일인당 GDP를 최대 25%까지 증가시킬 잠재성을 지닌다 (Barnes, 2011). 하지만, OECD 연구를 토대로, 일부 국가들만 규제개혁에 대해 실제로 광범위한 관점을 수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들의 규제정책 아젠다에 대한 협소한 이해의 결과들 중 하나는 여러 정책과 규제 결정을 마련한 후, 규제정책수단들, 특히 일반적으로 협의, RIA, 부담 완화 기획을 점진적 혹은 행정적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관리 도구들은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기 보다,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은 한편으로 유권자를 대표해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선거에 의해 부과되는 민주주의적 책임,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도구들의 기술자주의 이용 간의 교환에 직면하는 지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의 목적은 단순히 그 교환을 드러내고, 정책 선택의 기반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택과 정책결정은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선호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조사의 답변들은 규제관리의 전형적 도구들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들이 대다수 국가에서 확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이와 반대로, 규제정책 아젠다와 연관 짓기 위한 이러한

표 2.2. 규제정책 아젠다의 4가지 목표

<p>예상치 못한 효과나 의도치 않은 효과 완화 규제는 부작용과 교환을 일으킨다. 규제정책은 그런 효과의 정도/영향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p>	<p>비일관성, 비예측성, 전문성 부족 완화 규제는 무릇 반사반응을 겪는다. 규제정책은 과정을 늦추고, 정보를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제안의 비용편익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유도한다.</p>
<p>'규제에 대한 대안'과 규제완화를 거쳐 규제 '부담'을 완화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는 규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규제정책은 '벤치마킹', 거론해서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과 같은 대안을 살펴보기 위한 도구들을 제시한다.</p>	<p>규제 면에서 직업적 대화 부족과 사일로스 완화. 직업적 대화와 제도적 기억의 부족으로 보이는 규제. 규제정책은 지식과 경험의 교환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다.</p>

출처: Lodge, M(2015)에 의거, "규제 및 규제적 정책에서의 동향과 난제", 올바른 균형 잡힌 규제정책: OECD 규제정책전망 2015에 대한 독자 가이드, OECD Publishing,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15>

그림 2.1. 규제개혁의 스펙트럼



출처: OECD (2012a), "포괄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원탁회의: OECD 국가의 성장 아젠다를 위한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여",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포괄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원탁회의 시리즈 중 하나, 비출판문서.

도구들의 실제 이용에 대한 지표들, 가령,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력(인풋)을 이용, 규제 방안의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RIA의 조기 이용은, 혼합된(혼란스런) 성과를 보여준다. 제3 장과 4 장은 이 점을 예시한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하나의 예로서, 이해관계자의 관여는 초기 단계보다, 규제 개발의 최종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되며,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입력(인풋) 이용에 의심을 던진다. 한정된 수의 나라들은 완전한 비용-편익 분석을 확증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생산 과정에 관여하게 하기 위해 RIA 과정을 이용한다. 영향평가 과정의 질은 대다수 국가에서 점검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써, RIA가 실제로 기능하는 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규제정책에 대한 점진적 접근법을 넘어, 규제정책의 도구들, 특히 RIA와 협의의 후속 도구들은, 모든 규정 제정 활동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 정부의 집행부가 마련한 규제에만 협소하게 적용된다. 규제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보의 준국가적 수준들의 활동처럼, 국회의 활동은 규율이 그런 차원까지 확대되는 소수의 사례만 제외하고, 규제정책의 범위에서 종종 배제된다. 국내 주요 법들의 대다수가 국가 집행부의 기획에서 비롯되는 국가에서, 이로 인해 어떠한 주요 논점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국회와 정부의 준국가적 수준들은 여전히 대부분 점검되지 않고 있는, 상당한 규정-제정 활동을 한다. 집행부가 주도한 법의 지분 (share)에 관한 통계치는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 (부록 A). 국가 정부와 집행부를 초월해 규제관리 규율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정보 기반을 조성하는 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여러 국가들의 규제정책 아젠다 및 다양한 접근법 및 성취 사항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에 걸쳐, 고유의 여러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Lodge(2015)는 규제 집행에 대한 최근의 두 가지 접근법인, “반응적 규제”와 “위험 기반의 규제” 간의 갈등(긴장)을 식별한다. 반응적 규제는 주로 조언(권고)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으로서 집행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은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그것은 공식적 제제를 요하기도 한다 (Parker, 2006). 위험 기반의 집행은 낮은 수준의 위험과 관련된, 집행 활동의 수를 낮추며, 높은 수준의 위험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기관들이 지닌 제한된 자원을 할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공식적 제제의 위협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위협이 낮은 활동들을 고려할 때, 반대 (contradiction)가 조성될 수 있다.

이 증거는 규제 설계 및 집행에 대한 위험 기반의 접근법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여러 분야에서 위험 프로필들을 평가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 어떤 활동과 제도가 “시스템”의 위험을 나타내는지 식별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시스템 안에 시스템적 위험을 야기할 위험을 식별하는 건 더 어렵다 (가령, 경제 시스템의 실패는 건강과 안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관할권 내 실패로 인해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기는 더 어렵다. 위험 기반의 규제도 새로운 위험의 등장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며, 그것들이 기존의 규제체계로 “파악되지 않는 건” 자명하다. 그것들은 변화 중인 테크놀로지, 행동, 시장들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인도할 수 있는 영역을 특징 짓는다. 그것들의 “영향과 확률”에 대한 평가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당연히 이행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⁴.

또 다른 갈등은 집중적인 질적 접근법을 요하는 보다 나은 규제 아젠다의 질을 지향하는 열망과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양적인 (전면적) 표적들을 채택하는 경향 간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이 부담하는 비용 완화에 대한 양적 표적(타겟)으로 인해, 다른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 수집과 전반적인 복지 효과를 등한시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는 행정적 부담 감소 노력에 의해 제시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즈니스에 가해지는 규제 비용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준수비용 (compliance cost)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들이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경쟁적 환경을 충분히 설명해주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장 및 복지 향상과 상반되는, 비즈니스 임대(rent)를 보강해줄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행동 규약과 같은 비규제적 도구에 대한 의존과 비준수의 위험 최소화의 사이에서 여러 정부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비구속적 도구들은 정부의 집행 비용과 비즈니스의 준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것들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법적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도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규제개혁의 정치 경제들은 복잡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개혁의 이득은 널리 확산되고, 단지 중기 (medium term)에만 명백히 나타나는 반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이익 집단들은 즉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규제의 변화가 어디에서 이득을 줄지 입증하기 위한 분석과 옹호의 구체적 조합은 성공적 개혁의 수단이 된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규제의 질의 유지 및 개선 보장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 개혁의 잠재적 이익을 확신해야 한다. 긴축 재정에 대한 최신 측정을 하려면, 정부는 "적은 것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우선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개혁을 이행하려는 추가 노력을 하자는 (이미 하기 힘든) 주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더 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러 규제정책수단들은 직접적 투자를 요하지만, 단지 장기적인 이익만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결과들이 즉시 요구되는, 정치적 맥락에서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

개혁에 대한 외부 수요도 존재할 수 있지만, 경제의 특정 영역 및 특정 집단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 비즈니스와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요식행위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규제개혁을 지지한다. 행정적 부담 감소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실질적 이익을 실현하는 개혁 노력이 지지를 받을 것이란 점이다. 하지만 그 주제에 관해 이행된 지각(인식) 조사로부터,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규제적 부담을 줄일 개혁들이 충분히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지각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작은 규제나 행정적 변화는 비즈니스에게 적응 비용을 야기하면서도, 기대 이익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으며, 영향(impact)과 성장-생성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분야들은 주로 배제된다. 다른 한편, 제대로 기획되지 않은 규제와 부족한 집행 모두로부터 비롯된 여러 규제 실패와 관련된 경제적 위기 이후, 보다 많은 규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와 규제 조치에 대한 수요의 균형을 잡기는 어렵다.

개혁에 대한 지원을 모으는 난제는, 규제의 질 개선과 정책목표 이행 및,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적용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기회의 식별 간의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훼손된

다. 수 수기 동안 얻은 산발적인 증거를 통해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정책의 이용, 보다 나은 법과 규제의 창안, 경제 정책 결과들의 전달 간의 분석적, 실증적 연관성을 이해하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개혁을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이 규제의 질을 위한 정치적 거래를 이루는 건 힘든 일일 수 있다. 주로, 단기부터 중기까지의 개혁이 정치적 사이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선호된다. 개혁의 올바른 순서를 식별하는 일도 하나의 난제다. 순서는 대개 정치적 성향 및 개혁에 대한 즉각적 외부 요구의 상관요소이다. 정부 부처들이 자신들의 규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의 한계를(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면, 규제 효과에 대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건전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토대가 되는 증거 기반은 약해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OECD(2010)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조건들의 적절성을 지적한다. 특히, 결정부터 이행까지 개혁을 뒷받침할 적절한 규제 제대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그리고 중앙 정보 기관들의 구조가 공적 행정에 걸친 규제의 질의 문화 창조의 중요성과 중앙 기구의 역할을 포함해, 규제정책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한다. OECD(2010)은 유권자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는 개혁에 미치는 영향, 개혁의 반응들,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들을 고려할 역량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정치 경제를 관리한다는 건 곧, 개혁의 시점 및 다양한 정책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찰하는 일이다.

규제정책사이클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범위는 풍부하고 다양하며, 여러 협력과 참여 난제들을 야기한다. OECD 전반에 걸쳐, 규제정책을 전달할 내부 조직은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표 2.3). 행위자들은 주로, 정책사이클의 한 단계 이상에 관여하며, 표 2.3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4 단계를 묘사할 수 있으며, 정부 밖의 행위자들의 관여가 중요하다. 정부의 공식 구조 내에서조차, 정부의 다양한 층과 기관들의 법적 역량에 차이가 존재하고 관할권이 다층적이고 중첩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 간에, 덜 공식적이지만 덜 중요한 건 아닌, 구별이 이뤄진다.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공동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상적인 제도적 배열은 이뤄지지 못한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이 잠재성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주요 난제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 걸쳐 등장하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하며 그림 2.3에 나타나 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도구들의 혼합을 선택하고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장관들은 규제 사이클의 대다수 단계를 거치며 아젠다의 이행에 관여하지만, 특히 규제 설계 단계에 관여한다. 규제 감독 기구들은 정책 설정과 설계 단계에서 최대 입력(인풋)을 한다. 규제 기관들은 집행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일부 행위자들, 가령, 그런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정부의 국가 하위 층들, 의원, 최고감사기관들은 훨씬 드물게 보고된다. 규제의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은 특히, 다양한 유형의 제도들 간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표 2.3. 규제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보고된 행위자들
조사에 응한 24개국의 답변에 의거

다음 단계에서의 각 행위자의 참여를 보고하는 국가의 수

	1단계: 정책결정	2단계: 설계	3단계: 시행/집행	4단계: 평가
의회	7	6	2	4
정부 연대책임 (예, 내각 또는 대통령)	19	6	4	6
정부 연대책임 (예, 내각 또는 대통령)	19	6	4	6
각자의 정책분야 내에서 활동하는 개별장관	15	20	14	15
규제제안을 감독 또는 조정하는 중앙정부기구	17	20	6	10
규제기관	3	9	17	9
최고감사기관	0	0	0	5
그 외 (초국가적) 정부기구	4	7	7	5
시민사회 (기업, 시민 등)	3	8	0	3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행위자들이 보다 현저하게 참여하는 정책사이클의 단계를 나타낸다.

주: 조사에 응한 24개국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및 영국이다.

출처: "규제개혁의 주요 행위자들과 제도: OECD 국가 조사 - 결과 및 분석",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포괄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원탁회의 시리즈 중 하나, 비출판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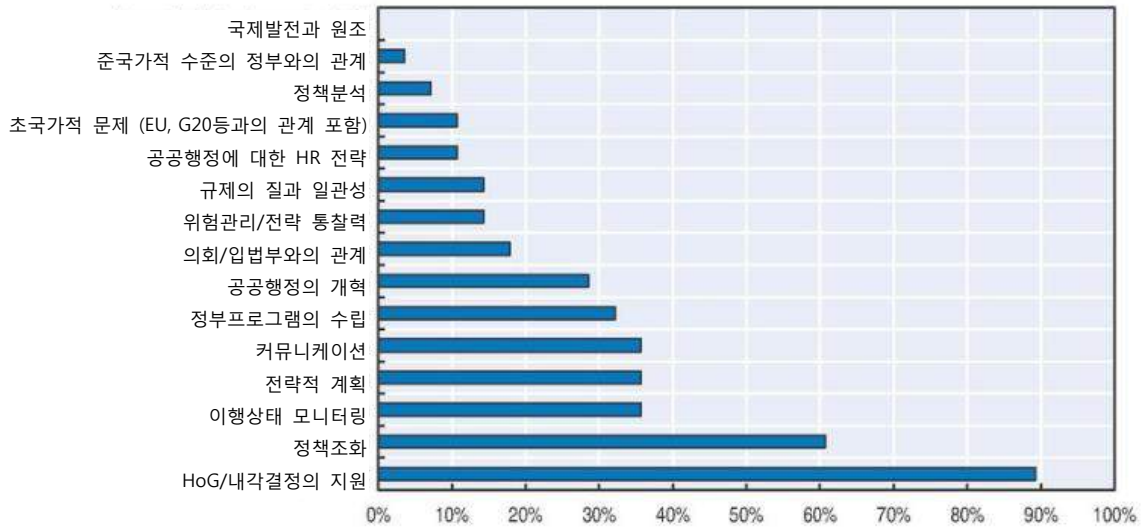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28>

행정을 동원하고, 행정의 전반에 걸쳐, 행정적 규제의 질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 걸쳐 여전히 중요한 난제로 남아 있다. 행정은 규제정책 아젠다에 대해 주의인식을 지녀야 한다. 과거 OECD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치적 지원 및 리더십의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정부의 센터에 대한 최근 OECD 검토를 통해, 규제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감독을 포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그림 2.2), 그 센터들이 놀라울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4a). 그것들이 단독으로 고품질의 규제를 향한 변천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로 인해, 행정 분야 자체에 걸쳐, 규제 분화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한, 여러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행정이 진정으로 규제정책 아젠다를 포용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의 질이라는 논점에 관해 공무원을 훈련시키고, 내부 네트워크의 창안하는 일의 가치가 드러난다. 감독 기구들은 일선 부처에게 규제정책을 장려하는 역할도 한다.

가령, 네덜란드에서, 규제개혁 집단은 정부의 센터에 있는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독립적 규제 감시 기관에 10명의 추가 인력이 있다. 또한 각 부처에 1명의 협조자와 2명의 직원이 있다(9대략 총 60명의 인력). 영국에는 "더 좋은 규제 집행부(BRE)"에 50명의 인력이, "규제정책 위원회"(독립적 감독 기구)에 10명의 인력이 있다. BRE는 각 부처에 규제정책 전문가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전체적으로 약 20000명의 사람들이 조사를 포함해, 규제정책에 책임을 진다.

그림 2.2. 정부 핵심부의 책임

정부 핵심부의 상위 4가지 과업 중 하나로써 직무를 확인하고 있는 국가 비율



출처: OECD (2013), 정부 핵심부의 직무와 기관에 관한 조사,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39>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한계와 난제들은 4가지 영역을 더 열심히 살펴야 함을 뒷받침한다. 그 영역들은 규제기관들과 그들의 감독 기구가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규제정책의 최전선과 중요한 난제로써, 규제지표조사를 통해 모은 증거와 최근 OECD 연구로부터 등장하였다.

- 1. 규제정책사이클 끝내기:** 규제의 이행과 집행은 규제 거버넌스 내에서 가장 약한 연관성을 지닌다. 준수 전략, 조사를 추가로 개선하고, 행동주의 경제와 같은 규제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하여 보다 나은 준수를 조성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성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내 "루프를 끝내기 위한(close the loop)" 사후평가의 활용법은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
- 2. 규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에게 권한 위임:** 규제행위자들의 전망(상황)은 풍부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청사진이나 이상적인 제도적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탁회의 토론들은 여러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설정 면에서 놓쳤던 기회를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 행위자들, 개발도상국(emerging state), 국제 수준인 경우를 포함해, 비국가 행위자들의 잠재성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 3. 증거 기반의 정책을 촉진:**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선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대안적 규제개혁의 교환(trade-offs), 비용, 이익의 식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과정 중에 있다. 대안적 규제정책수단과 접근법 이용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증거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 4. 경계를 넘어 규제적 영향을 취급:** 규제기관들은 더 이상 단독으로 행동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다른 관할권의 규제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들 자시의 활동은 교역과 투자 흐름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진행 중인 다양한 전 세계적, 지역적 경제 통합 과정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규제적 일관성을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상호연결

된 세상에서 효율적인 규제정책을 보장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의 난제며, (이런 난제는) 소수의 OECD 국가 이외에 규제정책 확산이 제한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규제사이클 끝내기, 규제 준수, 집행,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

집행 문화의 변화

규제 집행과 조사는 최근 중요성을 인정받은 규제정책의 비교적 새로운 요소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그것은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소수의 OECD 국가들만 그 분야의 개혁을 조사하고 있다. 영국은 규제가 지속적이면서 기업 친화적이고 친성장 방식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하고 규제집행에 책임을 지는 최전선 규제기관들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나은 규제 기관”을 만들어 왔다. 네덜란드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은 관할 구역을 공고히 하고, 중첩을 제거하고, 관할 구역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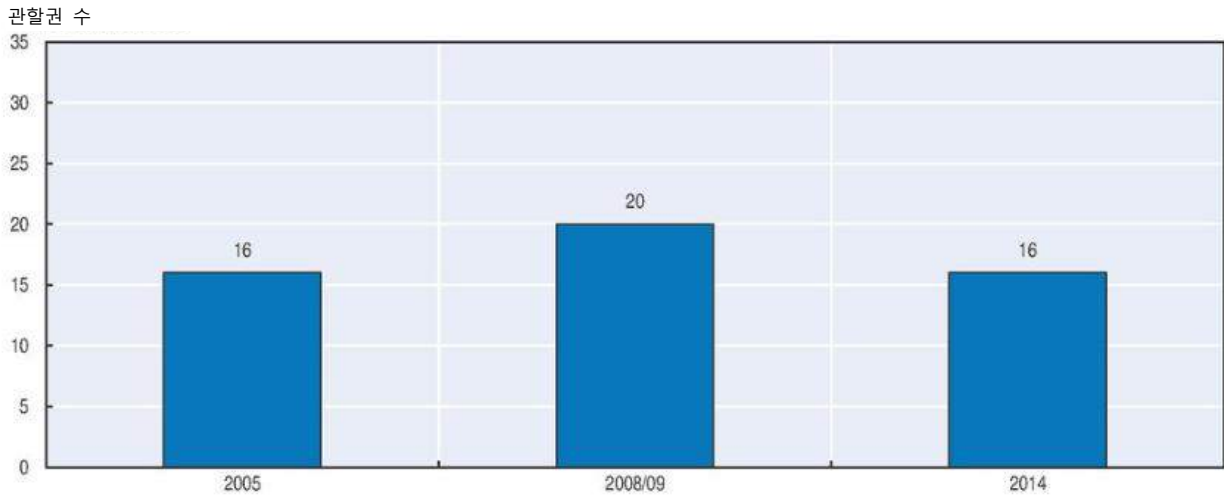
여러 국가들은 규제체계의 약한 집행에 대한 근거 및 준수에 대한 분석을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제들에 대한 검토에 유용한 입력(인풋)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규제의 이행 및 집행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들이 “최전선”의 경험을 지니고 있고, 규제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못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의 초안을 구성할 때도, 여러 국가들 중 겨우 절반만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사전 (ex ante) 집행 메커니즘을 식별 및 평가한다 (그림 2.3).

“규제집행과 조사에 관한 OECD 최고 실천 원리”를 토대로, 집행과 조사 영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밟을 다음 단계는 명확한 목적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규제집행과 조사에 관한 제도적 메커니즘과 전반적인 정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규제정책과 조사는 증거 기반, 측정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조사하는 가는 데이터와 증거를 토대로 결정하며, 그 결과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사와 집행을 규제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그것들은 자원과 집중력을 요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 사항이다. 집행은 위험에 기반을 두고(risk-based) 비례해야 한다. 즉, 이용되는 자원과 조사의 빈도는 위험 수준에 비례해야 하고, 집행 행위는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위험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또한 조사 기능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되어야 한다. 즉, 중복과 중첩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나은 공적 활용의 이용이 보장되고, 규제를 받는 주체에게 부과되는 부담이 최소화되며,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규제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인적 자원 정책들은 투명성, 전문성, 결과 지향적 관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규제집행의 이행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준수 촉진 노력에 대해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정부들은 집행 과정의 투명성, 조사관의 전문성과 성실성, 집행 및 조사를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들은 규제에 대한 준수를 높여서, 규제들이 목표를 달성할 보다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조사 기구는 규제대상인 주체들의 준수도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비준수 사례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어떻게든 초점을 맞추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림 2.3. 규제기관이 준수 수준을 평가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관할권의 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20>

규제설계 및 집행에 대한 행동주의에 근거한 접근법

규제정책의 새로운 전선(뉴프론티어)은 행동주의 통찰을 규제체계의 설계와 전달로 통합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규제제정에 대한 행동주의 통찰을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Lunn (2014)은 행동주의에 근거한 정책 사례를 60가지 이상 인용한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 학계로부터 얻은 교훈을 입력하고, 임의로 통제된 시험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전용 부서나 네트워크의 확립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규제기관들은 정부보다 행동주의 과학을 훨씬 더 자주 이용해 왔다.

현재까지 행동주의 경제의 적용은 대개 규제의 전달 개선, 특히 규제를 받는 독립체들이 스스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 및 금융 보호국”은 2013년에 모기지(용자), 신용 카드, 학생 대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간소화하는 “대출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소개하였다 (Lunn, 2014). 넛징(nudging) 역시 세무 당국이 보낸 알림장을 통한 납세 신고 준수도 증진과 같은 일부 정책에 효과적인 행동주의에 근거한 중재의 한 유형이다. 유럽의회 역시 소비자들을 보고하기 위한 특정 온라인 구매 시 디폴트 설정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행동주의 과학으로부터 얻은 통찰 사항들을 이용해 왔다 (Lunn, 2014).

규제가 이행되기 전에 정보 공개 보장부터, 전에 집행 메커니즘을 검증에 이르는, 준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주의 연구를 이용할 잠재성이 있다. 기존의 규제수단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설계 중에 행동주의 과학을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기도 한다. 행동주의 과학은 정부가 맨 먼저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을 정의할 잠재성이 높다. 이것은 “규제영향

평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정부 중재가 적합한지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동주의 통찰은 기본적으로, 규제설계와 전달에 실험을 내재시키고(embedding), 이러한 과학적 접근법으로 미지의 것에 태클을 거는 난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히 윤리와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여러 논점들을 동반한다. 선택의 자유의 권한과 대비하여, 규제를 받는 독립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행동주의 과학을 정부가 이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 결정들이 이미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복지나 소비자 보호에 역효과를 낳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건이나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장기 기증 지원자나 연금 등록에 대한 디폴트 설정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가도록 시민의 급수율 (take up)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윤리적 논점들은 현장에서 실천 중인, 훈련 받은 전문가들의 투명성과 엄격성(고됨)은 물론, 행동주의 과학의 적용을 정의하는 기준을 포함해, 여러 표준들을 정부가 채택하여 다룰 수 있다.

전통적인 행위자, 개발도상국(신흥국), 준국가적 수준을 포함해, 보다 나은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미개발된 잠재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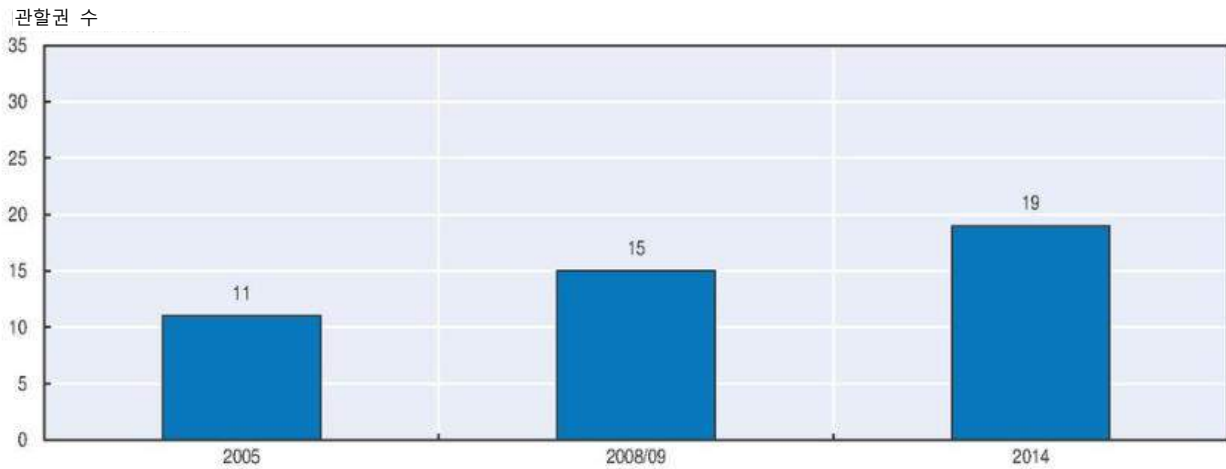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규제의 질에 대한 하향식, 상향식 접근법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규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려면, 고차원적 의무와 기술적 혹은 조작적 매입이 요구된다. 이는 의회, 규제기관들, 정부의 준국가적 수준들을 포함해, 행정 내, 혹은 행정 너머에서 규제정책의 행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규칙결정, 의회와의 공동 책임

의회는 규제정책 면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4).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의회의 2012 OECD 권고는 "규제적 구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회의 역동적이며 영구적인 역할"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법률 승인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회는 새롭고 수정된 규제를 위한 보다 나은 규제 원리의 적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다. 제안된 법안과 수정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은 새롭고 개정된 규제가 제시하는 기회와 난제에 대한 투명한 대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이 공적이 지출과 정부 수행에 가한 통제를 통해, 그것들은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의회의 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해 채택한 계획(arrangement)은 그것들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적으로 다르듯이, 국가마다 다르다.

주요 법들의 설계자로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함에도, 의회가 규제관리 방식을 아직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관할권들은 여러 곳이다. 의회에게, 협의, RIA, 사후평가와 같이 법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유의 절차를 설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박스 2.1에 예시되어 있듯이, 여러 국가들은 이미 의회 내에 확립된 규제정밀조사기구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예들은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험 공유에 적합한 근거를 제시한다. 실제로, 규제 방식들은 집행부로부터 "잘라 붙일 수(cut and pasted)" 없으며, 입법 상황에 맞게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한다.

그림 2.4. 규제정책을 책임지는 의회기구를 가진 관할권의 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44>

박스 2.1. 규제정밀조사기구의 예

의회제 의회 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해 채택한 배열(계획)은 책임의 범위가 결정적으로 다르듯이, 관할권마다 크게 다르다.

스위스에서, 평가는 연방 의회의 의회 서비스부의 일부인, 의회 행정 통제(PCA)에 의해 수행된다. 1991년에 확립된 PCA는 의회를 대표해 평가를 이행하는 특수화된 서비스의 한 예이다. PAC는 모든 연방 당국 및 공공 기관을 직접 상대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모든 정보를 요구한다. 이 평가는 연방 의회에 의해 연방 정부 및 연방 행정부, 연방 법원, 컴퍼더레이션의 과제들을 위임받은 다른 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의회 감독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통제 위원회에 발표된다. PCA의 지원을 받은 위원회들은 다음 사항을 확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연방 당국의 활동은 협의 및 법률을 준수한다 (적법성 통제)
-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은 적절하다 (적절성 통제)
- 국가가 취한 수단은 효과를 거둔다 (효율성 통제)

스웨덴에서, "의회 평가와 연구 사무국은 사후평가 활동 면에서 위원회를 돕기 위해, 의회의 위원회 서비스부 내에 2002년에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평가 기능 면에서 의회 감독 위원회를 긴밀히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다.

- 보완 및 사정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기술 평가를 준비, 이행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다.
-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찾아서 지명한다.
- 요청 시, 평가와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배경 소재를 준비한다.
- 법률의 운용과 효과에 관해, 정부와 기관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를 요청하는 위원회를 지원한다.

박스 2.1. 규제정밀조사기구의 (계속)

영국에서, 관리감독기관은 2002년에, 재정 문제와 법률 감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하원의 위원회 내에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법안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지원한다. 2008년 이래로, 이 부서는 입법 후 감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특별위원회를 지원한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 부서들에게 3~5년 동안, 그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대한 의회 평가를 제공하는 관련 위원회에게 비망록을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는 그 법안에 관해 입법 후 전반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사전 영향평가 부서는 2012년에, (유럽의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의회 연구 서비스를 위한 종합 부서 내에 설립되었다.

- 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에 수반된 로드맵의 선별
- 위원회 영향평가(assessment)에 대한 사정(appraisal).
- 의회가 고려 중인 실질적 수정에 관한 영향평가
- 보완적 혹은 대체적 영향평가
- 위원회의 영향평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석하는 연구 혹은 요약 노트.

2013년 9월에,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부서가 설립되어 아래와 같은 일을 수행한다.

- 유럽 법률의 치환(transposition)과 이행, 영향, 적용,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한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위원회, 그 밖의 유능한 기구나 기관이 마련한 연구 및 보고서에 대해 보완과 분석을 한다.
- 유럽 이행평가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위원회가 이행 보고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EU 입법,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감독하는 일을 돕는다.
- 국회의 위원회나 통치 기구의 요청으로 기존의 EU 입법의 이행, 영향,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다.

출처: OECD (2012b), 법률과 규제의 평가: 칠레국민회의의 케이스,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63-en> 및 프랑스 상원의 법 이행에 관한 정밀조사위원회와 OECD 합동회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법률 평가에 관한 개념: www.oecd.org/regreform/regulatory-policy/conference-on-role-of-parliaments.htm.

경제규제기관의 성과 보장

규제기관들은 규제시스템의 적절한 전달에 중요한 활동기관들이다. 2012년 권고를 통해, 이해 갈등, 편견, 부적절한 영향 없이, 규제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일관된 기반을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규제기관들의 역할이 인식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규제기관들을 포함해, 몇몇 유형의 규제기관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규제기관은 실용 영역인 에너지, 교통, 물, 이동통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에 대한 규제정책의 기여도를 강화하고, 시민과 비즈니스에 긍정적 결과를 얻는 데 있어 공공 정책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는 기본적인 행위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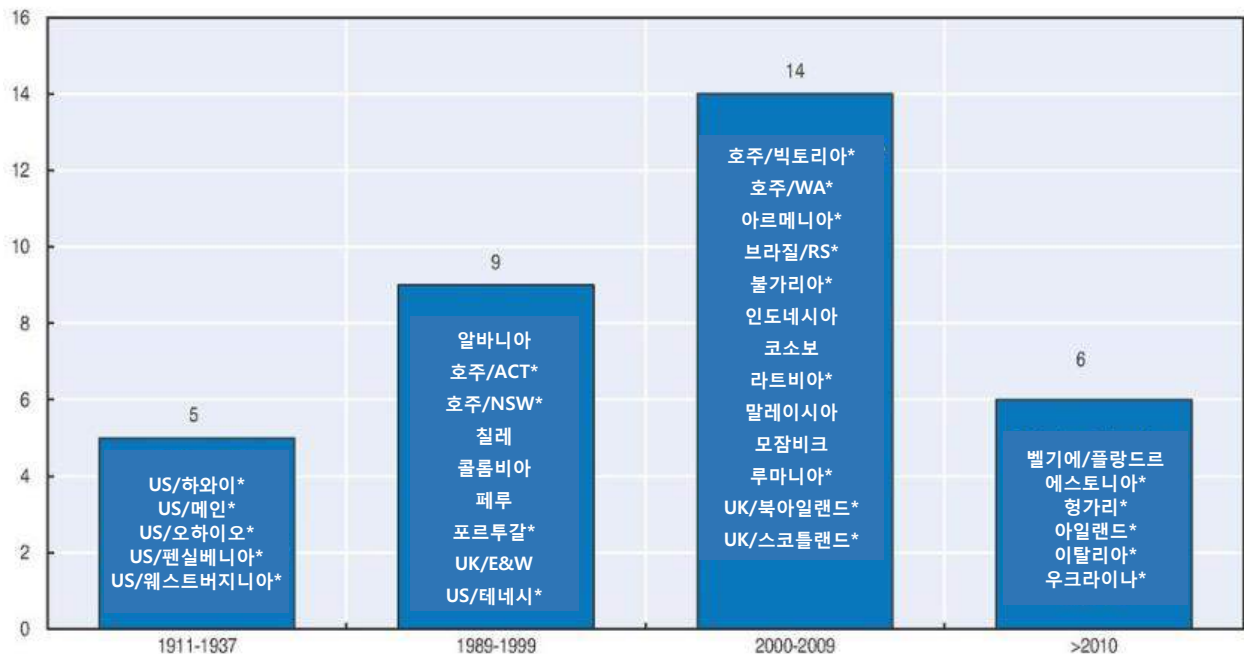
다른 부문의 동료들처럼, 경제규제기관은 점점 더 복잡한 역할을 해왔다. 정보 기술, 디지털 혹은 전자 상거래, 빅데이터는 정보 비대칭성을 더욱 위험하게 하며, 규제기관들이 활동하는 환경은 더욱 역동적이게 되고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금융 규제기관들이 더욱 감시를 하도록 유도했으며, 특히 모든 규제기관들의 지각(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물 공급과 전달에 가해지는 압박,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보호로, 규제기관들의 책임 및 “시장의 심판”으로서 규제기관들의 목표를 보다 잘 전달하란 요구가 커져왔다.

최근 OECD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용 부문들 (급수의 경우 그림 2.5 참조)에서 경제 규제의 책임을 진 전담기구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일관된 설립(확립)이 기록되었다. 에너지 및 원격 통신 부문에서, 그들의 설립은 OECD의 지시를 통해 유럽연합에 의해 제정되었다 (2015 a). 최근 다중 부문 규제기관들의 확립을 지향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OECD가 검토한 34개 상수규제기관들 중 2/3는 다중부문기구들이다 (OECD, 2015b). 그 중 대다수의 경우, 급수는 에너지 역량을 동반한다. 일부 국가에서, 영국의 경쟁 및 시장청같은, 경쟁 혹은 소비자 기관들이 등장해 왔다.

그들의 증진된 역할을 감안하면, 규제기관, 특히 거버넌스 계획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하는 건, 예산되는 사회, 환경, 경제적 결과의 달성과 그들의 임무의 성공에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은 “이해의 갈등, 편견, 부적절한 영향 없이 규제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일관된 기반을 토대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역할과 기관을 아

그림 2.5. 상수도 서비스 전담규제기구의 예의 운영설립년도



주: *다중부문 규제기관.

상기의 예는 상수규제기관 거버넌스에 관련된 직무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34개 상수도 서비스 경제규제기관에 관한 것이다.

출처: OECD (2015b), 상수규제기관의 거버넌스, OECD Publishing, Paris, p. 21, <http://dx.doi.org/10.1787/978926423109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53>

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는 2012 권고 제7 원칙에서 인식하고 있다(OECD 2012c). 규제정책에 관한 OECD 최고의 실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규제기관들의 거버넌스(OECD, 2014b)를 통해, 규제기관들의 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데 중요할 거버넌스 및 운용적 차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제공된다.

상품시장 규제조사(OECD, 2015a)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통해, 규제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조들은 여러 부분에 걸쳐 상당히 차이가 난다.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규제관리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원격 통신, 가스, 전기 부분들은 교통(철도, 항공, 항만)보다 더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들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모든 부분에 걸쳐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준다. 한 부분에서 비교적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를 지닌 나라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2012 권고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규제기관들의 정책 가치가 집중 조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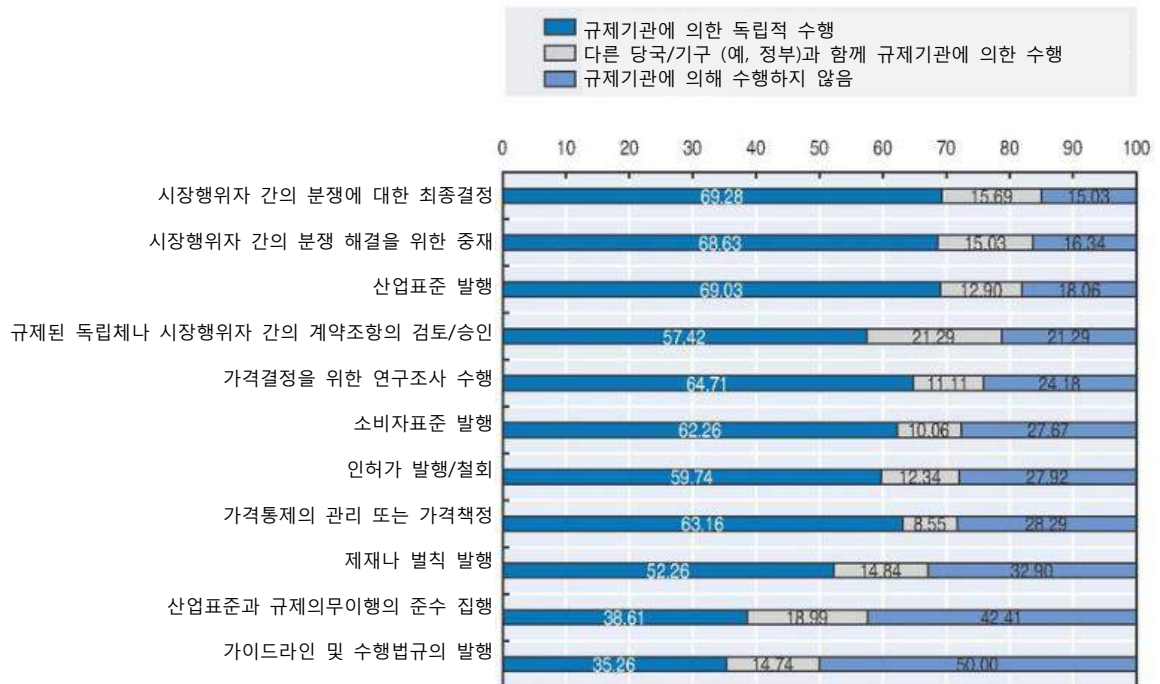
공적인 당국과 정부의 다양한 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인프라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제규제기관이 투명성과 이용자 중심의 접근법 및 규제체계의 신뢰성과 책임을 지닌 당국들에 걸친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제기관들은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시장 규제조사(OECD, 2015a)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통해, 규제기관들의 가장 공통된 조치는 시장 행위자들을 중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그림 2.6). 상수규제기관들은 주로 규제집행에 책임을 진다(OECD, 2015 b). 이를 통해, 표 2.3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규제정책사이클(사이클)의 하류 단계에서 규제기관들의 역할이 확정된다.

대다수 규제기관들이 공식적으로는 "판결, 규정 제정 혹은 집행 권한을 지닌 독립적 기구"이지만, 그들의 제도적 설정 및 맥락과 관련해 다양성이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가 규제기관들에게 지침과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의 활동을 "수정하거나 점검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규제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중 적어도 일부는 법원, 정부의 부서나 경쟁 기관과 같은 제3의 기관이나 기구와 협력해 이뤄지는 경우도 흔하다. 상수규제기관들은 국가 및 준국가적 수준, 심지어, 규제기관과 칸막이를 치고 있는(part off), 초국가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규제체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파편화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부 차원에서 협력과 협동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OECD, 2014b). 급수 부문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시스템 및 국제화된 메커니즘 전반에 걸쳐, 임시 계획이 확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OECD, 2015b). 협력을 공식화하면, 기관들 간의 협력 부재로 인해 생길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다수 규제기관들은 정부나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와 동시에, 대다수 규제기관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발표, 그들의 결정, 해결, 합의에 대한 발표, 공적 협의 실행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 관한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이행해야 한다(OECD, 2015a). OECD(2015b)는 급수 부문에서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정하고, 상수규제기관들이 강한 협의의 문화를 보여주고, 규제과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사후평거나 규제 결정을 포함해) 다른 규제관리 도구들을 이용하면,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받는 독립체들에 의한 고소 혹은 사법적(관할) 의뢰를 다루고, 규제 전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6. 규제기관의 직무 범위

단위: %



출처: OECD (2015a, 발표예정), "경제규제기관의 세계상: 독립, 책임 및 행위범위", OECD 경제부 직무보고서, OECD Publishing,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99>

규제기관들이 그들의 활동이 기대했던 규제 결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각각의 부분에 부가가치를 전달할 원동력이 증가한다. 이는 공적 자원 활용 면에서 자본의 가치나 정당한 법절차의 고려 범위를 넘어선다. 규제기관들은 광범위한 경제적 성과 (가령, 영국에서 규제기관들에게 부과된 성장 의무)는 물론 기타 사회적 복지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를 입증할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고 있다. 규제기관의 성과를 거버넌스 계획과 별개로 고려할 수 없지만, 규제기관들의 좋은 성과에 대한 지표 및 견인차와 좋은 규제 결과 달성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를 이해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ECD, 2015c).

국가 차원보다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할 일이 더 많다: 즉, 준국가적 수준에서의 질 및 그 차원과의 일관성 보장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여러 제도와 규정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받는 중앙정부 기구들은 자체적인 규정과 칙령을 지닌 지역 및 지방 정부와 함께 기능한다. 많은 경우, 다양한 정부 층들은 규제를 설계, 이행, 집행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규제체계는 시민 및 비즈니스와 공공 독립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난제를 제시한다. 만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그것은 경제 성장, 생산성,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OECD는 정부의 어떤 한 가치 차원에서의 고품질 규제가 다른 차원에서의 불량 규제정책과 실천에 의해 훼손되어, 경제 성과와 비즈니스 및 시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여러 정부 차원에 걸쳐,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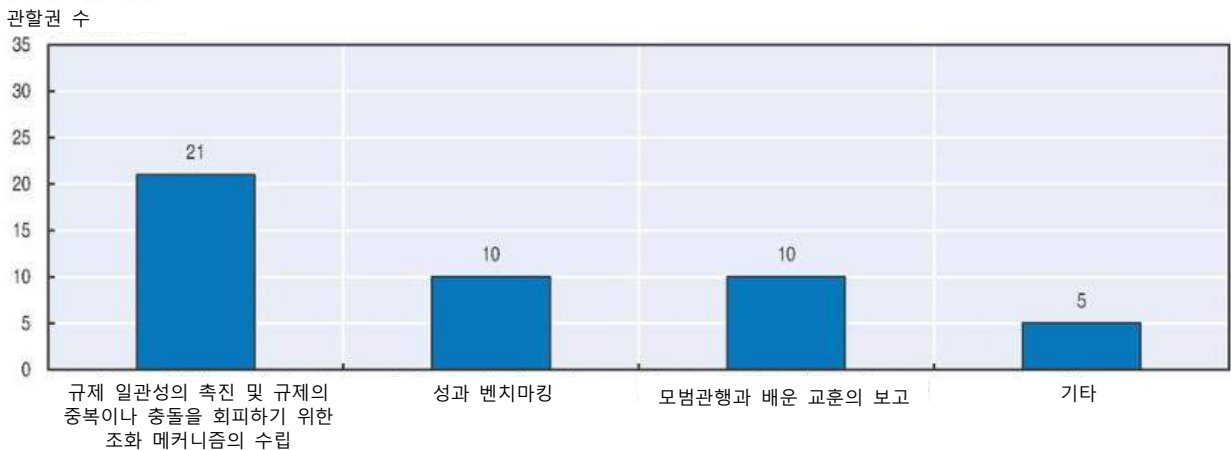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정의되어야 한다.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일관성, 조화를 이루기 위해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효과적인 이행이 적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첩되는 책임을 피하고 삭제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은 정부의 여러 차원들 간의 규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2.7). 2014 규제지표조사에 따르면, 21개 OECD 국가들은 규제 일관성을 촉진하고 규제의 충돌이나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 국가 및 국가 하위 정부들에 걸쳐 상비 협동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10개의 나라들은 국가 하위 정부에 걸쳐 규제관리의 최상의 실천을 공유 혹은 촉진하기 위한 수행 벤치마킹을 이용하며, 10개 나라는 좋은 실천과 학습된 교훈에 관한 보고서에 의존하고 5개 나라는 다른 수단들을 (즉, 옴부즈맨 보고서 및 협력 기구 내 논의)를 이용한다.

이 경험을 통해, 규제정책은 최고의 정치적 차원에서 지원이 개발되고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준국가적 수준에서도 해당되는 점이다. 지역 및 지방 정부들은 규제정책을 우선시 하고, 보다 나은 규제를 위한 원칙과 관습들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을 할당하고, 규제관리의 좋은 실천을 지향하여, 행정을 동원하기 위한 (통치자, 시장 (mayor) 등의)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리고 협력 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호주 (호주 정부 의회, COAG), 캐나다 (규제 거버넌스와 개혁에 관한 연방-주-영토 위원회)의 경험들은 이러 기구들이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나은 규제를 끼워 넣기 위한 국가 하위 정부 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예시해 준다.

준국가적 수준에서 보다 나은 규제 실천(관습)의 채택을 지향하는 긍정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대다수 국가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 (특히 연방 국가에서)을 부여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가 하위차원에서 채택한 정책들을 지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역할은 규제정책 채택의 중요성을 준국가적

그림 2.7. 모든 정부 수준에 걸쳐서 일관성을 보장하고 준국가적 수준에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메커니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67>

당국에게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가령, 멕시코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연방 의회(Federal Commiss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COFEMER)과 경제 개발 사무국 연합(Associ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Secretariats, AMSDE)⁵은 멕시코의 생산성과 경제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주 지방과 지자체 지방에 규제정책을 촉진하고, COFEMER의 조언 및 지원을 조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준국가적 수준에서 자원 유용성과 용량은 두 번째로 중요한 난제다. 지역 및 지방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지속하기에 매우 제한된(기술적, 인적)자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준국가적 수준에서 RIA를 채택하기는 특히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의 중앙정부는 COAG의 체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이행한 준국가적 정부에게 자원을 조성해 주었다. 이는 준국가적 정부들이 규제정책의 관습을 채택하도록 하는 추가 동기를 나타냈다.

앞을 내다본 국가 정부들은 준국가적 정부들이 규제정책의 원칙과 관습을 채택하도록 돕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지원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 여러 날에서 규제정책들은, 국가 정부를 위한 “조성 역할” 및 준국가적 영토들이 중앙 차원에서 이행된 노력을 반영하라는 권고와 관련해 명시적이게 될 수도 있다.

최고감사기관들의 미개발된 잠재성

최고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⁶은 민주 국가의 제도적 체계의 핵심 부분이며, 좋은 공공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들은 공공 자원의 관리 및 정부 목표의 전달에 관한 독립적 견해와 권고를 제시하며, 일부 사례의 경우,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그들의 결과들을 이용한다.

여러 국가에서 이뤄진 실천을 통해, SAI가 규제기관들의 성과 및 규제 모두,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규제정책과 거버넌스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입증된다(그림 2.8). 대다수 검토들은 부담 감소 프로그램 및 감소화에 상대적인 RIA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규제정책, 도구, 제도에 관한 SAI 감사 연구는 여전히, 이러한 제도들의 포트폴리오의 한정된 부분이다. SAI의 성과 감사 보고서 중 약 4%만 34개 OECD 나라, 유럽연합과 OECD 핵심 동반자 두 곳인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의 SAI 감사 보고서들에 대한 데스크-리뷰를 토대로 한 규제 논점에 관한 것이다(OECD, 2015b). 규제의 경제적 유의미성과 사회적 중요성, 평가 영역에서 SAI의 전문성은 규칙결정 면에서 증거 기반의 정책과 평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의 활용 면에서 미개발된 잠재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규제 거버넌스의 논점을 다루기 위한 SAI 관심 및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난제와 논점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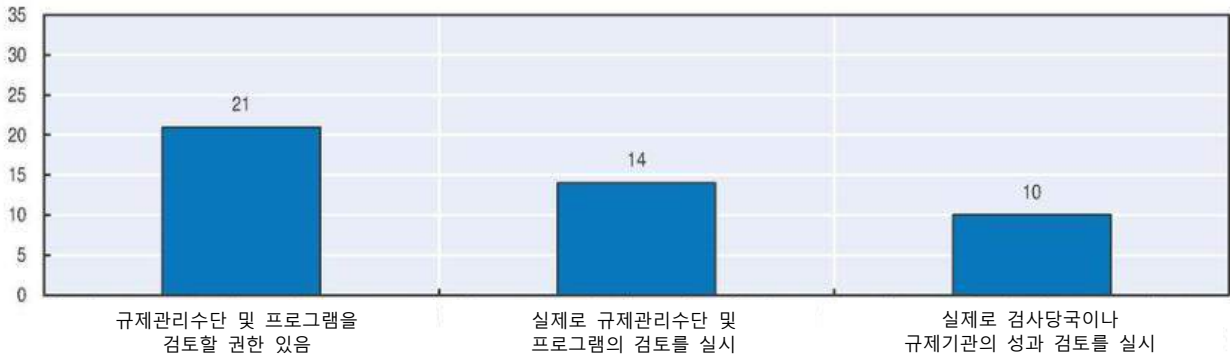
- 공식적, 자유재량적 SAI 명령(칙령): 준국가적 수준, 국제적 차원은 물론 국가의 독립적 규제기관들을 포함한, 규제기관들은 SAI 명령의 대상 밖에 있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 SAI는 공식적 명령을 하지만, 그것이 규제 감독에 책임을 진 다른 집행 기구나 입법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
- 영향력을 발휘할 SAI 범위에 대한 지각: 감사 업무의 SAI 프로그램/우선순위 설정은, 정부 지출, 즉 재무수단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그것들은 공적 금융 관리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영향에 비해 지출 수준이 낮은)이런 규제정책은 비교적 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 SAI 지식과 전문성: SAI 인력(노동력)은 공적 금융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거버넌스의 논점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전문성과 지식은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기 전략과 인력 계획이, 규제 거버넌스의 논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려면, 규제 논점이 SAI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정치적 현저성(salience)을 달성하려 한다면(정치를 현저히 드러내려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SAI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가령, 입법부와 대중 사이에서) 좋은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잠재적 이득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림 2.8. 최고감시기관의 활동과 권한



출처: OECD (2014c), OECD 규제정책 평가체계,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45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72>

이와 관련하여, “2012 권고”는 규제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역할 위임을 위해 SAI들이 이용할 벤치마크로서의 잠재성을 제시한다. 특히, 그 권고는 SAI에게 성과 감사의 평가 기준을 개발할 때 의존할 귀중한 자원과, 국제적인 최고 실천의 맥락에서 국가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성과 감사를 수행하고, 조사된 감사 보고서 내 공통된 주제였던, 규제에 대한 사후검토를 수행할 때, SAI들은 “2012 권고”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규제정책수단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류(upstream)에 적용함으로써, 증거 기반의 규제정책 과정 촉진을 위한 중요한 여지가 존재한다

증거 기반의 정책은 공공 정책이 엄격하게 확립된 증거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정책 의무와 공표에 의해 예시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정부의 현대화 및 지난 20년 간의 정책결정의 중심 요소가 되어 왔다. 규제 분야에서, 증거 기반의 정책은 사회에 가장 큰 순이익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를 식별하고, 효과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아닌 경우 대안적 정책 선택 사항을 식별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개선하고,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및 규제체계들이 증거에 의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증거를 모으기에 올바른 도구를 채택하고, 엄격한 (과학, 경제, 행동주의)분석의 이용을 체계화하여, 정책과 관련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실천(관습)들을 식별해야 한다. 또

한 그 나라들은 정책결정 과정 중 증거를 실시간으로 이용하고, 그것의 질과 일정(타임라인)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하단 점을 보장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적소에 두어야 한다. 증거 기반 정책결정의 탄탄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 및 검토 시스템들을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장에서 전개하는 바와 같이,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다양한 유형의 RIA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이 정책 논점에 대한 완벽한 구상을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차원에 언제나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규제 결과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명시적 증거, 결과들의 의도치 않은 변화로 인한 위험, 규제 받는 독립체의 실질적 행태 변화라는 핵심적 난제, 성공적 개혁 및 정책 중재에 대한 정치적 경제 요인들의 근본적 중요성을 포함해, 여러 제한적 요소들에 의해 사전 분석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 중 많은 것들은, 법이나 규제가 선포된 후 보다 쉽게 평가된다.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평가의 전반적인 잠재성은 여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보다 놀라운 점은, 그 국가들 중 1/3미만 만이, 평가를 할 때 규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항상 평가한다. 그러므로 대다수 국가들은 규제가 실제로 필요하고 유용한지 모르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3 미만만, 규제의 실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잠재적 집행 메커니즘과 규제에 대한 준수 수준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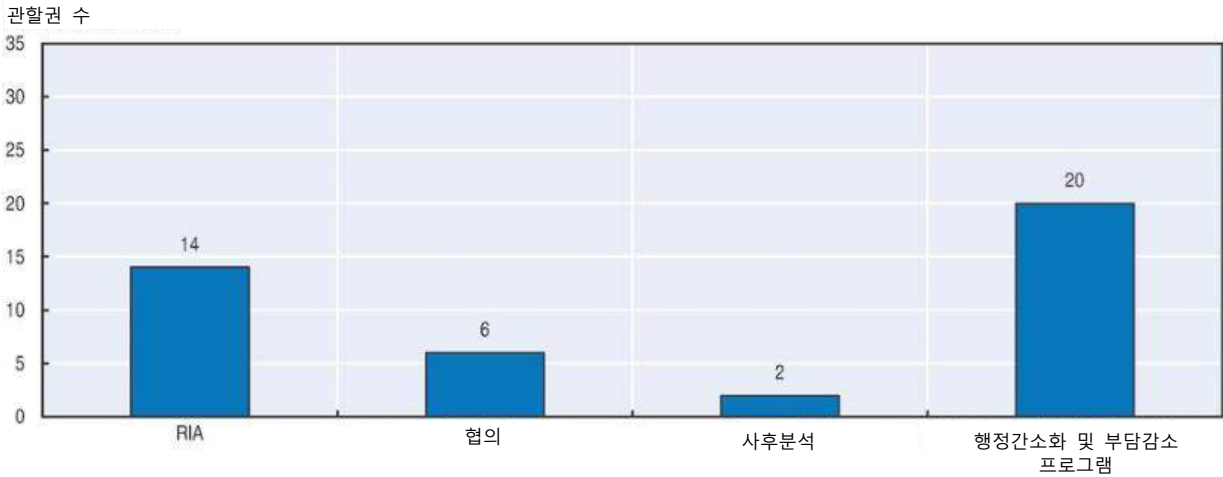
정책결정 과정에 내재될 증거의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특히 주요 규제들의 경우, 문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능한 해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선택 사항들의 영향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규제를 고안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중 1/3 미만만, 규제를 고안하기 전에 모든 혹은 주요 규제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상대한다고 보고한다. 공공의 논의를 자극하고 입력을 구하기에 효과적인 실천에는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녹색 (green paper) 발행하기, 법적 의도 혹은 협의 문서를 협의하기가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초기 단계에서 정책 문제들에 대한 해법 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설계된다. OECD 국가들 중 약 절반은 협의를 위해 이러한 유형의 문서들을 이용하지만, 그 중 대다수 국가는 단지 몇몇 규제를 위해서만 이용한다. OECD 국가들 중 절반 미만에서, RIA 문서는 일반 대중과의 협의를 위해 배포되어야 한다.

제한적인 자원 및 “검토 피로”의 위험을 감안하면, 규제의 영향에 비례한 규제 평가에 자원을 할당하고, 영향/비용 비율이 높은 평가 도구를 선택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도박적 상황 (gaming)을 피하기 위해, 감독 기구에 의한 공식적인 임계점 검사와 유의미성 점검은, 심층적 검토를 위해 영향력이 높은 규제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현재 OECD 국가 중 약 1/3은 간소화된 RIA와 대조적으로 전체 RIA를 수행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계 검사를 적소에서 실시한다. 특정 경제 혹은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춘 심층 검토는 유의성이 매우 높으며, 대규모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 2013a). 표적화되고 체계적인 접근법은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원 및 핵심 정책 영역에서 심층적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지속적 역량을 요한다. 현재 9개 나라가 과거 3년 간 심층 검토를 수행할

지속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4 규제지표조사).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개혁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대다수는 다른 규제수단과 과정의 기능 및 이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를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한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규제정책이 적절히 이행되는지는 물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2.9에서 집중조명되어 있는 것처럼, OECD 나라들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단 6개의 나라들만 공적 협의 실천(관습)의 성과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였다 (OECD, 2014c, 2014d). OECD 국가들 중 절반 이하만 RIA 기능에 관한 지표를 발표했고, 단 두 나라만 사후평가 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와 반대로,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20개 나라는 이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의 성과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였다.

그림 2.9. 규제관리수단/프로그램의 기능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표



출처: OECD (2014c), OECD 규제정책 평가체계,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45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86>

앞을 내다본 여러 국가에서,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적소에 두었지만, 다음 난제는 그것들의 효율성 및 정책결정 과정으로의 통합을 개선하는 것일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녹서나 협의 문서의 이용을 통한 해법 논의를 위해, 주요 정책 문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이용함으로써 그런 개선을 실현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의를 위한 RIA를 발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RIA 및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후 분석과 같은 증거 기반의 도구들에 대한 이해(양해), 질,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작성함으로써, 질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규제들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한 그 다음 단계는 행정 간소화 프로그램에서, 핵심 정책 영역과 분야를 타깃으로 한, 전략적 규제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이다.

여러 국가들은 심층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상비 역량을 마련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검토를 통해, 정부의 개혁 아젠다에 대한 정보에 제공되고, 정당의 프로그램이 더욱 증거에 기반하도록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생산선

위원회는 주요 규제 및 정책 개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심층적 검토서(리뷰)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독립적 연구 및 고문 기구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규제의 성과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들과 국가 차원에서, 직업, 건강, 안전(OHS) 분야에서 호주 비즈니스 규제의 성과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심층 검토서는 여러 관할권에 걸쳐 OHS 규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후의 노력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또한 여러 국가들은 사전 규제의 영향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얻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동주의 통찰 및 크라우드 소싱은 물론 전자 정부와 ICT의 이용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략적 정보를 제공할 잠재성이 생긴다. 캐나다에서, "사회적 금융 개념에 대한 국가적 요청"은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하여, 사회적 금융 이용을 위한 정보, 데이터, 개념들을 얻는다. 그것은 웨비나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추시가 계획된, 개방적인 웹 기반의 공공 정책 참여 과정이었다. 그런 방법의 이용은, 정부가 특히 젊은 사람들과 같은 그룹이나 특정 부문을 위해 추가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규제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국경선 너머를 살펴보고 적절하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제규제협력 접근법 전 범위를 이용해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규제는 점점 더 큰 난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규제 수단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동일 분야 내 협력을 위한, 관련된 모든 국제 기준과 체계 및 관할권 밖의 당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2012 권고"의 제12 원칙에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12 권고 및 OECD가 한 추가 연구에서도, 국제규제협력(IRC)을 위해 공식화된 거버넌스 계획 및 그들의 실천적 결과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OECD(2013c)는 규제의 완전한 "조화" (즉, 법의 일관성)부터, 정보 교류와 같은 최소한의 공식적, 포괄적 선택 사항에 이르는, 국제규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이용하는 11가지 메커니즘(그림 2.10)을 식별하고, 여러 국가에 의한 이처럼 다양한 접근법 활용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 초국가적 규정 제정 및 제도들을 통한 완전한 조화는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EU는 규제 및 경제적 통합의 깊이와 폭 면에서 상징적인 예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많은 경우, 규제적 조화를 이루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몇몇 상황에서만 최상의 선택 사항이 될 것"으로 고려된다 (호주, 뉴질랜드 생산성위원회, 2012). 다른 한편, 덜 포괄적이고 구속적 계획은 적절한 제도적 배치에 의해 뒷받침 받지 않는 한 낮은 준수도를 유도할 수 있다.

OECD(2013c)는 표준 설정 기구로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 협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IO들의 증대되는 역할을 언급한다. 대다수 국가들은 IRC를 촉진하는 50 개 이상의 국제 기구에 속해 있다. 그 기구들은 규제 논점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 공동의 기준 개발, 최상의 실천과 지침을 위한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IRC를 촉진한다. 이러한 논의와 도구들은 표준 설정을 넘어, 여러 접근법과 실천들의 비교, 규제 문화가 덜 발달한 나라에 지속적인 적용, 역량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규제 협력을 조성한다. 논의를 위한 영구적인 포럼들로서, 그것들은 회원국에게, 새롭게 부상 중인 규제영역이나 논점을 식별 및 적응하고, 공동의 언

어 발달에 기여하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의 권한 내에서 상호 이익의 문제에 관한 다층적 협력을 용이하기 위해 국가 규제기관이나 부처들의 대표를 모이게 하는 “비공식적 다층적 포럼”으로 정의되는 초국가적 규제 네트워크” (Verdier, 2009)는 안보 규제, 경쟁 정책, 환경 규제와 같은 영역에서 IRC에 대한 전통적인 조약 기반의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선도적인 조직(가령, 국제 안보위원회 조직, IOSCO)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 그것들은 유권자, 거버넌스 구조, 운용 모드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것들은 국내 규제의 수렴성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반드시 규정 제정의 중앙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은행 감독과 같은 일부 사례에서, 그것들은 회원국들이 국법으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과 규칙을 개발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빠르게 증식한다.

그림 2.10. IRC 메커니즘의 OECD 유형분류체계



출처: OECD (2013c), 국제규제협력: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463-en>

상호인식합의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는 규제적 다양성 OECD (2015c)를 보존할 역량에 대한 관심 증가를 유도하는 IRC 메커니즘의 또 다른 예이다. 상호인식합의 (MRA)의 지평은 1990년대 말 이후로 급격히 변해왔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30여개의 MRA가 있으며, 주로 소수의 부분에서 발견되고, 가령, 원격 통신 장비와 전자 제품이 있다. MRA

는 강제적 수단(hard law)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수출업자들의 거래 비용은 감소한 반면, 그 상품 시장 내 규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국제 교육 및 국가 규제 당국들의 보호 임무를 수용하고/용이하게 하라는 요구를 조율한다. 하지만 MRA들은 각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와 비슷한 수준의 동등성을 가정하며, 계층 구조에 내재되지 있지 않는 집행 논점과 마주칠 수도 있다. 또한 MRA들은 협상을 위한 상당한 시간과 자원 및 그것들을 이용할 중요한 역량과 관련이 있다.

OECD(2013c)는 다른 관할권의 관련 체계들의 채택 및 좋은 규제 실천을 통한 단층적 규제 인식을 규제 협력 중 한 가지 선택 사항으로 식별한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법은 “나쁜” 규제의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나은 규제양립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IA 및 협의와 같은 도구들은 현실 점검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출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교역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을 포함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밖의 이점들은 그 특성 상 비차별적이고, 규제 자치권을 보존하는 규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 즉, 모든 잠재적 동반자들은 보다 나은 규정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2014 규제지표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OECD 국가들은 RIA 과정 중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들을 평가한다는 점이 입증된다. 하지만 공적 부문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준체계적 (quasi systematically)으로 평가되었으며, 해외 관할권에 미치는 영향 및 교역과 관련된 영향들은 여전히 예외적이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국내 관할권을 토대로 하는 규제정책 문화에서 비롯된 핵심적 난제들과 장애를 다루고, 외부 당사자들을 더욱 고려하는 문화로 이전하려면, IRC를 촉진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IRC 실천 및 활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중앙에 모으고, 규제 협력을 토대로 공동의 이해와 언어를 구축하기 위한 IRC 활동을 토대로 정부 내에 효과적인 협력 지점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다. 현실적인 IRC 전략은 다양한 국가의 크기 및 맥락에서, IRC 메커니즘의 다양성 및 그것들 각각의 이익과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OECD는 IRC의 다양한 접근법과 도구들을 거쳐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과 도구에 관해 연구 중이다.

주

1. 2012-14년에 포괄적 성장 지원을 받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OECD가 진행한 일련의 원탁 회의를 기반으로
2. 예를 들어, OECD 공공 거버넌스, 영토 개발 이사회가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해 하는 현재 연구 참조, OECD(2015a).
3. Baldwin과 Black(2008)이 분석하는 바와 같이, “반응적 규제”란 개념은 Ayres와 Braithwaite(1992)에 의해, 현재까지의 집행에 관한 토의의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다. 위험 기반의 규제는 조사 활동이 영향과 확률을 기반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4. 위험 기반의 규제의 복잡성은 OECD에서 개발되었다 (2010).
5. AMSDE는 31개 연방 국가와 연방 구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서기관 (secretariat)들을 불러모았다.
6. 최고감사기관은 지정되고 구성되거나 조직된 국가 혹은 초국가적 조직의 공공 기구를 의미하지만, 법률 혹은 국가나 초국가적 조직의 공식적 행위에 의해, 사법권이 있거나

-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 방식으로 그 국가나 초국가 조직의 최고 공공 감사 기능을 한다.
7. 예를 들어, 정부 현대화에 관한 1999년 영국 정부 백서를 통해, "(정부)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며, 선정지명이 있고, 단기간의 압박에 대한 반응보다는 증거에 의해 형성된 정책을 산출해야 하며,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야 한다 (태클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 확 정된다

참고문헌

- Alemanno, A. (2015),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Australia and New Zealand Productivity Commissions (2012), *Strengthening trans-Tasman economic relations*, Joint Study, Final Report, www.productivity.govt.nz/sites/default/files/trans-tasman.pdf.
- Ayres, I. and J. Braithwaite (1992), *Responsive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aldwin, R. and J. Black (2008), "Really Responsive Regulation", *Modern Law Review*, Vol. 71/1, pp. 59-94.
- Barnes, S., R. Bouis, P. Briard, S. Dougherty and M. Eris (2013), "The GDP Impact of Reform: A Simple Simulation Framework",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3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k9qjnhkmt-en>.
- Bouis, R. and R. Duval (2011), "Raising Potential Growth After the Crisi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otential Gains from Various Structural Reforms in the OECD Area and Beyo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3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k9qj18s8n-en>.
- Lodge, M. (2015), "Trends and Challenges in Regulation and Regulatory Policy",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Lunn, P. (2014), *Regulatory Policy and Behavioural Econom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7851-en>.
- OECD (2015a, forthcoming), "The global picture of economic regulators: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scope of ac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b, forthcoming),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as Actors Supporting Good Regulatory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c, forthcoming), "Study 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concepts, stocktaking and cas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5a), "Towards a Framework for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OECD, Paris, [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sbc\(2015\)6&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sbc(2015)6&doclanguage=en).
- OECD (2015b), *The Governance of Water Regulator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1092-en>.
- OECD (2015c), *Driving Performance at Colombia's Communications Regulato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2945-en>.
- OECD (2014a),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OECD, [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mpm\(2014\)3&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mpm(2014)3&doclanguage=en).
- OECD (2014b),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15-en>.
- OECD (2014c), *OECD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453-en>.
- OECD (2014d), "Evaluating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Policy Findings and Workshop Proceedings, 6th Expert Workshop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workshop-proceedings-mrp-the-hague.pdf.
- OECD (2013a), "Assessing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2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Policy Findings and Workshop Proceedings,

- 5th Expert Workshop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www.oecd.org/regreform/regulatory-policy/proceedings-sweden-workshop.pdf.
- OECD (2013b), "The institutions and key players of regulatory reform: survey of OECD members – results and analysis", produced as part of the series of Roundtables on Regulatory Reform in Support of Inclusive Growth of the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unpublished document.
- OECD (2013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463-en>.
- OECD (2012a), "Roundtable On Regulatory Reform for Inclusive Growth: The Contribution of Regulatory Reform to the Broader Reform for Growth Agenda of OECD Countries", produced as part of the series of Roundtables on Regulatory Reform in Support of Inclusive Growth of the 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unpublished document.
- OECD (2012b), *Evalu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ase of the Chilean Chamber of Depu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63-en>.
- OECD (2012c),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 OECD (2010), *Making Reform Happen: Lessons from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6296-en>.
- Verdier, H. (2009), "Transnational Regulatory Networks and their limits", *Th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4, pp.113-172.

제3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규제정책

이해관계자 참여는 규제정책의 근간이다. OECD 국가들에서는 규제수립, 이행,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열린 정부 원칙과 정책수립 시 참여 확대 원칙을 포용해왔다. 신규 법규를 수립하는 과정과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문화적 변화는 요원하며, 효과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달성하는 과정에 극복할 장애물도 많다. 이 장에서는 OECD 회원국 전반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용, 직면한 난제, 심층 조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결과

동향

이해관계자 참여는 규제정책의 주축이자 근간이다. 본 전망에 의하면, OECD 회원국들에서 규제를 만들고, 이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중심 목표는 공익에 부합하는 규제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일이다. 이 중심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 시민, 기업, 시민 사회 혹은 기타 공동체 구성원 등 규제 적용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목적은 OECD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정부는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목표는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칙제정 과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나아가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새로운 규제수립 과정에 참여시켜서 “주인의식”과 규제준수도를 함양한다. 한층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동기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행정부가 정부와 정치에 대한 공동체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자 공공협의 절차를 추구하기도 한다.

각국은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자 다양한 수단과 도구를 동원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정책수립 사이클 전반에 협의가 고르게 확산되어있지 않다. 새로운 법규를 수립하는 과정은 물론 기존 규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이 법규를 이행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규제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이는 규제이행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대상에 맞는 시행 방법을 정하고자,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열린 정부라는 원칙과 정책수립 시 참여 확대라는 원칙을 포용해왔으나,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추구하는 과정에 극복할 장애물이 많고, 그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 내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화적 증거에 의하면 일부 국가들에는 규제안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부담만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공공협의 절차의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 잘못된 수단을 활용하거나, 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관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꼼꼼한 계획 수립, 참여 수단 선택 개선,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이며,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할 것

이다. 또, 정부는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로비그룹 및 특수 이익 집단들이 공공협의절차를 장악하지 않도록 방지함으로써, 참여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의 목표 실현 여부에 대한 회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제한하는 잠재적 요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참여 노력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규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른다.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

이해관계자 참여의 편익을 온전하게 활용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정신자세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정신자세에서도 유의한 문화적 전환(cultural shift)이 일어나야 한다.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이, 유의한 문화적 전환을 일으키려면 전통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들과 소통라인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정책의 수혜자들이자 규제정책의 필수요소라고 여겨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규제정책은 문제점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에 입각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규제정책은 법안이나 규제안을 작성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되며, 상류(제안 개시 단계)와 하류(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로 고르게 연장 적용함으로써,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 전체에서 서로 공존해야 한이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규제정책은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상 별로 공공 참여를 활용해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 참여를 현실화하려면 공무원 활동 자체에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문화적 전환 요구를 충족하고자 규제수립 과정의 막바지에 성급하게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s)를 진행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참여를 공무원의 업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실하게 구현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공 참여 과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조정하며, 분석하고, 중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 중에 접수된 모든 조언들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유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해명책임(accountability)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몰입은 참여 실천에 대한 잠재적 회의를 상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인식하면, 목적(왜), 행위자(누구), 맥락(어떻게)의 조합에 따라 이행 수단이 달라지게 된다.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은 참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며, 참여활동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예측해야 한이다. 참여과정은 가급적 정책 중립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이다. 일반국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그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이다.

디지털 참여는 정책수립 과정에 민간 참여를 민주화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가능성을 발휘하지만, 워킹 그룹, 자문위, 또는 공청회 등 전통적인 참여 실천 관행들을 대체하지는 못하며

보완하는 장치이다. 디지털 참여가 정책수립 과정의 민간 참여를 성공적으로 촉진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과 일반국민의 요구를 모두 감안한 최적의 설계와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제공, 협의, 참여 허가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허락하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위키(wiki)"식 접근을 취하는 "공동제작 (coproduction)" 기회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환영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구한다.

정책수립 시 보편적인 최선의 참여 실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탄탄한 평가 시스템이 있다면 정부에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데 유익하다.

서론: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

이해관계자 참여는 행정적 실천이자 사고방식이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한층 더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자극하는 열린 정부(참여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의 국가적 규제개혁 노력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등장이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더 광범위한 전환이라고 본다. 여기서 수직적, 위계적 정책수립 형식들이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규제 거버넌스 사이클의 다양한 단계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협의, 참여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전환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근간이라는 인식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간이라는 인식도 점증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는 의사결정은 대립, 분쟁, 분열, 보이콧, 불신, 국민불만(public dissatisfac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Rowe & Frewer, 2005).

OECD 국가들은 규제를 만들고, 이행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규제정책의 주요 목적은 공익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와 이행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제 대상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제 대상자란 일반 시민, 기업체, 사회동반자, NGOs, 공공부문조직들 등이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지만, 개방적 포괄적 정책수립의 가치에 대한 수용이 확산된 계기는 참여 민주주의의 부흥이다. 정당들에 대한 불신 증가와 시민의 불만족 (Altman 2013; Dalton & Weldon 2005; Dogan 2005; Stevenson & Wolfers 2011) 등의 문제점이 대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들은 최근들어 "규제수립 과정에 사용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OECD, 2011a). "포함(inclusion)"은 OECD(2009)에서 정의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두 가지 차원들 중 하나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2012년 권고 (Recommendation, OECD 2012)의 원칙들 중 하나이다. 2012년 권고에서는 회원국에게 "규제가 공익에 부합하게 하고 규제에 관심을 가지며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합당한 요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한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규제과정에 대한 참여 등 열린 정부의 원칙들을 고수하고, 이를 위해 일반국민이 규제안 준비 과정과 그에 대한 지지 분석 (supporting analysis)의 질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기회 (온라인 포함)들을 제시하며,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규제를 수립하여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여 전세계 여러 국가의 아젠다로 승격시키는데 기여한 계기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itiative)이다. 2014년 말에 65개국에서 지지했던 열린 정부 선언 (Open Government Declaration)은 열린 정부 파트너십 회원국들 간의 "시민 참여 지지" 선언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국가들은 "의사결정과 정책 형성 과정에 차별 없이 공정한 공공 참여를 중시한다. 공공 참여를 통해 ... 정부의 효과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은 지식, 아이디어, 감독역량을 통해 정부에 기여한다." 또, 각국은 "정책 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피드백을 구하는 채널들을 만들어 활용하며, 정부 활동의 수립, 감독, 평가에 대한 국민 참여를 심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와 기업체 간에 공조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창출하는데 몰입하고 있다."¹

이해관계자의 규칙제정 참여 실천

종합지표에서 드러나는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

이해관계자의 규제정책 참여도 (그림 3.1과 3.2)를 나타내는 종합 지표들은 4개 주요 영역을 측정한다: i)감독 (oversight)과 품질 관리; (ii) 투명성; (iii)체계적 채택; (iv)방법. 감독과 품질 관리는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주로 공공협약)의 질을 외부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 즉, 이해관계자 참여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있는 지 여부와 공공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투명성은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이 가급적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방되는 정도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고려하는 지 여부는 물론 그런 견해와 의견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는 지에 대해서도 나타내는 지표이다. 체계적 채택 지표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형식 요건이 있는지와 규제수립 과정의 초기와 후기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 방법은 최소한의 협의 기간과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툴 활용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사용되는 안내 문서, 방법, 도구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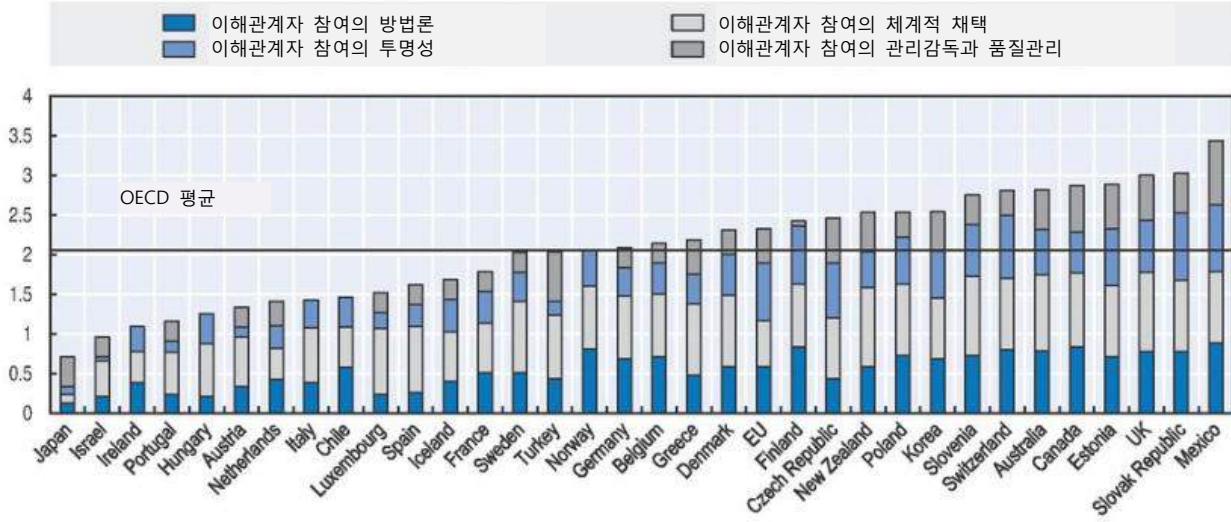
조사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을 체계적으로 채택해왔으며, 특히 신규 규제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이 비정형적이거나 협의를 특정 규제영역들에 대해서만 요구한다. 그 외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체계적 채택과 관련하여 이행 수준이 가장 우수한 최상위 국가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인다. 다만, EU는 예외이다. EU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협의를 강조하며, 후기 단계의 협의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방법 (methodology) 지표에서는 열린 공공협약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국가들(예: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의 점수가 낮다. 초기협약은 물론 후기협약에도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경우, 의견제출을 위한 최소 기간 결정 (에스토니아, 핀란드)과 획득

점수 (영국, EU)가 달라진다. 협의 중 접수한 의견들을 고려하고 협의 참여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에스토니아, 영국), 협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공표하고 정당한 설명을 제시하는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정형적 절차들을 갖추는 것이 참여과정의 투명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요 요인이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감독과 품질관리 면에서 국가들의 이행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협의의 질과 포괄성 (comprehensiveness)를 확인하며 초안작성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림 3.1. 종합 지표: 기본법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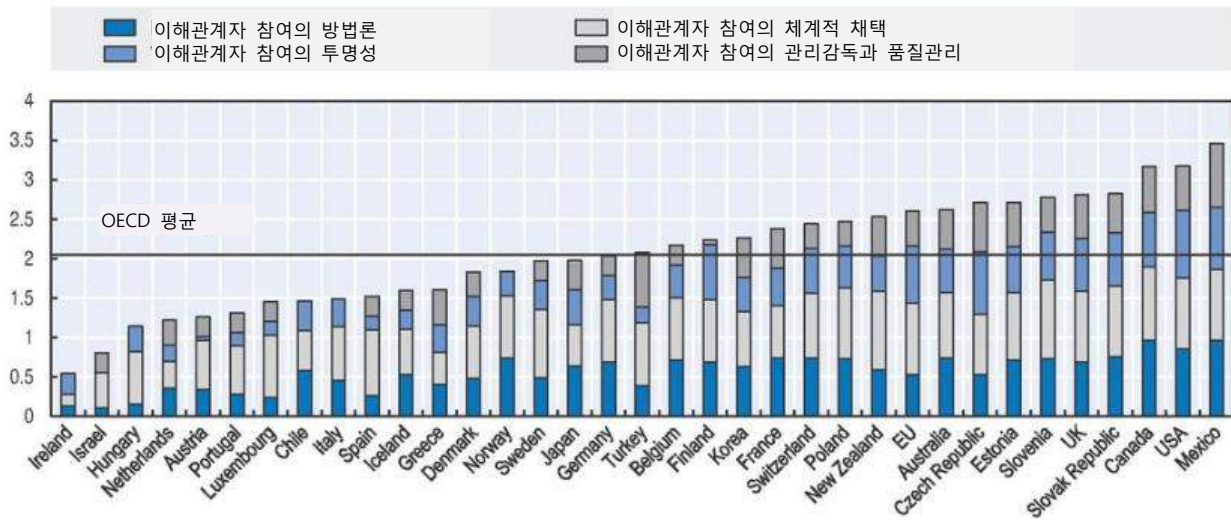


주: 행정부에서 개시한 기본법 수립 과정에만 해당되는 결과이다.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 별도 범주들의 종합산점수를 나타낸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 종합지표의 최대합산점수는 4점이다. 이 그림에서 미국은 제외하였다. 미국에서는 모든 기본법들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기본법들을 행정부에서 개시한다. 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은 예외이다.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기본법의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각각 90.6%, 84%).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36>

그림 3.2. 종합지표: 중속규제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주: 종합지표에서 4개 별도 범주의 종합산점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였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45>

전담기구 (멕시코 COFEMER 등)가 있고, 협의 불충분 사유로 초안을 반려할 권한을 그런 독립 기구에게 부여한다면,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감독과 품질관리 지표의 최종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독립 기구는 참여 과정 자체의 질을 보장하는데도 중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는 드물지만, 멕시코와 슬로베니아 및 EU 일부 국가는 예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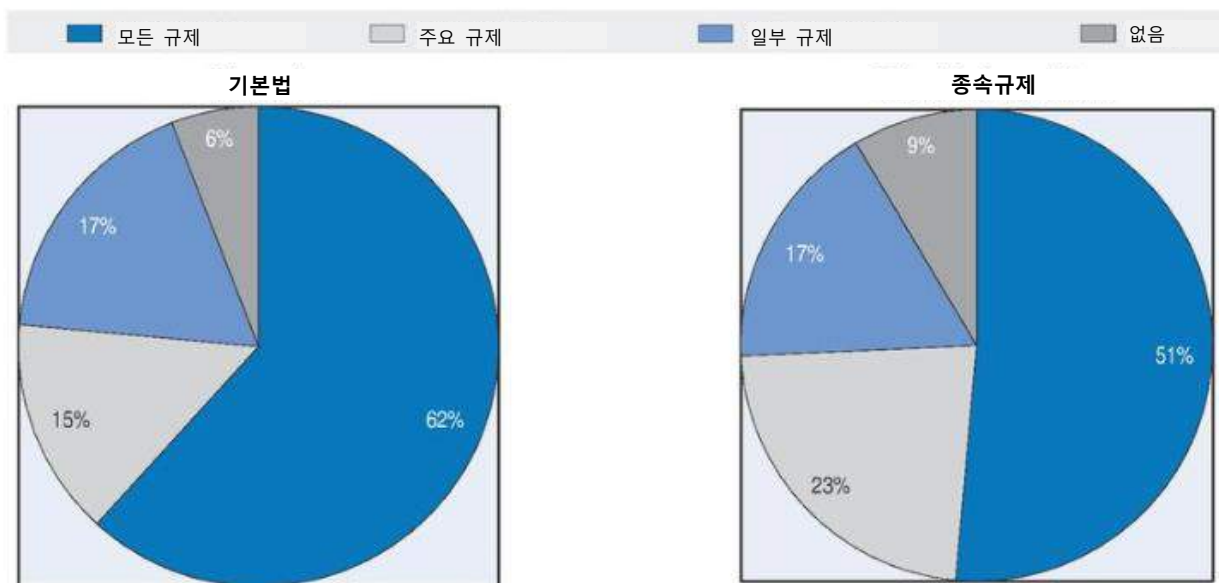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본법 수립 과정보다 종속규제수립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적다. 기본규제와 이차규제에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비슷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비중 계속 증가

2014 규제지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기본규제와 종속규제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요건을 이행해왔다 (원칙 2.1, 부분적으로 원칙2.2) (그림 3.3).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는 특히 지면이나 온라인 관보에 규제를 공표해서 규제에 수월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원칙 2.5). 전자적 형식을 지향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을 활용하여 관보 발표 비용을 줄인다. 또, 기본법과 종속규제를 전자적 형식으로 공표하면, 단순한 전자적 형식의 관보발표와는 달리, 현행 버전과 이전 버전 (즉, 미국의 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등)의 모든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국가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보의 지면 버전을 전자적 버전으로 완전히 대체한 국가들도 있다 (박스 3.1, 에스토니아).

그림 3.3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요건: 기본규제와 종속규제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40>

박스 3.1. 온라인 규제 데이터베이스: 에스토니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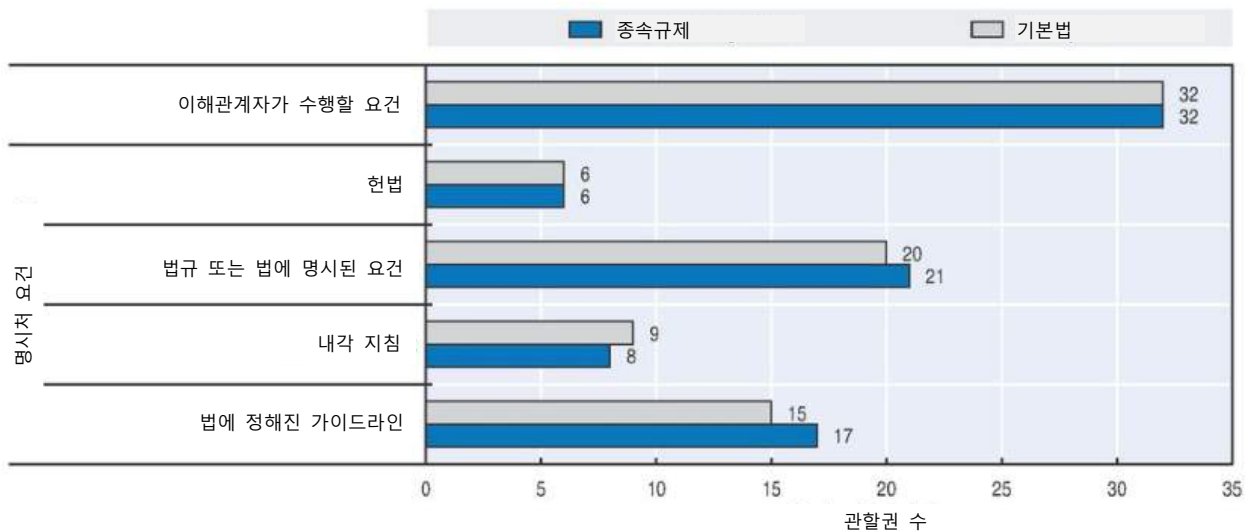
에스토니아의 국가 관보인 Riigi Teataja는 모든 기본법과 종속규제의 텍스트 전체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한다. 이 온라인 텍스트는 공식 텍스트이며, 이 관보에 공표되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관보의 인터넷 버전은 1997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 온라인 버전은 2002년 6월 이후 공식 공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0년 6월에는 인쇄판 관보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국민들은 해당사이트(www.riigiteataja.ee)를 검색하여 규제 원문은 물론 통합정리된(강화된) 텍스트도 볼 수 있다. 어떤 규제든 통합정리된 버전들을 언제든 볼 수 있다. 또, 입법 변경 자동 통지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피드백 형식을 통해서 도움말을 받거나 제안도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어 데모 비디오도 있다 (www.riigiteataja.ee/tutvustus.html?m=1).

출처: OECD (2011b), "규제관리제도: 각국 현황", 에스토니아, Question 6,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mscountrynotes.htm.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법규 수립 시 평어 사용 정책을 채택하였다 (Principle 2.6) ². 하지만 "규제와 규제 제도에 대한 정기 실적 평가를 수행하고,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규제 인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국가들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다 (원칙 2.3). "규제 적용 대상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규제 준수와 규제 시행을 통해 순공익 (net public benefits)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있고, 점검 (inspections) 대상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지 않는 점검과 시행을 지향하는 정책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들은 극소수이다 (원칙2.4) ³.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을 이행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 참여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또는 헌법적 요건을 제정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3.4).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부여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 이해관계자 참여 실행요건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54>

이해관계자 참여 목적의 다양성과 도구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목적 달성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경제위기로 OECD 회원국들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고, 그 신뢰가 급락한 국가들도 있다⁴. 의사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증가로 인해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가능해지고 하나의 전체로서 정부의 해명책임과 개인 공무원의 해명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 참여도 향상을 통해서 정부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더 나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개입시키고 “참여”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참여할 능력이 안되거나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접근함으로써, 한층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양질의 충실한 증거에 기반한 실속 있는 규제를 수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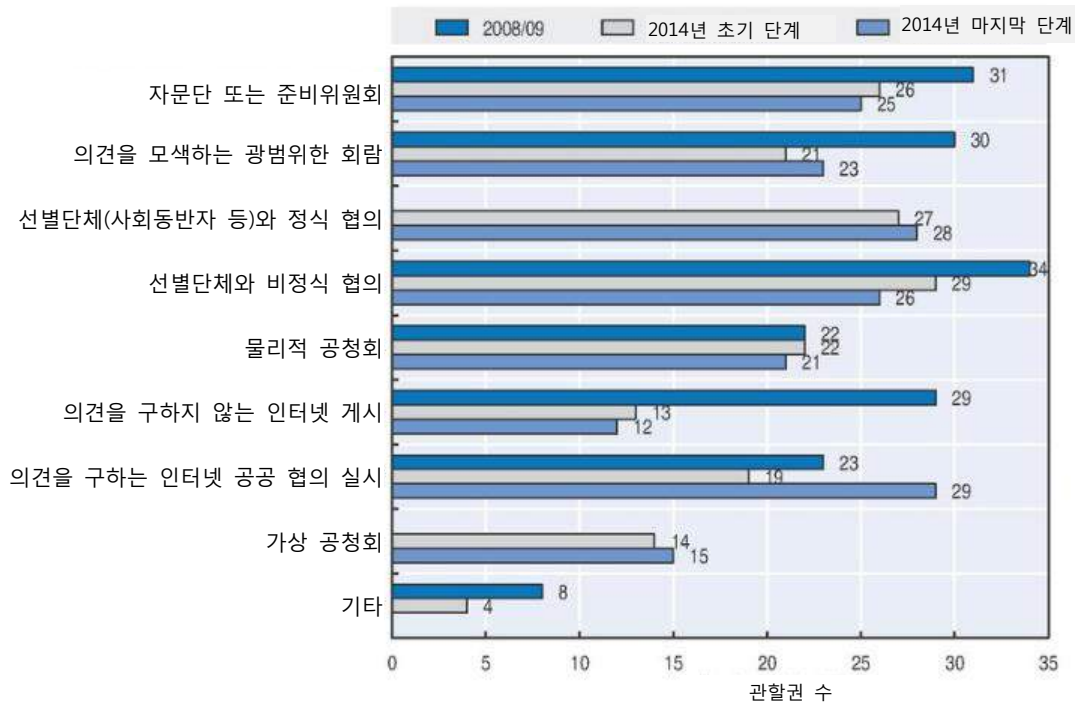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특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규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규제 준수도를 향상시키는데도 유익하다. Allan (2114)과 제6차 규제성과측정에 OECD 회의 (6th OECD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2014)의 결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규제수립 과정은 일부 당사자들의 협소한 이익에 반대함으로써 규제 준수율을 높일 수 있고, 규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원도 촉진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상보적이지만) 다양성을 보일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동성도 보인다. 현재까지 경험상 OECD 국가들은 내재적 목표(정부의 해명책임과 신뢰도 향상)보다는 도구적 목표들(자문 개선, 증거기반 강화)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전반적인 민주적 신뢰도와 해명책임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기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목표에 맞는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입법초안 작업을 개시하거나 행정 간소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젝트의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목적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중시된다. 그림 3.5은 협의과정의 다양한 유형과 그 용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자문단이나 준비위 등의 수단들은 이해관계자 참여 초기에 더 많이 동원되고 있는 반면, 사회동반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식 협의나 인터넷 상에 규제초안을 게시하는 등의 수단은 참여과정의 후기에 더 자주 동원된다. 공청회 등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동원되는 수단이다. 특정 대상과의 협의, 즉 “유력한 대상자 (usual suspects)”들만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즉, 특수단체들과의 회의에 과다의존), SMEs, 신규 진입자, 해외 트레이더 및 투자자들에 불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소위 사회동반자들이 선발한 고용주 대표 및 피고용자 대표와의 협의를 위한 정식 과정들을 확립하고 있다 (박스 3.2).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의들은 정

그림 3.5. 협의 유형



주: 초기 단계란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참여로서, 문제의 성격에 대해 관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가능한 해법 관련 토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에서 후기란 우선 해법이 파악되고 규제안이 발행된 상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말한다.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60>

박스 3.2. 선별적 단체들과의 정식 협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하면, 규제정책은 규제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물론 규제에 따라 보호를 받는 수혜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란 일반 시민, 기업체, 소비자, 피고용자(이들을 대표하는 조직 및 협회 포함), 공공부문, NGOs, 국제 무역 동반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공협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안한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특정 집단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들은 소중한 통찰과 정보를 얻게 된다. 규제기관들은 물론 이해관계자들도 대표단체와 정책안에 대해 직접 논의하는 것이 쉽고 효율적인 소통방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14년 규제지표조사에 의하면, 14개국에서 선별 단체들과 정식 협의를 자주 혹은 항상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정식 협의란 선별된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라고 정의되며, 절차를 정식으로 기록한 경우이다). 이는 규제 초안을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협의 후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각국에서 보고하는 협의단체들은 사회동반자, 현지당국, 기업연합, 환경단체 등 다양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 등의 국가들은 노동자들과나 피고용자 단체의 선출 대표와 노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또, 다수 국가에서 규제기관들의 재량으로 주최하는 임시회의 (ad hoc meetings) 등 비정식(informal)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14개국에서는 그 과정의 임의의 단계에서 이런 방법을 항상 또는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19개국은 "가끔씩"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스 3.2. 선별적 단체들과의 정식 협의 (계속)

여러 국가들에서 규제에 대한 협의를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 과정으로서 법제화하고 있다. 또, 이 사회적 대화 과정에는 노조와 경총 (고용주 연합, “사회동반자들”)이 참여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사회적 대화는 “경제 사회 정책 관련 공통관심사들에 대하여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들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협상, 협의, 또는 교류”이다. 사회적 대화는 3자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며, 정부가 공식적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한다. 또는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간접적 관여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노조와 경영진 간에만(또는 노조와 고용주 연합 간에) 이루어지는 2자간 관계로 구성되기도 한다. 사회적 대화 과정은 비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흔히 비정식 형태와 제도적 형태가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대화 과정은 국가, 지역,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대화 과정은 전문직간 (inter-professional), 부문별 (sectoral), 또는 이 두 가지 형식을 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국제노동기구 3자간 협의에 대한 규약 C144 (ILO Convention C144 on Tripartite Consultation)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는 138개국이다¹.

EU에서는 규제 및 규칙 제정 과정에서 사회동반자들과의 협의는 흔히 이루어진다. EU 차원에서 사회동반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촉진하고 있으며, 국가제도의 다양성도 고려하고 있다 (EU 조약 152조). 이러한 협의는 모든 EU 차원의 사회적 규제와 고용 규제(EU 조약 154, 155조)를 위한 법정 요건이다. “EU 사회적 대화” 과정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초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에서 향후 규제 이니셔티브의 광범위한 특징에 대해 사회동반자들과 협의한다. 둘째, EC에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 동반자들과 협의한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사회동반자들이 공통 입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2자간 협상에 실패하면, EC에서 일방적으로 독자적 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동반자들과의 협의를 법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절차에 대한 공통규칙 (Joint Rules of Procedure)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연합”들과 조기에 광범위하게 협의해야 한다. 여기서 “연합”이란 경영자 연합과 노동자 및 직원 연합 등 공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자연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이루어진 조합들 (unions)을 말한다. EU-15 규제개선 (Better Regulation)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협의 시스템을 선호하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경청 및 고려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예는 유럽 전역에 존재하는 소비자 연합과 같은 이해집단,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를 한데 모은 “경제 사회 위원회들”과의 대화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가 그런 위원회에 해당한다.

벨기에는 모든 경제사회적 규제들에 대하여 사회동반자들과 협의하는 오랜(약 120년) 전통을 가진 또 다른 예이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은 규제를 채택하기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고, 규제의 발효에 대해 계획하고, 규제이행 및 감시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워킹그룹들과 상임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Labour, Economy Central Council, Competition Council)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워킹그룹들과 상임위들을 사회적 의회(social parliaments)라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사회적 정부의 만장일치된(unanimous) 견해를 존중한다. 또, 연합체 (federated entity)마다 자체 사회경제위원회를 두고, 사회동반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다수 국가들이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국가경제개발 및 노동이사회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r Council, NEDLAC)을 탈-아파르트헤이드 (post-Apartheid) 시대에 수립하여 포함적 정책과 입법 과정을 보장하였다. NEDLAC에는 남아공 무역 노조와 경영자 연합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별 단체들을 활용할 때 규제기관들은 다양한 사회동반자들과 협의를 시도해야 하고, 특정 단체들이 표출하는 대표성의 범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령, 광범위한 이해관계나 회원을 갖춘 단체들과 협의하면 초점이 협소한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규제기관들은 모든 개인들이 대표를 갖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이가 개방적 협의를 대체한다기 보다는 보완하는 협의형식이라고 봐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대규모 단체 대표가 제시한 견해와 개인들이 제시한 견해를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응답 (responses)에 가중치 (weighting)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 한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위스는 체계적으로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1. 사회적 대화에 관한 ILO 웹사이트: www.ilo.org/ifpdial/areas-of-work/social-dialogue/lang--en/index.htm.

부, 고용주, 노동자 등 3자간 (tripartite)에 노동 문제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정책들과 기준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적 후기에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식 3자 협의가 아니더라도, 조기에 고용주 대표 및 피고용자 대표들과 협의하는 것이 표준 실천 관행이어야 한다. 개입한 협회들 중 일부 협회들의 대표성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노조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단기 고용 증가와 새로운 형식의 계약도 노동 시장 제도들의 대표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업 협회들이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반드시 커버하는 것은 아니며, SMEs와 개인 기업가들의 이익보다 대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다.

규제 개발 최종 단계의 공공협의 만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신규 규제를 수립하거나 규제를 수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협의 실천의 구체적 예들을 박스 3.3과 3.4에 정리하였다.

국가마다 규제수립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참여 과정은 이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공협의이다 (그림 3.6). 특히, 핀란드에서 최근 만든 Otakantaa.fi 포털은 초기 협의에 이용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프로젝트 준비

박스 3.3. 캐나다의 공공협의

캐나다에서는 규제안을 내각에서 심의하기 전에 정부 부처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실시하는 협의의 적합성은 물론, 이해관계자 지원 등 협의 결과도, 일반국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련 안의 예비공표를 내각에서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2009년에 캐나다 정부는 효과적 규제 협의를 위한 안내 (Guide for Effective Regulatory Consultation)를 발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효과적 규제 협의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 건설적, 전문적 관계
- 협의 계획
 - ❖ 목적과 목표 진술
 - ❖ 공공환경 분석
 - ❖ 현실적 타임라인 수립
 - ❖ 내부, 부서간 조화
 - ❖ 협의 수단 선정
 - ❖ 참가자 선정
 - ❖ 효과적 예산 수립
 - ❖ 지속적 평가, 과정 종료 시 평가, 기록
 - ❖ 피드백/팔로업
- 협의 실시
 - ❖ 중립적, 연관적, 적시적 정보 소통
 - ❖ 관리들이 필요한 스킬을 갖춘다

출처: 재정위원회 사무국 (캐나다) (2009), "효과적인 규제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www.tbs-sct.ca/rtrapparfa/erc-cer01-eng.asp (2015년 3월 20일 접속).

박스 3.4.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대화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체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협의 의무는 유럽연합 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에 있으며, 정책준비와 검토 시 필수요소이다.

2015년 3월 19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제개선 패키지 (Better Regulation Package)”를 채택하였다. 이 패키지를 통해 협의 약속을 강화하였다. 이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이며, 로드맵이나 “개시 영향평가 (inception impact assessments)”에 정리된 일차 아이디어에서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안을 준비하고 입법 도입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점까지, 정책 사이클 전반에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주요한 새로운 사항들로써는 작업 개시 전에 각 이니셔티브에 맞는 협의 전략 수립, 영향평가, 가치평가, 적합성 점검 및 녹서 (Fitness Checks & Green Papers)를 거치는 모든 이니셔티브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2주의 인터넷 공공협의 기간 부여, 로드맵과 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입법안, 초안 이행 및 위임 행위들에 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기회 부여 등이다.

새로운 “규제개선 지침 (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은 기존의 원칙 및 최소 기준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투명한 협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최소 기준들은 특히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 협의 과정 및 서류의 명쾌한 내용
-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표출 가능성
- 대상자들에 맞게 각색한 적절한 인식제고 홍보 및 소통 채널. 예를 들면, “Your Voice in Europe” (http://www.ec.europa.eu/yourvoice/index_en.htm) 웹사이트에 모든 열린 공공협의의 발표.
- 응답 시간을 충분히 제공: 열린 공공협의는 최소 12주
- 접수통지와 적절한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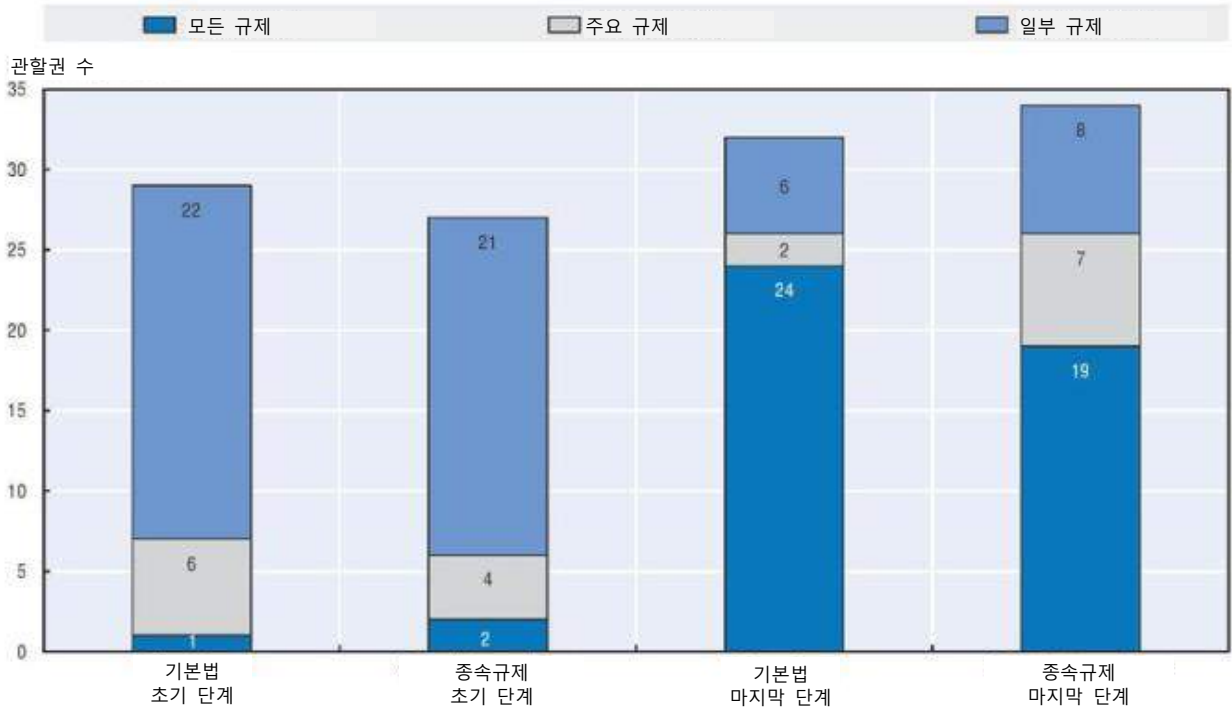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15), Better Regulation 웹사이트,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index_en.htm (2015년 5월 22일에 접속).

과정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토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 단체들이 주제에 대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이용해서 당국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 필요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평가할 수 있다. 토론회, 일원 (one-way) 공개 설문, 비공식 여론조사, 실시간 채팅토론 등 다양한 일방향, 양방향, 다방향 프로젝트 참여 방식을 조합할 수도 있다.

기존 규제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모니터링과 이행 단계에 이해관계자 참여는 드물다

국가마다 법규를 새로 개발하는 과정과 기존 규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키고 있다 (그림 3.7).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이니셔티브들은 규제 대상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주도해왔다. 따라서 그러한 규제들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간소화와 행정부담감축에 집중하는 규제개혁 프로그램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적극 구하는 국가들이 있다. 영국의 불필요한 요식 제거 (Red Tape Challenge) 이니셔티브 (박스 3.5)는 기존 규제들을 간소화하기 위해

그림 3.6.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의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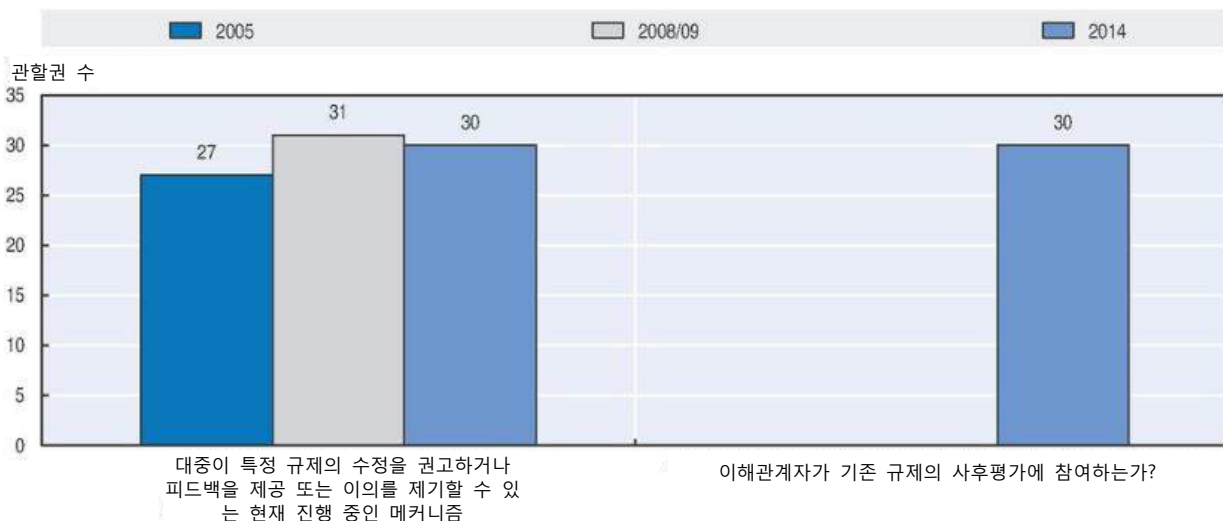
주: 초기 단계란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참여로서, 문제의 성격에 대해 관리들에게 정보를 주고, 가능한 해법 관련 토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의에서 후기란 우선 해법이 파악되고 규제안이 발행된 상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말한다.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771>

그림 3.7. 사후평가 시의 이해관계자 참여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20>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나오는 외부의 자문을 활용하는 혁신적 접근법의 좋은 예이다. 벨기에에서는 행정부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 패널을 갖추고 있는데, 이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에 근거한 표적 간소화 노력 (targeting simplification efforts)의 예이다. 덴마크의 버든 헌터 (Burden Hunter) 프로젝트 (박스 3.6)와 스웨덴의 규제 개선 사냥 (Better Regulation Hunt) 프로젝트는 기존 규제부담들을 분석하고 기존 규제들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층 더 표적화된 선제적 접근법들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야 한다. 중속규제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 증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업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 일대일 (one-for-one) 규칙에서는 규제담당자들이 "규제안의 예비공표 승인을 모색하기 전에 또는 규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상세한 사정에 대해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15).

한편,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규제정책 사이클의 최종 전달 단계 (이행 및 시행, 즉, 규제 전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규제이행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표적화된 시행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국가가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또, 규제대상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규제 준수도가 향상되고 비준수 사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영국의 규제개선국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이 비즈니스 레퍼런스 패널 (Business Reference Panel)을 통해 기업체들과 전체적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렇게 기업의 요구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규제당국자들과 규제대상들에서 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LBRO, 2010).

박스 3.5. 불필요한 요식행위 타파 (Red Tape Challenge)와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활용

2011년 영국 정부가 시작한 Red Tape Challenge는 어떤 규제들을 개선, 유지,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업체, 단체, 일반 시민의 견해를 "크라우드 소싱 (crowdsource)"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접수한 의견들의 영향으로 2012년 11월까지 검토한 5,662건의 규제 중에서 3,095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크라우드 소싱은 "군중(crowd)"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다음, 제시된 견해들을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과정을 분산 (decentralizing)시키는 방법이다 (Afuah & Tucci, 2012). Red Tape Challenge 프로그램에서 크라우드 소싱은 정해진 시한 내에 규제의 유용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일반인들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규칙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익명). 그렇게 접수된 의견을 활용해서 규제의 유지, 폐지,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Red Tape Challenge의 한 부분은 시행 (enforcement)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d Tape Challenge 중에 일반인들로부터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유의하게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소싱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크라우드 소싱 활용은 부분적 성공만 거두었다 (Lodge & Wegrich, 2015). 크라우드 소싱이 규칙과 규제의 효용성에 대해 정부 관료들에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했지만, 접수된 의견의 유용성이 언제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Red Tape Challenge는 ICT를 혁신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법규에 대한 의견과 견해를 수렴한 최대의 실험이었다.

출처: Afuah, A. and C. L. Tucci (2012), "원거리 탐색에 대한 솔루션으로써의 크라우드 소싱",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7, No. 3, p. 355; 및 Lodge, M. and K. Wegrich (2015), "크라우드 소싱 및 규제검토: 영국 정부의 불필요한 요식행위 타파를 위한 새로운 방법?", *Regulation & Governance*, Vol. 9, pp. 30-46, doi:1111/rego.12048.

박스 3.6. 덴마크의 버든 헌터스 프로젝트(Burden Hunters Project)와 규제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Business Forum for Better Regulation)

버든 헌터스 프로젝트 (Burden Hunters Project)는 덴마크 규제개선 노력의 필수 부분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경험하는 부담을 특히 강조하고, 시간 비용 외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기업규제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지를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식행위 감소를 위한 노력을 보충한 시도이다.

버든 헌터 방법은 기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버든 헌터는 정성적 조사에 초점을 맞추며, 스마트 규제 개발 과정에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담을 사냥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관찰조사, 프로세스 매핑, 전문가 인터뷰, 포커스 그룹, 공동제작 (co-production), 넛징 (nudging), 서비스 설계, 사용자 중심 혁신. 버든 헌터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행정부담을 없애는데 당국자들이 집중할 수 있다. 정성적 방법을 이용하면 당국자들이 기업들이 규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 지는 물론 그런 규칙들에서 비롯되는 행정 과업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도 통찰할 수 있다.

부담 사냥 (burden hunting)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식행위를 처리하는 기업내의 담당자, 즉 최종 사용자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즉, 당국에서 요구하는 행정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이 담당자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담 사냥 방법은 탐색 프로젝트와 집중 프로젝트에 모두 활용가능하다. 탐색 프로젝트들의 목적은 특정 영역에서 또는 특정한 법률로 인한 부담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한층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집중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는 디지털 방식의 해법들을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워크플로우, 가이드라인 또는 자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토대가 될 수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Business Forum for Better Regulation)은 2012년에 수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기업계와 밀접한 대화를 통해 기업 규제를 쇠신하는 일이다. 이 포럼은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영역들을 파악하고 간소화 조치들을 제안한다. 이 포럼의 구성원들은 기업체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특정 기업체, 간소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 비즈니스 포럼의 제안은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따라 커버된다. 이 원칙은 제안된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추구할 의무가 있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찾아낸 영역마다 특정한 간소화 대상들이 있으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정성적으로 조사한다. 규칙 간소화를 위한 이 이니셔티브들의 현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enkleregler.dk (덴마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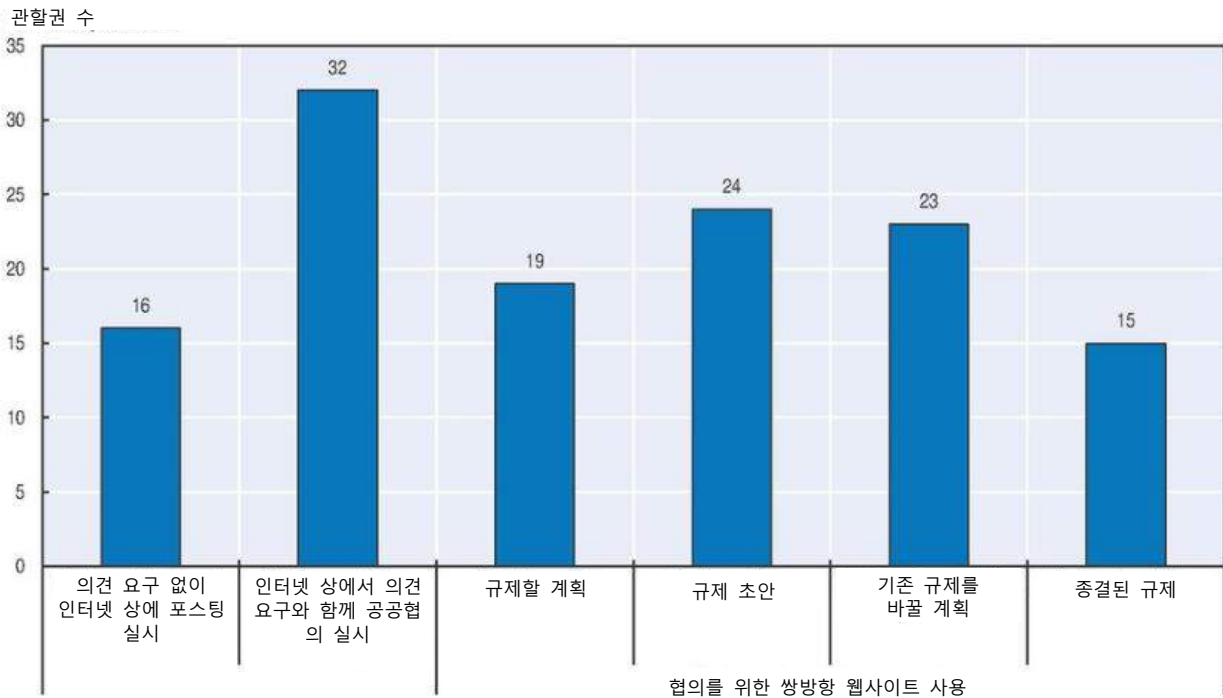
출처: 덴마크 기업경제국 (2015a), “Burden Hunter: 행정부담과 불필요한 요식행위의 타파”, <http://danishbusinessauthority.dk/burden-hunter> (2015년 3월 16일 접속) 및 덴마크 기업경제국 (2015b), “활용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http://danishbusinessauthority.dk/business-forum-for-better-regulation> (2015년 3월 16일 접속)

이해관계자 참여 시 ICT 역할 점증: 새로운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

규제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ICT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관련 부처 웹사이트나 전용 협의 포털에 규제안을 발표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 되었다 (그림 3.8). 열린 정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nitiative)는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킬 때 현대적 소통 수단의 사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다수의 관측자들은 디지털 수단을 동원하면 인터넷의 민주화 효과 덕택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오지에 살아서)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고,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끌어들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월한 소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소싱, 위키 (wiki) 방식의 툴 등 혁신적 수단들을 도입하여 실험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적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OECD (2011c) (그림 3.9 참조). US

그림 3.8. 규제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협의를 위한 ICT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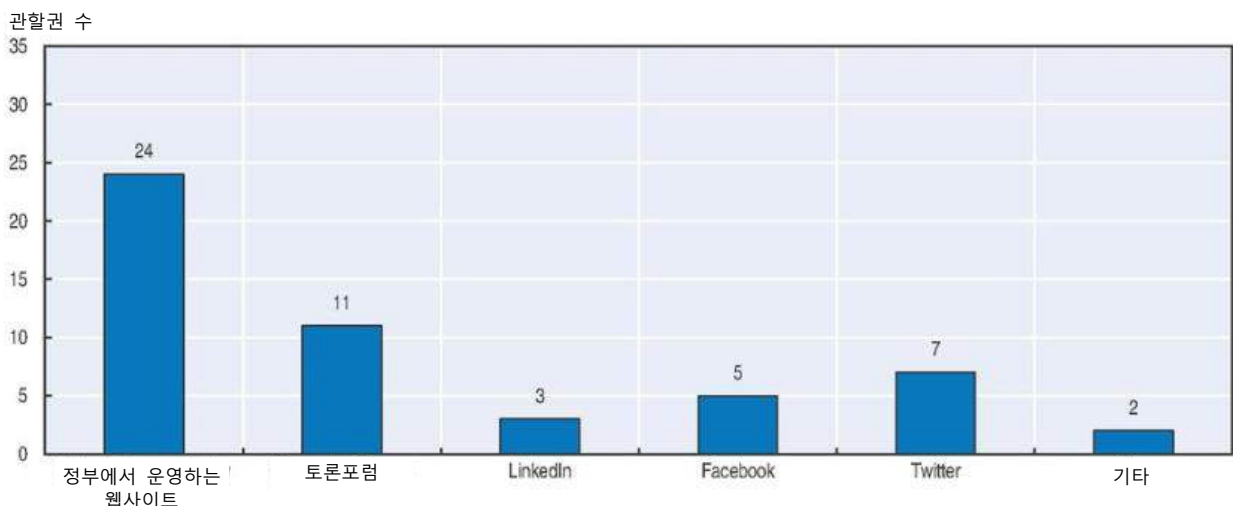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794>

그림 3.9. 협의를 위한 ICT 도구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02>

ExpertNet (박스 3.7)은 이러한 “공조적” 정책수립의 일레이다. 하지만 이런 수단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실험들이 참여과정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이다.

지금까지 경험상 ICT를 사용해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못했거나 그 질이 유의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Lodge & Wegrich, 2015).

박스 3.7. ExpertNet

미국 총무행정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과 백악관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Open Government Initiative)는 “전문가 공공 참여”를 클라우드 소싱하기 위해 “ExpertNet”이라는 위키 (wiki) 를 만들었다. “ExpertNet”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협약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공지하고 전문가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등 정보 교류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조적 정책수립이라는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ICT를 이용해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흥미로운 실험이다.

출처: ExpertNet

참여 메커니즘이 변화해왔다는 점은 사실이나, 참여 과정의 근본적 특성은 디지털 시대 이전과 여전히 동일하다. ICT 참여의 포커스는 일방적 (one-way) 커뮤니케이션, 즉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대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수집한다는 특성은 변함없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 소싱과 위키 방식의 수단들을 활용함으로써 아직은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양상들에서 어떤 가능성을 읽을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과 양에 대한 ICT 활용의 효과는 기대치를 밑돈다.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의 난제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갈 길이 멀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로 가는 경로에서 극복할 난관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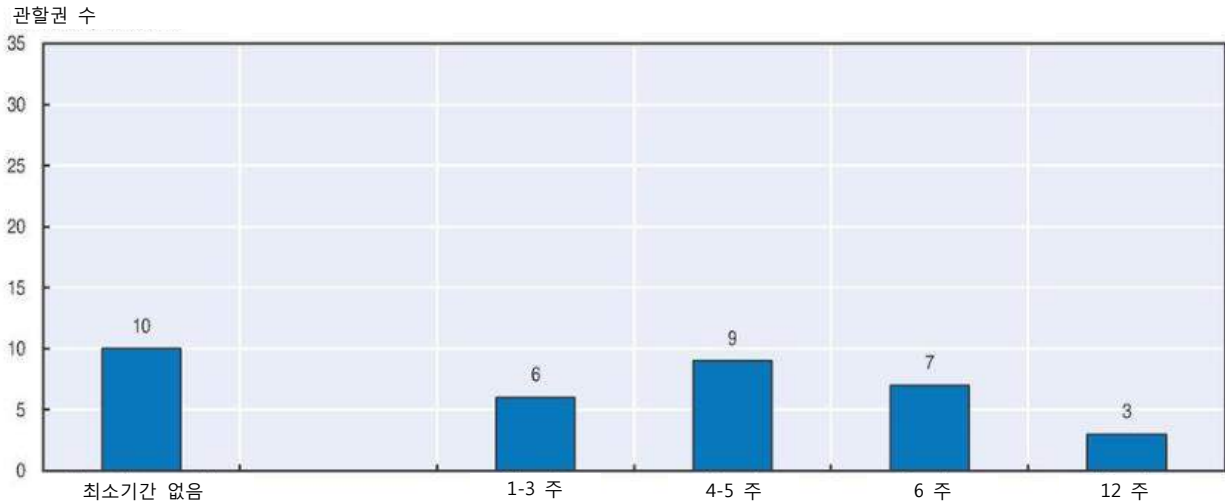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참여 실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정책의 확실한 부분으로 아직은 자리잡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예 참조, 2012). “효과적인 협의”와 참여는 “여전히 필요하며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OECD, 2009).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자원집약적 과정이다. 공공기관들이 참여 활동들을 꼼꼼하게 계획하고 상당한 시간과 인적 자본을 투입해야 참여 노력을 통해 참여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열린 정부와 정책수립 시 참여 확대라는 원칙들을 수용해왔지만, 일화적 증거에 의하면, 대다수 공무원이 그 부가적 가치를 알지 못하며 규제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문화 전환(cultural shift)의 문제이며, 이해관계자 참여의 편익에 대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명쾌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공공협약은 대개 규제수립 과정의 후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규제 초안의 실질적 내용을 유의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이다.

또, 규제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면 일반 시민, 기업체, 시민 사회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 관심, 인지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과정에 투입할 시간이 있거나 시간을 투입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공공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할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적어도, 정부들은 협의 상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25개국 정부들은 최소 협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6주 이상 허용하는 국가는 10개국뿐이다.

그림 3.10. 공공협의를 위한 최소 기간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02>

효과적인 공공 참여와 개입을 방해하는 다른 장애물들에 대해서 Alemanno (2015)와 Balla & Dudley (2015)가 상술한 바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대개 5개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하겠다. 물 거버넌스 (water governance)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최근 OECD의 심층 연구에서는 특정 부문에서 인식되고 있는 다음 난제들을 상술하고 있다 (그림 3.11, OECD, 2015).

인식부족 - 정부에서는 ICT와 미디어를 활용해서 지속적 협의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자 하지만, 그로 인해 참여가 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특히 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적극 찾지 않는다. 제대로 조직을 갖춘 이익집단들이 정부와의 전통적인 소통 채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한층 더 선제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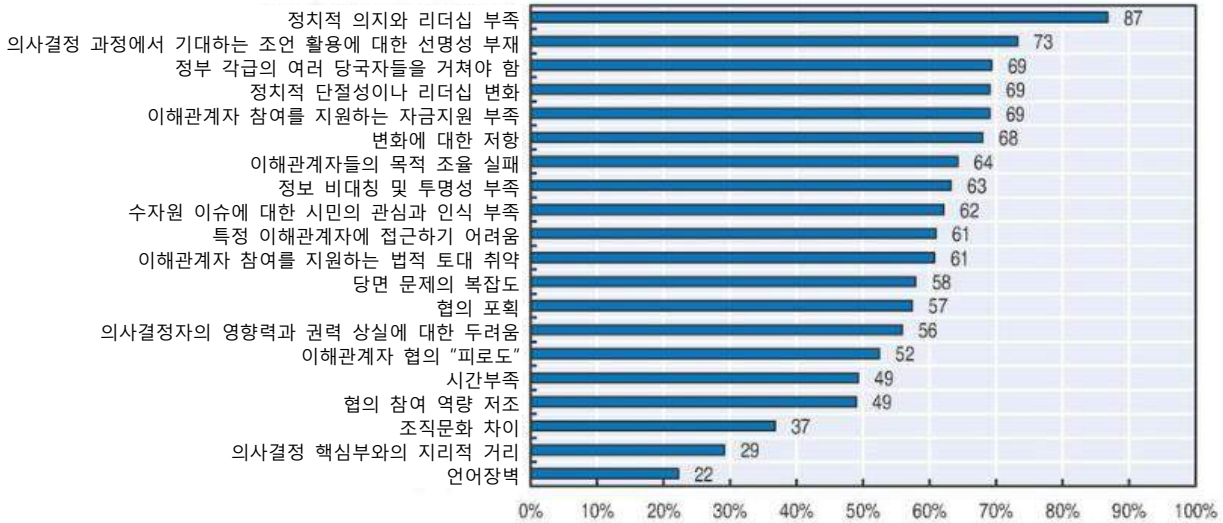
참여 문해율 (participation literacy) 저조 -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여전히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만큼 정책 이슈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법제정 과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명쾌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정보 과부하 -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부 문서는 공공협약이 가능한 경우 협의 피로감과 정보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관리들은 단순하고 정리된 협의 문서에 명쾌하게 표적화된 질문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은 장황하고 복잡한 문서와 복잡다단한 어휘를 사용한다.

협의 포획(consultation capture) - 조직이 제대로 정비된 이익단체들이 공개 토론을 포획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조직 및 개인들은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현실적

그림 3.11. 수자원 부문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주요 장애물

응답자 215명



주: "이해관계자 참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때 귀하의 조직에서 당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critical(결정적으로 중요)"부터 "important(중요)", "somewhat important(다소 중요)", "not important(중요하지 않음)"에 이르는 범위에서, "critical"과 "important"로 진단된 장애물들에 대한 대상자(타겟)와 기획자(프로모터)들의 관점에서 나온 평균 응답을 고려하여 그래프로 그렸다.

출처: 효과적인 물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OECD 조사 (2014년), OECD(2015a), 포괄적인 물 거버넌스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 물에 관한 OECD 연구,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1122-en>.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 또, 접수한 조언들 중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로비 시도와 관련 정보를 구분하기가 담당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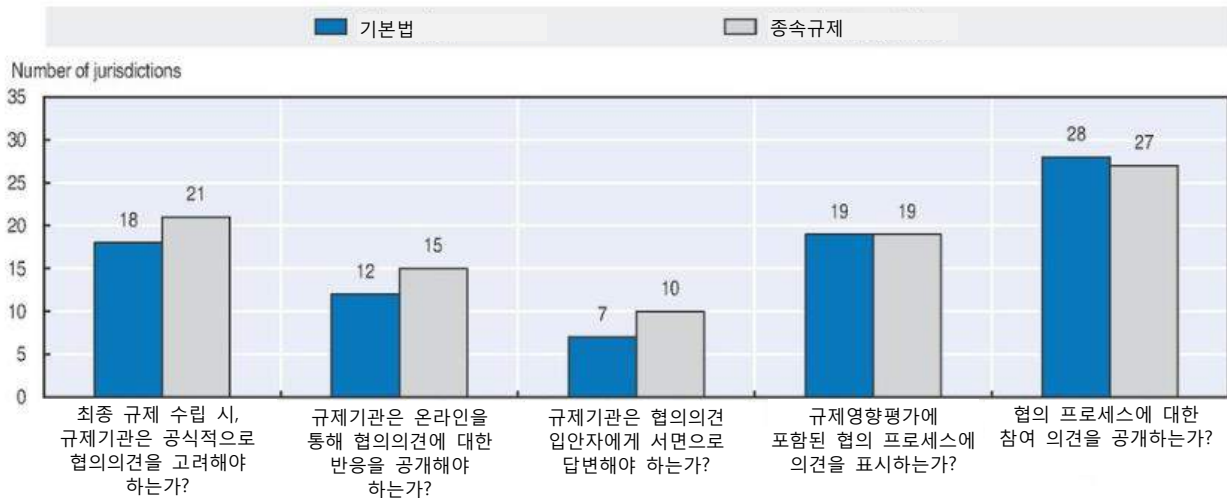
과거 기록으로 인한 나쁜 경험 - 공공협회에 참여했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산물에 대한 협의과정의 현실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접수된 의견과 그런 의견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림 3.12에서는 OECD 회원국의 규제기관들이 이런 류의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냉소적이 되고 그런 협의를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지도 줄어든다. 따라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협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의 실질적 목표 달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평가부족과 참여노력 평가 시 난제들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들이 실제로 그 목표를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회의는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런 활동들의 효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나 더 대응성 있는 (responsive) 정부에 기여하였다는 상당한 일화적 증거가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또, 이해관계자 참여가 법규의 질적 개선에 기여했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 또,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들에 투입된 자원들의 표적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 때문에 참여 노력의 성공에 대한 평가와 측정을 옹호하게 된다. 대부분의 관측자들은 정부들이 평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드문 일이라고 본다. 기존의 시도들은 실제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그림 3.12. 제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의무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35>

지향한다 (즉, 이해관계자 참여가 실질적 결과인 규제안에 영향을 주는가 보다는 협의 대상자 수와 접수한 의견 수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한다)⁶.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명백한 결과 기준들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목표를 명쾌하게 정해야 한다. 에스토니아의 경우가 흥미롭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정부기관에 이해관계자 참여 (Institute of Baltic Studies, 2010)시 참여의 목적을 고려하고 (대안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이들의 참여를 위해 동원하는 수단의 수와 이해관계자들의 수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목적들의 달성 여부까지 고려한다.

Balla & Dudley (2015)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참여는 규제의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가장 두드러진 수단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결정에 대한 합리적 컨센서스 달성을 지향하는 숙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규제정책수립에 한층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 (Coglianese, 2006). 이해관계자 참여 자체의 이중성(dual nature)를 고려할 때, 직결되는 평가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 기준은 이해관계자 참여량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어느 정도까지 유용하게 활용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이다. 예를 들면, 기업체와 산업협회 대표들이 소비자, 환경운동가, NGOs에 비해 더 자주 참여하는가? 조직 대표들에 비해 개인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가?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책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높은 참여도를 중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협소한 이익단체들이 개입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평가에서는 평가 기준 전반의 확실성과 보편성이 결여되어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그 다양성을 보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 제공과 숙의적 참여 차원의 부가가치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규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다. 절차상 다면성을 띄는 규제 과정 내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도구들이 발생하면서, 특정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과 특정한 참여 표명을 연결짓기가 어려워진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규제결과 간에 연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참여의 효능에 관한 더 큰 규범적 물음들이 당연히 제기된다. 예를 들면, 규제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기관의 결정을 알리는데 있어서 확산적 (divergent) 관점들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량은 어떤 작용을 할까?

평가 과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이용하는 이해관계자 참여 메커니즘 개선에 기여하는 강력한 평가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사례는 여전히 존재한다. 평가 목표와 기법들은 참여 목표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참여의 목표를 우선 명료하게 정립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강구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주

1. www.opengovpartnership.org/about/open-government-declaration (2015년 6월 접속)
2. 2008/2009 규제 관리 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평어”를 사용한 초안 작성을 요구하는 일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3. Reform of Regulatory Enforcement & Inspections in OECD Countries 참조. 이 OECD 논문은 Julie Monk가 2012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OECD Workshop on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를 대비하여 작성한 논문.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eform%20of%20inspections%20-%20Web%20-%20Julie%20Monk.pdf (2015년 3월 20일 마지막 접속)
4. www.oecd.org/trust-in-government.htm.
5. ILO와 그 연구 및 3자 협의(국제노동기준)규약 (1976, No.144) 참조. 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0_code:c144.
6. 예를 들면, EU의 협의실천평가(“Review of the Commission consultation Policy” 2012)의 초점은 협의 유형, 협의 수단, 언어, 기간, 협의 산출물 가용성, 최소 협의 기간을 존중한 외부 당사자들과의 협의 비율 등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들이다.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better_regulation/documents/documents_travail_service_part1_en.pdf (2014년 3월 19일 접속)

참고문헌

- Afuah, A. and C.L. Tucci (2012), “Crowdsourcing as a Solution to Distant 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7, No. 3, p. 355.
- Alemanno, A. (2015),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Allan, E. (2014), “Perceived Fairness and Regulatory Policy”, draft paper prepared for the 6th expert workshop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in The Hague 17-18 June 2014,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the-hague-workshop.htm (consulted September 2014).
- Altman, D. (2013), “Bringing Direct Democracy Back In: toward a three dimensional measure of democracy”, Vol. 20, No. 4, *Democratization*, pp. 615–641.

- Balla, S. and S.E. Dudley (2015),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Regulatory Policy Making in the United States",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Coglianesi, C. (2006), "Citizen Participation in Rulemaking: Past, Present, and Future", No. 55, *Duke Law Journal* 2006, pp. 943-968.
- Dalton R.J. and S.A. Weldon (2005), "Public Images of political parties: A necessary evil?", 28(5), *West European Politics*, pp. 931-951.
- Danish Business Authority (2015a), "Burden Hunter: Hunt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Red Tape", <http://danishbusinessauthority.dk/burden-hunters> (accessed 16 March 2015).
- Danish Business Authority (2015b), "Business Forum for Better Activity", <http://danishbusinessauthority.dk/business-forum-for-better-regulation> (accessed 16 March 2015).
- Dogan, M. (2005), "Erosion of Confidence in Thirty European Democracies", Vol. 4/1, *Comparative Sociology*, pp. 11-53.
- European Commission (2015), Better Regulation website,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index_en.htm (accessed 22 May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2), "Review of the Commission Consultation Policy", SWD(2012) 422 final, Strasbourg,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better_regulation/documents/document_travail_service_part1_en.pdf (last accessed 20 March 2015).
- Institute of Baltic Studies (2010), "Lõpparuanne Valitsusasutuste kaasamispraktikate analüüs", (Final report – Stakeholder involvement with government agencies), www.siseministeerium.ee/public/SIMKA.pdf (accessed 19 March 2014).
- LBRO (Better Local Regulation) (2010), "From the business end of the telescope: Perspective on Local Regulation and Enforcemen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62053/10-1396-business-end-of-the-telescope.pdf (consulted January 2015).
- Lodge, M. and K. Wegrich (2015), "Crowdsourcing and regulatory reviews: A new way of challenging red tape in British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ance*, Vol. 9, pp. 30-46, doi:1111/rego.12048.
- OECD (2015), Stakeholder Engagement for Inclusive Water Governance, OECD Studies on Water,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1122-en>.
- OECD (2014), "6th OECD Expert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the-hague-workshop.htm (accessed September 2014).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 OECD (2011a),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pporting Economic Growth and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6573-en>.
- OECD (2011b),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Country Notes", Estonia, Question 6,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mscountrynotes.htm.
- OECD (2011c), "User-Centred Regulation: Open Government and E-Rulemaking", OECD, unpublished document.
- OECD (2009), *Focus on Citizens: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OECD Studies on Public Engag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8874-en>.
- Rowe, G. and L.J. Frewer (2005), "A Typology of Public Engagement Mechanism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Vol. 30, No. 2, pp. 251-290, DOI: 10.1177/0162243904271724.
- Stevenson, B. and J. Wolfers (2011),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over the business cycle", Discussion paper series,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No. 5570.
-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2015), "Controlling Administrative Burden That Regulations Impose on Business: Guide for the 'One-for-One' Rule", www.tbs-sct.gc.ca/rtrap-parfa/cabtrib-lfarie/cabtrib-lfariepr-eng.asp (accessed 26 April 2015).

제4장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규제영향평가(RIA)는 잠재적 규제 시행의 영향을 조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기여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RIA의 적용은 지난 30년 동안 확대되어 지금은 OECD 국가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이 평가절차의 사용이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RIA의 기여도를 높이는 잠재적 능력은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RIA 시스템은 엄격한 감독과 보다 체계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의 RIA 절차 적용, 직면한 문제,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결과

동향

규제영향평가(RIA)의 광범위한 사용은 증거에 기반의 정책결정이 OECD 국가들에서의 추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RIA는 신규 또는 개정 법률과 규정의 예상되는 이점, 비용, 효과 등을 조사 및 평가한다. RIA는 소중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또한, 그것은 규제 시행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이 평가절차의 사용이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RIA는 OECD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규제정책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따를 수 있는 단일한 모델이 없다. RIA 시스템의 설계 및 발전은 관련 국가 또는 관할지역의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상황을 감안한다. 하지만 세계의 서로 다른 RIA 시스템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유사한 구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RIA의 주요 단계는 문제 정의, 규제 옵션 확인, 데이터 수집, 대안 옵션 평가, 바람직한 정책 옵션 확인, 모니터링 및 평가 준비 등을 포함한다.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RIA와 관련된 관행들을 확인한다. 첫째, 적절한 제도적 근거는 RIA의 질적 관리 및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폭넓은 제도적 맥락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RIA가 특정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게 할 적절한 방법의 수립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필요 또한 있다. 둘째, 국가는 눈에 띄는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는 중대한 규제 개입에 RIA를 적용해야 한다. RIA 분석의 가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적 또는 집중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는 부족한 자원이다. 셋째, RIA 프로세스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상황) 제공을 위해 통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RIA는 경제적(경쟁적), 사회적(성별적), 환경적, 분배적 효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커버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흡족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RIA의 일환으로 검토되기 위한 공식적 요건은 일반적이지만, 그 요건의 실제적 적용은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RIA를 위한 토론과 정부의 폭넓은 개방적 프로세스 사이의 연계성이 약하다.

정책 프로세스에서 RIA의 적용을 심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 유발 및 규제안의 경제적 분석 강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단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그것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이미 충분히 복잡한 정책 파이프라인, 및 그 이점은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추가적인 행정적 요건에 대한 요구는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RIA의 성공은 주로 정치지도자가 표명하는 공약의 수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약속은 정부가 RIA의 사용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게 할 동기 부여의 핵심적 원천인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결부되어야 한다. 또

한, 공무원들이 RIA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들 세 요소는 RIA가 증거기반 정책의 핵심적 도구가 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

많은 국가들은 강력한 감독을 통해 RIA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 중요한 고려사항은 감독 기능의 범위, 즉, 간단한 문지기 역할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기능을 가지는 기관에 이르는 범위이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는 문제제기 기능은 아직 OECD 국가 감독기관들의 광범위한 특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RIA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많으며, OECD 국가는 RIA 프로세스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 및 토론을 포함한다. 이것은 증거 수집의 폭을 넓히고, 제안된 정책개입의 이점 및 비용에 대한 더욱 고품질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RIA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RIA를 주류로 편입하기 위한 다년간의 도전은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때로는 허위의 정책평가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중요성"분석(materiality analysis), 즉 규제 개입의 예상 결과에서 필수적인 가장 중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는 분석의 적용에 비례한 RIA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이 수행될 수 있다.

대중 및 규제기관이 수명주기를 통해 규제를 따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RI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OECD 국가들로부터의 증거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규제의 이행, 준수, 이행결과, 및 정책목표와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 기여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RIA는 이행의 감독 및 규제의 사후평가가 규제 관리주기를 짧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에서 최초의 고리이다.

국가는 새로운 규제가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도움을 줄 것임을 RIA 시스템이 그 이익의 평가를 통해 거의 확실히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할 기회를 가진다. 관련 성과지표는 새로운 규제의 금전적 이익 확인을 넘어서, RIA의 추가 혜택(예: 관리부담 및 규제비용의 감소, 또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 경감)을 시민이나 기업에게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서론: RIA 사례

국가의 권력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경제와 사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것은 시민,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만든다. 현대의 경제와 사회는 법의 지배를 지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성장, 투자, 혁신, 시장개방 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잘못된 규제 환경은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 관리에 손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규제가 제대로 시장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는 정책의 옵션이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평가되는 포괄적인 구조(체계)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OECD, 2011). RIA는 이러한 체계를 제공한다.

RIA는 관리 및 의사결정 도구이며, 정책결정자가 증거기반 및 목적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제의 질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해당 규제의 역사적 의도를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수단을 통해, 규제 결정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원한다.

RIA는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도구를 상징한다. 잘 작동하는 RIA 시스템은, 규제안 고유의 장단점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규제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한 영역의 위험 감소가 다른 영역에서 어떤 위험을 야기할지를 식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IA는 정책결정에서 증거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해당 규제를 했던 케이스가 없었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실패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OECD, 2009). 영국의 한 예는 RIA가 어떻게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과정을 강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박스 4.1).

RIA 실천관행

종합지표를 통해서 본 RIA 실천관행

RIA 평가를 위한 종합지표는 네 주요 영역을 측정한다: i) 감독 및 품질 관리; ii) 투명성; iii) 체계 도입; iv) 방법론. 감독 및 품질 관리는 RIA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기능 및 분석의 질 보장을 위한 요건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투명성은 RIA를 수행할 프로세스의 개방성 정도 및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찰한다. 비례의 원칙 및 제도적 준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RIA를 위한 공식적인 요건이 개발된 경우, 그 체계적인 적용을 조사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영향, 비용 및 이익, 규제의 대안, 위험 요소 등이 평가되는 정도, 및 해당 방법의 구현을 위해 제공되는 가이드선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그림 4.1 및 4.2는 모든 국가가 그들 정책 과정의 RIA 부분을 만드는 대책을 강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를 지원하는 주요한 추진 요인은 RIA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기본적 방법론이다. 데이터는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RIA를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가 RIA를 위한 공식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지표에 의하면 많은 국가가 공식적인 요건 및 방법론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RIA의 공식적인 요건, RIA의 방법론적 측면 및 체계적 채택을 이행하는 영국, 멕시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을 구별하는 것은 RIA 프로세스 및 RIA의 감독 및 품질 관리에서의 더 심도 있는 채택 및 투명성의 실천이다. 실제로, 이것은 또한 OECD 평균 점수 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실이다. 추론해 보면, 국가가 RIA 시스템의 구현을 갈망하는 경우 그 가장 큰 이득은 투명성 관행 및 감독의 강화에서 올 것이다.

박스 4.1 RIA를 사용하는 영국에서 중소기업 어필 챔피언 임명

2013년, 영국 정부 'Focus on Enforcement Reviews'로부터의 증거 및 추가 연구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의 부재 및 잘못된 설명을 포함하는 국가의 비경제적 규제기관에 의해) 항소조항 및 불만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부족을 보여주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개입이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집행 결정이 방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으며, 그것은 그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못하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RIA 문서에서 영국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그들이 (공포, 과도한 비용, 또는 긴 기다림이 없이)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Focus on Enforcement' 프로그램 하에서 수집된 증거는 이것이 항상 있는 사례는 아님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규제 이의 제기 및 불만 처리의 투명성, 운영 및 유효성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항소 챔피언 임명을 찬성하는 주장에 RIA를 사용하였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어필 챔피언'의 신설은 궁극적으로 더 간단한, 더 효과적인, 더 투명한, 더 적은 비용의, 더 잘 이해되는 일련의 프로세스(즉, 기업이 규제기관의 결정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야기할 것이다.

RIA 문서에서 확인된 옵션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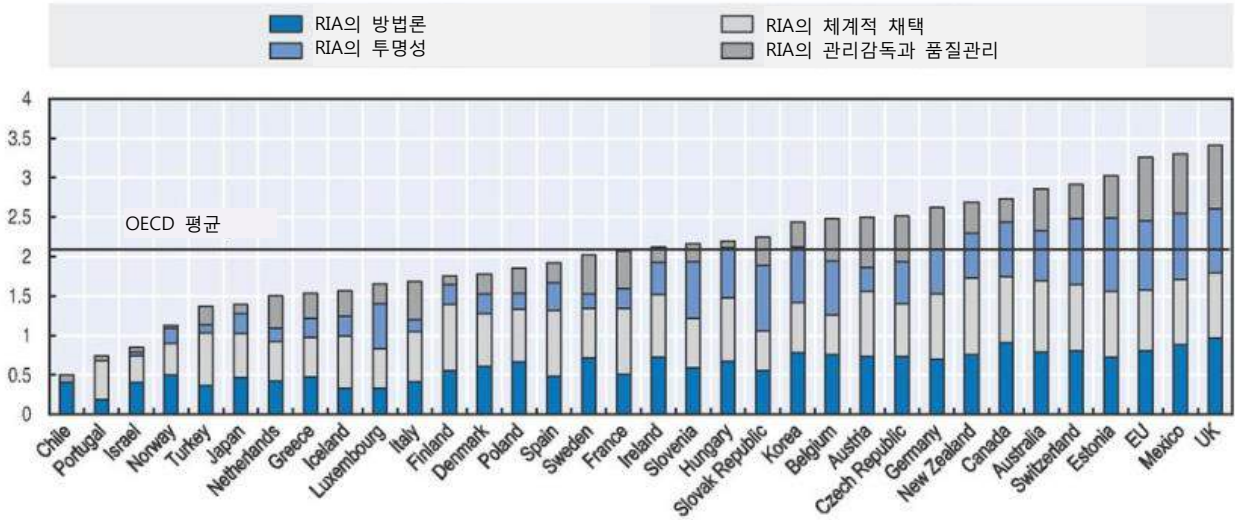
- 옵션 1. 새로운 코드(규제)에 의존하지만, 준수의 보장을 위한 조항은 만들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옵션 2. 비경제적 규제기관 내에 독립적인 중소기업 항소 챔피언을 임명하는 규칙결정. (바람직한 옵션)
- 옵션 3.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단지 각 경제 외적 규제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임원을 임명한다.
- 옵션 4. 모든 비경제적 규제기관에 대한 보증 제공을 위한 하나의 독립체를 만든다.

2015년 중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은 2015년 3월 26일 입법되었다. 그것은 중소기업 항소 챔피언이 (규제기관이 새로운 법률적 규제 코드에서 설정된, 문제제기 및 불만과 관련된 목표에 대해, 기업과 정부에 보증을 제공할) 각 비경제적 규제기관에 임명될 것임을 명시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이의제기와 불만 처리의 절차가 규제기관과 그들이 규제하는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 친화성, 접근성, 공정성,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경영혁신 및 기술(2014)에 대한 부서 적용, '중소기업 항소 챔피언과 비경제 규제기관,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097/bis-14-674-smail-business-appealschampions-and-non-economic-regulators-impact-assessment.pdf, (2015년 2월 16일 접속) 및 TSO (2015)에서, "중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 2015", www.legislation.gov.uk/ukpga/2015/26/pdfs/ukpga_20150026_en.pdf (2015년 5월 24일 접속).

영국의 규제정책위원회는 독립적인 '비정부 자문 공공기관'으로서 감시를 수행한다. 그것은 기업과 시민사회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안에 대한 의견 (규제안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의 질적 측면에 대해 평가한 것)을 정부에 제공한다. 멕시코에서 RIA 시스템의 감시기능은 -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arms-length) 기술적으로 독립된 기구인 - 연방규제개선위원회 (COFEMER)가 수행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OECD, 2014).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위원회가 RIA를 검토하며 이 위원회의 의견은 제안 상정의 필수조건이다. 마산

그림 4.1. 종합지표: 기본법 수립 시 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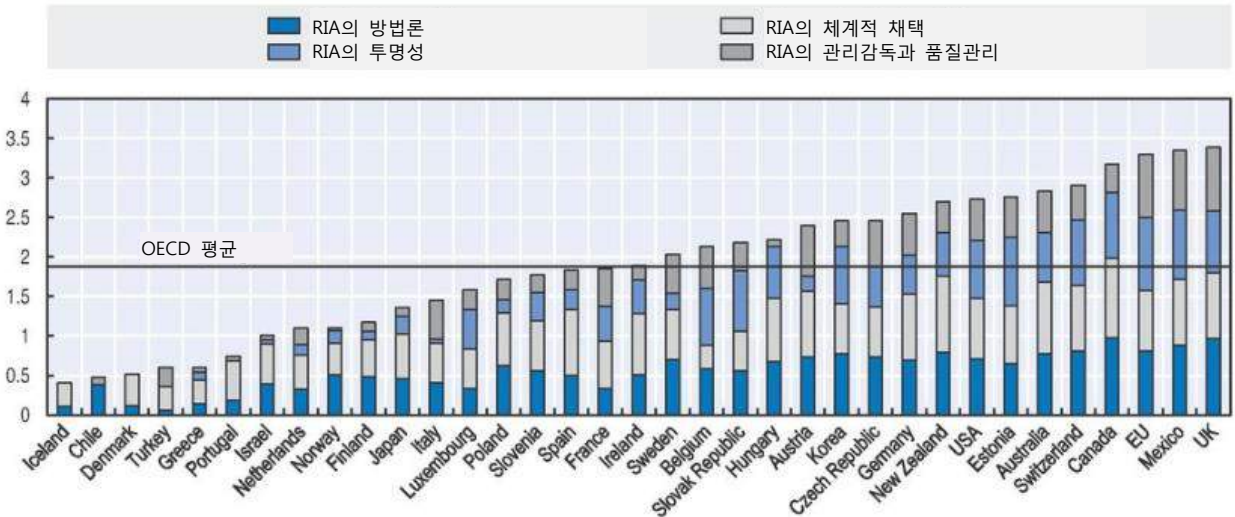


주: 행정부에서 개시한 기본법 수립 과정에만 해당되는 결과이다.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 별도 범주들의 총합산점수를 나타낸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 종합지표의 최대합산점수는 4점이다. 이 그림에서 미국은 제외하였다. 미국에서는 모든 기본법들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기본법들을 행정부에서 개시한다. 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은 예외이다.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기본법의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각각 90.6%, 84%).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52>

그림 4.2. 종합지표: 종속규제 수립 시 규제영향평가



주: 종합지표에서 4개 별도 범주의 총합산점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였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60>

가지로, 유럽의회의 전문기구는 일단 제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RIA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한다.

요약하면, 많은 데이터가 국가들은 보다 공적인 요건 및 지원 방법론을 통해 RIA 시스템을 강화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이러한 최소 요건이 준비되면, RIA의

감독 강화 및 투명성 증대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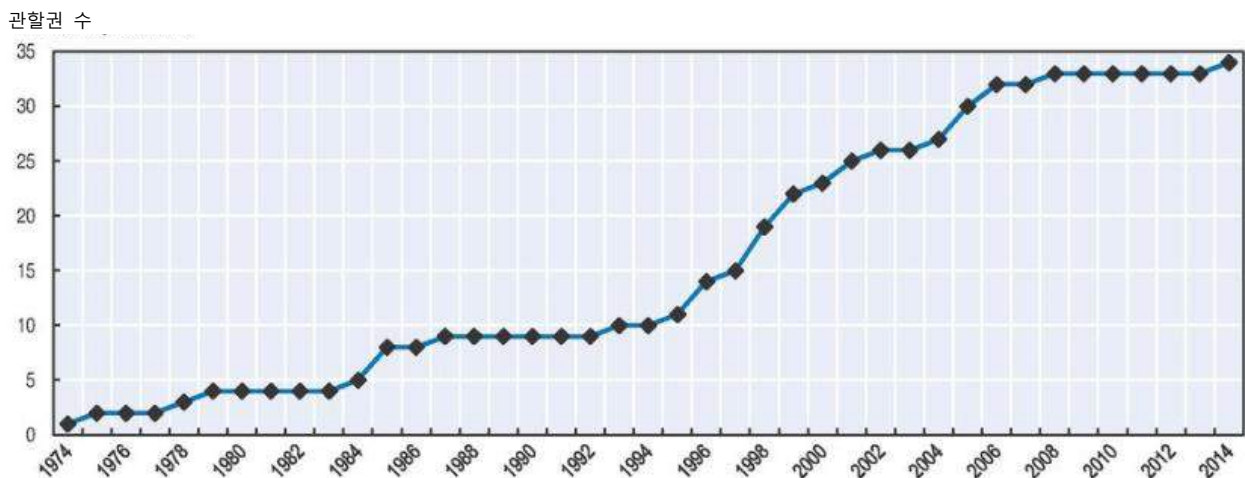
RIA 수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의 RIA 사용은 지난 30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규제지표조사'의 결과 (그림 4.3)와 같다. 공식적 규제 품질 도구로서의 RIA 역사는 25년 이상이다 (OECD, 2009). OECD의 여건 내에서, 규제 품질에 대한 OECD 위원회의 1995년 권고와 함께 제공된 10포인트 체크리스트는 규제의 혜택이 그 대가를 정당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 OECD는 RIA의 한 모범 사례를 설정했다 (OECD, 1997). RIA를 중요한 규제의 개발, 검토, 및 개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그리고 시장 개방성 및 경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RIA를 사용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규제의 품질 및 그 시행을 위한 OECD의 지침에 포함되었다 (OECD, 2005).

2008년 OECD는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RI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실용 지침을 제공하는 핸드북 (OECD, 2008b), 및 RIA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를 정책결정자에게 소개하는 체계를 발간했다 (OECD, 2008a). OECD 국가들에서 10년 이상의 RIA 수행 경험을 조사한 후, OECD는 RIA가 규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방법론적 체계, 경쟁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막기 위해 RIA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 및 RIA의 품질에 영향 미치는 체계적인 요인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발간했다 (OECD, 2009). 2010년 OECD는 위험 규제를 위한 법적, 절차적, 실제적 시도에 대한 분석 (대부분은 RIA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위험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했다 (OECD, 2010).

마지막으로, 2012년 규제정책 및 관리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2012b)는 새로운 규제안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정의 초기 단계에 RIA를 통합하는 원칙을 수립한다. 이전의 OECD 지침에 비해 2012년 권고의 중요한 발전은 RIA 프로세스는 전반적인 법 제정 시스템에 추가가 아닌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림 4.3. OECD 국가를 아우르는 RIA 채택 동향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70>

하지만,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된 도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 효과적인 구현은 불투명하다.

Renda (2015)에 따르면, 공공정책이 RIA를 채택하는 가장 빈번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 효율성/부담 감소: RIA가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CEA)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행정부가 덜 효율적인 대안을 버리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경우, 그것은 공공정책의 순수 이익 증가를 통해 더 큰 사회복지를 야기하게 된다.
- 투명성: RIA는 공공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이유는 RIA는 공공행정이 자신들의 조치를 서면으로 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그들이 제안한 행동방향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책임성: RIA의 사용은 정부의 책임(즉, 정책 시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촉진한다.
- 관료주의 제어: RIA는 중앙정부가 하위기관 (에이전트 등)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 파악 없이도 하위 기관이 규제를 통해 하려는 것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대의 정부는 대표성과 감독의 원리에 기초하며, 그것은 중요한 정부의 과업을 위임받는 전문기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OECD, 2012a).
- 효과성 및 정책의 일관성: 이것은 정부의 장기계획 달성 및 정부의 의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RIA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RIA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하나 이상의 동기가 있다. 또한, Renda (2015)에 따르면 RIA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RIA의 도입에 수반되는 규제관리구조 대한, 또는 법률의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한 더 많은 고찰이 있어야 한다. 박스 4.2은 RIA가 다른 관리구조와 함께 도입된 미국의 사례를 설명한다.

RIA의 거버넌스

규제정책을 개발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RIA를 "규제거버넌스 사이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할 필요성이다 (OECD, 2011). 정책 주기는 공공 정책의 사전분석 및 사후평가를 위한 도구를 포함하며, 개별 정책 수단의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주어진 분야의 기존 법률에 대한 분석을 위한 도구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너무 자주 RIA를 독립형 도구로 채택하여 영향평가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시작한다. 그 결과, 많은 국가가 규제개혁에 실패했으며, 그 원인은 RIA의 불량한 설계 때문이 아니라, 정책 사이클의 다양한 단계들 사이의 공조 부족 때문이었다. 심지어 최고의

박스 4.2 미국 RIA 모델: 간략한 개요

미국이 RIA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연방기관들이 규제 시행 전에 규제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필요성, 및 본격 규제 전에 약하게 개입해 볼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 ii) 중앙정부가 규제 권한이 위임되는 하위기관의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 iii) RIA 내에 비용편익분석을 할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규제 결정의 효율성을 촉진할 필요성.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RIA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정책결정자들은 가능한 모든 증거에 기초하는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 처음 이러한 개념은 사업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명확한 필요성과 결합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체로 대안 규제 옵션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고, 명확한 "순이익"을 근거로 그 옵션의 채택을 정당화하는 일반적인 책임 도입으로 보장되었다. 미국의 시스템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초기 접근은 부분적으로 변화했다. 즉, 그 강조점이 비용절감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RIA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RIA의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에게 규제거버넌스 사이클 전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 RIA는 기존의 행정부 규칙에 필수적 절차 단계로서 도입되었다.
- RIA의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RIA의 품질을 심사할 중앙 감시기관, 즉 정보 및 규제 업무 사무실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중점. 미국 RIA 시스템은 분명히 비용편익분석(CBA)의 실행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출처: Renda, A. (2015), "규제정책의 규제와 규제영향평가", 규제정책 관점에서: 201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의 독자 가이드, OECD Publishing, Paris.

RIA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RIA의 도입을 고려하는 정부에게 '규제 관리 사이클' 전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RIA는 좋은 규제실행의 광범위한 사이클에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모든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다.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 및 규제 결과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사전분석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 그리고 규제 성과의 모니터링 및 수년 후의 규제 검토에 얼마나 의존할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RIA 문서의 초안을 작성 때 미래의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의 기초를 형성할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것은 새로이 부상하는 좋은 방법이다.

합법적 규칙 존속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자가 어떤 조치를 공개적으로 시행할지 또는 제3자에게 어떤 것을 위임할지 등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많은 정부가 공공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및 공동 규제 시행에 의존하며, 일부의 경우 삶의 특정 규칙 단계만이 위임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센티브가 잘 설계되는 경우 언제나 한번에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나은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주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정부가 규제 존속 기간의 여러 단계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하위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전달"(delivery)의 개념은 처음에는 '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의 설립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엔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의 설립과 함께 점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의 동기 일부는 "파이프라인의 끝'(즉, 공공행정이 법률 준수를 감시하는, 그리고 기업과 시민이 합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및 그 준수 방법을 결정하는 순간)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정부보다는 의회가 수행하며, 그것은 쉽게 실행되어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 규제의 초안 작성에 대한 기관 간의 바람직한 긴장 관계를 갖게 한다.

RIA의 관리는 (환경문제, 사회복지, 포괄적 성장 등의 광범위한 정책목표에 기여하는 목적과 함께) 정부의 규제 초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보증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RIA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RIA의 관리 상태 - 즉, 그것이 법률, 법령, 지침, 지시, 또는 결의에 의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ii) RIA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원 정도 (이는 감독기관의 존재에 반영된다*); iii) 이 감독기관의 역할; iv) 의사결정 과정에서 RIA와 공공자문의 통합.

효과적인 규제정책 수단으로서의 RIA의 채택을 방해했던 OECD 국가에 대한 2014년 규제 지표조사의 초기 결과는 이러한 여러 관리 요소에서 문제 및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차이들 중 일부를 아래에 설명한다.

OECD 국가들의 다양한 RIA 시스템 탐색

대부분의 OECD 국가는 RIA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RIA 요구와 RIA의 실제 이행 사이에는, 법적 또는 공식적 문서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

조사 자료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법적 또는 공식적 문서에서 RIA를 수행해야 할 요건을 설정했으며, 실제로 RIA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4). 하지만 데이터는 일부 OECD 국가에서는 RIA의 채택이 보류 중임을 보여준다. 지난 20년 동안 RIA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였으며, OECD의 가장 중요한 규제정책수단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의 RIA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또한, RIA 시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가지는 국가의 수에 비해 더 적은 수의 국가가 실제로 RIA를 실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종속규제의 경우 보다 현저하다.

Renda (2015)는 정부가 RIA를 도입하는 여러 경로를 식별하였다. 그들 각 경로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단점 또한 있다 (박스 4.3). 중요한 문제는 기대치 관리, 즉각적인 유망한 성과 자제, 및 문화적 변화는 정부의 행정에 RIA와 스마트한 규제도구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또한, OECD 국가들은 RIA가 특정 부분의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 기준을 수립하였다. 그림 4.5는 RIA가 수행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규제가 긴급하게 도입된 때임을 보여준다. 다른 사례는 국제법의 구현, 특히 EU 규제의 구현, 또는 EU 지침의 시행 등을 포함한다. 상

* Renda (2015)는 또한 RIA 대한 정치적 약속의 예로 다음을 포함한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광범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RIA를 도입하는 것; 모든 새로운 규제안은 RIA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내부적 강제 조건"(internal constraint)을 설정하는 것; "열린 정부" 공약과 같은 "외부적 조건"(external constraint)를 수립하는 것.

그림 4.4. RIA 채택: 공식요건과 관행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620>

박스 4.3 RIA 도입 경로

- **경로 1. 시험 적용 단계 후, 모든 규제에 RIA 적용의 제도화.** 이것은 RIA의 도입에서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필수 행정요건으로서의 RIA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 시험단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 **경로 2. 최소한의 개입 방법으로 시작한 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행정 부담의 측정은 특정한 입법의 영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개입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측정 단계가 주로 외부 자문에 의한 것이며, 명확한 결과 도출에, 공무원의 행정관습 관련한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문이다. 그리고 SCM에서 보다 완벽한 RIA 시스템으로의 이동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행정의 내외부적 기대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를 필요로 한다.
- **경로 3. 일부 기관에서 시작하여 다른 기관으로 RIA를 확대한다.** 특정 테스트(예: 행정 부담)에 완전하든 아니든 제한적이든 간에, 정부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가 가장 집중된 행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RIA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또는 장관이 결정할 것이다.
- **경로 4. 주요한 규제안에서 시작하여, 덜 중요한 규제 커버를 위한 문턱을 낮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년의 시험단계를 거친 후, 자신들의 연간작업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주요 제안에 초점을 두는) 2000년 자신들의 IA 시스템을 출시하였다.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은 해당 규제가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점차 확장되어 주요한 위임 및 실행 법률 (즉, 하위 법률)을 커버하게 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0건의 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 **경로 5. 강제 규정(규제)과 함께 시작하여 연성법 (soft-law)으로 이동한다.** 일부 국가는 RIA 시스템의 구현 수년 후에 연성법, 사적 기준, 및 자체-및-공동 규제가 때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스 4.3 RIA 도입 경로 (계속)

- **경로 6. 단일 또는 다중 범주의 정성적 분석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정량적 분석(예: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이동한다.** 한 국가가 비용편익분석 또는 그와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특정한 수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당 국가가 RIA를 도입할 수 없음을, 또는 도입한 RIA가 궁극적으로 그 "과학적" 호소력을 잃게 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성분석에 기초한 일반적인 절차를 채택하는 것, 및 정량/정성 분석(예: 스코어카드)을 통해, 특정한 행동방침의 채택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RIA의 도입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올바른 관리 및 제도적 환경과 함께 한층 더 증거기반의 정량분석으로의 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카운터-분석에 의한 규제의 사례를 만들 필요성에 의해 좌우된다.
- **경로 7. RIA의 전문기술에 대한 집중에서 더욱 분산된 책임성으로 이동.** 어떤 한 정부에 RIA 기술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격차는 단기적으로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정부가 특정한 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는 중앙감독기관의 제한된 직원을 훈련함으로써 RIA의 시험 시행을 시작했으며, 규제권을 가진 각 부서에 RIA 관련 업무를 위한 팀을 구성하였다.

출처: Renda, A. (2015), "규제정책의 규제와 규제영향평가", 규제정책 관점에서: 201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의 독자 가이드,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4.5. RIA 개시 시의 예외사항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96>

당수의 국가가 IRA를 제외하는 추가적인 명분 (예: 국가 안보, 공공 질서 또는 예산, 및 국가 자체의 조직과 관련된 규제의 명분)을 갖는다. 비록 그러한 경우에 제외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규제 관리주기의 적절한 관리 (RIA 분석에서 제외하는 규제의 경우에도) 그 영향에 대

한 사후평가는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림 4.5는, 주요 영향을 가지는 규제만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RIA의 적용에 더 세심한 균형감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OECD는 규제의 설계 및 그 준수 전략에 대한 위험 기반의 접근법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정부의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위험으로부터의 더 나은 보호를 통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OECD, 2010). 사실, 2014년의 규제지표조사는 단지 소수의 국가만이 RIA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임계 테스트를 신청했음을 보여준다; 박스 4.4는 일부 국가의 사례를 포함한다.

박스 4.4 RIA 적용을 위한 기준점 테스트: 일부 국가의 사례

호주에서는 예비평가에서 어떤 제안이 기본 및 종속규제 (뿐만 아니라 준-규제안)에 대한 RIA (이들은 규제영향서 (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라고 함)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영향평가(RIS)는 내각의 모든 제출안에 대해 필요하다. 이것은 경미한 또는 기구적 특성의 제안 및 기업,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규제의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제안을 포함한다. 호주 비내각의 정부기관에 의한 어떤 결정이 기업, 사회단체, 개인 또는 이들의 조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비내각의 결정에 대해서도 RIA는 필수이다.

벨기에는 혼성 시스템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RIA에서 다루는 21주제 중, 17개는 지표 기반의 신속한 정성적 시험(긍정/부정적 영향 또는 무영향)으로 구성된다. 다른 4항목(즉 성별, 중소기업, 관리부담,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특성과 그 범위를 포함하는 보다 철저한 정량적 접근으로 구성된다.

캐나다는 모든 하위 규제에 RIA를 적용하지만, 분석의 범위 결정에는 Triage 시스템을 사용한다. Triage 시스템은 가장 필요한 곳에 분석을 집중하기 위해 균형성 (proportionally)의 규제관리 원칙에 대한 내각의 지침을 강조한다. 규제안 개발의 초기에 Triage Statement의 개발은 해당 제안이 전체의 또는 일부의 (신속한) RIA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것은 비용 및 아래와 같은 기타 요소에 의거해서 결정된다.

- 낮은 영향: 즉, 비용이 10년 동안 현재 가치로 CAD 1000만 미만, 또는 매년 CAD 100만 미만
- 중간 정도의 영향: 비용이 현재 가치로 CAD 1000만-1억, 또는 매년 CAD 100만-1000만 사이
- 높은 영향: 비용이 현재 가치로 CAD 1억 이상, 또는 매년 CAD 1000만 이상.

또한,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들의 보안, 환경, 또는 경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Triage Statement는 생략될 수 있으며, 신속한 RIA 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

멕시코는 기본 및 종속규제 초안에 대해 RIA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량적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 및 부처는 RIA의 면제를 위해서는 준수비용이 제로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IA를 수행해야 한다. 보통 RIA는 "영향 차이 계산"으로 불리는 두 번째 테스트에 오며, 10가지 질문 체크리스트의 결과로 해당 규제는 높은 영향의 RIA 또는 보통 영향의 RIA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는 규제 종류에 대한 RIA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 시험을 사용한다. 규제 초안은 RIA를 위해 다음의 두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i) 정책 이니셔티브가 내각 문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정책 이니셔티브가 법률(입법 법률 2012 목적상의기본 법률)의 생산,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옵션을 고려한다.

박스 4.4. RIA 적용을 위한 기준점 테스트: 일부 국가의 사례 (계속)

미국은 하위규제에 대한 RIA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량적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12866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완전한 RIA를 요구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 (모든 "중요한" 규제의 하위 집합)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2866의 Section3(f)(1)에 규정되어 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주는 규제, 또는 경제, 경제 섹터, 생산성, 경쟁, 일자리, 환경,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국가, 지역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정성적 시험이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한 RIA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영향평가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실시된다. 위원회 사무국은 이 기준점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추론한 제안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결과는 로드맵에 게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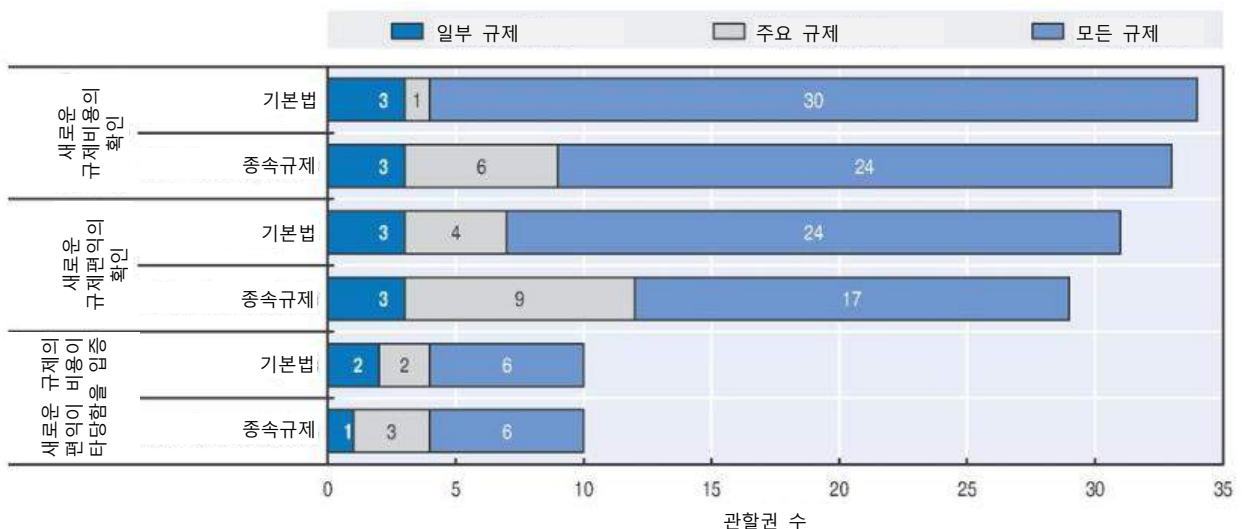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RIA 프로세스의 일부로 규제 초안의 장점과 비용을 식별하는 것은 OECD 국가의 일반적 관행이다. 하지만 단지 소수의 OECD 국가만이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높은 품질 규제는 시민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순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는 또한 그 대가를 초래한다. 즉, 시행 및 규제 준수비용, 행정 부담 및 타 시장에서의 잠재적 왜곡 등 (OECD, 2009). 대부분의 OECD 국가는 RIA 과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용 및 이득을 확인하도록 장려된다 (그림 4.6). 박스 4.5는 규제안의 이익 및 비용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일부 국가의 경험을 보여준다.

RIA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가가 (긍정적 순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비용효과적인 규제를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OECD, 2008a). 비

그림 4.6. RIA의 비용과 편익분석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896>

박스 4.5 비용 및 이익에 대한 정확한 평가 보장: 일부 국가의 사례

호주에서는 예비평가가 어떤 한 제안이 RIA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고, 해당 정책과정에 대한 모범 실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규제영향평가(RIA)는 내각의 모든 제출안에 대해 요구된다. 세 가지 유형의 RIA가 있다. 즉, 긴 양식, 표준 양식, 및 약식 양식. 약식 양식은 단지 내각 제출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긴 양식 및 표준 양식은 기타 요건들 사이에서 대등한 분석수준을 포함해야 한다. 긴 양식의 평가는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중속규제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규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때, 해당 부처 및 기관이 정부 조치를 포함한 규제 및 비규제 조치의 이익 및 비용을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분석은 정량 측정, 또는 (이익과 비용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 측정을 포함해야 한다. 순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옵션을 평가할 때, 해당 부서는 제안된 규제 또는 그 대안이 캐나다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정부에 대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캐나다의 여러 지역 및 캐나다 경제의 다양한 섹터에 고르게 확산시킬 방법을 검토한다. 캐나다 재무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걸쳐 안내지침 제공 및 문제제기 기능을 한다.

멕시코에서는 RIA를 연방규제개선위원회 (Federal Regulatory Improvement Commission, COFEMER)에서 검토하며, 검토 결과 RIA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COFEMER는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한 RIA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선된 RIA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COFEMER는 해당 부처에 독립적인 전문가 고용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기관은 COFEMER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규제 대책을 발행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중속규제의 경우, 행정명령 12,866호에 의해 정보 및 규제업무사무국이 RIA 초안 및 규제 초안을 검토함으로써 기관의 비용편익분석 준수가 보장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용편익분석은 정책결정자의 정책 개입 관련 결정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림 4.6은 또한 국가에는 RIA를 이용하여 규제의 이익이 그 비용을 능가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으로, RIA의 사용은 "최소 비용" 평가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국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및 자원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2012년의 권고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한다. 그것은 "규제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용, 이익 및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또한 "사전평가는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기 규제의 영향에 대한 질적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익과 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비교는 RIA의 활용도를 근본적 개선한다.

RIA 이행 및 운영 시의 난제

RIA 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은 모든 국가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RIA는,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통합되어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 잘 기능하게 된다 (OECD, 2009). 하지만 처음부터 (공무원의 태도 변화를 촉진할 필요성, 종종 법률전문가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분석의 도입 필요성, 이미 복잡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요구조건 도입의 어려움 등의) 많은 문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Renda (2015)는 이것들이 RIA의 성공적인 도입은 주로 정치지도자가 표명한 공약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일부의 이유일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정치적 공약은 (정부가 RIA의 적용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게 할 동기 부여의 핵심적 원천인)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결부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RIA의 문제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상의 세 요소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RIA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보인다. 또한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그 이유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공약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해 중요하며, RIA를 통한 더 나은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정치지도자들의 요구 또한 RIA를 진지하게 수용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RIA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또한 이는 정부가 RIA를 도입하도록 자극하는 다양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RIA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조될 수 있다. 박스 4.6을 참조한다.

박스 4.6 RIA에 대한 정치적 약속: 몇몇 사례

규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RIA 도입 전문가 자문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정책 주기" 접근법의 채택, 기존 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병행하는 사후평가 등의 추가적인 규제개혁 도구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RIA 단독으로는 규제의 질적 향상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RIA 감시기구를 창설하여 정부의 중심에 위치시킴. 정부가 제도적 환경 (즉, RIA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때면 언제나, RIA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수준은 최대화된다. 이러한 측면은 RIA 도입의 유효성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또한 정부가 외부 이해관계자, 정부 내의 공무원 및 기타 기관(예: 국회)에 자신의 의지를 "표명(signal)"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지 표명의 전형적인 방법은 RIA에 대한 지침의 초안 작성 및 보급, RIA 초안 작성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RIA 초안 검사와 그것에 대한 수정 요구 및 심지어 거부, 및 기타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중앙 감시기구의 창설이다.

확실한 "내부 제약조건" 수립. 정부가 RIA를 (거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내부의 절차적 강제조항을 수립할 때 RIA에 대한 약속은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i) 정부가 (RIA가 규제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기에 규제안 관련 작업을 시작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규제계획의 잘 구조화된 시스템; ii) 모든 새로운 규제안(또는 가장 큰 영향을 가진 규제안)은 감독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되는 RIA 문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요건; iii) 행정부 내의 견실한 RIA 초안 작성을 촉진하는 기능과 함께 RIA 업무의 협조를 담당하는 각 부서별 RIA 기구 창설; iv) 견실한 RIA와 연결된 규제안의 수에 따른 예산 인센티브.

RIA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것임을 보장하는 "외부적 제약조건" 수립. 내부 제약과 함께, 외부적 특성의 제약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표명되는 정치적 의지의 수준 강화에 중요하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박스 4.6. RIA에 대한 정치적 약속: 몇몇 사례 (계속)

i)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한 "열린 정부"(특히, 적시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개방, 및 참여적 협의 과정 등)에 대한 약속; ii) RIA 수행 관련 정부의 현재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명확한 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연간보고서 발행; iii) 외부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의 창설; iv) 정부가 모든 정책에서 특정 관심 분야를 고찰하는 것을 보장하는 RIA 방법론에서 특정 "심사(screen)"의 채택; v) 일반적인 (또는 특정) RIA 과정의 질적 요소 관련 조사에 대한, 또는 RIA 개개의 품질 관련 심층분석에 대한 비정부기관의 역할 관련 고찰; vi) 더 나은 규제 성과 달성을 위한 높은 품질의 RIA를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 실시;

출처: Renda, A. (2015), "규제정책의 규제와 규제영향평가", 규제정책 관점에서: 201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의 독자 가이드, OECD Publishing, Paris.

많은 국가가 효과적인 RIA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그들 가운데 다음이 눈에 띈다: 장기적인 정치적 약속, RIA의 감독, 방법론적 문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부의 정치적 구성 등. 이들 중 일부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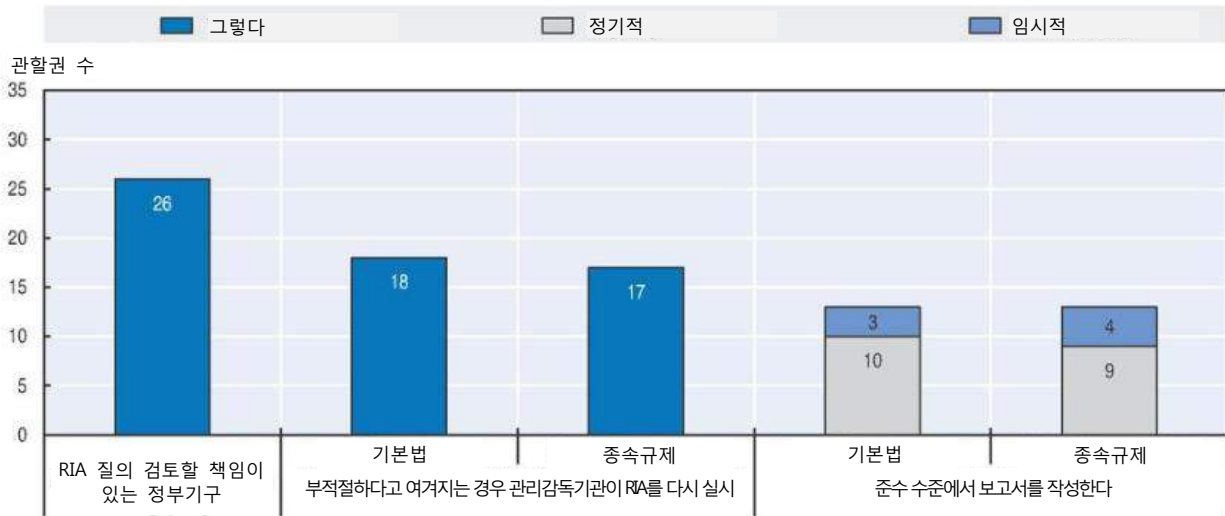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RIA 과정에 대한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그들 감독기관은 여전히 규제 품질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권고는 감독기관은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규제의 "품질 관리",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의 조사 역할,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에 대한 기여, 정책 개정 및 방법론의 개선에 대한 사후평가 협조.

"품질 관리" 기능은 개별 정책 평가에 대한 감시 및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한 제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영향평가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26개국은 설문조사의 응답에 근거하여 내각 외부에도 RIA의 품질 검토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을 갖는다 (그림 4.7).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가 "문제제기(challenge)" 기능, 즉 감독기관이 RIA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그것을 해당 부처 및 규제기관에 반송할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19개국에서만, 이들 기관이 RIA(법률 또는 종속규제에 대한, 또는 둘 다에 대한 영향평가)를 개정을 위해 반송할 수 있다. 이것은 시행되는 규제가 "그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RIA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여러 국가의 감독기관들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RIA 초안이 다음의 승인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서로 다른 절차를 갖고 있다. 이들 방법은 담당 부처 설득을 위한 공식, 비공식적 수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RIA가 규제 승인의 다음 단계로 이송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 조사결과를 내각 사무실이나 각료 회의에 전달한다고 설명한다. RIA 검토 기관이 RIA를 승인

그림 4.7. RIA의 관리감독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03>

하지 않은 6건의 사례가 공개된다. 이것은 더 높은 투명성에 기여하며, 또한 부처가 그들의 RIA 품질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4.8과 같이, RIA 반응의 근거는 (행정상의 부담과 실질적인 비용을 포함하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규제의 이익과 비용, 정책 개입의 정당화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규제의 대안에 대한 평가 부족 등을 포함한다. 국가의 사례는 박스 4.7을 참조한다.

2012 권고는 국가는 "규제정책의 시행 및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보고서는 규제영향평가(RIA)와 같은 규제 도구가 실제로

그림 4.8. 관리감독기구가 개정을 위해 RIA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토대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상기 그림은, 관리감독기구가 기본법 또는 중속규제에 대한 개정을 위해 RIA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토대가 있음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29>

박스 4.7 캐나다의 규제절차

캐나다에서 규제의 승인절차는 행정명령법 (Statutory Instruments Act, SIA)의 적용을 받는다. 캐나다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의 규제가 있다:

- 총리 (Governor in Council, GIC) 규제: 이 규제는 재무위원회 (Treasury Board) 장관이 현재 명시한] 여왕의 추밀원 (Queen's Privy Council)의 조언에 대한 총독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내각이 규제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 장관 규제: 법에 의해 개별 장관에게 주어진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
-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GIC 또는 장관 규제: 이들 규제는 금융에 대한 영향이 있거나 부처의 활성화 조치가 GIC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권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무위원회(TB)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GIC 규제를 개발하는 과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분석:** 각 부처는 분석을 수행하고, 제안에 대한 설명, 검토 중인 대안, 비용편익분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규제준수, 집행 메커니즘 등을 포함하는 규제영향평가서 (RIAS)를 개발한다. 그들은 '캐나다 사무국 재무위원회(TBS-RAS)'의 규제업무분야 (Regulatory Affairs Sector)에서 RAISE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후원 장관의 승인.** 제안된 규제 패키지는 후원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전공표 또는 사전공표 면제 및 최종 승인 등을 제시한다. 규제가 GIC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권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처는 TBS에 제안을 보낸다.
- **TBS-RAS의 검토:** TBS-RAS는 규제관리에 대한 내각의 지침과 정부 사업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며, TB 검토를 위한 브리핑 노트를 준비한다.
- **TB에 사전공표 요청:** 규제안이 TB에 처음 제출될 때 후원 장관은 캐나다 관보 파트 I에서의 사전공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사전공표는 제안에 대한 대중의 평가나 의견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30일, 국제 무역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75일 동안). 해당 부처는 개정된 규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며, 반영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 **GIC 승인에 대한 TB 권고:** TB 장관은 GIC에 의한 규제안 승인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다. 승인되는 경우, 총독이 규제안에 서명하면 발효되고,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 기록에 등록된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부처는 규제안을 수정하여 승인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돌아갈지 아니면 규제안을 완전히 폐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인용, www.tbs-sct.gc.ca (2015년 2월 16일 접속).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표조사 (Regulatory Indicators Survey)는 그러한 보고서가 발간된 증거를 거의 수집하지 못하였다. 관련한 영국 사례가 박스 4.8에 포함되어 있다.

RIA 과정에서, OECD 국가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림 4.9의 데이터는 의외이며, 다소 우려가 되는 자료이다. 소수의 OECD 국가만이 일반 대중과의 협의를 위한 RIA 문서 공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기본 규제 (primary regulation)의

박스 4.8 영국의 RIA 시스템 성능 평가

2012년 9월 영국의 국립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보고서 "증거 제출: 규제 통제(Submission of evidence: controls on regulation)"를 발행하였다. 그것의 주요 목표는 영국의 규제개선집행위원회(Better Regulation Executive)에 의한 규제 관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인정한다 - "규제는 많은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지만, 일부 규제는 추가의 비용을 야기한다. 다음 정부는 경제 성장 및 자발적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부담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1998년 도입 이후 영향평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된 주요 도구 중 하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지출의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의 관리를 지원하는 부처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다섯 부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 프로세스를 조사한다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및 Skill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Department for Work 및 Pensions; 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및 Rural Affairs; 및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그들이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재무성숙도 모델 (Financial Maturity Mode)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의 세부사항을 조사했다:

- 거버넌스 및 리더십
- 계획
- 모니터링
- 의사결정 및
- 성과보고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 알게 된 전반적인 결론은 부처들은 재무성숙도 모델의 원칙에 대한 모든 요소를 보여주었고, 일부의 경우 강력한 실천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평가검토를 통해 부처들은 제기된 규제 개입에 대한 일관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시스템은 규제개선 집행 (Better Regulation Executive) 지침 및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ory Policy Committee) 요건에 따른 영향평가의 완전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검토에 따르면, 부처들은 아직 규제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자원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대신 현재 그들의 초점은 규제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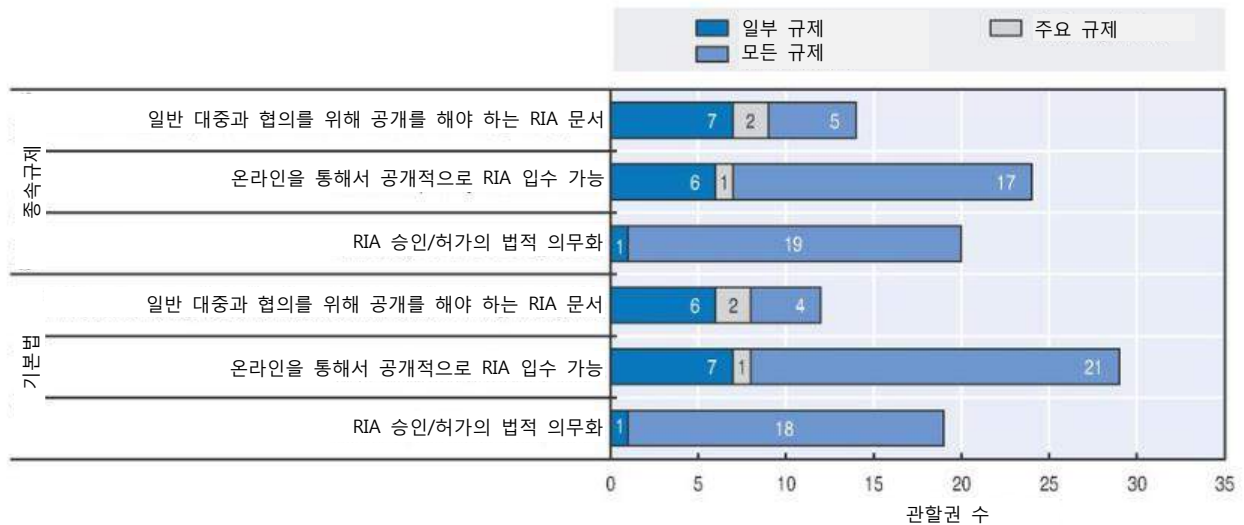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검토해야 할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소수 제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그 희소한 자원에 집중하기 위한 비례의 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 적용의 필요성; 규제개선 집행 및 부처들은 어떤 규제가 가장 큰 비용을 부과할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기업의 부담 감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출처: 2014 규제지표조사 결과 및 국가감사원 (2012)에서 인용, 증거 제출: 규제 통제, Better Regulation Executive, 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2/09/controls_on_regulation_2012.pdf (2015년 2월 22일 접속).

경우, 그 수는 더 적다.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 시대에, RIA에 대한 공개 자문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RIA 절차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ICT 및 웹기반의 툴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는 아직도 RIA 문서

그림 4.9. RIA에 관한 공공협의를 검토 메커니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37>

를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들 국가의 경우, ICT의 활용이 RIA 과정을 대중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멕시코의 RIA 자문과정은 ICT 사용의 이점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자문이 바람직한 공공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RIA 시스템에 대한 합의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전략이 있다 (Renda, 2015).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첫째,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특정 규제 개입과 관련된 위험 수집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규제안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 둘째, 제안의 내용에 대한 자문과 RIA 문서에 대한 자문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RIA 문서는 특히 유용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그 문서는 바람직한 특정 정책 옵션에 이르기 위해 사용된 문서의 구조, 사용된 데이터, 및 채택된 분석의 질적 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 셋째, 자문문서로 제안의 (또는 RIA의) 어떤 측면이 검토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것은 이해관계자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서 및 RIA의 다른 측면에 대한 의견도 허용되어야 한다.
- 넷째, 이해관계자가 자문에 응답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위 최소한의 상담(자문) 기준은 대부분 최소한의 기간(몇 주간)을 포함한다. 유럽연합(EU) 수준에서 최소의 기간은 최근 12주로 증가한 반면, 비록 대통령 행정명령 12866 및 13563이 기관들은 자문을 위해 최소 60일 이상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지만, 미국은 공개 의견수렴 최소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기관들은 통상 30일 정도를 제공하며, 많이 복잡한 규제안에 대해서는 종종 더 긴 기간을 허용한다.

박스 4.9 멕시코 RIA의 자문

멕시코에서의 자문은 별개의 두 법률에 의해 수립된 요건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연방행정절차(Federal La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는 RIA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공공 자문의 요건을 설정한다. 둘째, 최근에 채택된 투명성 법안은 RIA 과정 자체와 무관한 일반적인 자문의 요건을 설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모든 규제안을 관련 부처 또는 규제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IA 과정 자체는 공공에 의한 소중한 자문의 기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특히, COFEMER는 그들이 수신하는 모든 초안 RIA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웹사이트 www.cofemer.gob.mx에 게시한다. 광범위한 RIA 관련 문서에 대한 이러한 일반화된 공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아마도 유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초안 RIA에 대한 COFEMER의 반응을 공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절차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인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들 자료는 평가 분석의 약점을 강조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그들이 소유한 데이터 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안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그 제안의 장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 교환의 기초를 제공한다. COFEMER는 RIA 관련 문서의 광범위한 공표는 규제기관이 COFEMER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그것은 RIA 프로세스의 핵심적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초안 RIA는 자문을 위해 적어도 20 근무일 정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자문기간이 표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COFEMER가 RIA 문서에 대한 초기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COFEMER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안 RIA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효과적인 자문 참여를 지원한다.

출처: OECD (2014), 멕시코 규제정책: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견해,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338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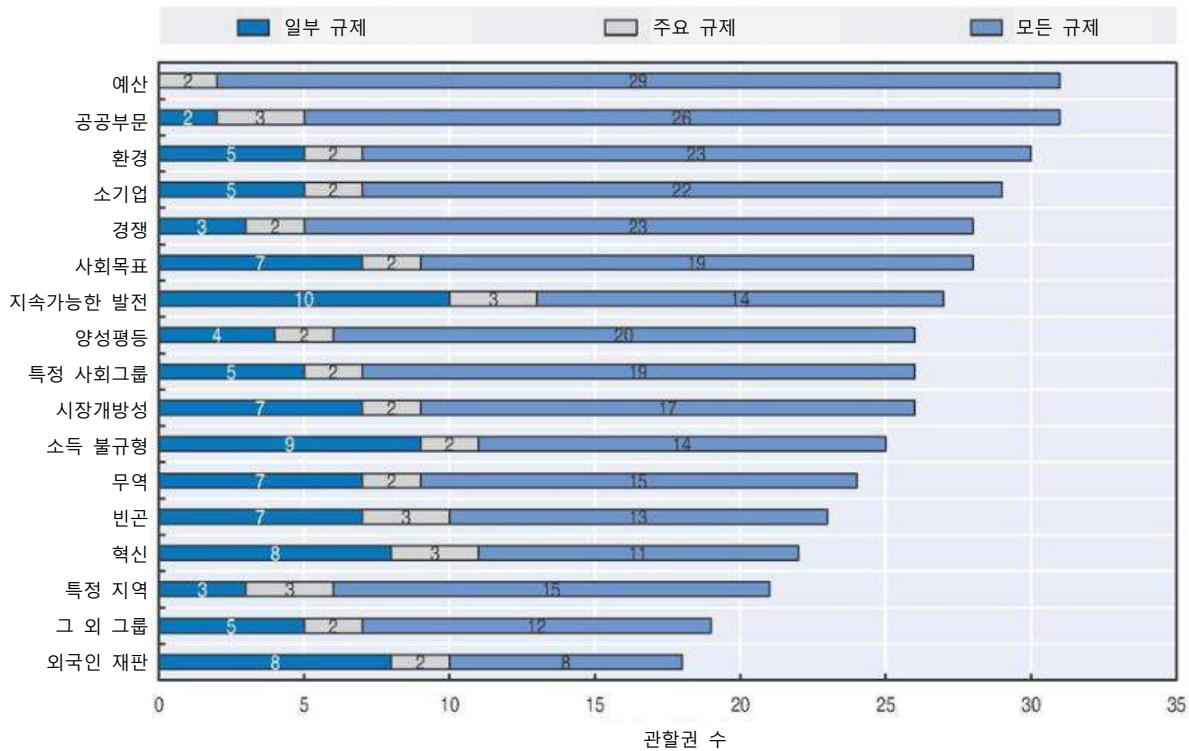
- 다섯째, 정부는 자문에 의견을 제출한 각 당사자에게 그들의 의견이 채택된(또는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규제 수립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너무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정부는 RIA 및 규제정책의 적용은 국가의 규제 및 정치논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임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중의 RIA 가용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 및 규제를 개선할 학습 과정으로 작용해야 한다.

국가들은 RIA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정책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림 4.10은 RIA 과정을 통해 측정되는 영향의 범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국가가 예산, 비용, SME,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비경제적 영향의 평가는 더욱 혼합적이다.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특정 사회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잘 커버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료는 많은 사회정책 문제(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 양성

그림 4.10. RIA 시의 영향평가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42>

평등, 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초점을 별로 두지 않음을 보여준다 (OECD, 2015, 출간).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보다 적게 연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8개국이 국제적 규제 협력으로 해당 영향을 평가하지만, 단지 8개국 만이 시속적/영구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는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Renda, 2015). 관련 정보의 제공 여부 또한 문제로 남아있다. 정책결정에 점점 많은 관련 요소들(예를 들어, 사회적 영향; 기본 권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간의 상호작용 및 누적효과에 의한 영향 등)을 통합할 능력은 제한적이다.

RIA는 규제 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OECD는 효과적인 규제 관리의 핵심적 과제는 규제의 설계 및 개발에서부터 그것의 구현 및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규제 조치들 간의 조정임을 인정한다 (OECD, 2011). 이 과정에서 RIA는 증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정책 옵션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또한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를 통해 다른 사이클 단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규제 관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박스 4.10은 규제의 실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예를 보여준다.

박스 4.10.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향후 감독 및 평가 계획

영향평가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지침은 새로운 규제안은 그 실제적인 영향이 감독 및 평가될 방법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전체 정책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영향평가 (impact statement, IA)는 해당 정책 수단이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추적하고 향후의 정책 변경을 전파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및 사후평가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향후에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책의 변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그 지침은 IA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준비 (지표 세트의 정의 포함)
- 원하는 옵션 관련 주요 정책목표에 대한 핵심 지표
- 선호하는 옵션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및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

또한 이 지침은 지표들은 정책의 목적 (그리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달성된 정도에 대한 측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기본 데이터는 사용이 용이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데이터 부족이 IA의 중요한 문제라면, IA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정책 평가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개략을 기술한다."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15), "영향평가지침", Better Regulation, 마지막 업데이트 2015년 5월 19일,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ugchap3_en.htm. (2015년7월7일 접속)

참고문헌

- Better Regulation (2015), "Stakeholder Consultation Tools",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tool_50_en.htm (accessed 25 May 2015).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14), "Small Business Appeals Champions and non-Economic Regulators",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097/bis-14-674-small-business-appeals-champions-and-non-economic-regulators-impact-assessment.pdf (accessed 16 February 2015).
- National Audit Office (2012), "Submission on evidence: Controls on regulation", Better Regulation Executive, 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2/09/controls_on_regulation_2012.pdf (accessed 22 February 2015).
- OECD (2015, forthcoming),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Better Regulation: The rol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4), Regulatory Policy in Mexico: Towards a Whole-of-Government Perspective to Regulatory Improv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3389-en>.
- OECD (2012a), *Evalu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ase of the Chilean Chamber of Depu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63-en>.
- OECD (2012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 OECD (2011),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pporting Economic Growth and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6573-en>.
- OECD (2010),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2939-en>.
- OECD (2009),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tool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7110-en>.
- OECD (2008a), "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Guidance for Policy Makers",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ia.htm (consulted January 2015).
- OECD (2008b), "Introductory Handbook for Undertak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ia.htm.

- OECD (2005),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www.oecd.org/fr/reformereg/34976533.pdf (consulted April 2015).
- OECD (1997), *Regulatory Impact Analysis: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2150-en>.
- Renda, A. (2015),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Regulatory Policy",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TSO (The Stationary Office) (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www.legislation.gov.uk/ukpga/2015/26/pdfs/ukpga_20150026_en.pdf (accessed 24 May 2015).

제5장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거버넌스 사이클의 종결

정책평가는 20세기에 제도화된 관행이 되었으며, 규제정책은 예외가 없다. 하지만 규제평가는 규제영향평가(RIA)을 통해 주로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후평가는 법적 수단의 최소 개발 수준을 유지한다. 국가관행은 이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훈은 수많은 영역에서 사후평가의 적용을 통해 학습되며,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장은 사후평가의 논거를 정의하며, 예상 가능한 접근법들과 실제적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 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요 결과

동향

일단 발효되면,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 실제로, 직접적 및 간접적인 사건 및 의도치 않은 결과를 포함한 규제의 효력 및 영향력이 충분히 평가되는 것은 집행 이후에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호 또는 기술적 진보에서의 변화로 인해 규제는 시대에 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들이 여전히 필요하며, 타당하며, 합목적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평가는 제도적인 관행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 행정에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 이러한 동향 및 평가 문화의 중요성의 확인하기 위하여, UN은 2015년을 국제 평가 원년으로 정하였다. 하지만 평가 문화는 부문 및 정책 현장에 걸쳐서 불균등하게 파급되어 있다. 규제 정책에서, 평가는 KIA 과정을 통해 주로 사전적으로 실시된다. 공공 지출 또는 서비스 인도 등과 같은 기타 부문에서, 사후평가는 보다 넓게 파급되어 있다.

규제품질의 사후평가의 중요성을 돌이켜 볼 때, 2012년 규제 정책 및 지배에 관한 협의회 권고안은 “사후 분석을 통한 기존 정책들의 평가는 규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필요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일차적 및 종속적 입법에 대해서 규제제안 내용에 대한 사후평가 수준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간의 관행은 크게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통해 혜택을 본다. 이것은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한 방법론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전략의 개발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후평가 연습은 행정적 부담의 감소 또는 경쟁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둔 원칙에 기초한 방식에 따라 실시되었다. OECD 국가들은 정책적 성과에 특히 역점을 두고 전체 부문에서의 법률 및 규제의 누적적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노력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 보건, 에너지 등과 같은 전반적인 규제계획의, 또는 SME 규제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관점에서의 검토로 이어진다. 아울러, 조사 결과는 국가들이 초기에 확인된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는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후평가가 규제수단 중 최소한으로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유망한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인 사후평가의 자원 함축성에 대한 국가들의 잠재적인 우려를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 참여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은 심도 있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문간 및 국가간 평가의 실시는 부문/경계선을 넘어서 학습되는 접근법 또는 교훈에서 공통성 (commonality)이 존재할 경우, 노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는 규제의 수명이 다해갈 무렵에는 최종 단계로서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집행

과 관련한 잠재적 개선 및 문제점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규제 사이클에 대한 고의적이고, 책임 있는 “회고 (loop back)”로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 영역

전략은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잠재적인 “평가 피로감”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우선 순위 선정 및 순서화해야 한다. 정치적 및 기술적 도전으로 인해서, 평가는 여러 해 전에 규제되고 있는 것을 소급적으로 조명하더라도 동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부문별 규제의 개별적 평가를 전반적인(overarching) 검토와 통합시키는 것은 평가의 유용성을 강화하고, 연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분석 노력은 평가되는 규제들의 영향력에 비례해야 한다.

전반적인 지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급적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 방안은 기존 규제 환경의 소급적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채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 및 사후 단계 사이에서 긴밀한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영향 분석 과정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수많은 OECD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공식적 지침으로 표기된다.

국가들은 개별적인 규제의 영향평가로부터 벗어나서, 기존 규제계획 내에서 전반적인 준수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기타의 정책 수단들과 더불어 규제평가를 포함한다. 광범위한 규제영향력의 특성은 효율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방법론 및 역량은 이와 같은 목표 지향적이지만 깊이 있는 검토를 취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위험 규제, 특히 투자 흐름,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소비자 복지 및 대중의 보호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기술적 패턴이 검토되어야 한다.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 행정적 역량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가를 위한 절차적, 방법론적인 지침의 발행을 포함한다. 지침은 인과 관계를 명시 및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행정적 부담 및 직접적인 이행 비용을 초과하는 영향(누적적 및 보다 복잡한)을 평가 및 비교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의를 제공하고, 데이터 채널을 명료화해야 한다.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표준은 제도적 학습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우수한 관행 라이브러리”를 공유 및 구축하는 데이터의 용이성을 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조직적 관점에서 볼 때, 평가 기관 또는 실무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결부된 중추적인 협력 및 감독 기관은 우수한 관행들을 정리하고 평가 방안들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우선 순위 부문들을 명시하기 위하여 사후평가 및 전략을 크게 지원할 수 있다. 효과적인 협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은 실제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혁신을 필요로 하는 부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통상적인 협의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의 최종 사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계획된 평가 캘린더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평가 활동을 구성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증대하는 데 추가적으로 기여한다.

소급 분석의 시기 적절한 발행 역시 필요하다. 평가 보고서는 전반적인 입법 사이클을 공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읽기 쉽고, 관련 사전 영향평가(동일 포털에서 발행되는)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 기능의 정기적인 이행 평가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의회는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실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론: 정책평가 논거

실제 세계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단일한 출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들은 이미 규제되고 있다. 흔히 문제점은 기존 규제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현재의 법률적 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후평가는 정책을 계획, 설계, 갱신 및 집행하고, 추가적인 규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필수적인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규제가 적용될 때 정책의 trade-off 및 시너지(정책 통합)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구조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정책 결정에 기여하며, 잠재적인 스트리밍 (streaming) 효율성을 명시한다(규제부담의 감소).

사후영향분석을 사용하여 규제가 채택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가 주장하듯이, “모든 새로운 규제가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규제가 처음에는 타당하고 비용이 효율적일 경우에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장 및 기술에서 또는 사람들의 기호 및 태도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누적은 비용 증가를 초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호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실행된 규제의 평가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수단이 되며, 공공 기관들의 신뢰를 초래할 것이다. 평가 방식은 규제 과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를 발전시킨다. “참여 감시 및 평가는 기존의 감시 및 평가 계획 내에서 참여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과정을 개시 및 수행하며, 조사 내용으로부터 배우거나 혜택을 보는 급진적인 재고 (rethinking)와 관련된다.” 이것은 OECD 국가들에서 별로 이해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본질적인 형태의 이해관계자 개입이다.

사후평가의 제도적 및 체계적인 채택은 규제계획 수립하고 규제 이행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 등과 같은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제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존의 달성 수준 위에 구축되는 공공 관리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표자로부터의 정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박스 5.1).

박스 5.1. 규제검토 논거로서의 불필요한 요식절차 타파: 영국, 미국, 독일

영국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법의 개념 및 관행은 입법 과정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사전 및 사후 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약정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통합되어 왔으며, 의회는 실무적 고려를 하고 있다.

영국은 탄탄한 평가를 국내 및 유럽 정책 과정의 주요 요소로서 간주한다. 영국 정부에 의한 구체적인 개입 부문은 SMEs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부담의 감소이다. 규제의 효과적인 평가는 증가에 기초한 정책결정, 제한된 공적 자원의 효과적인 목표 수립 및 위험 관리의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된다. 영국 정부가 보기에는 이러한 요인들의 최소화는 영국에 대한 핵심적 EU 성장의 우선 순위를 갖는다.

2013년 10월에, 영국 수상의 EU 규제에 기초한 사업 TF 팀은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개혁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COMPLETE 원칙에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 감소의 중요성을 예시한다.

미국에서 최근의 정치적인 약정은 유사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회귀” 분석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 실무 명령 (EO) 13579을 채택하였다. EO 13563은 독립적인 연방 규제 기관으로 조치를 확장시킨 반면, EO 13610은 규제부담 감소에 역점을 두었다. 법률적 수단의 영향 및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연방 시스템에서의 참신성이 결코 아니지만, 연방 기관들에 의한 사후평가는 영성하고 비체계적으로 남아 있다. Coglianesi가 인정하듯이, “소급적 검토는 소급적 분석이 1970년대에 임시 및 매우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오바마 정부에 의해 채택된 최근의 조치들은 기존 평가 관행의 보다 노골적인 제도화를 추구한다.

이 약정은 실행 범위를 벗어나 있다. 미국 의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소급적 규제검토에 할애된 새롭고 독립적인 위임을 마련하는 입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동 약정은 특정한 기존의 규제들이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².

독일에서, 풍부한 평가 경험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제의 사후검토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검토가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입법 제안 내용을 뒷받침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하는 연방 장관의 연대 절차 규칙(CGO)의 조항과는 별도로 성문화되지 않았다³.

상황은 2013년 새로운 입법을 평가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국무장관의 관료제 방지 결의안 위원회를 채택한 후 변화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은 특정 임계 기준을 벗어나서 적용되는 법률의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1차 약정서를 구성하였다.

특히, 향후 규제검토는 다음과 같이 연간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규제가 시행된 후 3-5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EUR 1 백만에 달하는 시민의 자재 비용 또는 100,000 시간 지출
- 사업 부문에서 EUR 1 백만
- 공공기관들의 경우 EUR 1 백만

박스 5.1. 규제검토 논거로서의 불필요한 요식절차 타파: 영국, 미국, 독일 (계속)

1. 미국 신축성 법은 관련 기관들이 최종 규칙이 발행된 후 10년 내에 “실제적인 중소기업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규칙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아울러, 실무 명령 12866(1993)은 해당 기관들에게 “동 규제들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관이 기존의 중요한 규제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O'Connor Close 및 Mancini, p.23 및 Steinzor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원칙적으로, “소급 규제검토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6월에 의회에 의해 도입된 이른바 “불필요하게 성가신 법으로서의 규제를 찾아내서 제거하기” 또는 동등한 강제적 요건을 수반하며 “규제 개선 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하며, 2013년 7월에 상원에 의해 도입된 법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진전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RegBlog(3014)을 참조하기 바란다.
3. GGO, 44.7항 참조. 국가 규제 관리 협의회는 연방 법률 초안의 정밀 조사를 통한 관련 계획의 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다.
4. http://ec.europa.eu/smartgugulation/impact/best_practices_examples/docs/de/evalutierungskonzept_st_beschluss_231_13.pdf.

출처: Allio, L. (2015), “규제의 사후평가: 국제관행의 개념과 개요”, 규제정책 관점에서: 2015년 OECD 규제정책전망의 독자 가이드, OECD Publishing, Paris.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규제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및 의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지난 3년 동안 단 20개의 국가들만이 기존 법령의 사후평가를 위한 강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개 국가들은 기존 규제의 모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들이 지난 3년에 걸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사후평가의 보다 공식적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후평가의 특성

OECD는 평가를 “조사 내용의 신뢰성 및 사용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객체의 중요한 측면들(즉, 정책, 규제, 조직, 기능, 프로그램, 법률, 프로젝트 등) 및 관련 가치를 다루는 체계적, 분석적 평가”라고 정의한다. 일부 국가들은 소급 방식으로 실시되는 평가 유형들간의 편차를 정의하려고 시도했다 (박스 5.2 참조).

평가는 “감시(monitoring)”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시는 합의된 스케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이행 평가를 의미한다. 감시 활동은 행정적 관리를 제공하는 정책적 개입의 명시된 지표에 기초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목적의 추진 및 달성의 지표를 통한 해당 당사자들 및 기타 주주들과 관련된다.

평가는 “조사”, “감사” 및 “관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로 각각의 목적면에서 다르다. “평가가 영향 실적에 관한 정보 및 특정 정책을 생성하기 위해 의도될 경우, 조사는 지식의 생성에 역점을 두며, 관리는 표준 준수에 역점을 두며, 감사는 고용인 및 관리자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방식을 판단한다.”

평가를 개시하는 목적은 훈련의 특성 및 형태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Harrington

박스 5.2. 소급분석 개념의 해석: 영국

정책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1차/2차 입법의 검토하기로 약정한 영국 정부는 정책평가, 사후 입법 정밀 조사 및 사후 집행 검토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 평가는 적절한 검토 방법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되는 체계적 평가를 나타내는 일반적 용어이다.
- 사후 집행 검토(PIR)는 영향력 평가에 포함되는 사전 평가를 보완하는 규제정책 검토를 나타낸다.
- 사후입법 정밀검사(PLS)는 1차 입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검토이다. 주요 장소는 의회이다. PIR과는 달리, 이 용어는 입법 및 부수적인 2차 입법이 이루어지는 수준(extent)의 검토를 포함한다.

입법이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상기의 2개에 공통사항이다. 이상적으로는, PLS (규제검토) 및 PIR (기본 정책 검토)은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출처: 영국 정부(2010a), "정책평가, 사후 입법 정밀 조사 및 사후 집행 검토간의 관련성 명시", 런던 사업, 혁신 및 숙련 기술 부서; 영국 정부(2010b),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 2차 입법의 사후 집행 검토에 대한 연구: 정부 반응", 런던 사업, 혁신 및 숙련기술부, www.publications.parliament.uk/ld200910/ldselect/ldmerit/43/43.pdf.

및 Morensterne에 따르면, 이행 평가(진도), 이행(산출) 또는 기능(성과)에 역점을 두는지 여부에 따라 3개의 주요 평가 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다.

- 준수 시험은 규제품질수단,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법률, 정책 또는 지침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이행 시험은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인 준수에 대한 문제를 벗어나서 실시되는 분석의 품질을 측정한다.
- 기능 시험은 규제수단,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의사결정 과정 및 성과에 실제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행 기간 이후 규제를 평가하는 것은 법령 개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가 실현되는지 여부에 주요 역점을 둔다. 이것은 소급 분석의 주요 목적이며, 2012년 권고안에서 권고되는 것은 이러한 분석의 체계화이다. 현재, 법률적 평가에 대한 지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식 또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하지만 Allio 및 Renda는 적용될 수 있으며, 표 5.1에 명시된 평가 계획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평가 기준을 제안한다.

사후평가는 Allio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메커니즘 및 실무 관행에서 구현된다. 호주생산성위원회는 [규제개혁의 명시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상이한 방식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것들은 박스 5.3에서 요약된다.

표 5.1. 설정과 평가체계의 원칙

<p>일반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 정책 목표는 현재 주요 문제점들을 다루는가? ● 효율성 - 정책은 인식된 요건 및 개입이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규명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가? ● 능률 - 결과는 사용된 자원을 정당화하는가? 결과는 보다 적은 자원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는가? 개입의 개별적인 부분들은 얼마나 일관성 있고 보완적인가? ● 효용 - 달성된 성과는 의도한 목표와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가? <p>추가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졌는가? 정보는 적절한 형태로 및 적절한 세부 수준으로 이용 가능한가? ● 정당성 - 재구입 효과는 있는가? ● 형평성 및 포괄성 - 효과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었는가? 적절한 정보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 지속성 및 유지 가능성 - 정책 개입의 구조적 영향은 어떠한가? 정책 개입간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가? 정책은 인식된 요건 및 개입이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규명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가?
--

출처: OECD (2010c), "부록 B,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 및 관련 영향평가"로부터 인용됨. 행정적 단순화는 왜 그토록 복잡 한가? 2010년 회고.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9754-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3023>

박스 5.3. 규제검토방식

생산성위원회 (PC)는 호주 및 국제적으로 우수한 실무 관행으로부터 인용된 다수의 우수한 설계 특성을 수록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접근법들을 검토하였다.

주식관리 접근법 ("우수한 가계부"로 간주되는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

- 규제기반 전략(RBS)은 예를 들어, 일체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타당성을 시험하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이행 지표 및 불만사항 감시를 통해 담당하고 있는 규제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활용은 규제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주식 흐름 연관성 규칙(SFLR)은 사전 및 사후평가간의 접점 위에서 작동한다. 그것은 기존 주식과 연결하는 규칙 및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규제의 흐름을 제약한다. 널리 인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은 "법규상의 예산" 및 "one-in one-out" 방식이다.
- 불필요한 요식절차 감소 목표(RTDR)는 규제기관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퍼센티지 또는 가치를 통해 기존 준수비용을 절감하도록 요구한다. 통상적으로, 동 목표는 행정적 부담 감소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프로그램된 검토 메커니즘(소정의 시간에 또는 효율적으로 정의된 상황이 발생할 때, 특정 규제의 이행을 검토한다).

- 소멸시효조항 (sunseting)은 특정 행위 명문화가 명백하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후(통상적으로 5-10년) 규제 행위의 자동 폐지를 명시한다. 이 논리는 구체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특정 규제 또는 모든 규제에 적용된다. 소멸시효 규제가 발효될 경우, 면책 및 연기가 포함되며, 우선적으로 적절하게 평가된 특정 규제가 제정된다. 이것은 준비 및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멸시효 규제는 검토 조항을 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과정 실패" 사후 집행 검토(PIR) (호주에서)는 사후평가가 사전 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일체의 규제를 토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PIR은 규제가 신속하게 또는 충분한 평가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패가 없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되었으므로, 부작용 또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보다 큰 잠재력은 신속하게 재평가된다.

박스 5.3. 규제검토방식 (계속)

- 사후검토 요건을 신설 규제에 명시함으로써, 규제기관은 문제가 된 규제가 어떻게 후속적으로 평가되는지를 간단히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연습은 RIA 준비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요건들은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특히 영향력이 있다. 그것들은 규제 변경이 논란이 될 경우 확신을 제공한다

즉석 및 특수한 목적의 검토 (필요에 따라 실시):

- 사업적 부담에 대한 실적 평가 (stocktake)는 과도한 이행 비용이나 기타 문제점들을 부과하는 규제에 대한 사업적 제안 및 불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규제 개선 내용 및 추가 검토를 보증하는 영역들을 명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불만에 기초한 특성은 검토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
- “원칙 기반” 검토 전략은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 조항의 제거(합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또는 정책 통합 요구 등과 같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규제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본 원칙을 활용한다. 원칙 기반 접근법은 개혁 대상자의 일차적 명시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세부적인 평가를 수반한다. 이러한 형태의 접근법은 일반적인 실적 평가에 비해 더 요구되며, 자원 집중적이다. 하지만 검증(filtering) 원칙이 탄탄하고, 검토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경우, 이 방식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벤치마킹은 영역 및 정부 수준 전반에 걸쳐서 비교 실적, 주요 관행 및 개혁 모델에 관한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자원 집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대상 주제들은 반드시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한다. 벤치마킹 연구는 통상적으로 개혁 권고를 하지 않지만 주요 실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혁 옵션들을 명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심층적인” 검토는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 규제영역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때 매우 효과적이다. 동 검토는 규제의 적절성, 효율성 및 능률성을 평가하려고 시도하며, 기타 개입 형태들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맥락에서 볼 때, 공공 제출, 공공 정밀 조사를 위한 보고서 초안 발행을 비롯한 포괄적인 협의는 이 방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때, 깊이 있는 검토는 유익한 규제 변화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원을 구축하고, 정부에 의한 집행을 손쉽게 한다.

출처: 호주생산성위원회(2011), 규제개혁의 확인과 평가, 연구 보고서, Canber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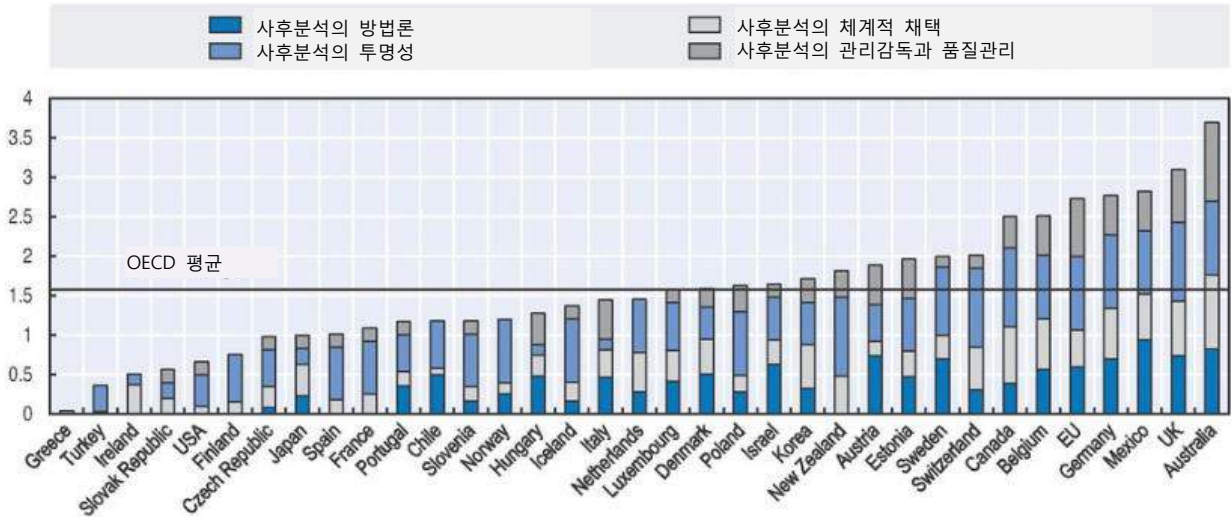
사후평가 관행

종합지표를 통해 본 사후평가 관행

4개의 주요 부문들에 대한 사후평가 조치를 위한 종합지표는 다음과 같다. i) 감독 및 품질 관리 ii) 투명성 iii) 체계적 채택 iv) 방법론. 감독 및 품질 관리는 사후평가를 감시하기 위한 기능들이 존재하며, 평가가 공개적으로 이용되는지를 측정한다. 투명성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과정들이 공개되며, 이해관계자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체계적인 채택은 비례성, 제도 정비 및 상이한 사후평가 유형들의 검토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요건들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방법론은 비용 편익 분석, 목표 달성, 규제 일관성 등과 같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데 어떠한 평가들이 사용되며, 방법론을 집행하기 위해 수립된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여 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차적 및 종속적인 입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채택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투명성 척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5.1 및 5.2 참조). 하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많은 국가들의 채택은 충분히 실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법론을 수립해야 하거나 일차적 또는 종속적인 규제의 사후평가의 감시 및 품질 관리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후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요건 및 시스템을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충분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그림 5.1. 종합 지표: 기본법 수립 시 사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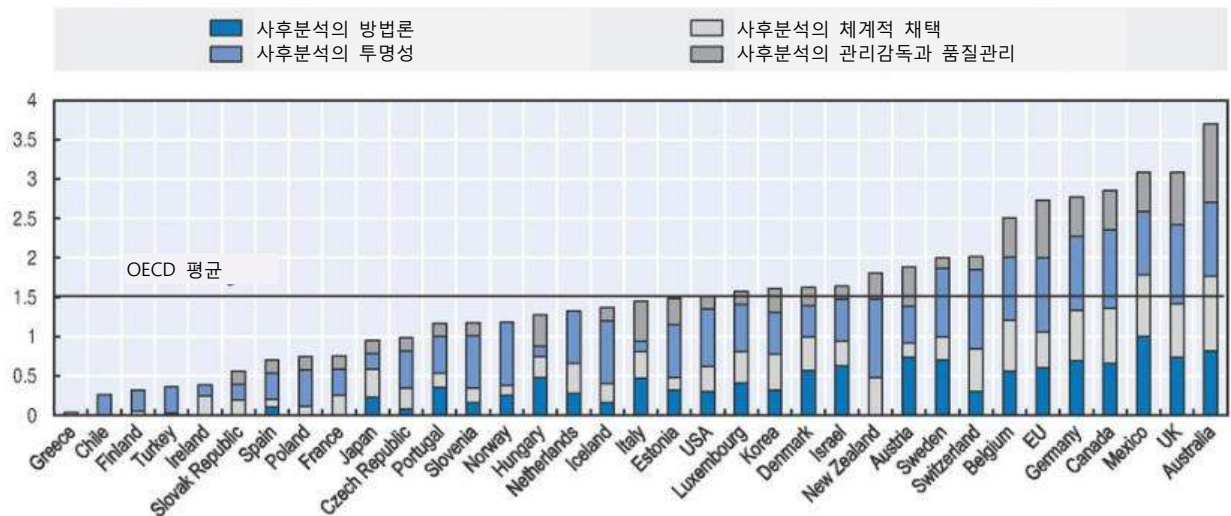


주: 행정부에서 개시한 기본법 수립 과정에만 해당되는 결과이다. 세로축은 종합지표의 4개 별도 범주들의 총합산점수를 나타낸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 종합지표의 최대합산점수는 4점이다. 이 그림에서 미국은 제외하였다. 미국에서는 모든 기본법들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기본법들을 행정부에서 개시한다. 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은 예외이다.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기본법의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개시한다 (각각 90.6%, 84%).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53>

그림 5.2. 종합지표: 종속규제 수립 시 사후평가



주: 종합지표에서 4개 별도 범주의 총합산점수를 세로축에 표시하였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66>

호주, 영국 및 멕시코는 종합지표를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사후평가의 실무 관행 및 집행을 보여 준다. EU 역시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C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보다 효율적인 규제 지침의 통합적 패키지의 일환으로 2015년에 개정된 평가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일차적 및 종속적인 규제에서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호주에서, 사후평가 또는 “사후 집행 검토(PIR)”는 효율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며, 규제 과정 내에서 기본 설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호주 정부 기관들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변화에 대한 사후 집행 검토(PIR)를 실시해야 한다. PIRs는 규제가 규제영향 검토(RIS) 없이 도입, 폐지되거나 크게 변화할 때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적절한 RIS는 최종 결정을 위해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이 RIS 요건 면제를 승인했기 때문이었다.

호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선의 실무 관행 규제에 대해 관계 부서에 의해 평가된 규제들의 경우, PIR은 규제 집행 후 5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 모든 PIRs는 규제 집행 후 2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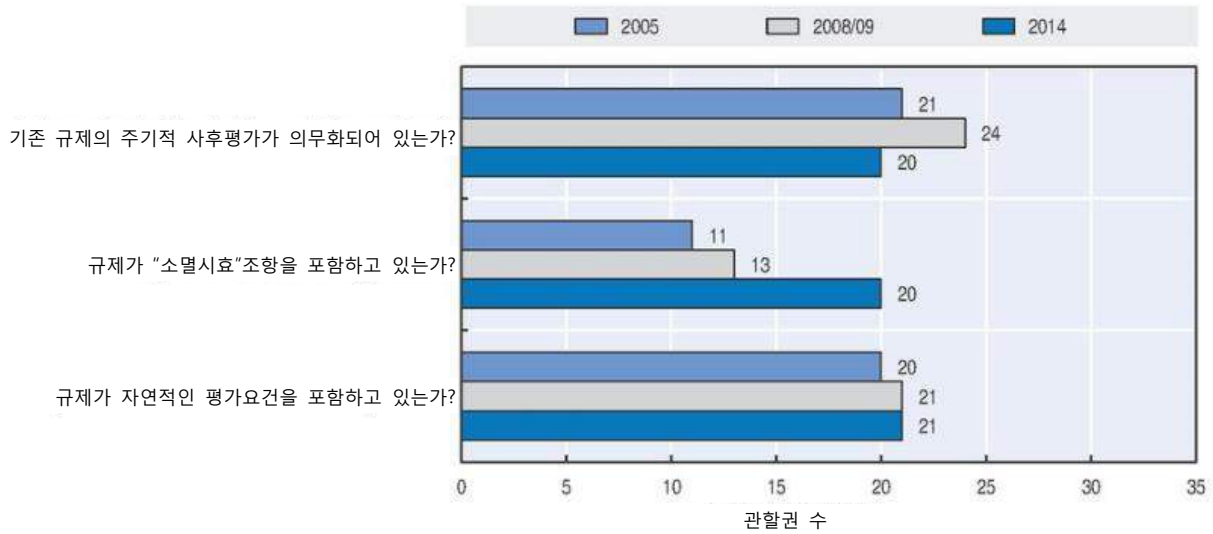
미국에서, 사후평가 또는 “소급적 검토”는 2012년 5월 10일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발행된 실무 명령 13610호에 의해 최근에 제도화되었다. 실무 명령 13610호를 통해서, 해당 기관들은 소급 검토 활동의 진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13년에, 해당 기관들은 신규 요건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획 검토서”를 발행했으며, 초안을 개정하였다.

사후평가 관행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사후평가 실시 경험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국내에서도 정부 내의 상이한 부처 또는 기관들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후평가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이해 수준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2008/2009년 이후로 규제 관련 문헌에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수준 발전이 존재한다. 현재 규제 이행 및 목표 달성 수준 평가를 포함하는 사후평가에 대한 세련된 이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극소수의 OECD 국가들은 사후평가를 실제로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헌신적인 지배 구조는 사후평가 기능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호주는 사후평가를 규제제도에 정착시켰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국가들이 사후평가가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3년 동안 정기적인 사후평가 훈련을 실시하였다. 보다 많은 국가들은 비록 강제 요건은 아니지만 특정 부문 또는 우선 정책 분야에서 사후평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 사후평가를 위한 요건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78>

대부분의 사후평가 검토는 원칙에 기초하지만 주안점은 행정 부담, 경쟁 및 준수 (compliance) 비용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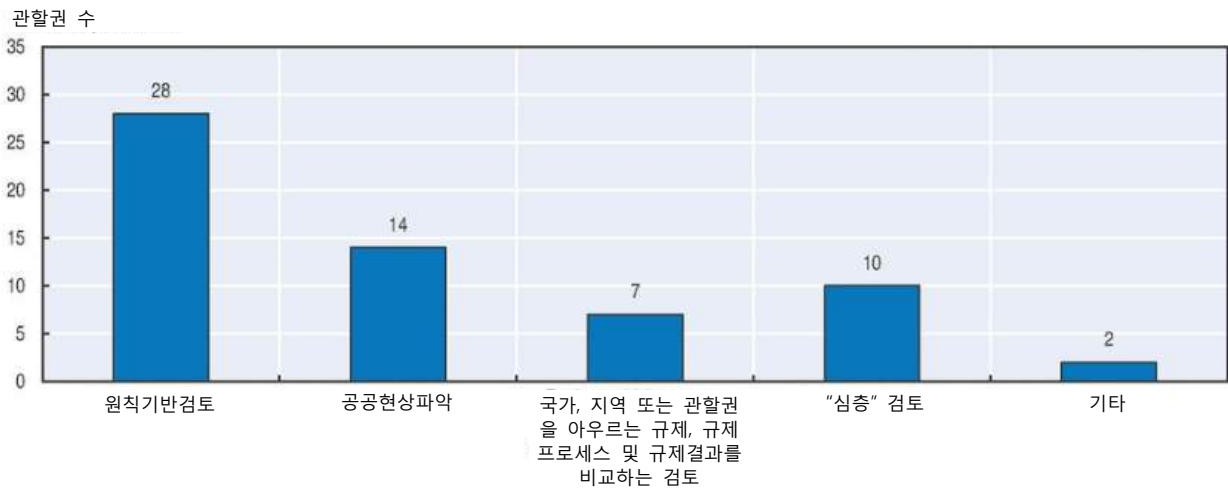
지난 3년 내에, 단 7개 국가들만이 일차적 및 종속적 입법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자주 실시하였다. 지난 12년 동안에 걸쳐서 OECD 국가들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사후평가는 원칙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정책 구조(그림 5.4) 등과 같은 특성이 아닌 특성들에 기초하였다. 이것들은 주로 박스 5.3에서 설명되는 보다 포괄적인 사후평가의 부분 집합인 행정 부담 감소 평가였다. 경쟁에 기초한 평가는 OECD 국가들에 의한 가장 인기 있는 원칙에 기초한 사후평가였으며, 그 다음은 경쟁 비용에 기초한 평가였다. 이 평가는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후평가 관행을 확장하기 위한 일차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후평가 방법론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하는 성과 또는 잠재적인 효율적인 방법들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규제영향을 확인 및 측정하는 것은 사후평가에서 사용되는 주요 방법이다(그림 5.5). 조사 응답자들의 절반 가량의 경우, 사후평가는 목표 달성 평가를 포함한다. 법률적 일관성 평가(국내외적인)는 국가들의 약 1/3에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준 비용 모델을 활용한 이행 평가를 통한 행정 부담 감소에 기초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후평가의 주요 원칙은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규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사후평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조사 결과들은 법률적 부담의 부분적인 사후평가에 역점을 두며, 드물게는 규제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들이 달성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Allio의 연구 결과를 확인해 준다. 부문들에

그림 5.4. 최근 12년간 수행한 규제저량에 관한 특별검토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80>

그림 5.5. 사후평가에 사용한 방법론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및 슬로베니아는 2005년도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해당 연도에는 이들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2994>

걸쳐서 법률적 영향을 조사하는 포괄적인 검토가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함축성 내에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식품 안전성 및 공중 보건, 환경 보호 또는 작업장 안전성 등과 같은 위험 관리 부문에서 특히 적용된다.

잠재적이고, 혁신적인 사후평가 형태는 법률 제도의 국가간 비교를 포함한다. 국내 법률 환경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가, 지역 또는 관할 구역들 사이에서(박스 5.4) 규제,

박스 5.4. 영역간 규제검토: 호주 및 뉴질랜드

2009년에, 호주 및 뉴질랜드는 특히 식품안전성에 영향을 두고 사업 규제의 이행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불필요한 이행 비용을 제거하고, 보다 큰 일관성을 달성하고, 중복 규제 감소라는 절대 명제에 응답하였다. 보고서는 공동체에 대한 사업 및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성 규제 및 집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변명의 기회를 명시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 부담이 관할 구역에 걸쳐 남아 있는 부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일부 규제요건.
- 주요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제에 따른 국가 표준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느린 진척 속도.
- 특정 식품의 위험 평가에 기초한 관할 구역들 간의 불일치.
- 일부 지역들에서 활동하는 사업체의 경우, 규제의 비용 및 강도 면에서 호주 지역 협의회 및 뉴질랜드 지역 당국들에 걸쳐서의 불일치.
- 뉴질랜드 식품 수출업자의 규제와 비교한 호주식품수출업자에 대한 보다 높은 비용 및 중복 규제

국내 비교 검토 또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호주에서, 2010년 평가는 국가 및 하위 국가 관할 구역들에 걸쳐서 직업적 보건 및 안전성(OHS)에 관한 법률 요건과 관행에서의 차이점들을 확인하였다. 파생적인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 OHS 법률에 대해 진전시키는 시점에서 국내 규제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울인 후속적인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핵심적 입법 조항들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14 규제정책 질의서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제출 내용; 호주생산성위원회 (2009). 호주 및 뉴질랜드 기업규제의 성과 벤치마킹: Food Safety, Research Report, Canberra, www.pc.gov.au/projects/study/regulation-benchmarking/food-safety/report.

법률 과정 및 성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규제의 글로벌 및 지역적 특성과 사용되는 공/사 부문에서 상이한 법률적 개입 유형들을 감안할 경우 점차 중요해지는 평가 유형이다.

사후평가를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변화하며, 강화될 수 있다

사후평가 시 품질 관리 관행은 국가들마다 다르다. 경우에 따라, 정부 센터는 호주의 최선의 실무규제담당국, 독일의 규제 및 관리위원회, 헝가리의 수상 사무국 등과 같은 지침을 발행하거나 사후평가를 감시한다.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주요 책임은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부서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벨기에의 해당 부서들은 품질 관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독립적인 규제정책위원회는 사전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평가의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OECD 정부들 사이에서 사후평가의 전반적인 표준화 및 품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곳에 해당한다.

사후평가의 필요한 역량 및 개관의 지원은 강화 대상 영역이다

소급 검토의 수단이나 방법론에 관계 없이, 효과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 및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는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움을 줄 것이다.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 의무 및 절차 요건의 수립은 동전의 일면에 불과하다. 높은 품질 및 정책 관련 인도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소 표준 및 품질 감시를 실시하고, 평가를 설계, 관리 및 실행하기 위하여 평가자 및 데스크 관리자료를 지원해야 한다(박스 5.5).

모든 규제들의 사후검토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예상하는 데 실제적이거나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후평가를 채택할 경우 반드시 비례적이어야 한다. 표 5.2는 비례적 방식이 국가 선택의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일부 사례들을 제시한다. 일부 사례 국가들은 에스토니아, 독일 및 멕시코 등을 제외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임계 값을 수립하였다. 호주, 슬로바니아 등에서 규제 시점에서 정당한 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후평가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타 법률적 관리 수단 및 요건들과 연계가 존재한다. EC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수립과 사후평가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제공한다.

박스 5.5. 역량 구축 및 평가자를 위한 지원 제공: 캐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스위스

캐나다에서, 최근 진전은 연방규제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캐나다 공공서비스 학교 및 공동체 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 캐나다 공공서비스 학교의 법률적 과정들은 공무원들에게 캐나다 정부 전반에 걸쳐서 우수한 규제 관행 및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및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과정들은 비용 편익 분석 및 효과적인 규제영향 분석 명세서의 개발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 연방규제담당자 공동체는 공유된 방식 및 해결책을 개발하고, 지식 및 능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공유 및 혁신하기 위하여 규제전문가들에게 기회를 제공 및 통보하기 위한 기회를 뒷받침하는 부서간 실무 공동체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스마트 규제전략 구조 내에서, 집중 지원 및 협력은 국무장관에 의해 보장된다. 후자는 지침을 발행하며, 사내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전문 워크숍 및 세미나를 편성한다. 국무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평가 및 활동을 감독하며, 우수한 평가 관행을 감시 및 보고한다. 평가 기관들은 거의 모든 관계 장관회의에 참가한다. 특정 정책영역을 전담하는 일부 "평가 네트워크"가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구정책 또는 지역정책과 관련).

스위스에서, 연방관리수준에서 평가의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및 전문기술은 박식한 "평가 네트워크"를 덕분에 공유된다. 네트워크는 1995년 이후부터 존재하며, 평가 질문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되며,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온 12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출처: 캐나다 공공서비스학교 (2015), "연방규제기관을 위한 학습기회: 능력배양과 지식공유", www.cspc-efpc.gc.ca/BrowseCoursesBySubject/federalregulators-eng.aspx (2015년 7월 접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 "평가",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evaluation/index_en.htm (2015년 7월 접속); Confédération Suisse (2015), "Le réseau 'évaluation' dans l'administration fédérale", Office fédérale de la justice, www.bj.admin.ch/bi/fr/home/stat/evaluation/netzwerk.html (2015년 7월 접속); 호주생산성위원회 (2011), 규제개혁의 확인 및 평가, 연구보고서, Canberra, www.pc.gov.au/inquiries/completed/regulation-reforms/report/regulation-reform.pdf; Prognos (2013), "사후평가의 시행: 다른 국가에서의 모범관행과 경험"에 관한 전문가보고서, 국가규제관리협의회에서 위임한 보고서, Berlin, 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_02_24_evaluation_report/pdf?_blob=publicationFile&v=2

표 5.2. 사후평가에 사용되는 임계치/비례성의 사례

국가	사후평가에 사용되는 임계치
캐나다	호주 정부 기관들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변화들에 대해서 사후 집행 검토(PIR)를 실시해야 한다. PIRs는 규제가 도입, 폐지되거나 규제영향 명세서(RIS) 없이 크게 변화될 경우 또는 수상에 의해 발행되는 RIS 요건으로부터의 면제가 허용될 경우, 작성되어야 한다.
캐나다	수많은 법령들은 법령 자체의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사후평가가 지대한 영향의 발생을 입증하고 (에스토니아 입법 시스템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사후평가가 실시를 위한 규칙 및 계획을 통해 요구될 경우, 이러한 내용은 법률 초안의 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선 장관이 사후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유는 법률 초안의 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독일	평가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들은 시민, 사업 또는 행정부에 대해서 연간 1백만 유로 이상에 달하는 정규적인 이행 비용을 초래할 경우에 지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멕시코	COFEMER의 영향 "계산서"에 따라 높은 영향 기술 표준이어야 한다.
슬로바니아	규제가 긴급 절차에 따라 채택될 경우, 사후평가는 2년 후 실시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1차 원칙을 평가한다. EC는 원칙적으로 관련 부문에서 신규 제안을 하기 전에 관련 규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35>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평가의 충분한 잠재력은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사후평가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는 규제의 누적적 영향이 개별 규제 대신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C의 적합성 및 이행 프로그램 위원회(REFIT)는 EU 법률을 보다 단순화하고, 규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4년 6월, EC는 REFIT 실행에서의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단순화 및 부담 감소를 위한 수많은 신규 방안, 입법 절차에서 기존 입법을 폐지하고,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제안 내용의 취소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실적들 가운데에는 2014년에만 53개의 미해결 제안 내용의 취소, 13개 분야에서 2006년 이후로 행정 부담의 33% 감축이 포함되며, EUR 410억에 달하는 저축을 가능하게 했다 (박스 5.6).

박스 5.5. 누적된 규제영향의 대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및 미국

평가가 실시될 경우, 신규 규제의 총체적 영향은 부문별 수준 또는 종합적으로 단일 규제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정보 및 규제 문제에 관한 OMB 사무국(OIRA)은 전년도에 통과된 모든 신규 "지대한" 규제의 예상 비용 및 편익에 기초한 법률 보고서를 통해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OMB는 기관, 기관 프로그램 및 주요 법률에서의 연방 규칙 및 문서화에 소요되는 총체적 연간 편익 및 비용(계량화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영향을 포함한)의 추정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박스 5.5. 누적된 규제영향의 대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및 미국 (계속)

2012년에, OIRA는 기관들에게 규칙의 누적적 영향력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2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를 발행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EO 13563(2011)에 따른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공/사 부문들(특히, SMEs)에 대한 요건을 단순화하고, 부당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건들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규제의 순수 편익을 증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침서는 기관들에게 조기 협의 참여, 공적 요건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규칙결정에 관한 정보 및 사전 통보 요구의 활용, 비용/편익 분석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규 규제들 간의 관계, 특정 업계 또는 부문에 대해 명시된 다수의 규칙결정 요건들의 검토를 포함한 9개의 조치들을 요구한다.

2003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까지 OMB에 의해 검토된 주요 연방 규제들의 연간 예상 편익은 2,170억 미달러 - 8,630억 미달러에 달하는 합산 금액에 있는 반면, 연간 예상 비용은 570억 미달러 - 840억 미달러의 범위에 있다 (미국 정부, 2014, p.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법률을 보다 단순화하고, 법률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규제 적합성 및 이행 프로그램(REFIT)에 착수했을 때 유사한 과정에 접어들었다 (EC, 2015b). OMB 검토와 관련된 편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REFIT는 규제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유럽의회에 매년 보고할 의무는 없다. 검토의 범위는 사업에 대한 규제부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FIT는 EC, 유럽협의회, 유럽의회,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연대 방식을 요구한다.

2014년 6월, 이 위원회는 REFIT 집행 과정에 대해 보고했으며, 단순화 및 부담 감소를 위한 수많은 신규방안들, 기존 규제의 폐지 및 입법 절차에서 계류 중인 제안들의 폐지를 제안했다 (EC 2013, 2014). 성과들 중에는 2014년에 53개 미결 제안내용들의 취소 (2006년부터 약 300개), 13개 주요 지역들에서 2006년 이후 33%에 달하는 행정 부담의 감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EUR 410억에 달하는 저축을 초래하였다. 2015년 3월에, 신규위원회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수많은 미결 입법 제안내용들은 추가적으로 폐지되었다.

2015년 5월 19일에, 이 위원회는 "더 나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규제 - EU 아젠다"에 대한 통보의 일환으로 REFIT 집행 과정에 대해 보고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핵심 영역들을 강조하였다. 특히, REFIT 플랫폼은 2개의 현행 그룹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회원국 전문가들을 위한 것("정부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 사회동반자 및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을 위한 것("이해관계자 그룹")이었다.

스위스는 2013년에, 연방법에 기인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비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검토는 연방의회의 발안에 의해서 실시되었으며 13가지의 주요 부문에 대해 다루었다. 실제로 연방의회는 스위스에서 소위 "규제점검 (Regulatory check-Up)"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였으며, 이것은 독일 RCM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².

이 방법론은 투자와 재무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고용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접준수비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평가 프로세스의 핵심단계는, 기업들이 주어진 규제나 법적 체계에 따를 때 직면하게 되는 "행동의무 (action obligations)"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총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비용 (business-as-usual costs)" 간의 차액을 가지고, 관련 규제비용을 산출한다. 이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검토를 받게 되는 활동을 나타내는, 대안적인 (반사실적) 시나리오의 수립을 의미한다.

박스 5.5. 누적된 규제영향의 대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 및 미국 (계속)

평가 연습은 규제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누려 왔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연방위원회(FC)는 2014-15년 동안 30여 개의 단순화 척도를 명시하였다.

1. www.whitehouse.gov/omb/inforeg_reports_congress 참조. OMB에 대한 규제 의무는 미국 규제 알 권리법(2000)에 명시된다.
2. www.seco.admin.ch/aktuell/00277/01164/01980/index.html?lang=fr&msg-id=513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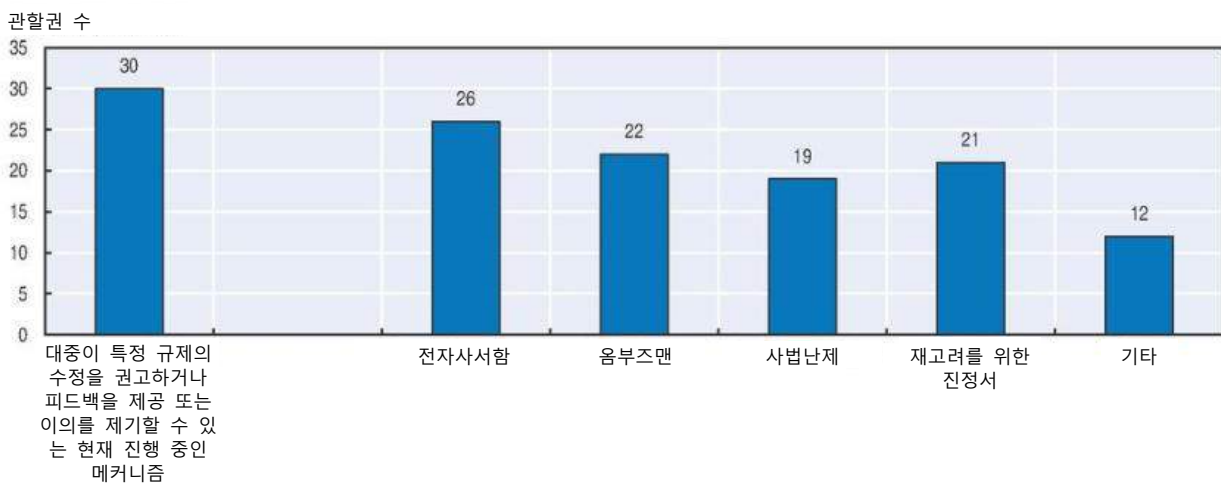
출처: 미국 정부(2012a), "규제의 누적적 효과", OMB-OIRA의 각서 (2013년 3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b), "EU 법을 보다 가볍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REFIT는 무엇인가",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refit/index_en.htm (2015년 7월 접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3), "규제 적합성과 성과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REFIT): 결과와 다음 단계", 2013년 10월 2일 COM (2013) 최종 68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4), "규제 적합성과 성과 (REFIT): 이행상태와 전망". 2014년 6월 18일 COM (2014) 최종 368 및 SWD (2014) 최종 192.

이해관계자의 사후평가 개입의 중요성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있다

사후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보다 폭넓은 공공 거버넌스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해관계자들을 기존 규제평가에 참여시킨다 (제3장 참조). 단 5개의 국가들만 사후평가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규제의 사전 평가와 사후평가 사이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IA와의 연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후평가 연습 (그림 5.6)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상이한 메커니즘이 있다.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벨기에에서와 같이 옴부즈맨 또는 의회 위원회를 통해서나 한국에서와 같이 기타 수단을 통해서 평가 과정을 개시한다. 이탈리아 및 폴란드 같은 기타 국가들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통신부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요청을 받는다. 벨기에 및 캐나다에서, 특정

그림 5.6. 대중에게 권고를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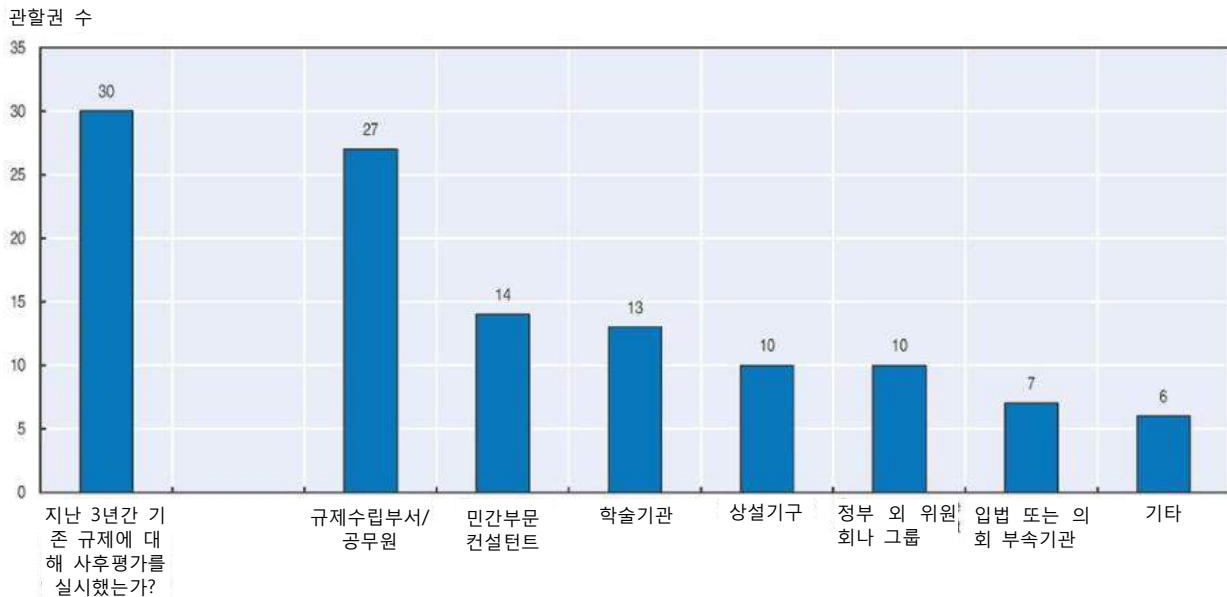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07>

이해관계자들은 전반적인 규제 프로세스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사후평가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한다. 또한 사후 집행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상 포럼을 형성을 통한 ICT의 활용은 칠레에서 적용된다.

사후평가를 준비하는 “자”는 평가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주로 정부 기관들이다(그림 5.7). 수많은 국가들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컨설턴트 및 학술기관을 활용한다. 일부 현행 기관들 역시 사후평가를 담당한다. 놀랍게도 의회는 사후평가를 일차적으로 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회는 실시되는 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규제제도에 포함된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 국가들이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적절한 기관들을 선정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과 행정적 문화에 주로 달려 있으며, 국가마다 다르다.

그림 5.7. 누가 사후평가를 작성하는가?



주: 3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의거.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16>

참고문헌

- Allio, L. (2015), "Ex post Evaluation of Regulation: An Overview of the Notion and of International Practices", in *Regulatory Policy in Perspective: A Reader's Companion to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1800-en>.
-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11), *Identifying and Evaluating Regulation Reform*, Research Report, Canberra, www.pc.gov.au/inquiries/completed/regulation-reforms/report/regulation-reforms.pdf.
- 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 (2009), *Performance Benchmarking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Business Regulation: Food Safety*, Research Report, Canberra, www.pc.gov.au/projects/study/regulation-benchmarking/food-safety/report.
- Böhret, C. and G. Konzendorf (2001),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Gesetze, 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Nomos Verlag.
- 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2015), "Learning Opportunities for Federal Regulators: Improve Your Abilities and Share Your Knowledge", www.cspc-efpc.gc.ca/BrowseCoursesBySubject/federalregulators-eng.aspx (accessed July 2015).
- Coglianesi, G. (2013), "Moving forward with regulatory look-back", in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30, pp.57-66.
- Confédération Suisse (2015), "Le réseau 'évaluation' dans l'administration fédérale", Office fédérale de la justice, <https://www.bj.admin.ch/bj/fr/home/staat/evaluation/netzwerk.html> (accessed July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a), "Evaluation",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evaluation/index_en.htm (accessed July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5b), "Making EU law lighter and less costly: What is REFIT", Better Regul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refit/index_en.htm (accessed July 2015).
- European Commission (2014),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State of Play and Outlook*, COM(2014) 368 final and SWD(2014) 192 final of 18 June 2014.
- European Commission (2013),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REFIT): Results and Next Steps*, COM(2013) 685 final of 2 October 2013.
- Fetterman, D., L. Rodriguez-Campos, A. Wandersman and R. Goldfarb O' Sullivan (2014), "Collaborative, participatory, and empowerment evaluation: Building a strong conceptual foundation for stakeholder involvement approaches to evaluation (A response to Cousins, Whitmore, and Shulha, 2013)", in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 35, No. 1, pp.144-148.
- Furubo J.-E., R. Rist and R. Sandahl (eds) (2002), "International Atlas of Evaluation", *Comparative Policy Evaluation*, Vol. 9, www.alnap.org/node/11819.aspx.
- Gaarder, M., B. Briceño (2010), "Institutionalisation of Government Evaluation: Balancing Trade-Offs",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Working Paper 8, http://www.3ieimpact.org/media/file_public/2012/05/07/working_paper_8.pdf.
- Greenstone, M. (2009), "Toward a culture of persistent regulatory experimentation and evaluation", in M. David and C. John (eds.),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Inc., Cambridge, MA.
- Konzendorf, G. (2009), "Institutionelle Einbettung der Evaluationsfunktion in Politik und Verwaltung in Deutschland", in T. Widmer et al. (Hrsg.), *Evaluation: Ein systematisches Handbuch*, Springer Verlag, pp.27-39.
- Lutter, R. (2013), "Regulatory policy: what role for retrospective analysis and review?", in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Vol.4, No. 1, pp.17-38.
- O'Connor Close, C. and D.J. Mancini (2007), "Comparison of US and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Analysi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Reforms Papers No. 3*, 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 European Commission.
-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22-en>.
- OECD (2010a), *Better Regulation in Europe: United Kingdom 201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4490-en>.
- OECD (2010b),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2939-en>.

- OECD (2010c), "Annex B. Evaluating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rogrammes and their Impact", in OECD, *Why Is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So Complicated?: Looking beyond 201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9754-8-en>.
- OECD (2004), "The choice of tools for enhancing policy impact: Evaluation and review", OECD, Paris, [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2004\)4&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gov/pgc(2004)4&doclanguage=en) (accessed July 2015).
- Prognos (2013), Exper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ex-post evaluations: Good practice and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Repor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Berlin, 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content/en/publikationen/2014_02_24_evaluation_report.pdf?__blob=publicationfile&v=2.
- RegBlog (2014), "Debating the Independent Retrospective Review of Regulations", Series, 19-23 May 2014, www.regblog.org/2014/05/19-debating-independent-retrospective-review-of-regulations.html.
- Steinzor, R. (2014), "The Real 'Tsunami' in Federal Regulatory Policy", in RegBlog, Opinion, 22 May 2014, www.regblog.org/2014/05/22-steinzor-the-real-tsunami-in-federal-regulatory-policy.html.
- UK Business Taskforce (2013), "Cut EU red tape: Report from the Business Taskforce", Octob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ut-eu-red-tape-report-from-the-business-taskforce>.
- UK Government (2014), "UK response to the European Commission's evaluation consultation",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evaluation/docs/consultation/uk_government.pdf.
- UK Government (2010a),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valuation, Post-Legislative Scrutiny and Post-Implementation Review",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London.
- UK Government (2010b), "What happened next? A study of Post-Implementation Reviews of secondary legislation: Government Response",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London, 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910/ldselect/ldmerit/43/43.pdf.
- UK Government (2010c),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London.

제6장

각국의 규제현황

본 장에서는 모든 OECD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제현황을 각각 2페이지에 걸쳐서 기술한다. 이 규제현황에서는 주요 목표를 달성한 규제관행의 개요와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본 장에서 “주목”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시행 중인 규제정책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제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한 각국의 종합지표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에 관한 통계자료는 관련하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 것이다. OECD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골란고원 (Golan Heights), 동예루살렘 (East Jerusalem) 및 국제법에 따르는 서안 지구 (West Bank)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현 상태를 침해하지 않는다.

호주

개요

2013년 9월 호주 정부는 규제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 아젠다를 개시하였다. 호주 정부는 개인, 공동체조직 및 기업체에 대한 규제부담을 매년 최소한 10억 호주달러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아젠다의 방침에 따라 호주는 개인에 대한 규제영향을 포함하여 규제비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RIA 프로세스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규제에 관한 순편익 검증을 도입하고 있다. 규제에 관한 호주 정부지침(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Regulation)에서는 RIA에 대한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개혁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규제관리감독직무를 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로 이전시켰으며 규제개혁 기회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자문기구를 설치하였고,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의 공무원 성과를 정량적으로 입증된 규제부담의 감소에 연계시킴으로써 규제기관의 담당자와 고위관료에게 명확한 예상을 제공하는 부처를 통하는 등을 포함하여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장관직을 장려한다.

또한 규제개혁은, 주요 정책결정을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 독립된 연구자문기구인 호주생산성위원회(Australian Productivity Commission)에서도 지원을 한다. 여기에는 여러 지역이나 국가에서의 규제성과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benchmarking reviews)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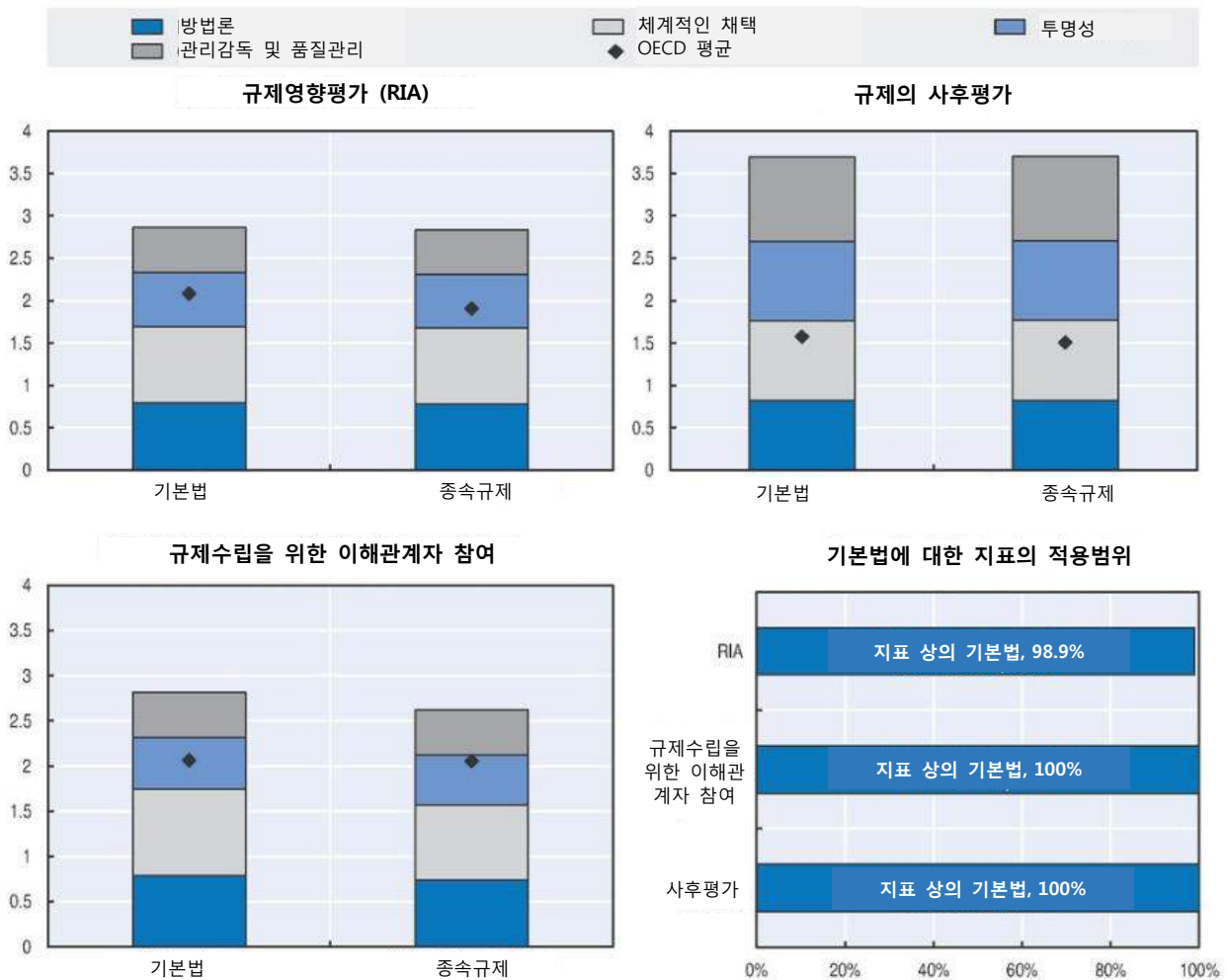
생산성위원회에서는 이전의 RIA와 사후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개선을 위한 제안에서는 정책결정 프로세스에서의 보다 나은 RIA의 사용을 포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개선하였다. 본 권고에서는 현재의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의 규제정책에 대한 개정을 뒷받침한다.

RIA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몇몇 RIA 측면에 대한 책임을 규제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주는 규제기관에서 실시하는 RIA 측면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RIA 제도를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주목: 규제기관 성과체계

2014년 10월 호주 정부는, 규제기관이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은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각 규제기관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규제기관 성과체계(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를 발표하였다. 이 체계는 규제부담의 감소, 커뮤니케이션, 위험에 기반한 비례적 접근법, 효율적이면서 조직화된 모니터링, 투명성, 지속적인 개선 등 6가지의 성과에 기반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로 구성된다. 이 성과체계는 모범규제성과의 척도를 제공하며, 모든 규제기관들은 이 척도를 사용하여 KPI에 대하여 각 규제기관이 달성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모든 호주 정부의 규제기관들은 매년 이 성과체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다수의 규제기관이 3개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규제기관의 성과에 대한 외부심사를 받게 되며, 그 중 일부 규제기관은 매년 외부심사를 받게 된다. 외부심사는 보다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 및 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시하며, 이러한 외부심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에 보다 개선된 투명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 성과체계는 생산성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를 토대로 하며,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것이다. 이 체계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호주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호주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에 준수해야 하는 호주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14>

오스트리아

개요

오스트리아는 최근 주요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모든 새로운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대해서는 RIA뿐만 아니라 채택 이후 5년마다 사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2015년 4월부터는, RIA 체계의 비례원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향범위에 의거하는 임계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간략한 RIA를 수행할 수 있다.

내각사무처 (Federal Chancellery) 산하의 내각성과관리국 (Federal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는 RIA 관리감독기구로서, RIA의 질을 검토하고 정부관리들을 위한 가이드언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 내각성과관리국은 RIA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표한다. 연방재무부 (Federal Ministry of Finance)는 행정적 부담의 경감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2년에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25%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시민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현재 진행 중이다.

협약에 관한 요건에서는 모든 규제를 다루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 및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면서, 초안 규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다. 문의를 해온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 기간은 일반적으로 6주를 부여한다. 대중들은 의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부 기본법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초기 단계에 협의를 수행하고 쌍방향 웹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공공협의를 실시하는 등과 같이 폭넓은 층의 대중들이 참여하도록 이해관계자의 참여수단을 보다 많이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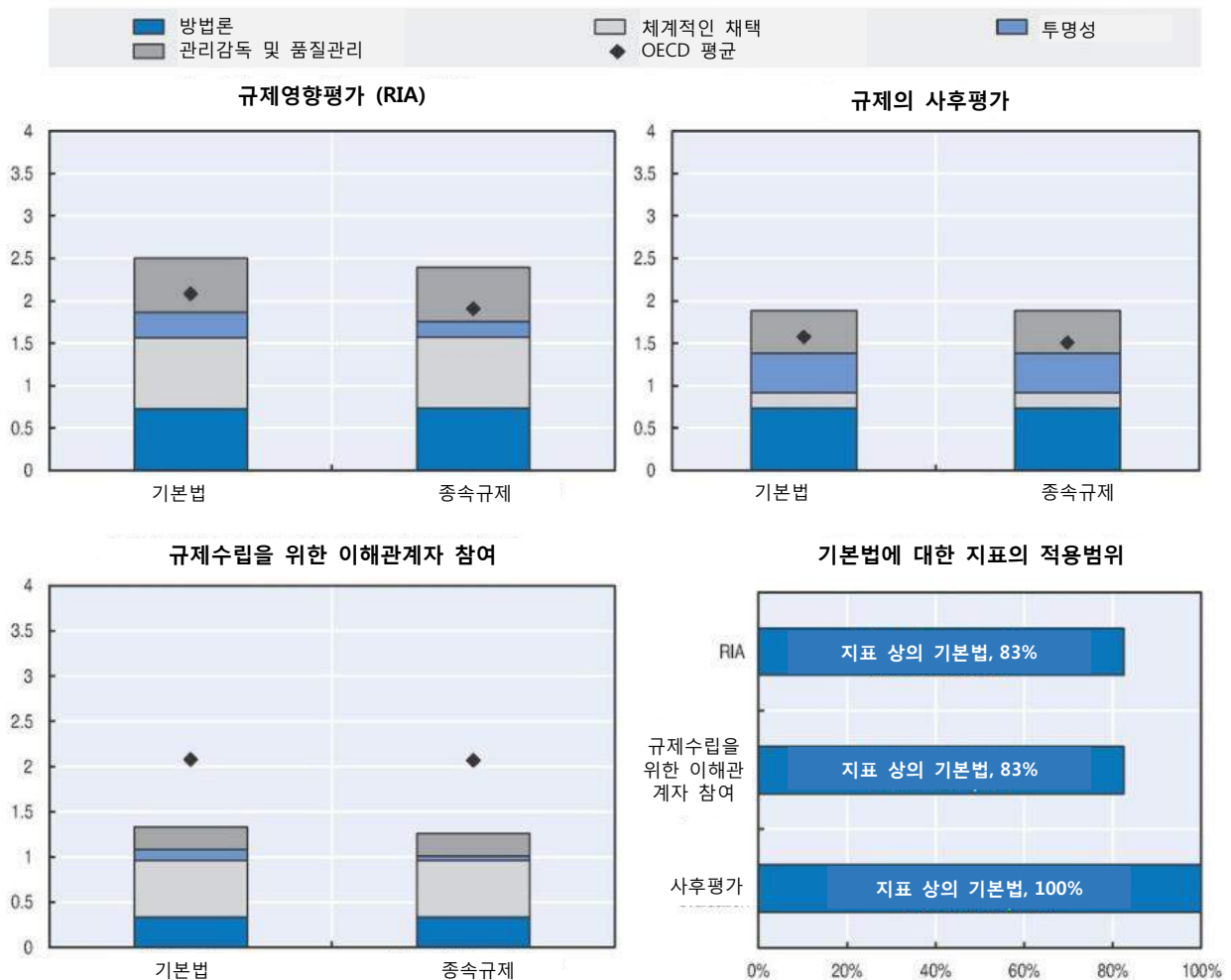
사후평가의 수행에 관한 공식요건은 2013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 공식요건은,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대한 평가, 실제 영향과 예상 영향의 비교, 그리고 비용과 편익 및 예상치 못한 결과의 확인과 정량화를 요구하는 등, 상당히 폭넓은 요소를 아우른다.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후평가에 관한 요건을, 모든 RIA를 실시한 규제에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사후검토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주목: 오스트리아 규제체계에 성별목표 포함

보다 결과지향적인 개혁 차원에서, 오스트리아 행정부는 정책일관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예산 수준부터 개별 프로젝트와 규제 수준에 이르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제도로 통합하여 정책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예산관행에 성별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행위자 간의 수평적 조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별 목표와 지표를 잘 조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연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RIA 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RIA 핸드북의 각 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관한 가이드언스를 제공한다. 성별 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분야로는 정부가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편익, 교육, 고용, 소득, 징수된 국고세입, 보건 및 정치참여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본법의 약 83%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83%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54>

벨기에

개요

벨기에는 연방정부 수준에서 규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종종 사회동반자 (social partner)들과 공식협의를 가지며, 연방수준의 내각각료에게 제출된 모든 기본입법과 종속입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RIA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협의를 위한 근거로써 사회동반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의회와 사회동반자들은 RIA가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다. 일부 입법의 경우는 그 입법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때때로 시효한정 조항 (sun-setting clauses)를 적용하기도 한다. 2013년과 2014년, 경제입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새로운 경제법의 법규를 개발하게 되었다. 의회위원회를 통해서 용이하게 입법에 관한 사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행정부 내에서는 2013년 이후 총리실 산하기관으로서, 행정부담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행정간소화관리국 (Agency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SA)이, 전반적인 규제정책을 개선시키는 업무도 맡고 있다. ASA는 다른 4개 부처 (경제부, 양성평등부, 지속가능개발부 및 협력개발부)와 협력하여 RIA를 조직화하고 있다. 영향평가위원회 (Impact Assessment Committee)는 담당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RIA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분야는 보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의를 중앙정부의 단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폭넓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화한다. 협의를 생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지만) 일반 대중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를 하는 동안 RIA를 사회동반자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과 협의를 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RIA의 적용범위와 목표는, 보다 공식적인 임계치 검증 없이는, 제안된 입법의 주제에 맞게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을 실시하면, 제안된 입법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과 분석의 깊이를 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일부 사후검토에서는 규제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다른 규제기관 및/또는 비규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모든 검토로 확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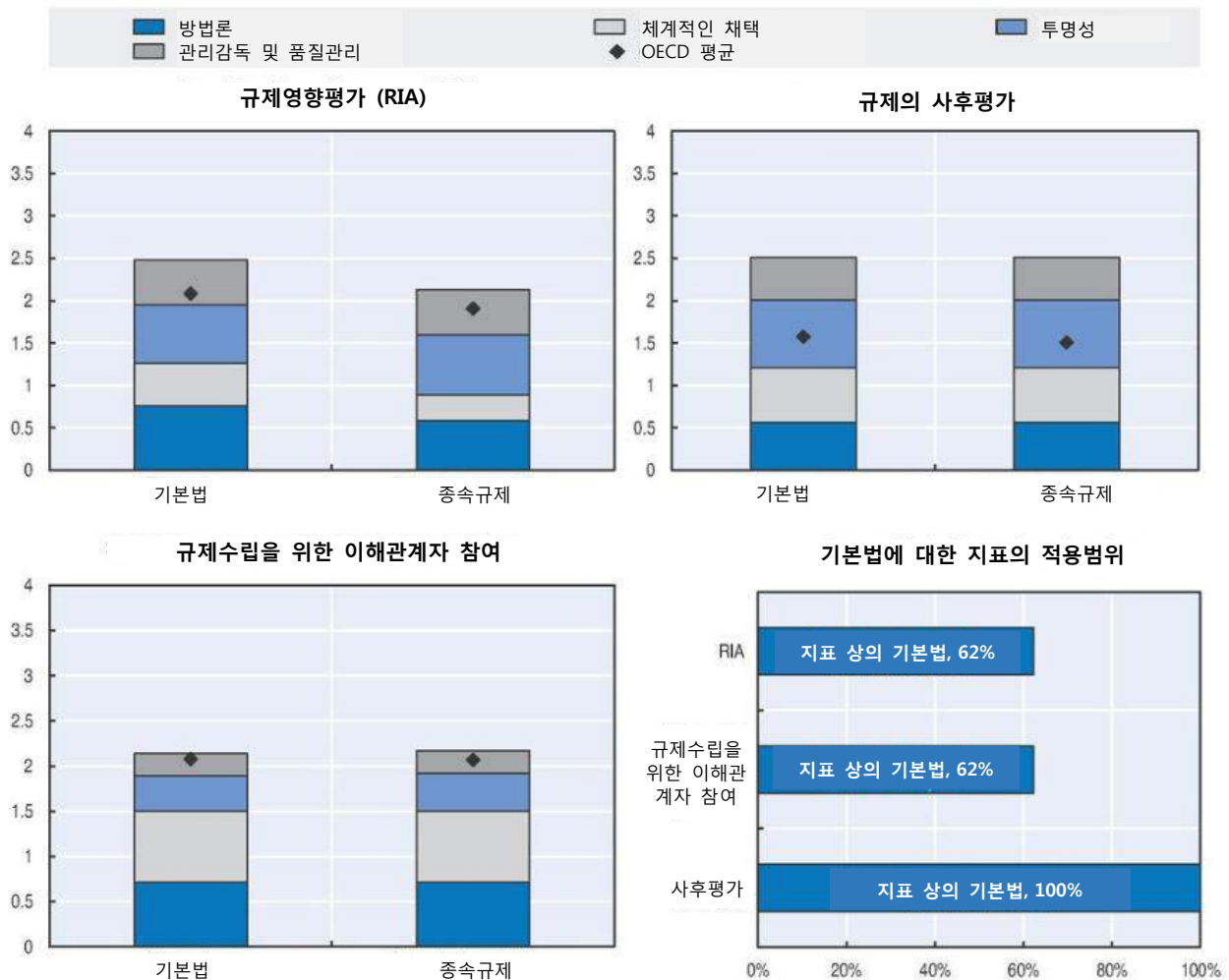
주목: 사후검토 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연방계획관리실 (Federal Planning Office)에서는 2년마다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전자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7000개 기업을 조사한다. 웹사이트 (www.kafka.be)를 통해서도 시민과 기업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의회위원회는 22명의 국민회의 (Chamber of Deputies)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채택된 연방입법을 평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직무를 맡고 있다. 기업, 시민 또는 공공행정은 기존입법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존법의 변경을 제안하고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

www.simplification.be/fr/content/enquete-biennale; www.comitesuivilegislatif.be/indexF.html.

벨기에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 기본법의 약 62%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62%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벨기에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61>

캐나다

개요

캐나다에서는 기본법 (법률)과 종속규제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요건이 상당히 다르다. 종속규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규제를 받는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상세한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든 규제의 수가 법률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기본법의 개발에 관한 프로세스는 법률개정에 관한 내각지침 (Cabinet Directive on Law-Marking)에 명시되어 있다. 종속규제에 관한 요건은 규제관리에 관한 내각지침 (Cabinet Directive on Regulatory Management)에 명시되어 있다 (CDRM 2012). 캐나다재정위원회 사무국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은 종속규제의 관리감독, 규제의 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역할을 맡는 등의 직무를 맡고 있다. 기본법의 경우, 추밀원사무처 (Privy Council Office)의 지원을 받는 내각이 사후분석 및 협의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직무를 맡고 있으며, 영향평가의 질은 추밀원사무처에서 검토한다.

기본법을 개발할 때는, 내각에 영향평가를 제출한다. 의회 앞으로 규제를 상정하기 전에는 전반적인 증거와 평가를, 체계적인 근거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법은 의회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사에는 대개 의회 위원회의 조사가 포함되며, 증인들은 제안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일부 기본법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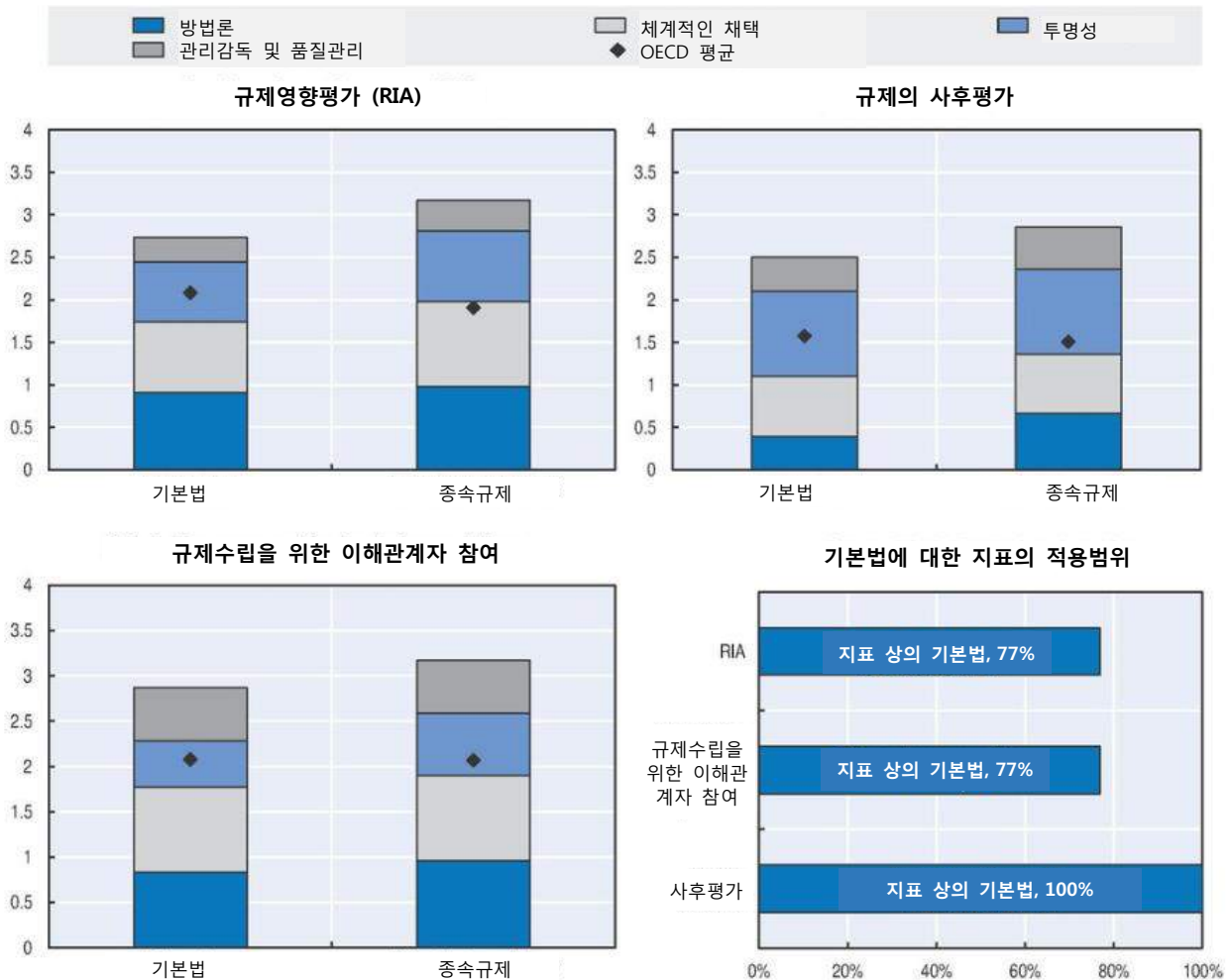
종속규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보통 훨씬 자세하고 투명하다. 모든 종속규제는 상세한 RIA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모든 RIA는 중앙등기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종속규제에 대해서는 개방협의 (open consultation)를 실시하며, 규제기관의 담당자는 대중으로부터 얻은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단, 규제제안은 사전발표에서 제외)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모든 종속규제는, 재정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정책에 따라, 평가요건에 해당한다.

재정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불필요한 요식행위 타파행동계획 하에 체계적인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달성한 결과물인, 행정부담의 감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RIA 제도의 직무와 같이 규제정책의 다른 분야의 질에 관한 유사한 보고서는 기존의 강력한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뒷받침한다.

주목: 규제관리에 관한 내각지침

최근 도입된 규제관리에 관한 내각지침 (Cabinet Directive on Regulatory Management) (CDRM 2012)에서는 종속규제 개발 시의 연방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인 공공정책문제의 조기 확인; 예상되는 영향과 상세한 RIA에 관한 사전분류 시에 강력하면서 증거에 기반한 분석 실시; 광범위하면서 중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규제협력; 시행, 준수 문제 및 집행에 관한 계획; 그리고 규제에 관한 평가와 검토. 재정위원회 사무국 (Treasury Board Secretariat)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분석적 요건에 대해서 규제기관에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핵심 단계를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CDRM은 불필요한 요식행위타파 행동계획 (Red Tape Reduction Action Plan, RTRAP)에 명시한 규제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일대일 규칙 (one-for-one rule)인, RTRAP가 중점으로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의 증가와 규제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규칙에서는 규제기관이 기존 규제의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새롭게 부과되는 부담과 동일한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청한다. 또한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한다.

캐나다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기본법의 약 77%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7%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캐나다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을 정부발 의법안 (Government Bills)이라고 하며, 의회에서 발의한 법을 일반의원발의법안 (Private Member's Business)이라고 한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71>

칠레

개요

주요 국가규제는 행정절차와 효율적인 중앙행정에 관한 일반체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종합적인 규제개혁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결과를 달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칠레에서 매년 끊임없이 법을 제정하고 있고 그 규제저량 (regulatory stock)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현재 RIA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기관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표준을 준비하고 있어서 도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규칙결정절차에 관한 모범관행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성과 혁신 및 성장을 위한 국가아젠다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아젠다는 이러한 목표를 조성하기 위한 동인자로서 규제개혁을 사용할 수 있는 모범체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아젠다의 Measure 33에서는, 규제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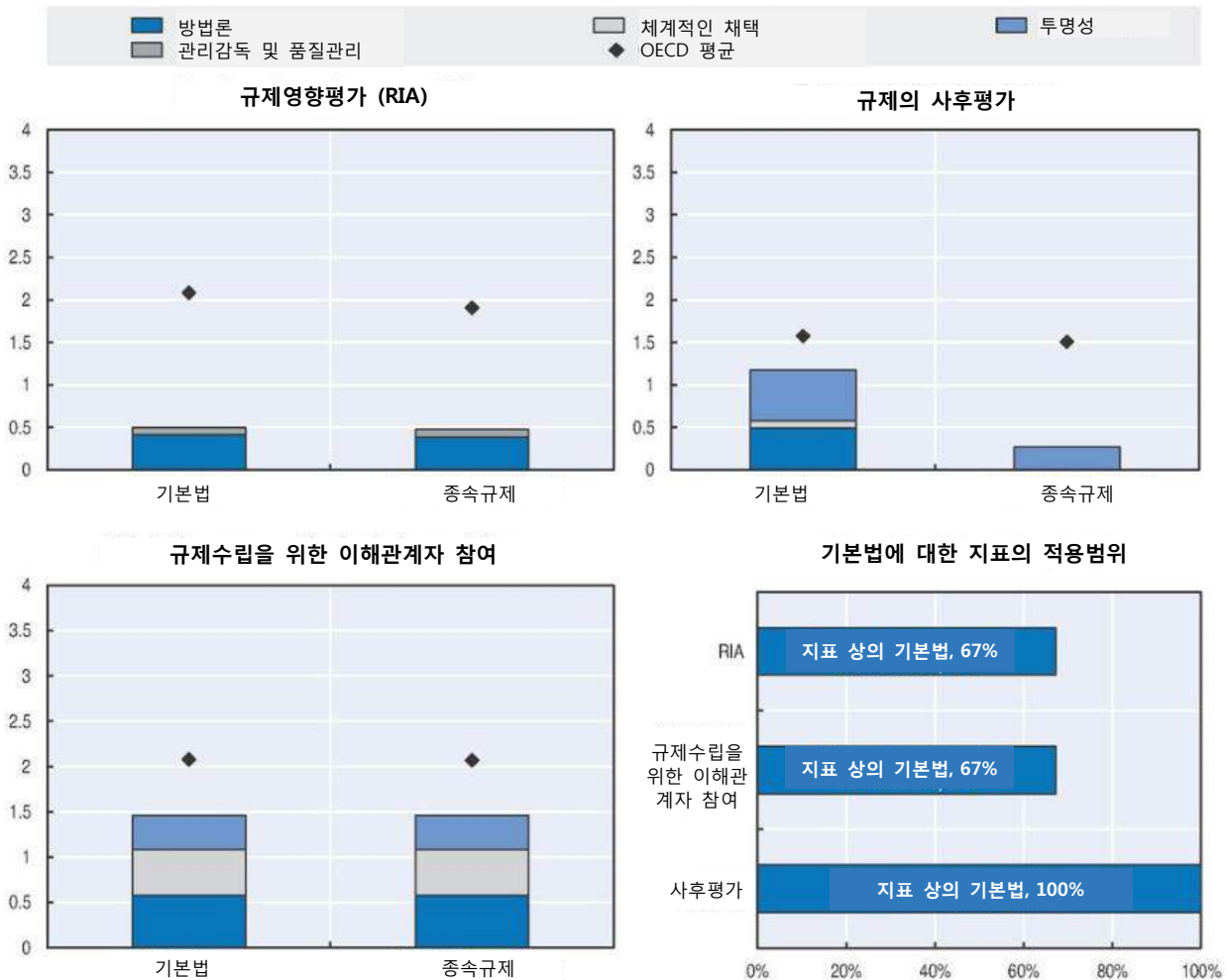
최근 개혁을 실시하여 협의 메커니즘 (즉, 법률 No. 20 500과 2014년 대통령지시 No.7)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는 했지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중앙행정에 관한 표준협의관행 및 기준 (즉, 기간, 적용범위, 시기 및 절차)이 없는 상태이다.

규칙결정 프로세스에서는 4곳의 기관 즉, 대통령실-내각사무처 (Ministry General-Secretariat of the Presidency, SEGPRES), 재무부, 경제부 및 연방검사원 (General Comptroller of the Republic)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칠레의 규제개혁에 관한 제도적 규정의 주요 약점은 규제관리감독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목: 법률평가부 (Law Evaluation Department, LED)

칠레의 국민회의 (Chamber of Deputies)에서는, 선정된 법에 관하여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법률평가부 (Law Evaluation Department, LED)에 대한 직무 규정을 진행하고 있다. LED는 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법의 기술적 분석, 시민의 반응조사, 최종보고서의 작성 등 3단계로 구성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LED는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차트, 표적그룹, 워크숍 등과 같이 시민의 반응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법, 감독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제기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민조직의 등록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법 개정에 관한 논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부처는 현재 2차 규제에 관한 재검토 수행 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칠레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칠레의 경우 기본법의 약 67%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67%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칠레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81>

체코공화국

개요

체코공화국은, 특히 독립된 감시기관을 설립하여 규제영향평가 프로세스와 규제 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발전해나가고 있다 (주목 박스를 참조). RIA 관련관공서 (Government Office)에는 전담기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범정부적 규제정책을 책임지는 단일기구는 없다.

RIA 제도는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모든 기본법률과 보조법률의 초안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RIA 제도는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 된다. 영향평가의 질은 특히 모든 영향의 정량화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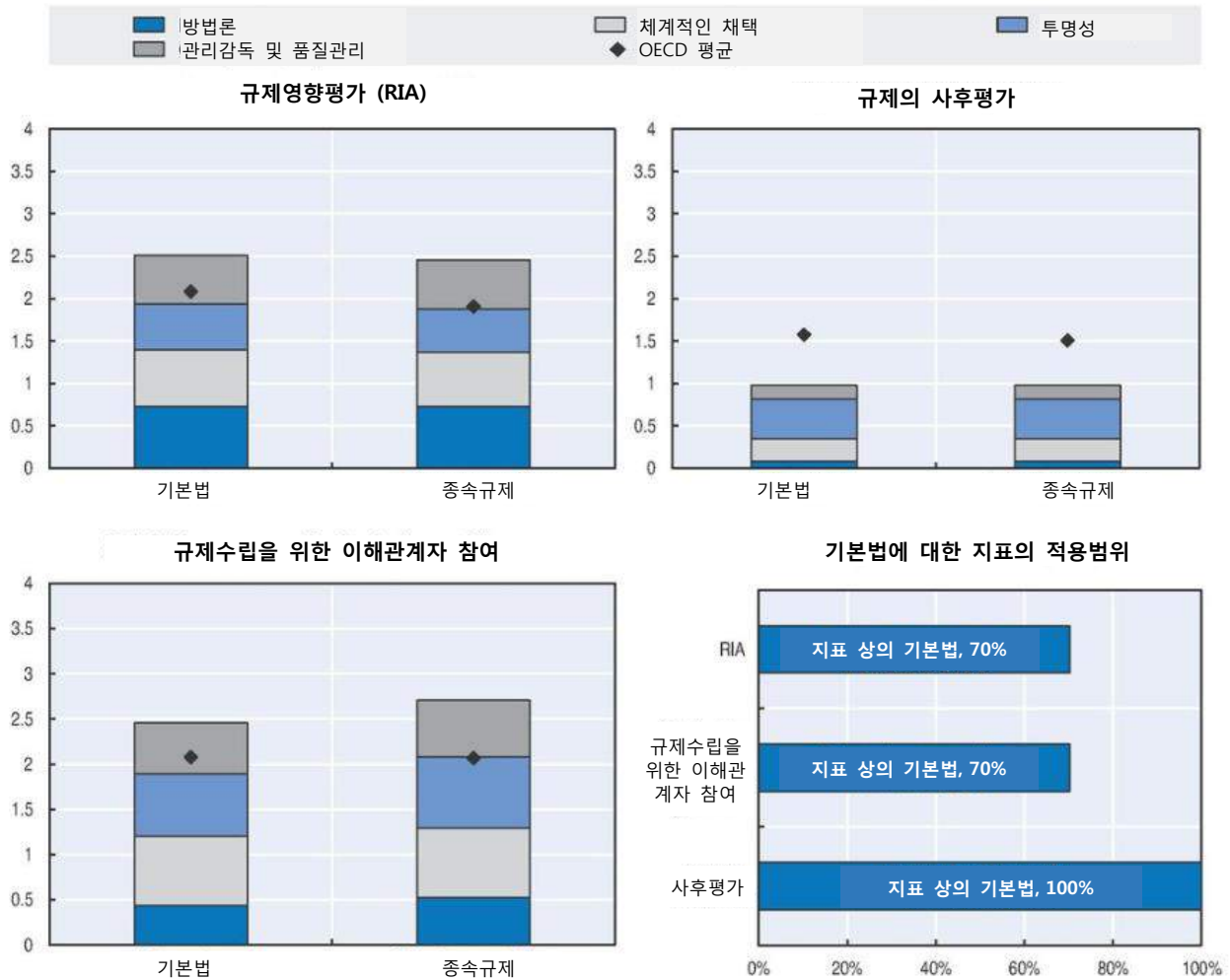
행정부에서 개발한 모든 초안규제에 대해서는 자연히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에 발의된 모든 입법초안은 정부의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며, 누구나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하는 담당부처에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을 어떻게 취급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은 없다. 게다가 대중들이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관하여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채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체코 정부는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가 규제목표를 다른 규제비용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체코 정부는 여전히 불필요한 요식행위의 타파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기존 규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실시하고 있으며, 좀처럼 사용하지는 않는다.

주목: 규제영향평가의 효과성에 관한 검토

RIA 위원회는 입법초안의 품질을 감독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문기구인 정부입법부 (Legislative Council of the Government)의 위원회 중 하나이다. 이 RIA 위원회는 주로 경제학자, 업계단체의 대표자, 학계와 그 외 전문가 등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발의된 초안규제와 함께 제공되는 영향평가의 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영향평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영향평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그 제안의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간 입법계획에 권고 내용을 명시할 때는, 계획된 입법초안에 대하여 RIA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를 할 수 있다. 2011년 11월 RIA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정부의 RIA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체코공화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체코공화국의 경우 기본법의 약 70%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0%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체코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099>

덴마크

개요

지난 20년간 규제개혁은 덴마크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로 여겨지고 있다. 1980년대 초, 경제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완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규제의 질과 간소화를 위한 초기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기업부문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완화”를 지향하였던 목표는 차츰차츰 “규제의 질”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모범규제는 특히 행정부담의 감소를 통해서 기존 규제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입법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된 노력을 하고 있다. 협의관행 (즉, 공청회, 대대적인 개혁을 위하여 전용웹사이트에 알린 공고 및 2005년 협의 포탈의 설립)의 개발은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인 협의 전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협의의 대상자를 보다 광범위한 층으로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대한 통지문은 특히 중요하다.

2000년 이후에는 사후영향평가에 관한 요건을 상당히 보강하고 있다. 2015년 1월, RIA에 관한 새로운 요건이 수립되었다. 모든 부처에서는 기업이 모든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 및 기업부문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RIA를 수행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체계 내에 새로운 규제를 개발한다. 하지만 덴마크의 영향평가제도는 능률적인 제도적 감시체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현재 제도적인 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을 약화하고 부처 간의 문화변동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 규제저량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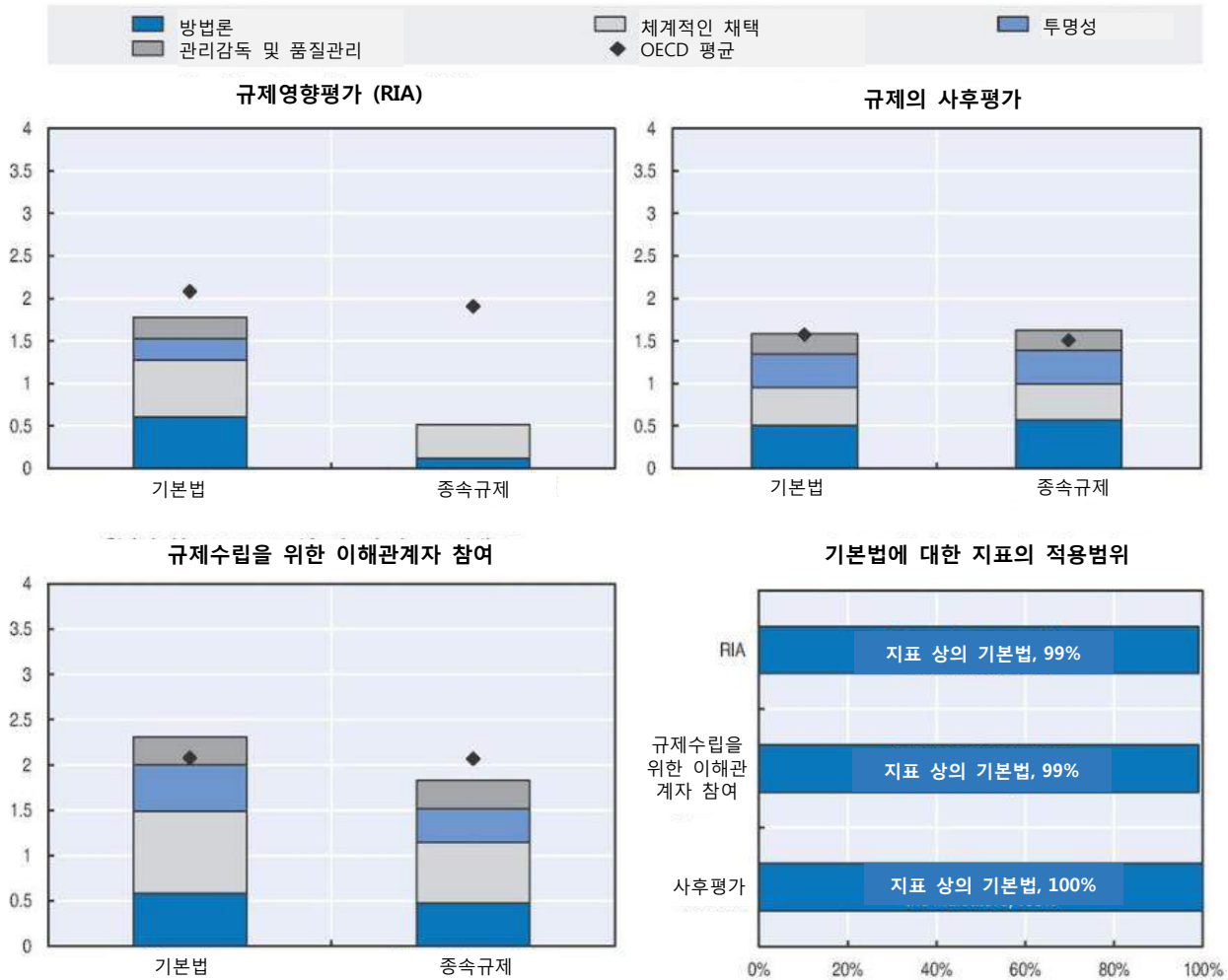
주목: 모범관행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

기업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에 모범관행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 (Business Forum for Better Regulation)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업계가 가장 부담스러우면서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야를 확인하고 간소화 조치를 제안한다.

비즈니스 포럼은 행정간소화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단체와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포럼에서 제의한 제안들은 “원칙준수, 예외설명 (comply or explain)” 원칙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원칙은 정부가 제안된 방안을 따르거나 이러한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간소화에 관하여 460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419개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그 중 341개의 방안에 대해서 방안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준수하고 있다. 제안된 방안의 현황에 대해서는 www.enklerleger.dk (덴마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방안 등을 준비할 때 이따금 버든헌터 방법 (Burden Hunter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관련당국에서 요구하는 행정업무에 의해 최종사용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를 받는 최종사용자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관찰연구, 프로세스 맵핑, 전문가 인터뷰, 유도 (nudging), 서비스 설계 등이 포함된다.

덴마크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덴마크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02>

에스토니아

개요

에스토니아는 최근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2012년에는 규제의 질에 관한 확고한 범정부적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2018년까지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제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계획을 정의한다. 공공부문이 그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공통된 원칙과 장기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되는 의무와 목표는 다른 법률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초안의 규칙 (The rules of legislative drafting)” 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후평가와 규제관리감독을 다루는 공식적인 영향평가방법론은 2012년 12월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법무부는 규제개혁을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 법무부의 입법품질부 (Legislative Quality Division)는 기본입법에 대하여 RIA와 사후평가에 관한 관리감독과 문제해결 직무를 제공한다. 정부전략, EU 협상 및 종속규제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은 관공서 (Government Office)에서 맡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주요 기본법과 더불어 그에 포함된 규제의 초안 텍스트와 법안주석 (explanatory memorandum)에 대해서 온라인 협의를 실시한다. 2007년 규제기관과 일반 대중 간에 서로 의견교환 등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참여 웹사이트인 www.osale.ee를 만들었다. 관리자들에게 정책문제의 본질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보다 일찍부터 체계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게 된다면, 보다 나은 규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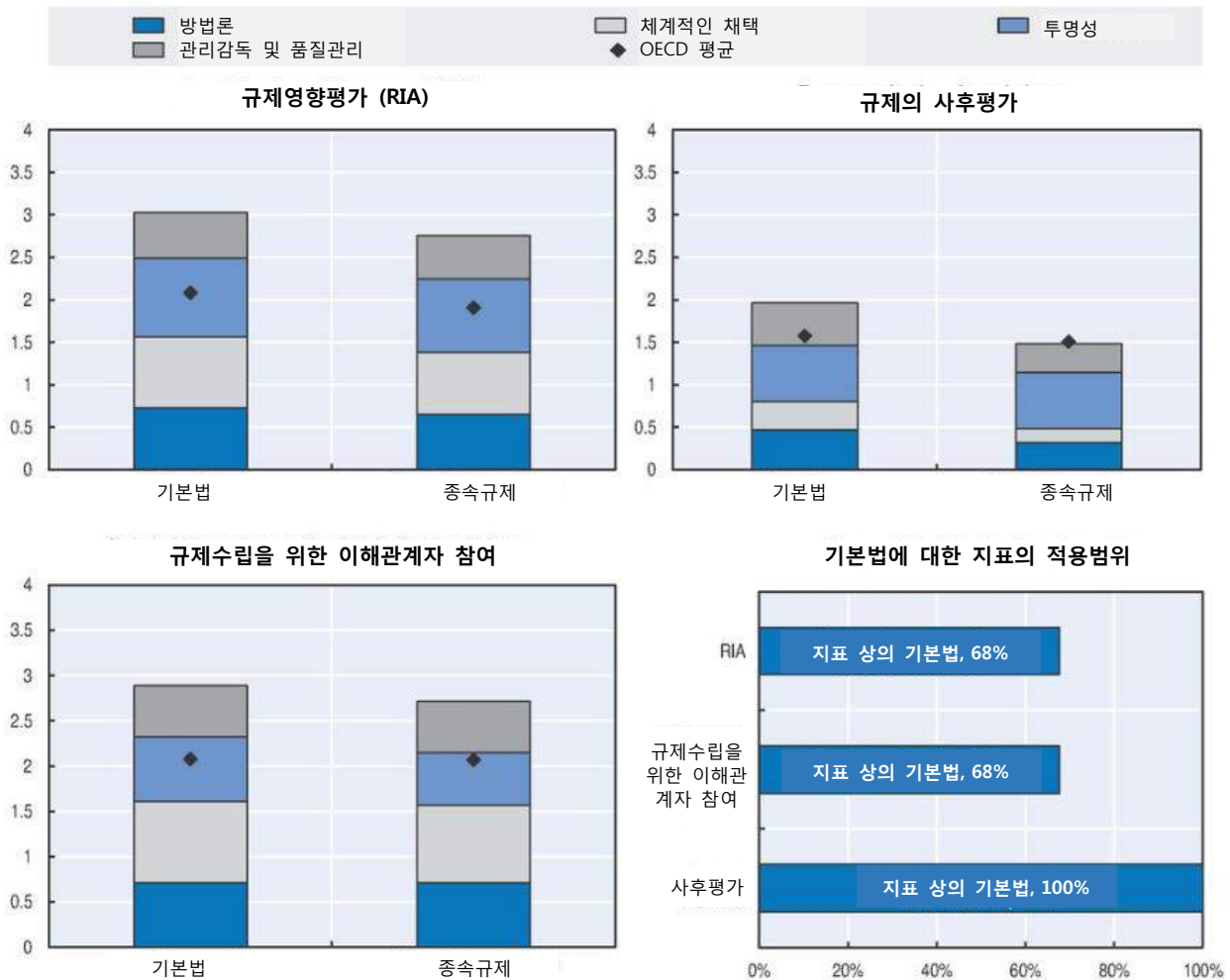
모든 기본법과 선정된 종속규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비 RIA를 실시한다. 심층적인 RIA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임계치 검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RIA의 수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방법론과 요건을 수립한다면, 에스토니아는 현재의 RIA 제도의 효과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될 수 있으며 RIA 시행 시의 문제점을 밝혀내서 RIA의 질을 개선시켜야 할 분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에스토니아는 새롭게 채택하는 모든 주요 기본법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아직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다.

주목: 투명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수단의 사용

에스토니아 정부는 주로 온라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접근용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기본법 및 종속규제에 대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www.riigiteataja.ee/), 1년 내에 입안, 수정, 개선 또는 폐지할 기본법 목록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다 (www.just.ee/et/eemargid-tegevused/oiguspoliitika/oigusaktide-moju-analuus). 온라인 정보시스템에서는 모든 법제발전 (legislative development)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입법취지를 나타낸 문서와 RIA를 이용할 수 있다 (<http://eelnoud.valitsus.ee/main>). 또한 에스토니아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볼 수 있는 쌍방향 웹사이트인, www.osale.ee/를 만들었다.

에스토니아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기본법의 약 68%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68%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경우는 RIA를 수행하기 위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공식요건은 있지만,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요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은 주로 조약과 유럽법률 등 공통되는 정치 기반과 법적 기반에 입각한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새로운 발안과 입법을 발의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에서 채택여부를 결정), 28개 회원국에서 연합법 (Union law)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초대 부의장으로서의 특수한 책임 하에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Commission's Secretariat General) 내에서 규제정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관리감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모범관행정책을 개발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입법을 제안하는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주요 기본입법과 종속입법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새롭게 계획 중인 입법안에 관한 목록을 게재한 로드맵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협의가 곧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린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주요 기본입법과 종속입법에 관해서 RIA를 수행해야 한다. 영향평가위원회 (Impact Assessment Board)가 RIA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면, 집행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법안 발의를 고려하게 된다. 유럽의회의 전담부서에서도, 일단 유럽의회에 법안 발의가 제출되면, 그 법안에 대해서 RIA 평가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에서도 입법에 대해서 균형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몇몇 분야는 앞으로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 초기단계뿐만 아니라 발의단계에도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입법방안 (legislative initiative)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동반자들이 시행법과 위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의 경우만 발의단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RIA는 이러한 협의 프로세스 중 일부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입법에 대해서 사후에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몇 단계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이러한 평가를 한층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입법을 사후 평가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평가의 적용범위와 깊이를 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면서 투명한 기준에 대해 임계치를 설정해두면, 평가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보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19일,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책무를 포함하여 보다 나은 규제조치를 위한 종합정책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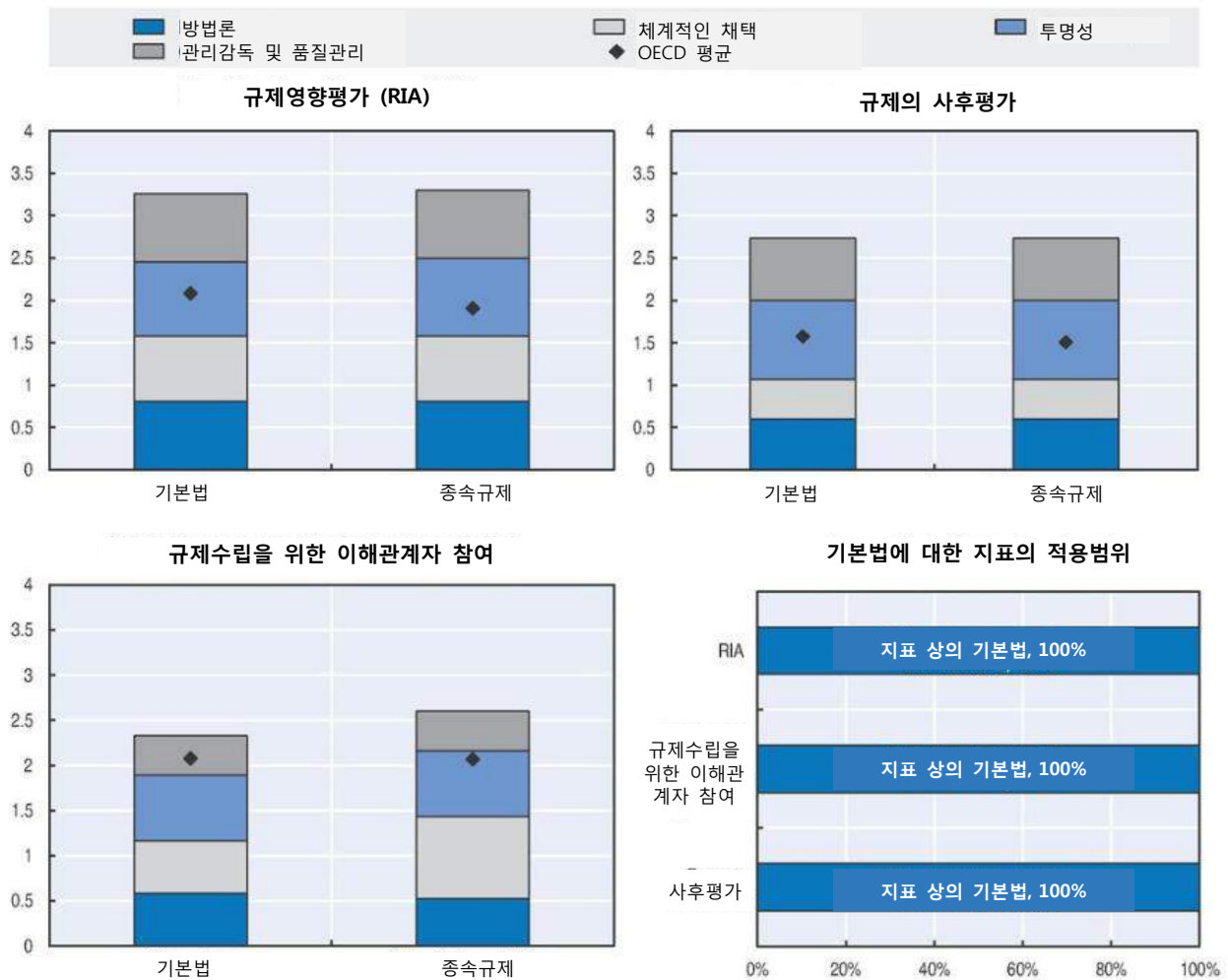
주목: 입법과 규제정책의 사후평가

2010년 집행위원회는 규제분야를 평가하고 차이, 겹치는 부분, 불일치성, 행정부담 및 누적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성 체크 (Fitness Check)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 REFIT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적합성 체크가 한층 더 확대되었으며, EU에서의 행정부담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역사회에서의 입법과 각국 적용 시의 행정적 부담을 측정하고 있다.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2010년 유럽회계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에서는 RIA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였고 RIA 절차, 사용실태 및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EU 연합법을 다른 유럽기관에 적용했을 때 주요 측면에 관한 성과, 보충성 원칙 (subsidiarity principle)과 비례원칙 (proportionality principle) 적용 시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조약에 의해 EU에 부여되는 권한을 EU가 어느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여기에 표시된 결과는, EU 제도에서 유일한 입법발의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모든 법률 (규제, 지침 및 시행법과 위임법)에 적용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24>

핀란드

개요

핀란드의 모범규제에 관한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제도의 근간은 2006년도 모범규제전략 (Better Regulation Strategy)으로, 이 전략에서는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영향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입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조치를 전개하였다. 이 전략은 2007년 정부프로그램 (Govern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약은 다시 한 번 2011년 정부 플랫폼 (Government Platform)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기본법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규제방안과 비규제방안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켜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속규제에 관한 RIA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일부 규제에 관한 관행에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종속규제가 기본입법에 명시된 권한위임 (delegated power)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때문에, 종속규제의 영향은 종종 기본입법의 영향과 함께 평가된다.

모든 기본법과 종속규제를 개발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동반자, 기업체, 소비자, 인권기관 및 그 외 관련당국과의 공식협의 및 공청회뿐만 아니라, 쌍방향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의 활용도 잘 정비되어 있다. 협의 시에 나온 의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들은 최종규제를 개발할 때 공식적으로 자체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핀란드는 일정 형태의 관리감독기구와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RIA와 협의에 관한 요건을 항상 일관되게 충족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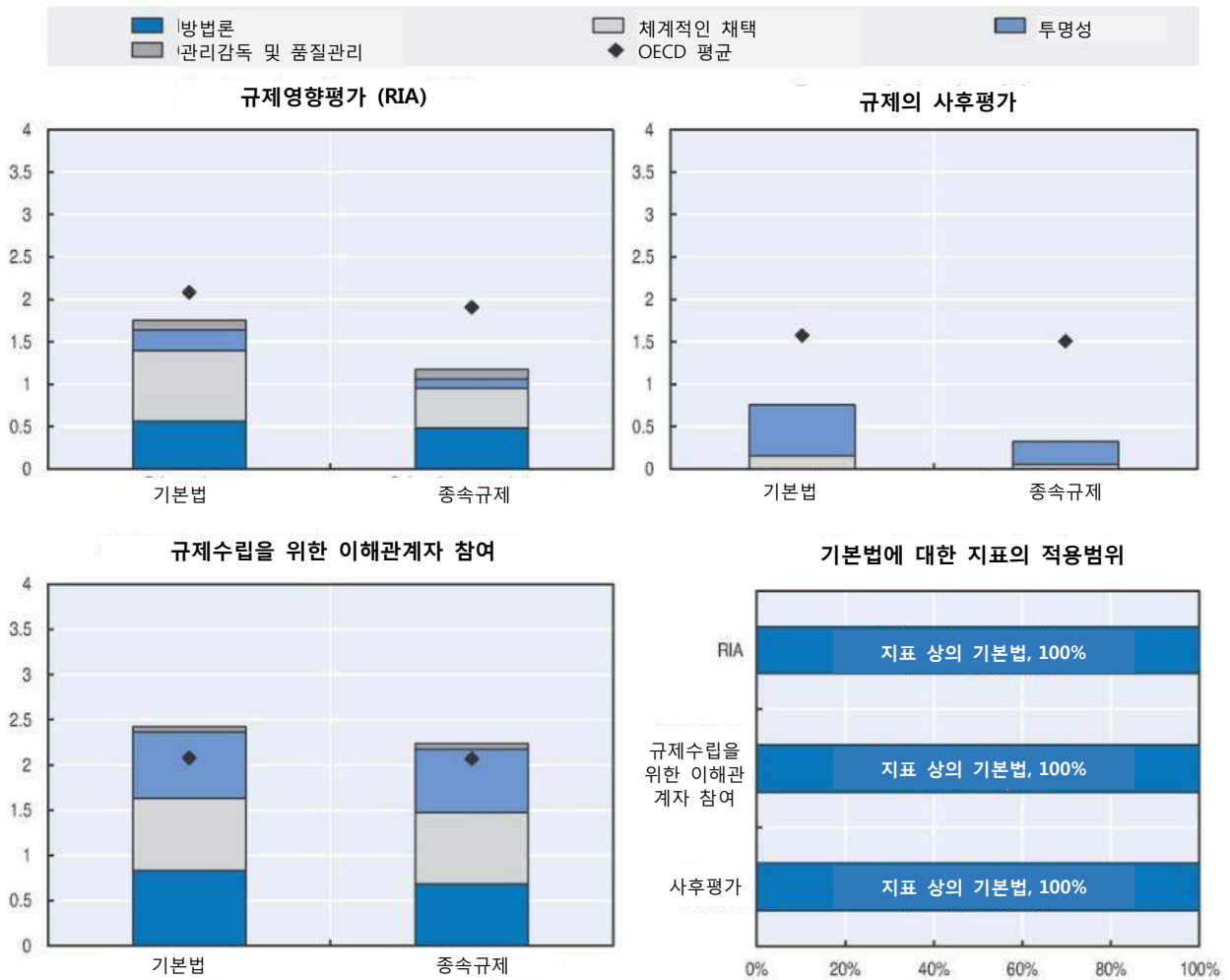
핀란드는 특히 부문별로 기존 규제에 관한 특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기본법에 관한 소멸시효조항 (sunsetting clauses)을 도입하였다. 앞으로 규제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규제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규제의 체계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할 수 있다.

주목: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Otakantaa.fi “Speak your mind” 웹사이트는 기존 및 새로운 정부프로젝트의 행정과 규제개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포럼이다. 여기에서는 여론조사 (opinion poll)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광범위한 다양한 방안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며, 또한 대화를 위한 플랫폼도 제공한다. 이 포럼은, 프로젝트나 입법개발의 초기 단계 시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는 온라인의 “의견개진 서비스” (lausuntopalvelu.fi)를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을 비롯하여 각 부처, 단체 및 조직의 대표자들이 다른 사용자가 명시한 의견에 대해 비평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견을 탐색하고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식적인 협의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의과정 동안 공개토론을 고려한다. 게다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핀란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핀란드의 기본법이 모두 국가기본법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33>

프랑스

개요

프랑스는 규제정책제도의 질을 가장 먼저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영향평가는 행정부에서 준비한 모든 법 초안에 관한 헌법에 준거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3년 정부에서는 비즈니스간소화의회 (Business Simplification Council)의 설립 (2014년 1월) 및 총리 (Prime Minister)에 소속된 국가개혁과 간소화에 관한 국무성장관 (Minister of State for State Reform and Simplification)의 임명 (2014년 6월)에 관련된 "간소화 운동"을 도입하였다.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124개의 일련의 비즈니스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2014년 4월 이후부터 6개월마다 50개의 새로운 비즈니스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기업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복정보의 제공을 줄이도록 고안된 "Tell us once" 프로그램과 처음으로 1200개의 절차에 관한 "silence means consent"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이 대개 맹렬히 비난하는 규제 인플레이션 (regulatory inflation)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노력은 고르지 못하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 ("선 규제철폐, 후 규제신설 (one-in one-out)" 접근법)에 관한 활동중단을 채택하였으며 영향평가연구를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활동중단 이행상태를 감독하는 독립기구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설립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교착상태이다.

환경분야에서는 공공협약이 헌법에 준거하는 요건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SME의 관행을 포함하여 보다 단면적이면서 체계적인 요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특정 규제에 관한 사후평가는 예외이다. 2012년 주요 평가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중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평가와 더불어, 관련 당국에서는 규제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서 접근법을 체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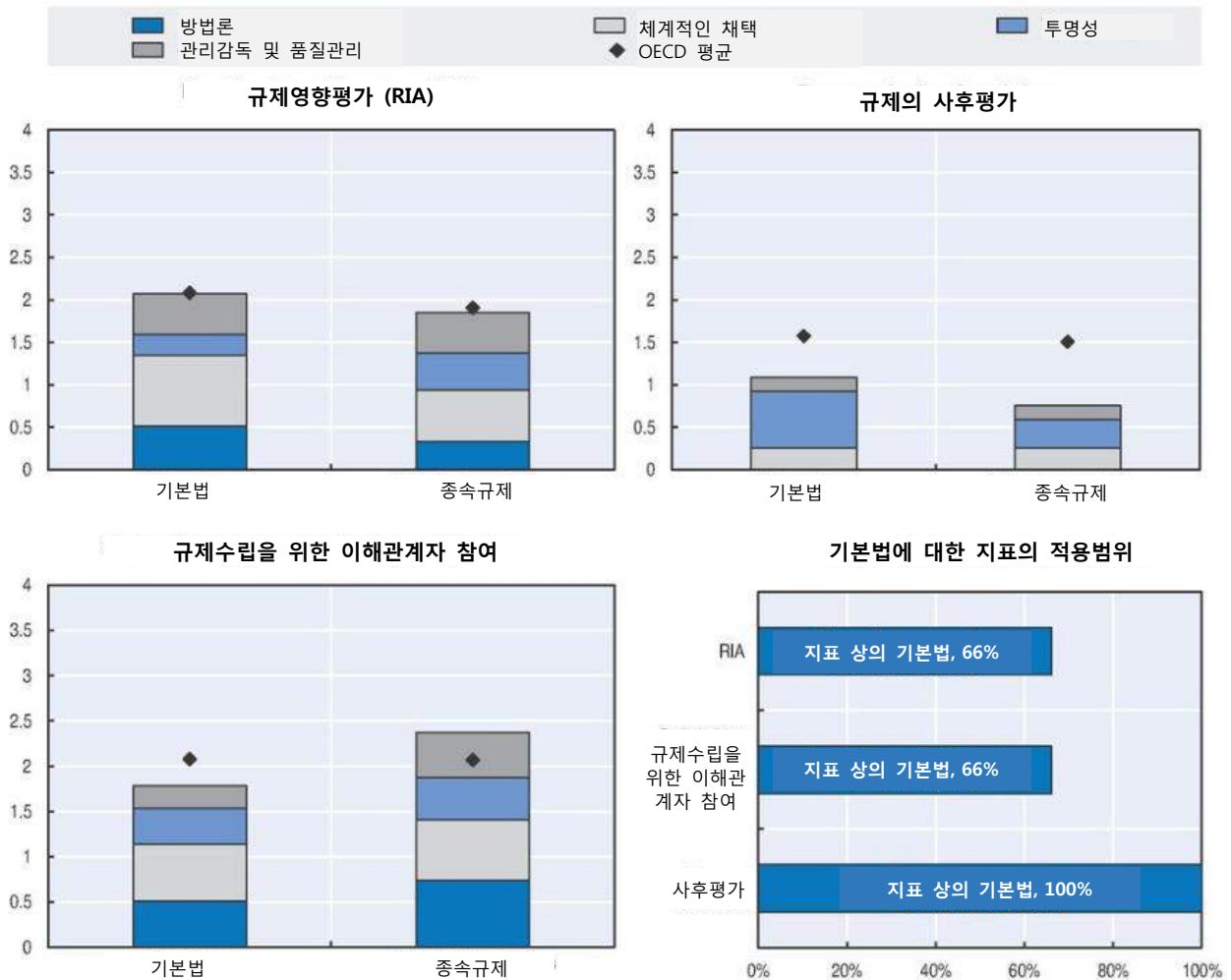
주목: 비즈니스간소화의회

"비즈니스간소화의회" (Conseil de la simplification pour les entreprises)는 국회의원과 기업가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기업 대표자, 선출된 공무원, 전문가 및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14명의 독립회원으로 구성된다. 기업과 공공행정공무원의 협력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우선해야 해야 하는 주제를 정하고 난제를 평가하며 간소화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www.simplifier-entreprise.f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프랑스 정부는 공공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및 효율을 개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주요 평가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www.modernisation.gov.fr/laction-publique-se-transforme/en-evaluant-ses-politiques-publiques/evaluer-les-politiques-publiques#sthash.gBj3DciP.dpuf

프랑스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법의 약 66%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66%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47>

독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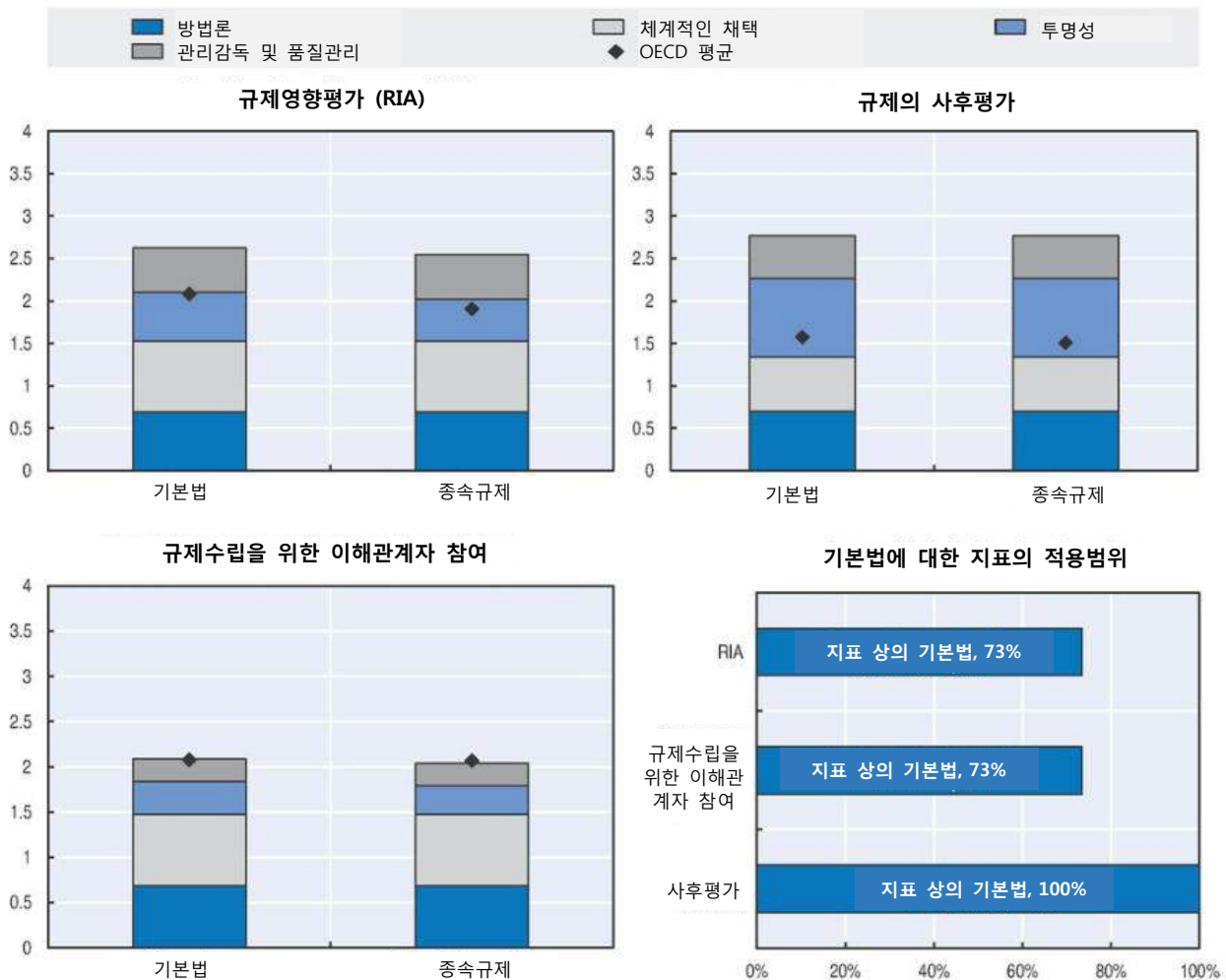
독일은 지난 수년간 독일의 규제정책제도를 크게 향상시켜왔다. 2013년 독일 정부는 매년 100만 유로 이상의 준수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규제에 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수행하며 독립된 국가규제관리의회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가 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의 개입을 통해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 평가를 향상시켰다. 모범규제에 관한 수상관청 국무성장관 (Minister of State to the Federal Chancellor for Better Regulation)은 모범규제에 관한 범정부적 발전을 촉진시킬 책임이 있으며 수상관청의 전담기구가 관료제 (bureaucracy)의 축소와 모범관행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내무부와 법무부 및 소비자보호부에서는 구상 중인 규제가 기존의 법제도 및 다른 규제와 일치하는지에 검토한다.

독일 정부는 최근 '선 규제철폐, 후 규제신설 (one-in one-out) 규칙'을 도입하여 규제비용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간소화 이상으로 규제정책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부문이나 정책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심층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독립된 능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는 사회동반자, 전문가 및 그 외에 규제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은 일반 대중들과 보다 체계적이면서 공개적으로 협의를 나눌 수 있고 공공협약에 관한 영향평가를 공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의 협의견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주목: 규제정책평가 시의 통계청의 역할

독일의 연방통계청은 현재, 자녀출산, 사업개시, 세금납부 또는 직원고용 등과 같이 실제 삶과 관련된 30가지 생활사건 (life event)에 대한 공공행정과 법의 질에 대해서 시민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표조사 (representative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민들과 기업들은 전용웹사이트인 www.amtlich-einfach.de 상의 생활사건을 통해서 사용자의 생활방식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각 생활사건에 대한 각자의 경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방통계청에서는 행정부담과 준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준수비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등 비용에 대한 사전 추산치가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각 법률과 규제를 체크한다. 뿐만 아니라, 연방통계청은 규제목표가 요청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부처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의 약 73%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3%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독일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58>

그리스

개요

2012년에 채택된 모범규제에 관한 법, “규제 거버넌스: 모범입법의 원칙, 절차 및 수단 (Regulatory Governance: Principles, Procedures and Tools of Better Law Making)”은, 모든 법 제발전에 모범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과제들은 여전히 규제시행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정책과 관련된 책임소재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규제정책요소에 대해서, 내무행정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Administrative Reconstruction)나 모범규제실 (Better Regulation Office, BRO)을 통한 정부산하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to the Government), 재무부 또는 개별 부처에서 책임을 떠맡고 있다.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규제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BRO는 재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위기 시에는, 정부가 규제의 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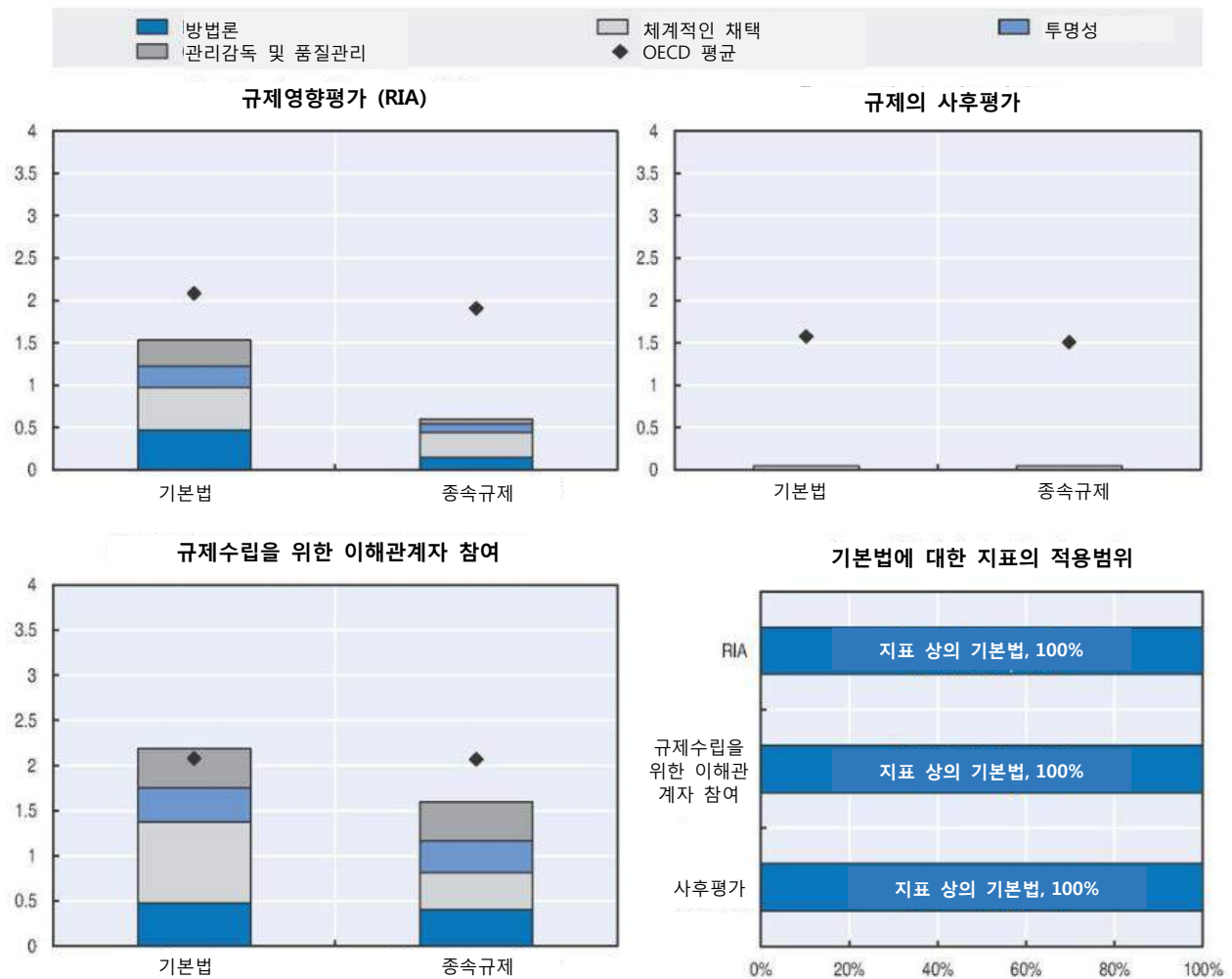
규제영향평가는 모든 기본법의 의무사항이지만, 새로운 초안을 개발하는 기간이 짧아서 규제영향평가의 질이 낮다. BRO는 RIA의 질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형편 없이 개발된 RIA에 의해 수반되는 제안서 초안 (draft proposal)을 거절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공협의를, 공식적으로 설정된 규칙 없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규제초안은 협의 포털 (www.opengov.gr)에서 공개한다. 하지만 수취한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스는 기존 규제의 사후검토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법 (old law)에 대한 평가나 폐지는 공통관행은 아니다. 행정부담의 감소는 다른 OECD 국가에서 그렇게 널리 퍼져있지는 않다.

주목: 모범규제에 관한 법

2012년 2월에 채택된 모범규제에 관한 법은 필요성, 비례원칙,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 투명성, 접근 용이성 및 논란이 되는 규제의 회피성 등과 같은 모범규제의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들이 이러한 원칙과 부합하도록 지시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개정이나 모든 입법초안에 관한 사전 RIA와 더불어, 규제비용과 편익 및 영향에 대해서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영향평가는, 시행을 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후 및 늦어도 5년까지는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입법에 관한 공공협의절차의 단계와 기한을 규정하고, EU 연합법의 적용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 사무국의 모범관행지원실의 설립을 통하여 규제정책에 관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한다.

그리스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그리스에서는 원칙 상 의회 의원들이 기본법을 발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정부에서 모든 기본법을 발의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낸 정보는 그리스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기본법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62>

헝가리

개요

헝가리는 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규제영향평가(RIA)는 2011년에 시작되었다. 모든 상위 법안과 하위법안에서 RIA는 필수이며 이는 대안 옵션을 평가하고 국가예산, 경쟁, 환경 사회적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일부 RIA는 사후에 대한 연대표를 보여줌으로써 사전과 사후평가간의 피드백 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접근은 2011년에 도입된 사후 기본입법과 종속입법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의 체계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기관 중 일부는 아직 완벽하게 자리잡지 않았다. RIA의 품질을 관리를 담당인 규제를 후원하는 부서 외의 정부기관이 없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과 사후평가에 관하여 일부적으로 통제한다. 공식 회담의 깊이와 범위에 대한 품질 통제는 적다.

또한 RIA와 더욱 심도있는 RIA와 사후평가를 위한 사후평가의 임계치 검사의 부재는 이러한 도구들을 충분히 이용하기엔 어렵게 만든다. RIA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사후검토는 법안의 잠재적 영향에 비례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주목: 규제정책과 효율적인 행정

규제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효율성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정 개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략의 핵심적인 우선 순위는 기업과 시민을 위한 관리적 부담의 감소다.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는 10 개의 개입 영역에서 약 114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출산, 고용, 사회 복지, 교육, 부동산, 개인 문서, 연금, 사망 및 상속을 포함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포함하여 228개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에 대한 행정부담의 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국 100 개 이상의 원스톱 상점의 개통으로부터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영토 구조의 개혁과 함께 총 300개에 가까운 원스톱 상점을 계획하고 있다.

헝가리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헝가리의 경우 기본법의 약 70%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0%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헝가리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77>

아이슬란드

개요

아이슬란드의 규제정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이다. 입법 담당 부서는 국무총리실 내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는 정부제출안 준비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의 시행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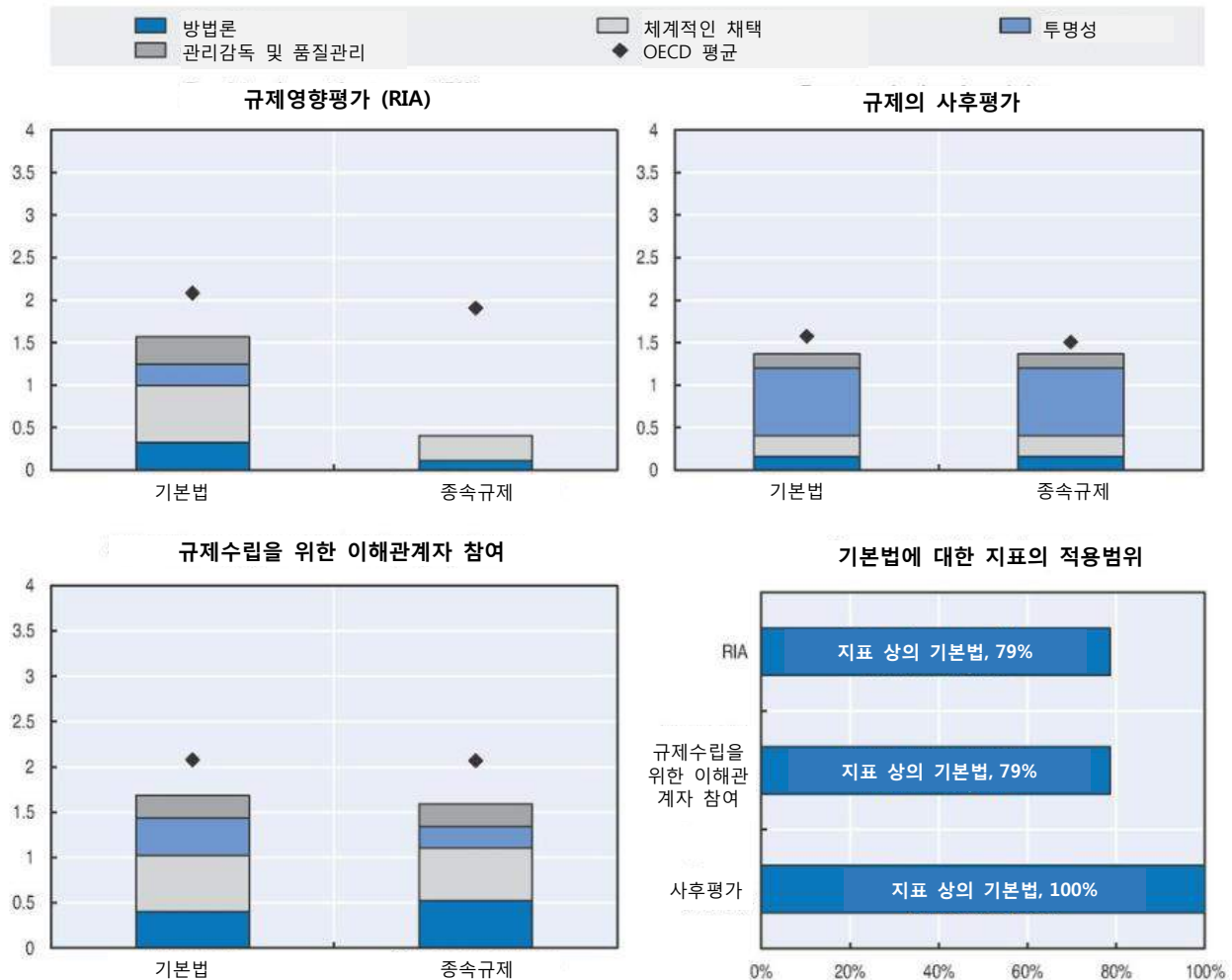
아직 아이슬란드는 규제정책을 위한 도구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다. 지방 당국을 위한 국가 예산과 비용에 대한 기본입법과 관련하여 RIA는 잘 자리 잡혀 있지만 다른 분야의 기본입법들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RIA와 관련된 기본입법은 보통 매우 짧고 아무 수량화 없이 발생 가능한 영향만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혜택은 거의 수량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혜택이 비용보다 덜 클 경우에 상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RIA은 공식적으로 일부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능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 2013 "행정 단순화와 사업분야의 더욱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액션 플랜"과 더불어 다른 유형의 영향, 비용 그리고 혜택이 일부 규정과 함께 평가되고 있으며 법안 초안에 관한 수정된 안내서가 2015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광범위한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입법을 위한 공식적 기본 법칙이 있고 하위 규제를 위한 것은 없다. 중앙정부 웹사이트에 협의를 위한 계획이 있으며 접근성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의회 위원회는 회의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의회 법안에 대하여 폭 넓은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 존재하는 규제의 주기적인 사후평가는 아이슬란드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주요 법률 및 하위 규정을 위해 실시된다. 또한 몇 년 후 일부 규정은 "소멸시효 조항"을 포함하여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주목: 국무총리실

2010년부터 모든 정부의 기본입법은 국무조정실에 제출되기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법안의 품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로 관련 부처로 전송된다. (영향 평가에 특히 중점을 둔다.) 종종 비공식적 대화는 법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른다. PMO는 공식적인 요건과 함께 법안의 적합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발급한다. (국무조정실의 절차 규정과 법률 초안 작성 안내서) 이러한 요건은 OECD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 PMO는 각 부서의 역량을 고려하여 요건을 점차 강화시켰다. 이러한 대화는 이전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그 예로는 연간 정부안 리스트가 준비될 때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PMO는 부서의 업무의 품질을 높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업무에서의 주요 품질 관리가 용인되었다. 또한 OECD 규제정책전망을 준비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참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르게 하였다. (만족스러운 영향 평가를 받은 법안의 수, 대중과 협의가 이루어진 법안의 비율 등)

아이슬란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아이슬란드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89>

아일랜드

개요

지난 10년 동안 아일랜드는 규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2004년에 나온 업데이트된 RIA, 협의, 1922년 이전의 입법의 검토의 광범위한 시행을 위한 액션 플랜인 "Regulating Better"를 포함하여 죽어가는 입법을 찾고 폐지시키고 증거 기반 정책입안을 위한 능력 배양한다.

RIA는 모든 기본법 및 종속규제를 위해 실시된다. 규제기관은 각각의 영향이 고려됐는지 진술서를 반드시 내야 하며 아주 낮거나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독립적인 감독 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주요 및 종속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주주 참여만이 공식적인 요구조건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협의에서는 요건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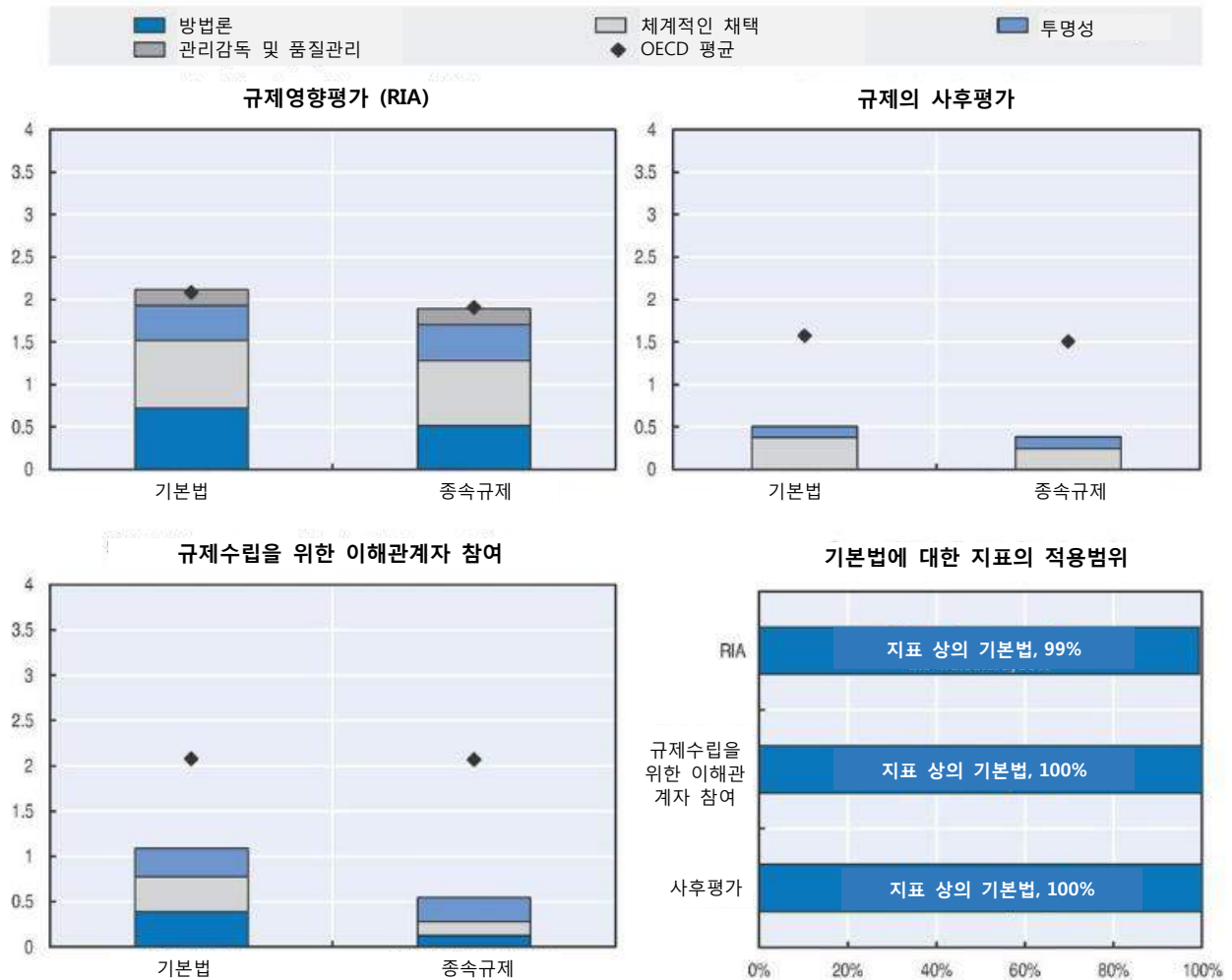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협의는 모든 기본법, 일반적으로 선택된 그룹과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협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종속규제를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된 국회 위원회의 입법 전의 검토는 비응급, 주요 비예산 입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이다.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사후평가는 일부 기본법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기본입법의 사후적 입법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자동적인 평가 요건은 없다. 평가가 확인해야 하는 다른 유형의 영향 또는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요건이 없다.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방법과 지침이 포함된 투명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규제 절차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목: 규제영향분석의 효율성 검토

총리실은 2011년에 규제영향분석의 운영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터뷰는 RIA에 작업한 사람들과 후원하는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게 진행되었다. 또한 인터뷰는 RIA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RIA 프로세스의 일부로 협의된 조직 그리고 그 외의 대표적인 기업조직에게 진행되었다. 이는 필수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규정이지만 광범위한 영역의 규제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고서는 시스템 자체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 RIA의 가시성의 개선을 포함한 방안과 분석에 사용된 추정사항으로 협의에 대한 기회를 허용한다. 직원들은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혜택을 인지하여 모든 유형의 입법의 발전에 엄격하게 분석된 체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RIA의 타이밍 또한 중요하며 RIA는 "부가 기능"이 아닌 규제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되었다.

아일랜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아일랜드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191>

이스라엘

개요

이스라엘은 2010년에 OECD 가입 후 규제정책의 개선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포괄적인 정부 전체의 규제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4년 10월 22일의 정부 결의안 2118 번은 이러한 정책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초점은 규제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으며, 더욱 엄격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사전과 다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규제를 검토하는 사후이다. 국무총리실이 일반적으로 규정 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지만 전담기관이나 부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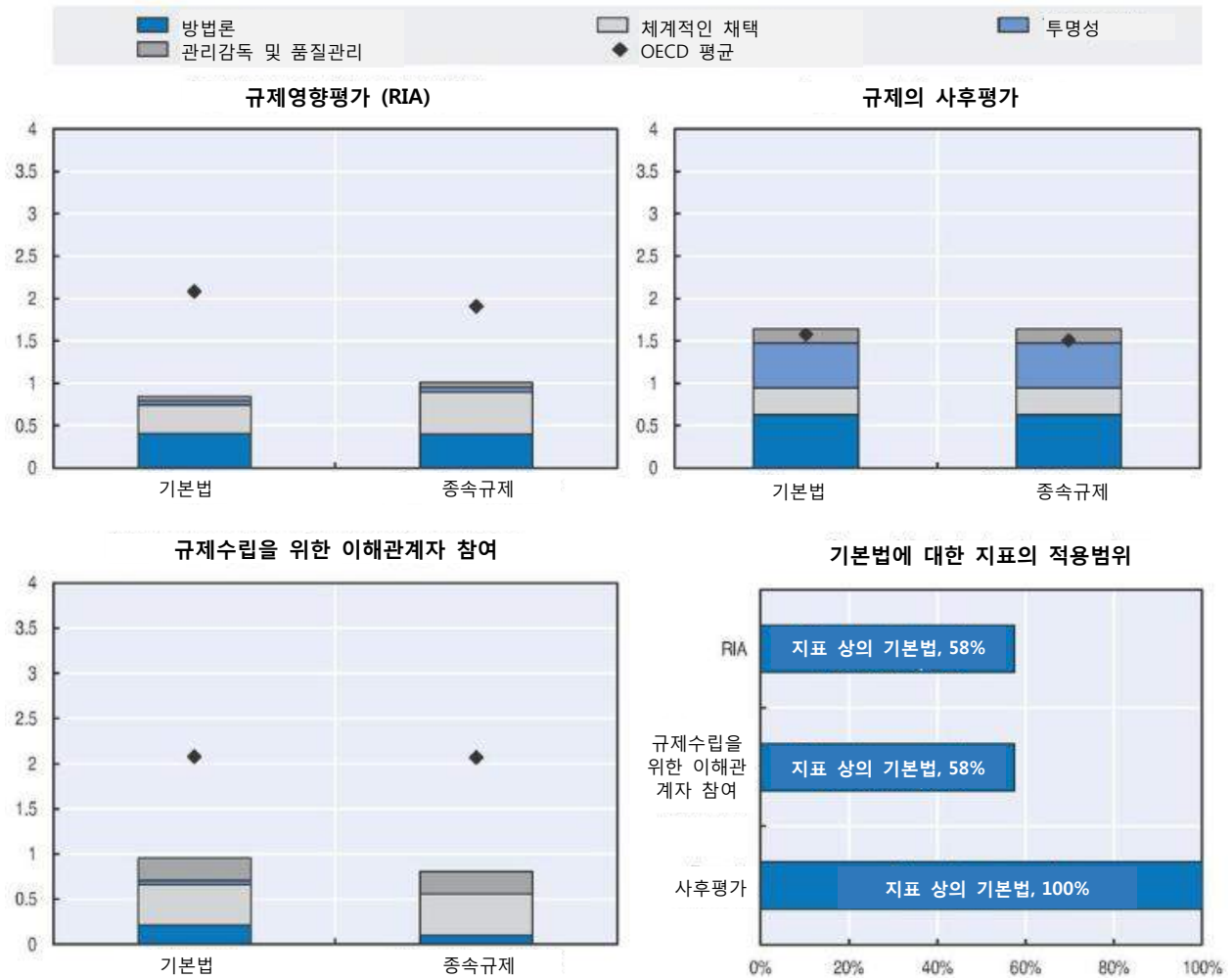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이해관계자 참여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입법 초안에 협의할 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의 마지막 초안에 존재하지만 프로세스의 예비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영향평가는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나 2014년 정부 결의안으로 입법 초안에 RIA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도입하였다. 초안 또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프로세스는 2015년에 시험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다. 정부의 중심에 가깝고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효과적이고 강력한 RIA의 관리를 통해서 RIA 요구 사항이 실제로 모든 부서에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결의안의 RIA 요건은 간부들이 시행한 법률에만 적용되고, 기본입법의 4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국회 의원들이 만든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는 대부분 즉석으로 선택된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 도 정부 결의안은 각 부서의 권한 범위 내 가능한 5년 계획을 만들고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도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총 규제부담의 25 % 감소를 유도한다.

주목: RIA 안내서

정부의 RIA 안내서는 규제기관이 비규제를 포함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영향 분석에 근거하여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발 또는 규제를 개정할 경우, 규제기관들은 규제 문제를 설명하여 주어진 규제의 정책 목표를 정하고, 위기관리 시행,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이루고 다양한 대안 해결책에 따르는 비용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규제기관들은 "위험과 규제개입의 부담 사이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균형"을 포함한 검사 조치에 대한 실행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규제에 대한 성과지표는 확인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본법의 약 58%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58%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05>

이탈리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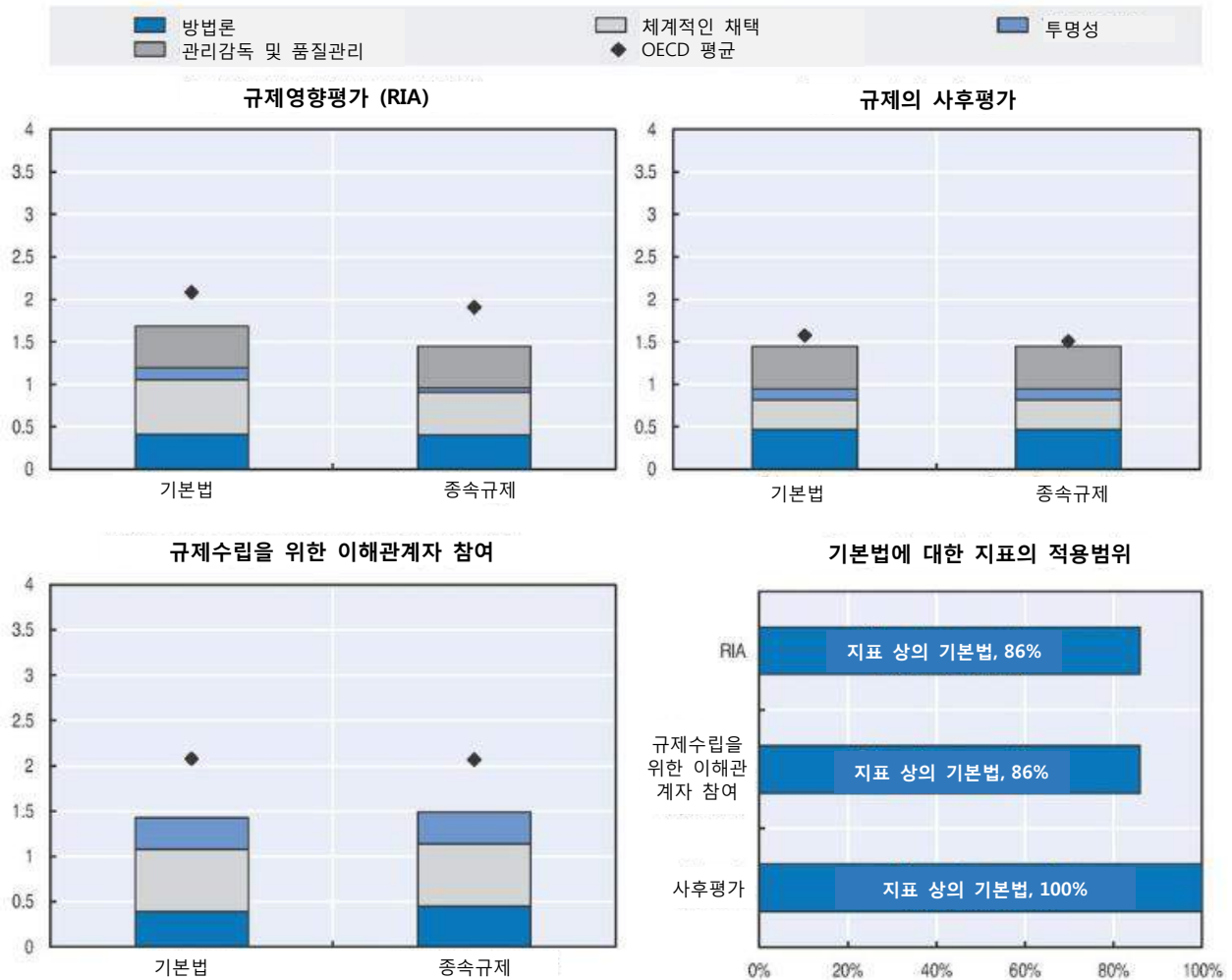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개선안이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RIA는 간부들이 도입한 모든 법률에 필수이며 국무총리실의 입법부서 (DAGL)는 관리와 지침을 제공한다. 사전과 사후평가는 사전 진행 표시기를 도입된 2년 후에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요건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행정 부담과 중복적인 법률 폐지의 광범위한 측정이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국무총리실의 행정부서(DFP)에서 착수되었고 2014년에는 새로운 부담 감소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협의는 간부들이 도입한 모든 기본입법 및 종속입법에서 필수 사항이며, 일부 협의는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을 통해 시행되었다. RIA, 사후평가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규제정책수단에 관한 기존 입법의 개선은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어려운 도전이 될 부분은 더 나은 정책결정과 행정부담의 근원을 찾아 이러한 개선안들을 심화하는 것이다. 투명성에 특히 주의 깊은 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IA와 협의에 대한 기초를 대중에게 공개하면 제안된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후평가를 대중에게 제공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공헌과 똑같이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기 위한 탄탄한 기초의 평가를 만들 수 있다.) 2014년부터 교육, 정의와 공공 행정/ 단순화 등 일부 열린 협의는 주요 개혁을 통해 실시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비공개 협의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보통 개별 부서에 의해 선택된다. 준비 또는 수정할 예정이 있는 법률의 단일 목록은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정되어 있는 규제 정책 도구의 개선은 선정 기준과 함께 임계치 판별을 소개 할 수 있다. 이는 경제 및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과 입법 제안에 대한 분석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욱 탄탄한 사전 평가 또한 사후 입법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중요한 노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목: 다면성 규제의 일관성

이탈리아는 다면성 규제의 일관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결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앙정부가 채택하기 전, 국가-지역위원회가 동시 입법권의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초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급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역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제안에 비구속적 조언을 제공한다. "실무그룹"이 지역과 지방과 함께 부담 감소 활동과 간소화 조치를 함께 정의하고 강화한다. 전체 규제 순환을 개선을 위해 규제정책의 투명성은 중앙 및 지역 당국의 새로운 웹 포털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지역정부 (OLI)의 법제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규제정책의 모범 사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한다.

이탈리아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기본법의 약 86%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86%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19>

일본

개요

2013년 1월, 일본은 경제 및 사회 구조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사회회의 의견을 기반으로 2013년 6월에 일본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사회는 규제개혁 연간 보고서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정부정책 평가 법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RIA에 대한 구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2015년에 설립된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 외의 사람으로만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는 RIA 가이드라인의 가능한 수정사항과 함께 RIA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RIA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무성 내의 RIA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의 평가 능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와 정책 평가위원회에서 의해 우선 순위로 확인하였고 평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도 시작하였다.

엄격한 RIA 관리는 전체적인 정부정책의 규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RIA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RIA의 품질 향상에 대해 부서가 충분히 이해를 한 제안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OECD는 감독기관이 정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것을 권장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의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이는 종종 이해관계자들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제안서의 기초로 규제 개선에 필요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개선을 검토하게 한다.

행정절차법안은 규제담당기관에서 새로운 종속규제의 개발 과정 동안 대중적 의견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총무성은 정기적으로 행정 절차 법안 구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적 의견을 이행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부서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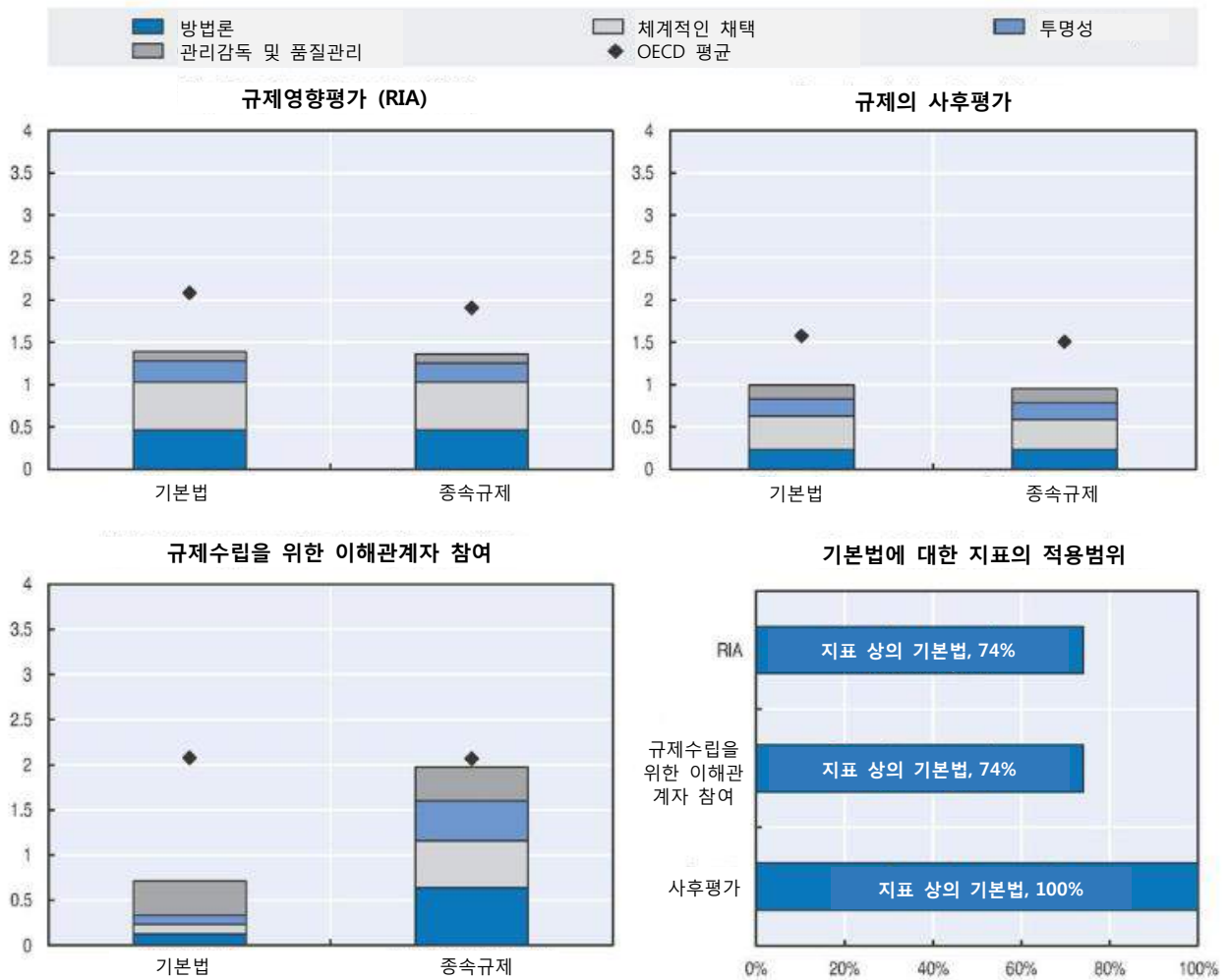
주목: 규제개혁의 핫라인 (직통전화)

"규제개혁의 핫라인" (https://form.cao.go.jp/kokumin_koe/opinion-0009.html)은 시민, 기업 그리고 사회 등 이해관계자 절차의 큰 다양성의 단순화를 포함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요청을 받기 위해 2013년 3월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규제 및 법적 요구 사항의 변화의 폐지로 광범위한 단순화 및 규제개혁에 대한 요청이 핫라인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주요 정책분야는 다음과 같다: 건강과 의료, 고용, 농업, 투자 유치 그리고 지역 활성화이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서와 기관이 회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간을 맞추어 요청사항에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은 시민들에게 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hotline/h_index.html를 통하여 공개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요청사항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조사들의 결과는 연간 규제개혁보고서에 포함된다.

일본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기본법의 약 74%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4%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29>

한국

개요

1998년, 한국은 한국의 국무총리를 포함한 민간부문과 정부 장관 구성원으로 구성된 규제 개혁위원회를 설립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부 내에서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을 설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새로운 또는 기존의 규제를 평가하고 모든 실제 행정 수준의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충분한 자원이 규제 품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은 품질 규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4 년, 정부는 기업과 시민에 대한 규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파일럿 시스템인 "cost-in cost-out" 시스템을 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과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규제영향분석 센터를 설립하였다. 개정된 시스템은 RIA의 어려움이 일상적인 형식이 아닌 정책결정의 도구로 간주 및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삼고 있고, RIA의 모든 공식적인 요건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고 도와주고 있다.

한국은 모든 기본법 및 종속규제에 한하여 추후 단계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일부 규제의 초기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 많은 온라인 협의는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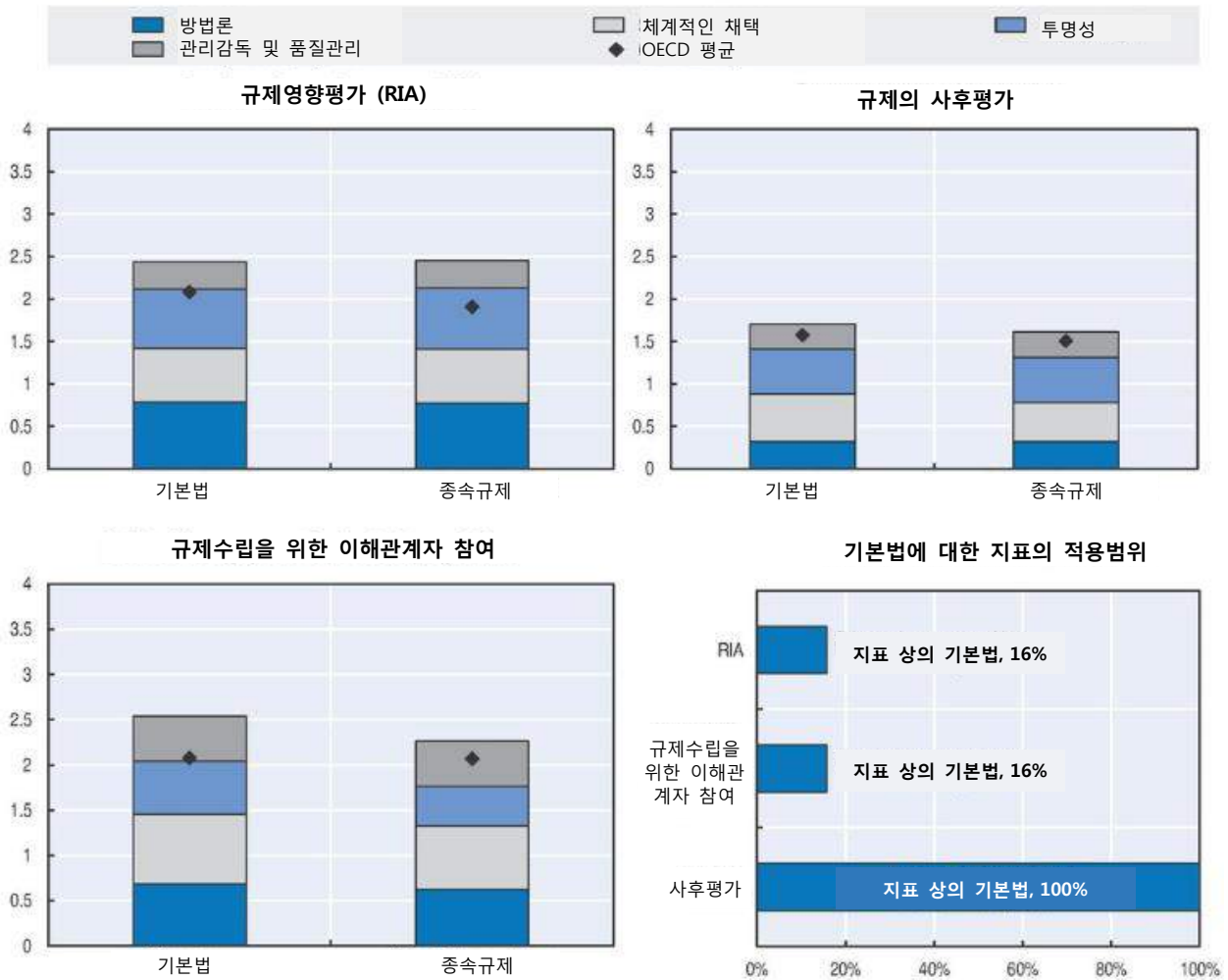
이제 주기적인 사후평가는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규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하는 모든 기본법 및 종속규제에서 필수다. 표준화된 평가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규제의 기본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규제간의 중복 또는 불일치되는 영역이 있는지 또한 포함되어 있다.

주목: 규제청원시스템 '신문고'

한국 정부는 2014년에 한국어로 '신문고'라는 전용규제포털 www.better.go.kr에 새로운 규제 청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청원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이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첫째로 관련 부서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 부서는 3개월안에 자세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명들이 충분히 정당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서에게 변경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규제 청원 시스템의 도입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2014년에 약 6500개의 규제 청원을 받았고, 수락률은 36.6 %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결과는 22 배 이상, 4.6 배 이상으로 수용율이 증가하였다.

기본법에 대한 RIA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제시된 지표는 한국의 기본법의 약 16 %로 경영자 (CEO)에 의한 수행 프로세스를 다룬다. 한국에는 국회에서 시작된 중요한 기본입법은 공개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국회가 시작한 기본입법에 RIA 를 시행해야 하는 요건은 없다.

한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본법의 약 16%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16%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32>

룩셈부르크

개요

룩셈부르크의 2009년도-2014년도 정부 프로그램은 규제 품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공무 및 행정 개혁 장관은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의 부서는 RIA 조직화 및 관리 단순화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룩셈부르크 규제개혁전략에 요약된 바에 따르면 "투명성과 국가 절차의 행정 단순화 그리고 형식"은 주로 행정 부담 감소와 단순화에 초점을 맞춘다.

영향 평가의 형태는 반드시 개발되는 모든 규제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형태인 이는 주로 행정 부담과 집행 비용에 초점을 두고 추가적인 분석적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RIA 검토를 담당하는 공무 및 행정 개혁 부서는 현재 RIA의 품질이 보장되는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 RIA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향 평가에 포함된 분석이 다른 형태의 영향과 규제 혜택으로까지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RIA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개발되는 모든 규제의 개발을 알려진다. 하지만 의견들은 초안 제안의 늦은 단계에서 모아진다. 초기 단계에서 협의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이 더 나은 정책 문제와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 대중과의 협의는 일부 기본법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ICT의 사용 증가, 예를 들어, 하나의 정부 협의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개방 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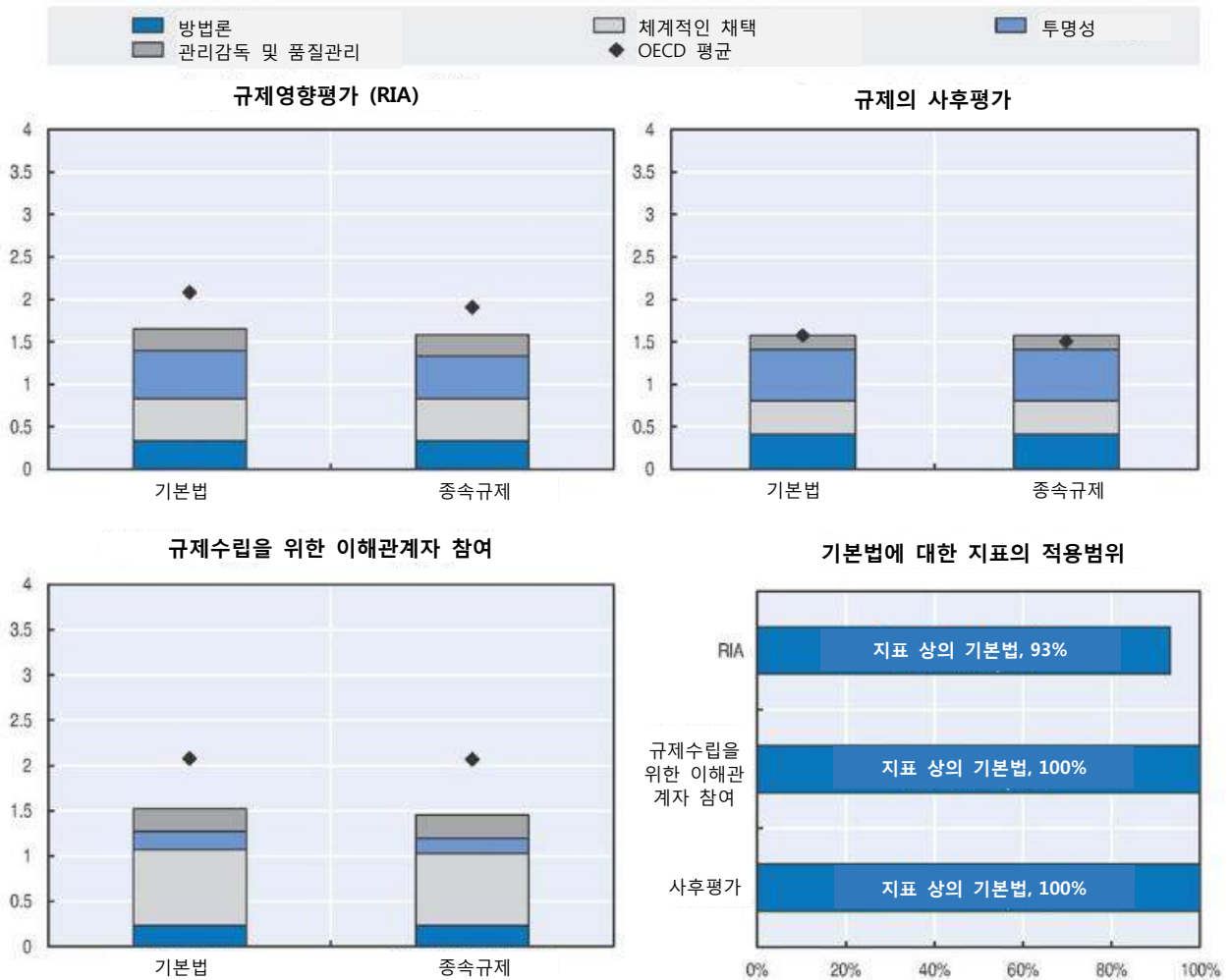
2009년과 2012년 사이에는 260개의 행정 단순화 조치들이 구현되었고 일부 특정 규제의 사후평가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사후평가와 소멸시효 조항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규제의 자동적 평가요건과 같이 더욱 체계적인 접근들은 그 규제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주목: 행정개혁과 단순화를 위한 부서간 플랫폼

공무 및 행정개혁부의 권한에 따라 부서간 플랫폼은 행정 단순화에 대한 정부의 일을 조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행정 절차 및 시민을 위한 그리고 잠재적 개선을 위한 심사 관리 프로세스 목록 개발이다. 시민, 기업 그리고 사회 단체들은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상호작용적 웹사이트인 vosidees.lu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들은 플랫폼에서 검토되며 가장 관련성 높은 사람의 아이디어는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 제안서로 변환된다.

이 플랫폼은 부서의 대표자 위원회와 정보기술을 위한 국가센터 (State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CFIE)로부터 주도된다. 정기적으로 전문기관과 도시 및 지방자치제협회 (Association of Towns and Municipalities, SYVICOL)와 함께 소통한다

룩셈부르크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기본법의 약 93%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3%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룩셈부르크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43>

멕시코

개요

멕시코의 규제정책은 공식적으로 행정 절차의 연방법률 (Federal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FPA)에 설립되어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멕시코는 규제정책에 힘써왔다. 2000년에는 개혁이 멕시코의 규제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을 탄생시키기 위해 LFPA에게 소개되었다. LFPA는 이 정책의 메인 요소들을 정의하는데, 이는 심사개선연방위원회 (Federal Commission for regulatory Improvement, COFEMER)를 주요 감독 기관으로 두고 더 나은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부서의 책임과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영향평가 (RIA)와 같은 심사 개선을 위한 도구를 설립하고 행정 단순화 그리고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COFEMER는 미래의 규제 안건에 대한 플랜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방 정부에게 조언을 주며 주식 규제 검토 그리고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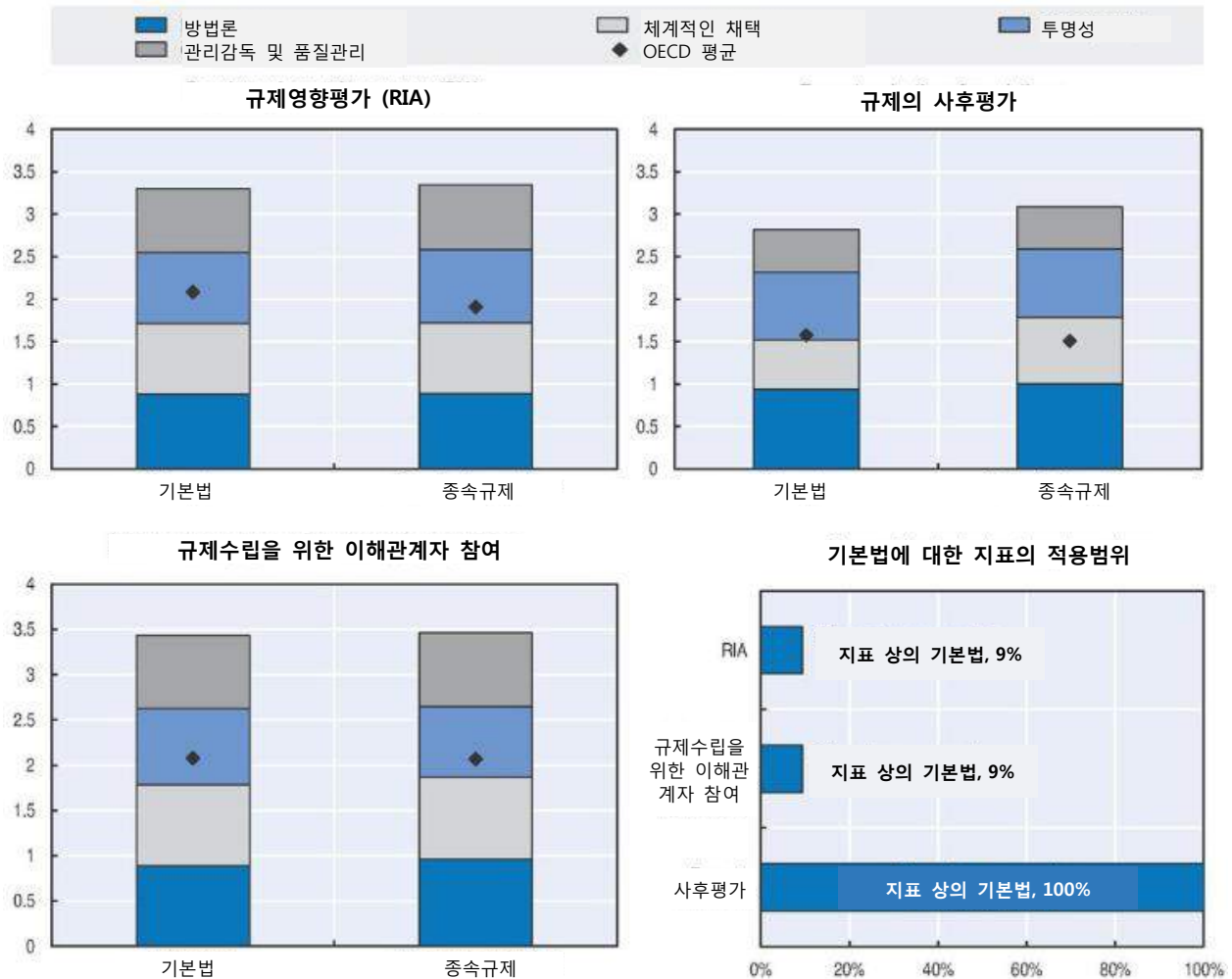
멕시코 RIA 과정에 실질적인 개혁은 2010년과 2012년 사이에 채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영향을 가졌을 것이라 예상된 규제와 큰 영향을 가졌을 것이라 예상되는 규제 사이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도구인 규제영향 계산기는 그들의 제안된 규제의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규제기관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RIA 매뉴얼은 다른 형태의 RIA를 소개, 경쟁 영향 분석과 위험 분석 또는 이 두 개의 조합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멕시코는 COFEMER가 관련 부서와 분권적 조직에 높은 위험도가 있는 RIA의 기술표준이 포함된 사후 RIA를 발행할 수 있는 협정을 발표했다. 사후 RIA는 규제목적, 효율성, 효과, 영향과 영속성의 성과를 평가한다. 멕시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 문화는 정부의 다른 영역에 침투한다. 다음 단계는 연방 국가,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RIA 및 협의 과정과 헌법 자치 단체에, RIA, 그리고 의회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협의를 포함 할 수 있다.

주목: 멕시코에서의 협의

COFEMER는 요청에 따라 RIA에서 면제된 규제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코멘트와 의견이 수신된 모든 규제 초안과 RIA를 www.cofemersimir.gob.mx에 발행한다. 초안 규제와 RIA에 대한 COFEMER의 반응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그 과정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초안 규제와 RIA는 적어도 30일 동안 협의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더 긴 협의 기간이 일반적이다. COFEMER도 적극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안 규제와 RIA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의견을 모집하여 협의에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COFEMER는 소셜 미디어, 이메일 알림, 웹 사이트 그리고 공식 미디어 (신문, 또는 TV 및 라디오)와의 지속적인 참여로 엄청나게 공개 협의를 촉진한다.

기본법에 대한 RIA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간부들의 절차들만 포함하는데 이는 멕시코 기본법의 9%를 차지한다. 일반 대중과의 협의 및 국회에 의해 시작된 기본입법의 개발을 알리기 위해 RIA를 시행하기 위한 멕시코의 공식 요건은 없다.

멕시코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기본법의 약 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56>

네덜란드

개요

네덜란드는 “규제개선 (Better Regulation)” 정책을 개발한 유럽의 선구자 중의 하나였으며 1990년대에는 오픈 마켓을 위한 규제와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한 추진력으로 움직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기업을 위한 행정 부담 감소에 강한 초점을 맞췄고 추후에는 시민들 로까지 이어졌다. 2000년에는 ACTAL, 네덜란드 규제부담 자문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게 의료, 교육, 안전, 복지 사업, 시민 및 전문 노동자에 대한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설립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는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룹을 만들었다. 기업을 위해서는 경제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내정부에 만들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2011년도의 Integraal Afwegingskader (IAK) 지시어는 통합된 방식으로 영향 평가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 법무부에 있는 규제정책의 품질에 대한 단위 정책은 영향 평가의 품질의 독립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IAK에 따라 모든 기본법은 첨부된 주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효과와 결과를 포함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다. 영향의 분포를 포함한 혜택과 비용 평가를 개선하고 RIA의 체계적인 협의를 프로세스 초기단계부터 소개하는 것이 시스템의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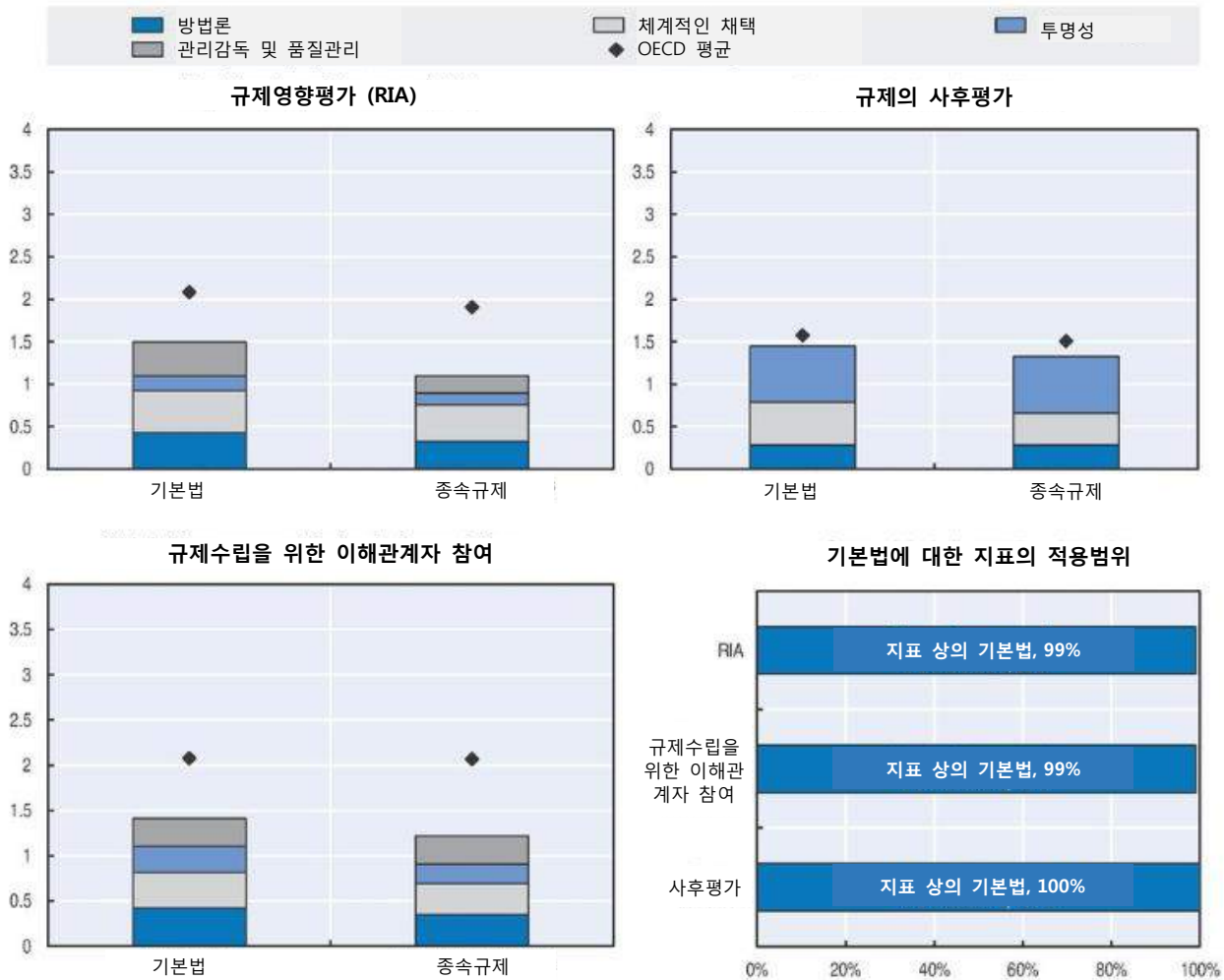
이후 단계의 협의는 일부 기본법 및 종속규제에서만 발생한다. 현재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협의를 위한 상호작용적 웹사이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체계적인 상담을 도입하는 문제와 예를 들어 녹서를 사용하는 것 과 같이 가능한 해결책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기적인 사후평가는 2001년부터 모든 기본법에 대해 필수이다.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개선의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목: 온라인 협의와 사전평가 검토

평가 및 검토의 사용은 네덜란드의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다. 2011 년에 정부는 평가보고서 (<http://www.rifizsoverheid.nl/documenten-en-publicaties/kamerstukken/2011/06/17/kabinetsstandpunt-internetconsultatie-wetgeving.html>)를 발행했고 정부의 온라인 협의 파일럿 웹사이트(www.internetconsultatie.nl)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추가 비용을 만드는 동안 인터넷 상담은 대중의 참여를 개선하고 제안된 법안의 품질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포털의 사용은 시민과 기업에 높은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법률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012에는 독립적인 평가자가 사전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과 실천방법에 대한 검토를 만들었다. 그 검토는 사전 평가를 응용하는 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71>

뉴질랜드

개요

RIA와 공개 협의는 뉴질랜드의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료 토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재무부가 상당한 규제제안의 품질 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RIA에 대한 재무부 지침 및 본보기를 지원한다. 정책 제안을 포함한 각료 및 위원회 서류는 RIA라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RIA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료 문서에 첨부되어 있다. 더불어 RIA 분석에서 품질에 대한 의견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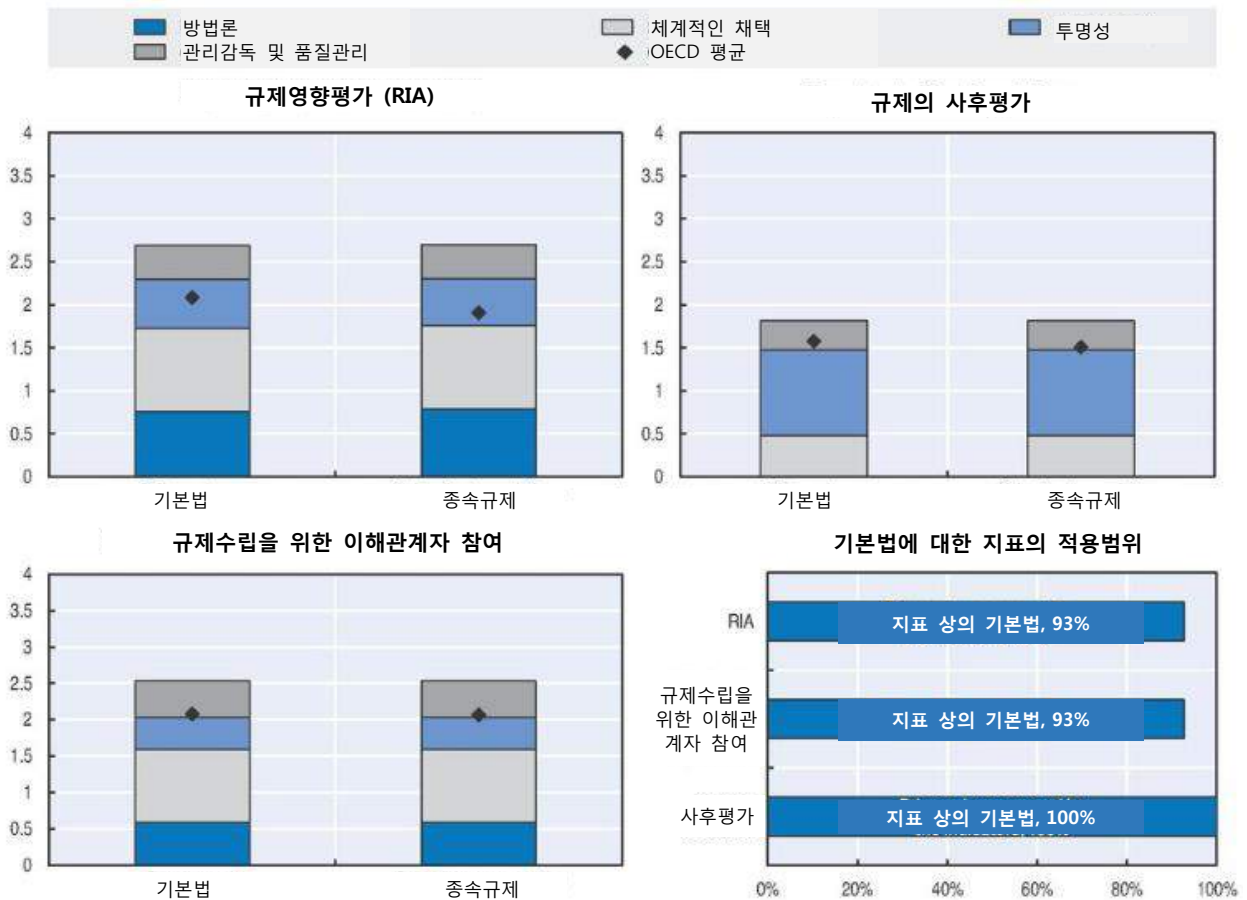
이 규제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요구 사항은 없지만 상담이 정부의 정책과 주요 품질을 보증하는 명백한 정책 기준 중 하나이다. 균열은 누구에게로부터 협의되었는지, 어떤 형태의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주요 피드백을 받았는지, 선호하는 옵션에 대해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지, 어떻게 제안된 사항이 우려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수정 되었는지 (되지 않았으면 왜 안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또한 포함해야 한다.

뉴질랜드 생산성위원회는 문의 및 생산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분야의 개혁을 위해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는 필수는 아니며,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확립된 방법은 없다. 규제의 체계적인 검토를 소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목: 규제영향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검토

뉴질랜드 재무부는 주기적으로 RIA의 품질의 독립적인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는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전년도에 규제영향보고서 (RIS)의 샘플을 참고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에는 정부 기관이 고품질의 RIS를 준비하기 위한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지 평가되었다. 고품질의 RIS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진행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코멘트, RIS 품질과 RIS 품질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기관마다의 다른 관점을 비교, 그리고 재무부가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기관이 RIS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평가는 이전의 검토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가고, 특히 RIS의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RIS의 옵션 분석 섹션에 초점을 두었다.

뉴질랜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본법의 약 93%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3%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61>

노르웨이

개요

노르웨이는 법규 개발을 위해 잘 개발된 표준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식 연구 및 보고를 위한 2005년 지침을 따른다. 이 과정은 관련 부처와 함께하는 내부 협의를 포함하며 제안된 새로운 법규의 결과에 대한 예비 평가 및 계획된 총 영향평가 전 RIA를 관리한다. 지방 정부 및 현대화 부처는 2005년 지침의 준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재무부와의 협업을 통한 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총 영향평가는 일부 기본법과 종속규제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이러한 완료된 RIA는 일반 대중 및 사설 기관과 관련 조직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RIA 개발과정은 총 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RIA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더욱 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과 이에 대한 사유는 대중들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식적인 온라인 협의는 모든 기본법에 관해 수행된다. 또한 노르웨이는 국가적 그리고 하부 국가적 단계 사이의 협의와 협동에 상당한 중점을 둔다. 2000년 중앙정부와 지방 기관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회 수행에 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지방의 자치권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더 나은 토대를 제공하며 지방 당국과 주들을 목표로 한 규정과 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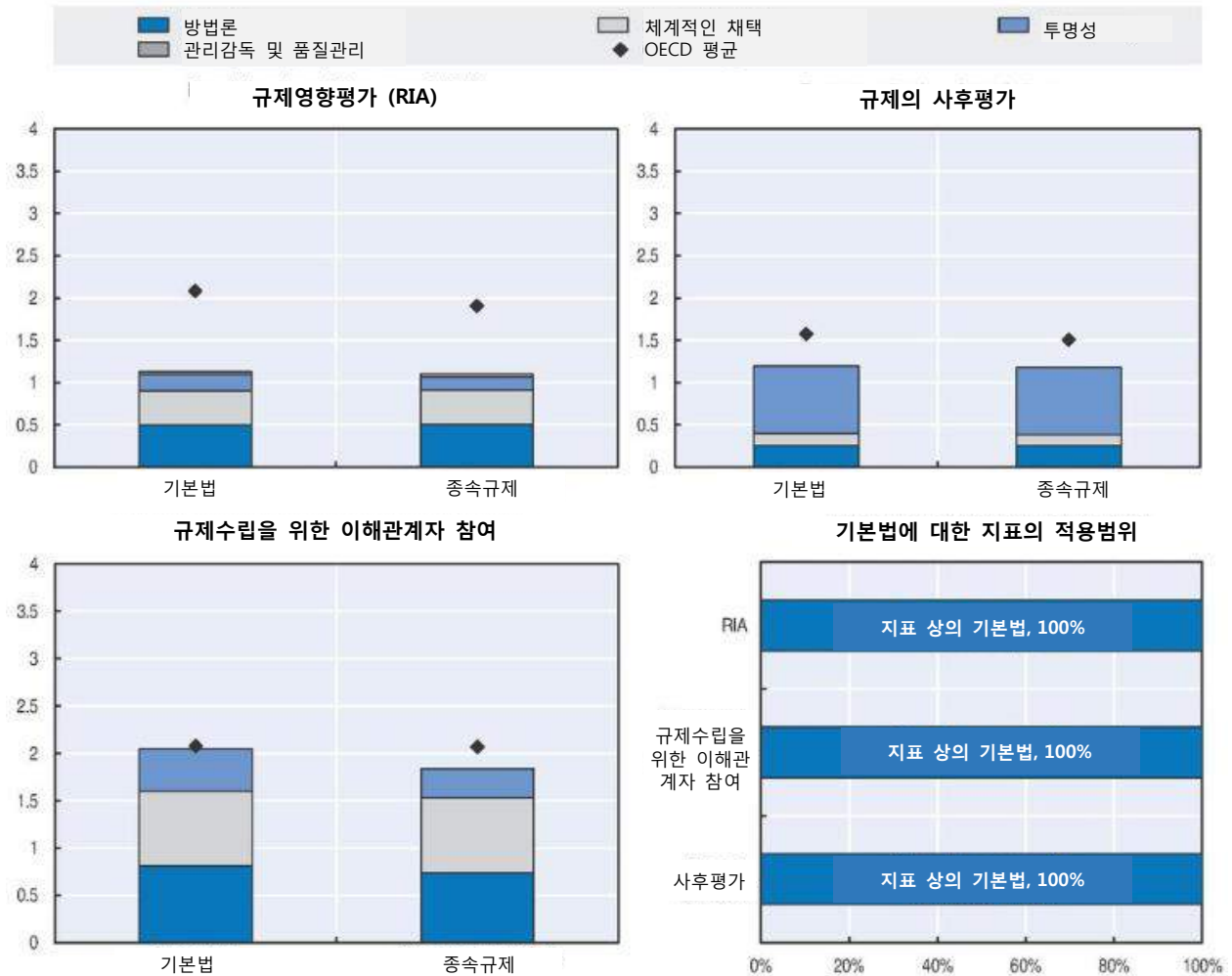
사후평가는 모든 법률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회, 외부 조직 혹은 정부 프로그램 일부로서의 요청에 따라 최근 일부 법규에 대해 수행되어 왔다. 노르웨이는 2017년까지 2011년 금액의 25%까지 행정 부담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 프로그램 단순화 과정의 일부로 기존 법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 제정, 기존 법규 변경, 새로운 ICT 솔루션 채택 등을 포함하여 대략 60개의 행동들이 이미 수행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어떠한 규제감독기관도 갖고 있지 않다. 체계적인 우수성 관리방법의 도입이 장래의 모든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주목: 중앙정부와 사미 의회 사이의 협의

노르웨이에서, 토착민들은 주 당국과 사미 의회 사이의 협의 과정 합의를 통해 2005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 갖게 되었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서의 많은 협의(1년에 30-40회)들이 사미족들을 위한 대표적인 목소리로 사미 정책들을 강조하고 사미 관련 사안들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켰다. 주 당국은 가능한 빨리 사미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미 정책 관련 사항의 수행을 알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사미족 관련 이익과 조건들을 파악해야만 한다. 또한 계획은 사미 정책 혹은 기타 사미족 대표자들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다. 협의 과정의 범위는 매우 넓다; 과정들은 모든 부처와 주 관련 기관들에 적용되고 법제, 법규, 조치, 특정 혹은 개별 행정사항의 결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다루게 된다.

노르웨이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로, 모두 노르웨이의 국가기본법에 해당한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83>

폴란드

개요

폴란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국의 규제정책 시스템을 상당히 발전시켰다. 정부는 일반 대중들이 협의를 위해 노동 조합 및 기업들과 같은 특정 집단에 전달되는 RIA 및 기타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공공협의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일부 목적 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법제 계획 및 RIA에 관해 논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논평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RIA를 위한 새로운 지침, 협의 내용, 사후평가는 더욱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공공협의를 더욱 중점을 두는 2015년의 도입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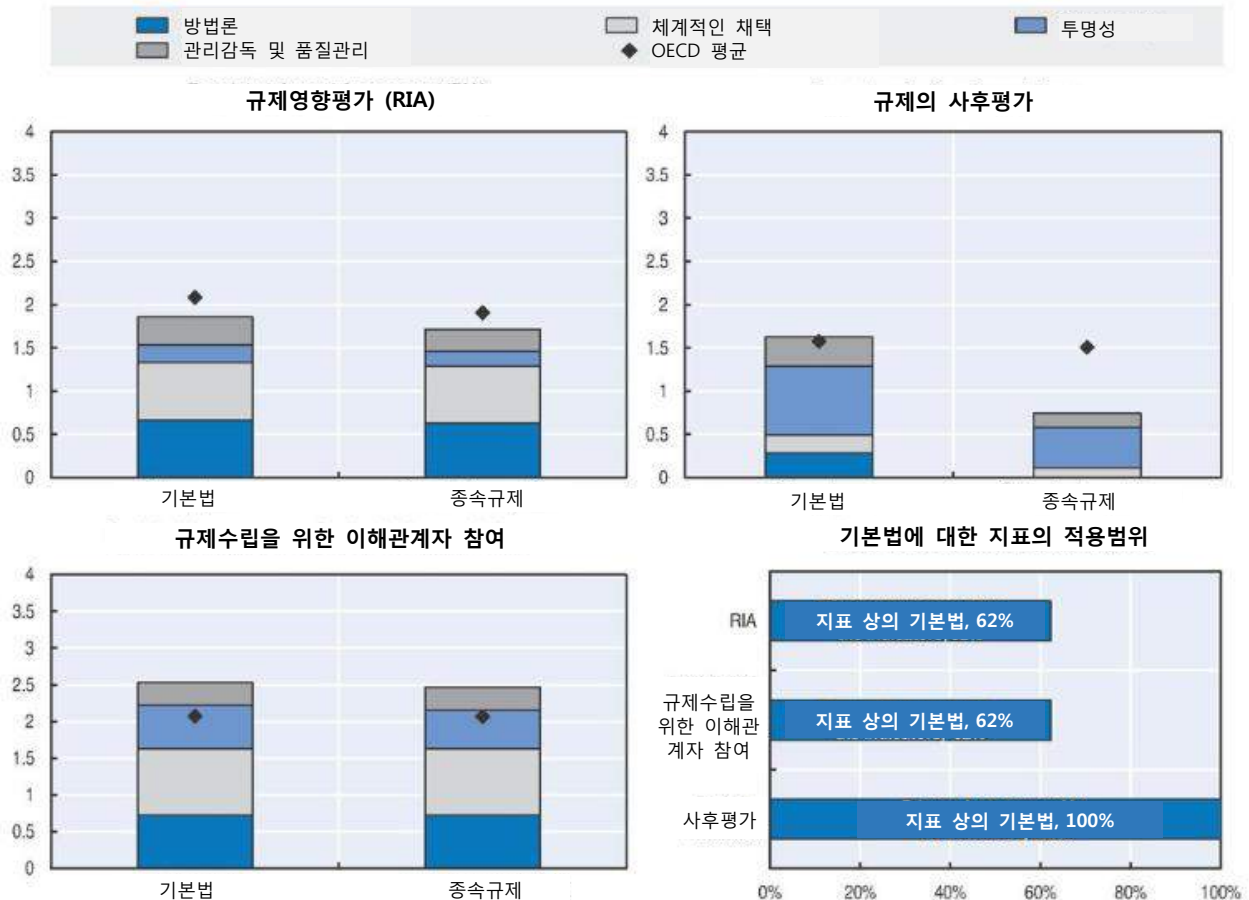
폴란드 경제부는 규제개선 프로그램 2015의 수행과 각료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위해 협조한다. 프로그램은 RIA의 우수성을 감찰하는 총리 사무국 직원들 및 법률의 우수성 보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입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되었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같이 폴란드는 규제정책 요건의 완전한 수행 및 RIA나 협의 사항에 대한 논평이 의사결정 과정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최소 기간이 항상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폴란드는 온라인 공공협의 시스템을 확대하고 정책 문제를 다루는 선택사항 파악과 "협의되지 않은 규제" 방지를 위해 협의의 초기단계에서 독서와 같은 기구의 더욱 체계적인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제의 사후평가 도입을 위해 2014년도에 취해진 방안들이 권장된다. 폴란드는 구조적 개혁을 알리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규제의 종합적인 세부 검토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수행 능력 수립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목: 공공 온라인 협의를 위한 시험시스템

폴란드는 2013년 출시된 "규제개선 프로그램 2015"에 이어, 실험용 공공 온라인 협의 시스템 (www.konsultacje.gov.pl)을 도입하였다. 선택된 입법부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온라인에서 간단한 문장이나 문단의 참조 내용 포스팅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이 사전에 포스팅한 참조 내용의 지지를 통해 법제 계획 및 이와 관련된 RIA에 대해 논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약 90개의 입법 제안들이 발표되었고 약 280개의 논평들이 수용되었으며 이는 서면으로 제출된 논평들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웹사이트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고 협의 과정에 대한 대중의 지원을 보장하며 온라인 협의의 유용성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로 남아있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견해가 입법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의해 고려되는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기본법의 약 62%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62%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293>

포르투갈

개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포르투갈에서의 더 나은 규제정책 개발은 최근에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은 행정 부담 감소와 행정과정의 현대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얼마 전, Simplificar 프로그램은 현대화 및 간소화를 위한 노력(아래 참조)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사후 규제 평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과정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책임이 중앙정부의 각료 이사회 행정부 내에 위치한 행정과정 현대화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에게 부여되었다. 국무장관은 간소화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행정과정 현대화 담당자들을 감찰하게 된다.

RIA는 모든 기본법과 관련 규제들에 대해 수행된다. RIA의 주요 사항은 평가 수행이며 특히 행정 부담에 더욱 중점을 둔다. 분석 범위의 확대는 법규 제정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부 장관이 최근 RIA 관련 사항 조사에 대한 책임을 갖기는 하지만, RIA의 우수성 평가를 위한 기능 감독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은 RIA에 관한 허가 도입 및 이에 관한 완전 공개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협약이 기본법과 관련 규제들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이기는 하지만, 이는 선호되는 규제 선택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행된다. 초기단계에서의 추가적인 내용의 탐구는 정책 입안자들이 문제의 본질과 잠재적 솔루션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투명성은 일반인들에게 체계적으로 공개된 협의 및 ICT 사용의 증가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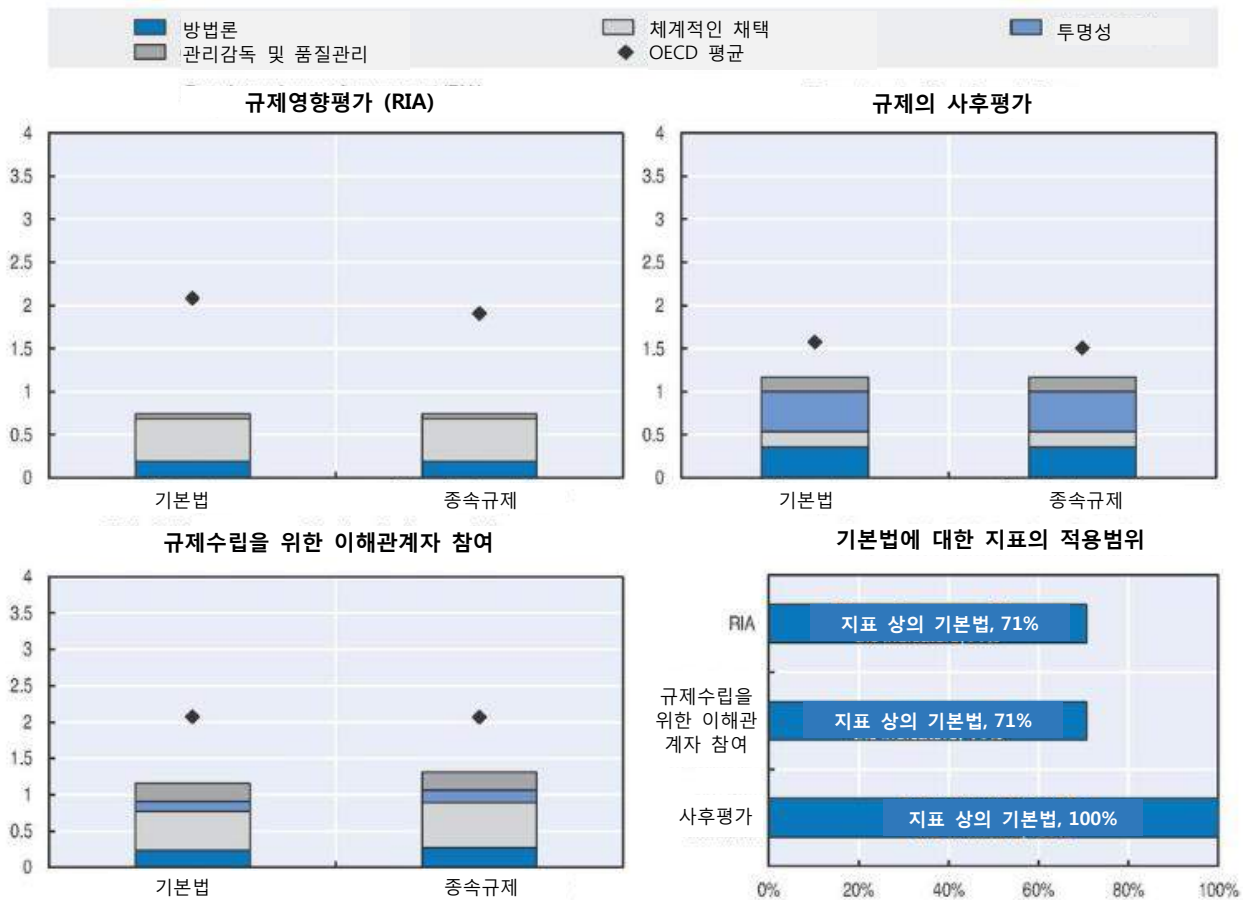
포르투갈은 행정 과정의 검토 및 규제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제한하는 중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률 및 규제의 검토 향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해당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관련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안의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지의 확인에 필수적이다.

주목: Simplificar 프로그램

2014년 3월 다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국회 결의안 30/2014는 종합적인 행정과정 현대화 및 간소화 프로그램인 Simplificar의 실행을 촉진시켰다. 이는 "only once"의 원리를 포함하여 행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 관련 부서에 상관없이 1회를 초과하는 정보제공이 요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Simplificar는 행정 부담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one-in, one-out" 원리와 "기본 디지털 사항" 원리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단순화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Simplificar의 실행은 부처간 네트워크(RIMA)를 통해 행정과정 현대화를 위한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게다가, Simplificar 웹사이트(www.simplificar.gov.pt)는 관련 규제 및 행정 부담에 대해 가능한 솔루션의 파악과 제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입력 내용을 수집하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포르투갈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기본법의 약 71%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1%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포르투갈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02>

슬로바키아 공화국

개요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정부 종합적인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중요성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매우 제한된 역할로 인해 규제의 우수성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4개의 부처들(협조를 위한 경제부, 재무부, 노동 복지부, 환경부)은 규제영향평가의 우수성 감찰을 위한 핵심역량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RIA의 통합 접근에 어려움을 준다.

"선택된 영향평가를 위한 통일된 방법론"을 따르는 규제영향평가 수행 책임이 2008년부터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슬로바키아 부처들은 대부분 규제영향평가의 일부로써 예산 관련 영향에만 중점을 둔다. "선택된 영향평가를 위한 통일된 방법론"의 최근 개정 내용은 슬로바키아 공화국 입법부의 새로운 영구 운영 위원회 설립 및 기업들과의 조기 협의 과정 도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평가와 감찰의 우수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론을 제공하여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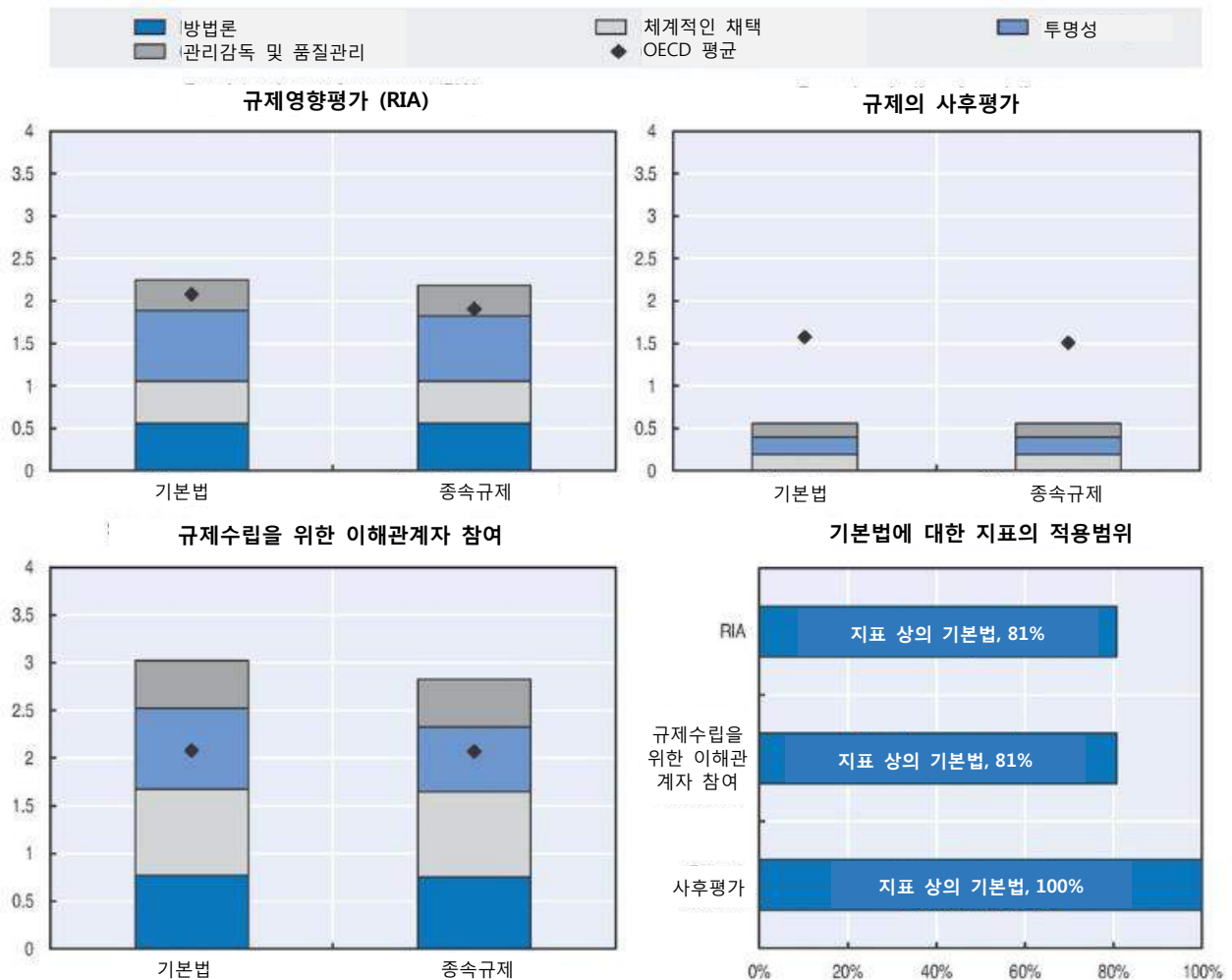
규제 제정 과정 후기 단계에서의 공공협의를 위한 과정은 잘 발달되었다(중요 박스 참조). RIA 지침 개정 앞서, 조기 협의 과정 수행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 정책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가끔 비 정부적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협의, 임시 운영 집단 및 자문 위원회의 설정, 학계, 두뇌 집단, NGO, 등과의 지속적인 혹은 임시적인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다. 새로운 통일된 방법론은 조기 협의, 특히 기업들과의 조기 협의에 대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 검토는 현재까지 대부분 행정 부담에만 중점을 두었다.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 더 많은 체계적인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슬로바키아 경제통상진흥원 내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센터 설립을 통해 본 분야에서의 일부 향상이 기대되며 이는 또한 SME 검사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될 것이다.

주목: 공지 및 논평절차

공공협의를 입법취지를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된 모든 입법 제안에 요구된다. 모든 입법 계획은 부처 간 논의 과정에 전달됨과 동시에 정부 포털 사이트에 자동적으로 게시된다. 논평 기한은 대개 15 영업일 이다. 500명의 개인 및 조직들에 의한 논평이 접수될 때마다, 부처들은 논평에 대한 서면 피드백을 제공해야만 하며 이후 이는 논의를 위해 정부에 제출되는 기록서류의 일부가 된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기본법의 약 81%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81%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내며 정부에 제출된 법안 수를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13>

슬로베니아

개요

슬로베니아는 규제환경의 우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의 체계적인 수행에 대한 행동 계획과 우선 순위화의 형성에 중점을 두어 더 나은 규제 및 사업 환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2013년도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단일 틀의 일부로 전반적이고 정부 종합적인 규제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규제 우수성 관련 사안들은 슬로베니아 개발계획 2015-2020과 같은 정부의 다른 전략적 문서들에도 포함된다. 공공행정부처의 더 나은 규제, 행정 과정, 우수한 서비스 부서는 규제정책을 향상시키는 협조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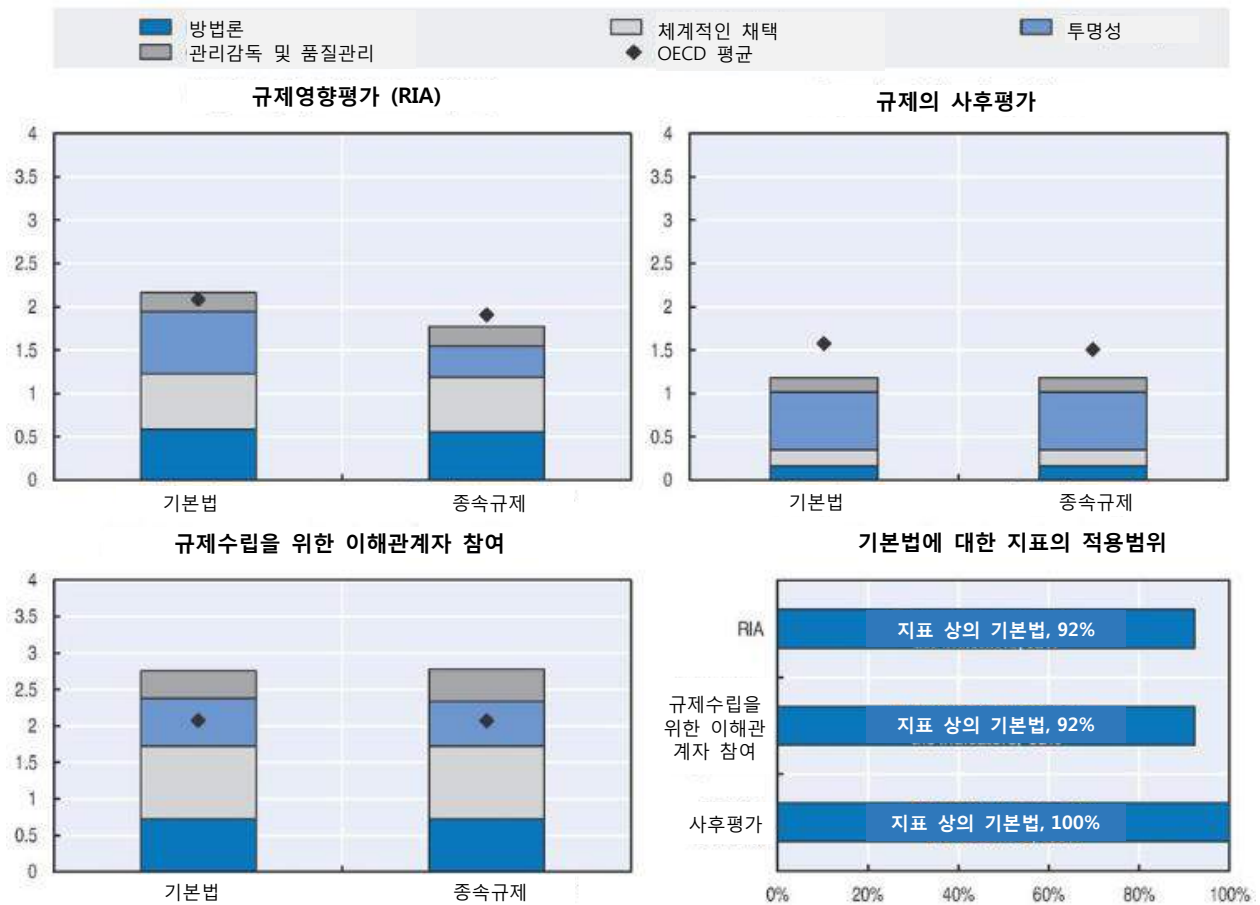
규제영향평가는 모든 주요 규제사항들에 대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영향평가의 우수성은 다르게 나타나며 분석은 종종 질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되곤 한다. 우수성 관리를 수행하는 계획 부처와는 독립된 기관이 없을 경우 미흡한 우수성 관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규제계획이 RIA 우수성 저하로 인한 개정을 위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모든 주요 그리고 종속규제들에 필수사항이며 종종 녹서, 협의 문서 등을 사용하여 과정의 초기에 수행된다. 2015년 초,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규제 입안자, 외부 이해관계자의 교육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모든 정책 주기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투명성 및 시민 사회의 참여도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

슬로베니아는 행정 부담을 평가하고 감소시키는 표준 비용 모델의 초기 채택 국가 중의 하나였다. 현재까지 사용중인 잘 수립된 프로그램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기업들을 위한 물리적인 1회 정지 가게 시스템은 UN의 공공서비스 상을 수상하였다. E-정부는 행정 과정의 간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행정 부담 이외의 규제에 대한 더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후 검토가 부족하다.

주목: "1회 문의" 원리

행정과정에 관한 법률은 슬로베니아의 행정과정 기관들이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다른 공공등록사무소에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책임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즉각적 혹은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요구해야만 한다. 요청 받은 당국은 즉시 또는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공공 등록기관들에서의 기록 교환으로 인해 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특히 시민들에게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의 정보제공은 공공 등록기관에 대한 법적, 기술적 분야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 부처간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시스템 개발, 검사 내용 공유에 관한 보고 및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전자 등록 장치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슬로베니아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기본법의 약 92%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2%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슬로베니아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26>

스페인

개요

스페인은 1990년대에 행정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늦게 더 나은 규제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영향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사안들이 점차적으로 처리되었다. 현재 정부의 각 단계에서는 더 나은 규제 원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더 넓은 범위들의 안건들을 통합하고 있다.

2012년 10월 26일, 각료 이사회는 행정과정 개혁을 위한 위원회 창설 (Create the Commission to Reform the Public Administration, CORA)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행정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용하며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RA는 기업들에 대한 규범적 틀을 간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내용을 제안하고 행정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들 대부분은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정책들을 따른다. 일부 경우의 계획들은 전반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계획에서는 각 부처별 노력을 요구한다. CORA의 계획들은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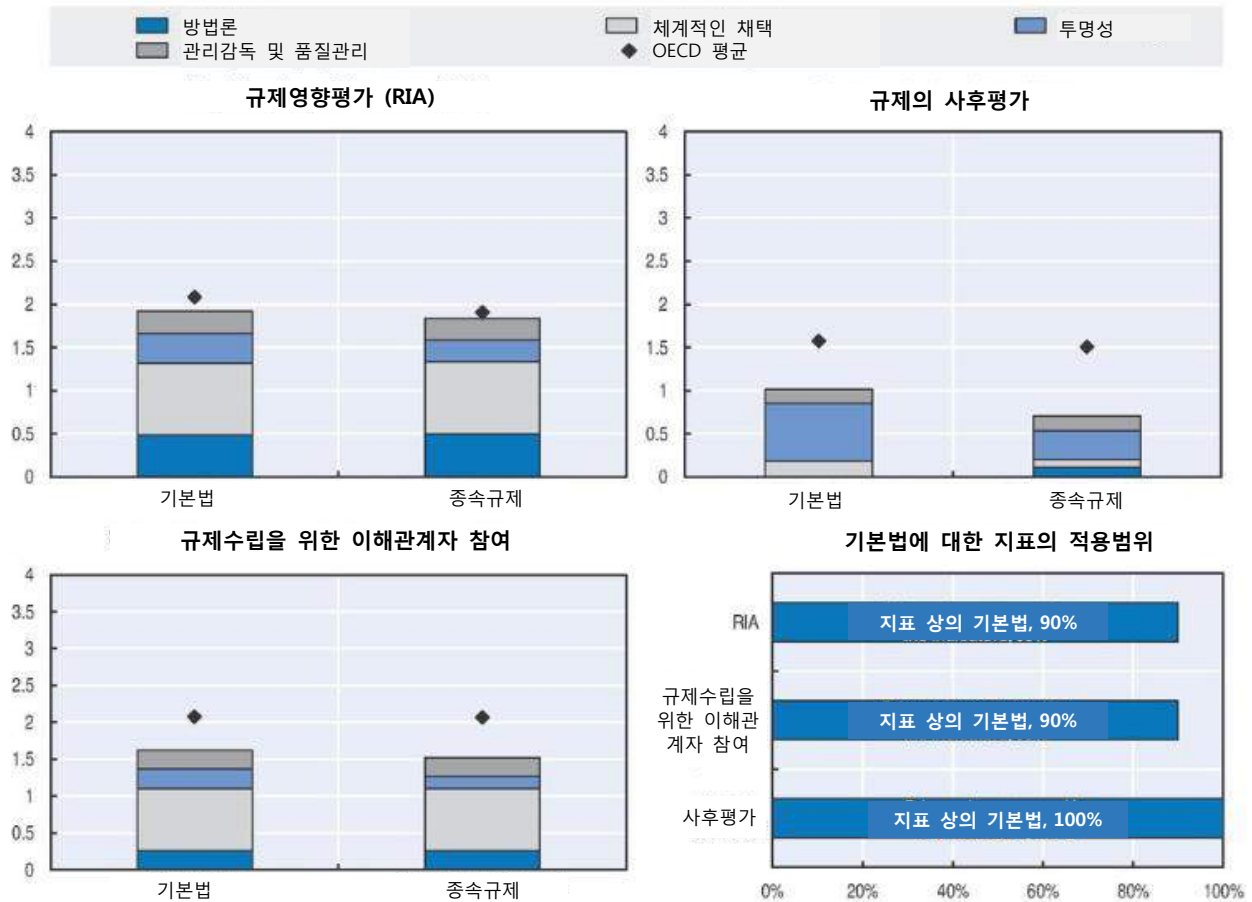
- 부담 감소 매뉴얼.
- 일반적인 수행 일자.
- One-in one-out
- 시작, 조세, 환경적 과정의 간소화.
- 규범적 검토 및 법률의 체계화.
- RIA 향상
- 지속 시장에 관한 법률

RIA 지침은 경제적 영향의 평가와 행정 부담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RIA는 모든 기본법과 관련 규제들에 대해 수행된다. 하지만, 지침은 명확한 평가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 방안의 제공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주목: 행정과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점 (PAG)

CORA에 의해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는 행정과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점(PAG) 수립이다. 이는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뿐만 아니라 행정관련 활동, 조직, 기능에 대한 행정과정 및 모든 전반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단일 진입 지점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계획된 행정 간소화 과정에 앞선 추가적 단계에 해당한다. 법제는 e-접근점의 기본 기능들을 규정하고 규제하며 나타낸다. e-접근점 <http://administracion.gob.es>은 이전 포털 사이트 www.060.es를 대체하고 시민과 기업들의 행정과정 처리와 관련된 안내를 위한 전반적인 주 행정과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PAG가 기존 포털 사이트에 언급된 내용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기본법의 약 90%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0%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스페인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38>

스웨덴

개요

스웨덴은 오랜 기간 동안 규제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규제개혁 안건의 중심에 자리잡도록 하였다. 공공협회는 규제 개발과정의 일상적인 일부가 되었다. 스웨덴에서의 공공 접근 원리는 기밀 문서와 같은 일부 사항을 제외한 공공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반 대중들에게 부여한다. 규제계획들은 종종 조사 위원회에 의해 우선적으로 분석되고 평가되며 이들의 최종 보고서는 정부 기관 내 공동 계획 과정이 지속되기 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검토를 위해 참조된다. 입법 관련 의회는 해당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기존 입법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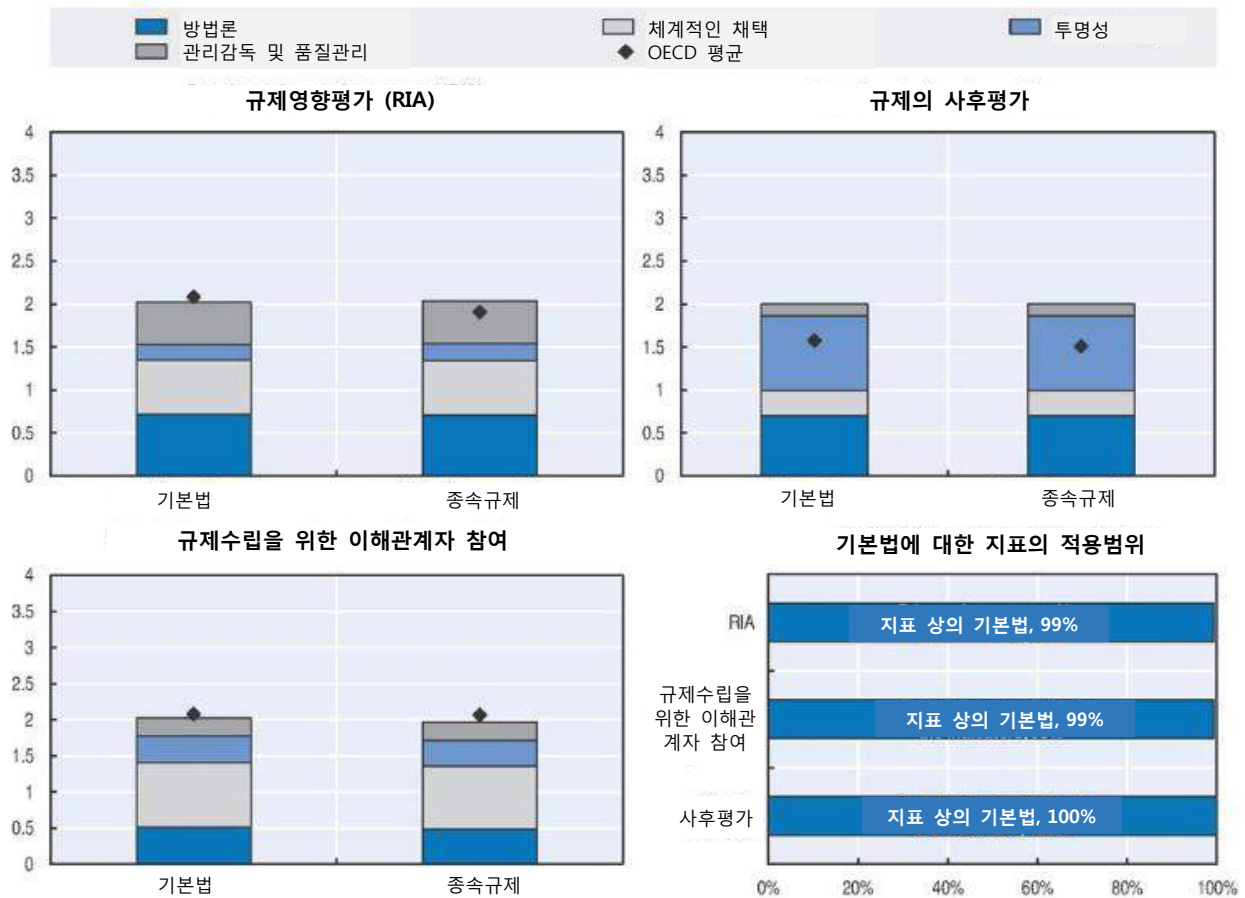
2012년 이전 정부는 더 나은 규제 작업을 확장시켜주는 5개의 우선 분야와 7개의 목표들을 발표하였다. 이제 현 정부는 더 나은 규제를 위한 목표들을 검토하고 이것의 수행에 중점을 둔다. 기업 혁신부의 더 나은 규제를 위한 담당 팀은 각 정부 부처들과 더 나은 규제 작업을 위해 협조한다. 다른 주요 관련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중인 경제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스웨덴 관리국과 RIA의 우수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관리국 내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위원회를 포함한다. RIA에 관한 주요 도전 과제는 규제제안사항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달과 이에 과한 추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사후평가는 종종 임시적으로 수행되며 이는 영향평가에 관한 법령(SFS 2007:1244)에 규제된 정부 관계기관으로 인정된다. 스웨덴 정부는 특정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적 검토 수행을 고려하고자 할 것이다.

주목: "규제분석기"

2014년, 경제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스웨덴 관리국은 RIA를 수행하는 사업 비용 추산에서 관계자/법제정자/입법자의 지원을 위해 분석 도구 "Regelragnaren" ("규제분석기"; www.enklareregler.se/verktyg/regelragnaren.html)를 발전시켰다. 정부는 이 도구를 통해 RIA 내에서 사용되는 규제제안사항 및 규제에 대한 개혁 내용의 분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기본법의 약 99%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99%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스웨덴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41>

스위스

개요

스위스에서, RIA는 모든 규제에 대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모든 기본법과 관련 규제 그리고 정책 평가의 공공협의를 위한 요건은 헌법에 명시된다. 스위스에는 강력한 평가 관행이 있다. 최근 규제사항에 대한 다양한 임시적 검토가 수행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규제들은 행정 부담, 규제순응비용, 국제 표준 준수 여부를 위해 확인되고 규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확인이 수행되었다.

경제사무국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은 주요 접점이며 규제정책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RIA를 수행하는 정부 부서에 대한 지원 및 기존 규제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공한다. 행정에 관한 의회 관리 및 스위스 연방 감사기관의 평가 부서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연간 약 10-15회의 사후평가를 수행한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협의 목록은 중앙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문제의 본질 및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공식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상 넓은 범위의 공공협의만이 규제계획에서 수행된다. 협의 과정에서 수령된 논평은 게시되며 담당자에 의해 처리 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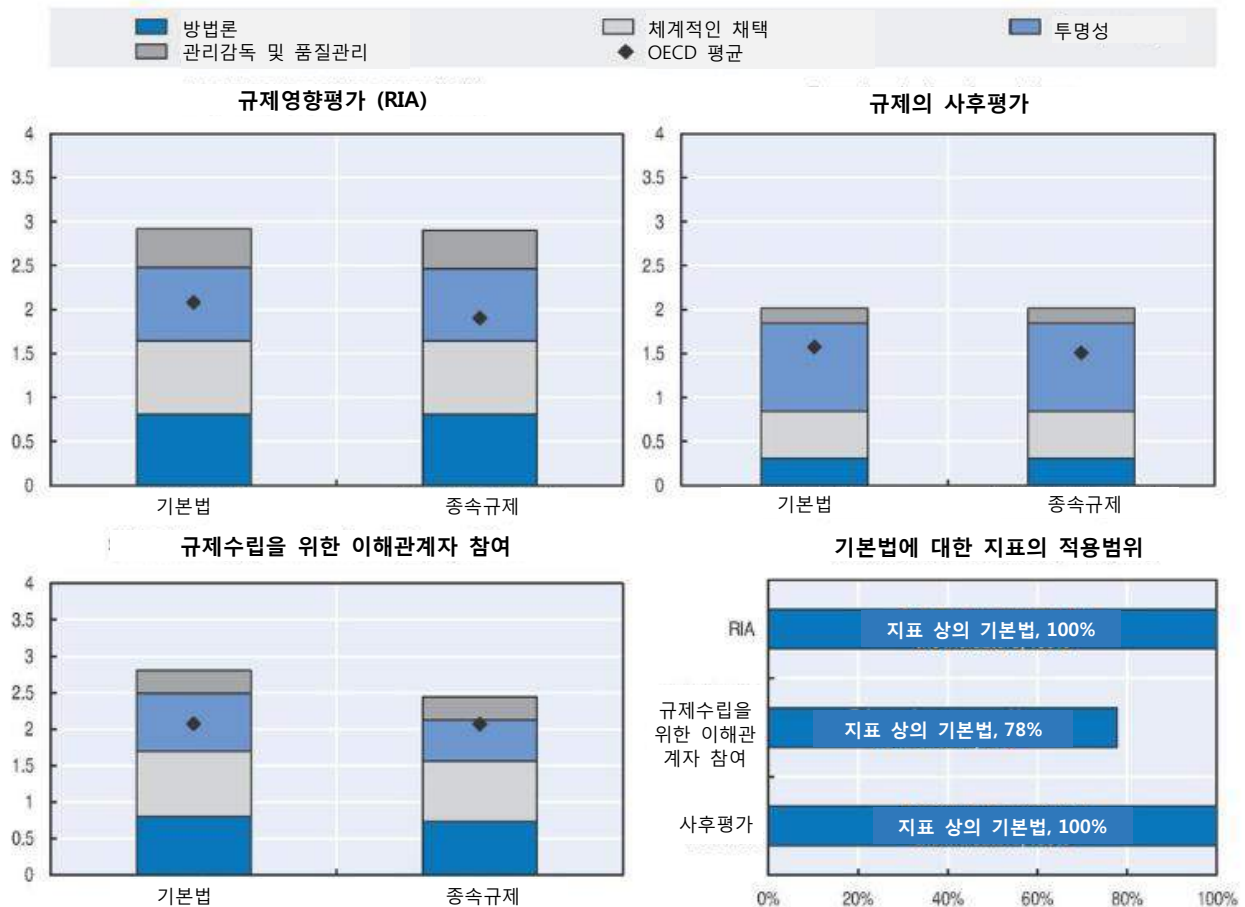
대부분의 규제계획에서, 단순한 RIA가 수행된다. 이는 주로 질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대개 대안의 고려는 철저히 수행되지 않다. 특히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일부 규제에 있어, 철저한 분석 및 양적 영향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RIA가 수행된다. 2007년의 도입 이후로, 15회의 세부적 RIA가 수행되었다. 이들 모두는 온라인에 게시되었지만 단순한 RIA는 대중들의 체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주목: 규제정책수단의 검토

기존 규제정책수단 평가를 위한 몇몇 검토가 수행되어 스위스 내 규제적 틀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을 만들어내었다. SECO는 2011년의 세부적 RIA 및 2014년의 단순 RIA 검토를 요구하였다. 연구 결과들에서 세부적 RIA는 규제 제정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 증명되었지만 단순 RIA의 사용에서 일부 주요 단점들이 확인되었다. 스위스 연방 감사기관은 현재 선정된 사안들 간 영향평가의 우수성에 대한 넓은 범위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에 관한 의회 관리는 2011년 협의 및 청문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고서는 너무 짧은 시간 제한 및 담당자에 의해 어떻게 협이가 수행되는지에 관한 대중들의 미흡한 정보를 포함하여 현재 관행의 주요 취약점 5가지를 보여준다 협의에 관한 법률은 본 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이후 개정되었다. 즉, 협의의 다른 형태가 통합되고 협의 결과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스위스 연방 감사기관은 최근 규제 조항 평가 수행에 관해 검토하였다. 이는 이러한 조항들의 사용이 각 행정 부들간에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개는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스위스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기본법의 약 78%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8%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스위스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RIA 및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55>

터키

개요

터키는 더 나은 규제 안건을 2000년대 초기에 시작하였다. 각료 이사회에 의해 2006년 2월 17일 공표된 "규제계획 원리와 과정에 관한 조례" 법령 (조례로 참조)은 터키에서의 법률적, 규제적 우수성 향상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 틀이다.

조례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규제적 영향평가(RIA)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RIA 요건들은 2007년 4월 3일 관보에 실린 RIA에 관한 총리 안내문에 추가적으로 명시된다. 이는 총괄 부처의 중앙 감독 기구인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집단을 포함하여 지침, 역할, 책임들을 명시하였다.

게다가, 터키는 2005년과 2009년의 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감소 계획을 수행해 왔다. 이는 시민과 기업체들의 규제 경험 향상을 위해 14,000개의 법률을 검토하고 1회 정지 가계를 만들었으며 e-정부 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존 법률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규제적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시행과 관찰이 필요하다.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집단은 조례의 준수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부처와 관련기관의 장려를 위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양방향"으로의 변환을 통한 공공 협의에서 ICT의 유용한 사용 및 협의된 내용에 관한 문서는 더욱 상호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후평가 관행은 기존 상호작용의 진행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설계의 전달을 위해 체계화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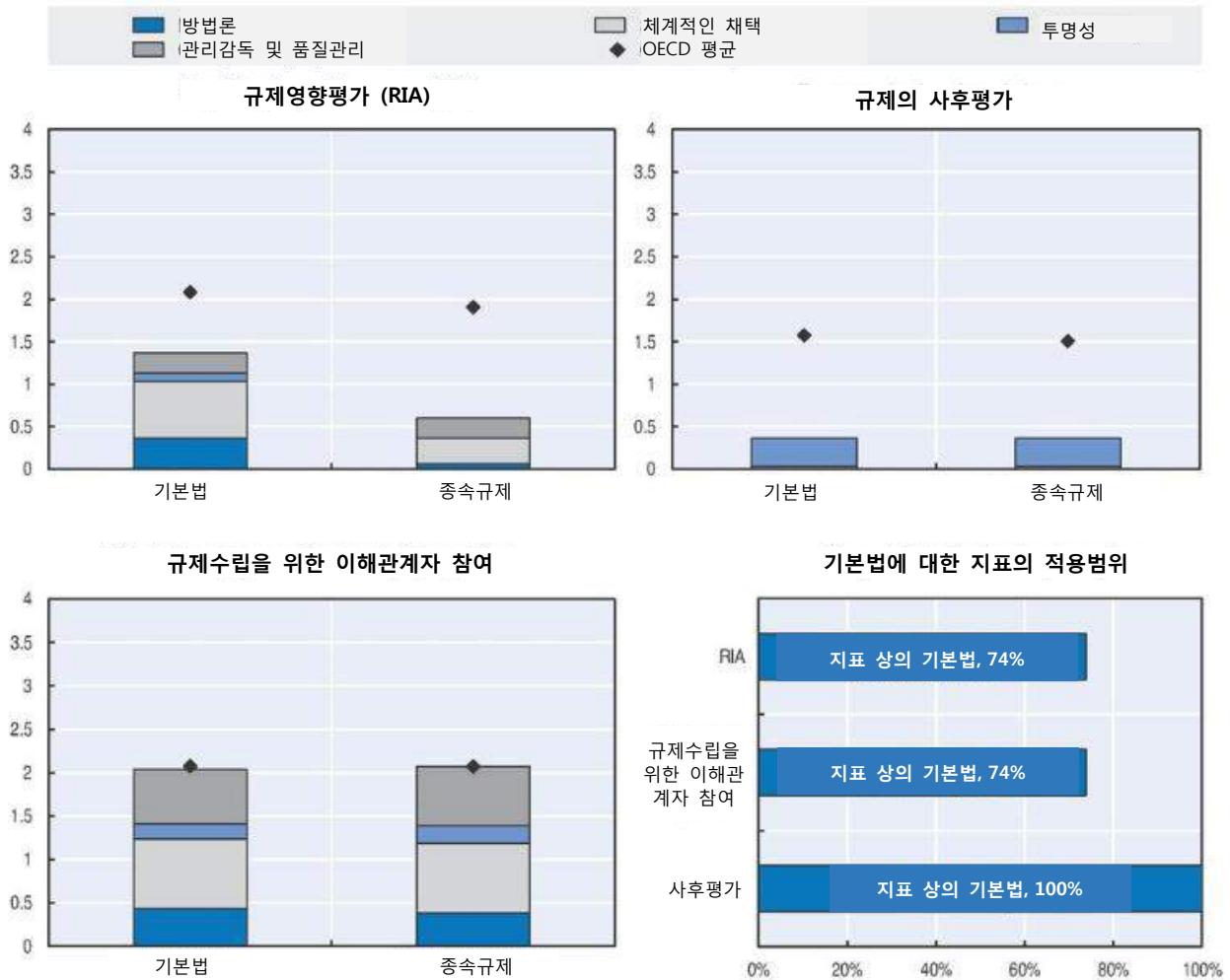
주목: 터키의 RIA 임계 요건

규제계획의 원리와 과정에 관한 2006년 조례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완전 규제적 영향평가가 요구된다:

- 법률과 법령 계획의 영향은 1천만 터키 리라(8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총괄 부처는 평가된 영향이나 규제 유형에 관계 없이 RIA를 요구하였다. 이는 시민이나 기업들로 부터의 우려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및 국가예산과 관련된 규제계획은 RIA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RIA는 제안 부처나 규제를 제안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1천만 터키 리라 이하로 평가된 영향에 관한 제안에 있어, 수량화된 영향 분석을 포함한 일부 RIA가 요구된다.

터키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터키의 경우 기본법의 약 74%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74%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터키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64>

영국

개요

영국은 증거에 근거한 정책 제정에 상당한 중점을 둔다.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앞서, 고려 중인 문제에 대한 틀을 잡고 가능한 규제와 비 규제적 솔루션을 평가하는 예비 RIA가 수행된다. 이해관계자들은 분석 내용을 지원하는 증거 및 추정 내용에 관한 논평을 위해 초빙된다. 이후 선호된 선택사항에 대한 세부적 비용-이익 분석을 제공하는 최종 단계 RIA가 개발된다. 규제철폐 조치 및 저비용 조치는 무수정 일괄 승인 "규제적 우선순위 평가" 대상이 되며 초기 단계 RIA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개별 구성원의 사안(국회에 의해 계획된)은 일반적으로 이사들에 의해 계획된 정부 사안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규제사항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채택되어왔다. 2011년 도입된 기존 규제사항들의 감소를 위한 범정부적 전략인 "불필요한 관행에 관한 도전"은 국무조정실부터 비즈니스혁신 기술부에 이르기까지 부처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RTC는 30,000 건의 논평과 1,500 건의 세부 내용의 제출을 발생시킨 디지털 클라우드 소싱의 사용을 포함하는 공개적이고 공동적인 정책 개발에 관한 예시이다. 2013년부터, 영국은 "One-in, Two-out" 규제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 현재,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기업들에게 100억 파운드 정도의 절감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영국은 모든 담당자들에게 경제적 성장에서 이들 행동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요구하는 의무적 담당자 코드를 통해 규제적 제안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담당자들 사이에서 시행과 감사의 제도 및 관행에 관한 13개의 검토가 "시행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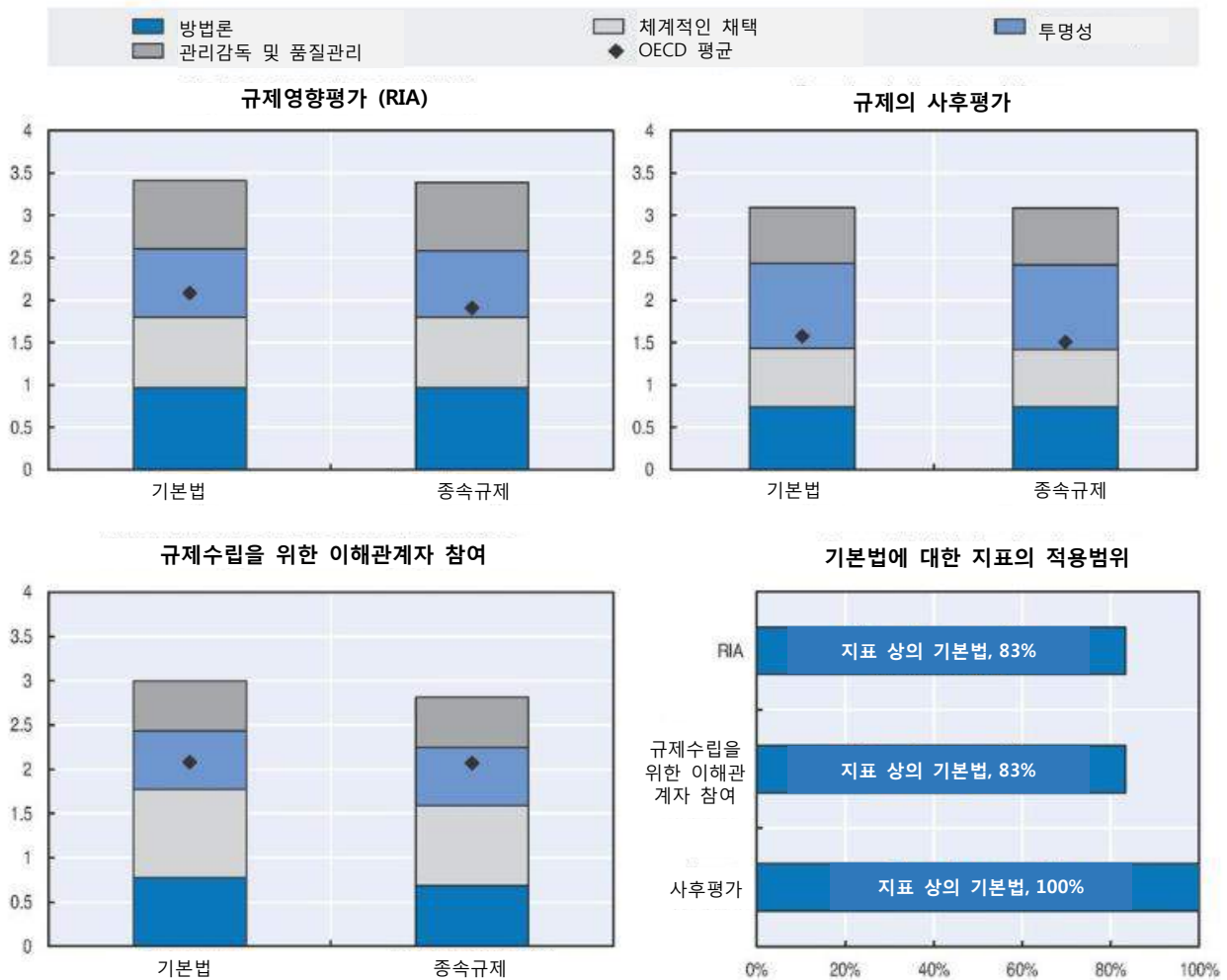
영국의 규제정책안건은 주로 기업과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영향에 중점을 둔다. RPC(아래 참조)가 RIA(공공 부문 및 소비자 포함)에서 평가된 모든 영향들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최종 단계 RIA는 기업에 대한 비용 평가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분석에 관한 고려 사항이 있다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분석에 관한 고려 사항이 없을 경우, 영국은 포괄적 성장을 위한 다른 요소들의 증가된 주의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목: 규제정책위원회

새로운 규제적 제안들은 2009년 설립되어 2012년에 독립 자문을 위한 비 부서적 공공 기구가 된 규제정책 위원회로부터의 독립적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이는 기업과 시민사회조직들에 영향을 주는 1,200 건 이상의 규제적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공하였으며 이들 중 951건은 법률로 제정되었다. 의견들은 증거 기반 지원 규제적 제안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하고 우수성 확인과 법률의 변경으로 연간 22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대한 순 절감 비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RPC는 모든 사후평가를 검토한다. 만약 분석과 증거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과정의 일부로 이들이 발표되기 전에 혹은 영국 국회에서의 최종 협의회가 수행되기 전에 RIA가 수정될 것이다. 선호된 규제적 선택 사항의 기업에 대한 동일한 순 비용은 해당 수치가 반기별 "새로운 규제 사항 진술"의 일부로 발표되기 전에 RPC에 의해 정확하게 확인된다.

2014년 12월 3일, 영국 정부는 "담당자 영향에 대한 책임" 제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비용을 평가하며 임의적인 수행 코드와 같이 기업에 대한 영향과 함께 모든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임의적 제도를 포함시키는 제안 범위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만약 기업이 담당자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영향에 대한 규제정책 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영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기본법의 약 83%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기본법의 약 83%를 다룬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수립을 알리기 위해, RIA 수행 시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 시에 준수해야 하는 영국 정부의 공식요건은 없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의회에서 발의한 기본법의 점유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77>

미국

개요

행정절차법은 기관들의 공시를 필요로 하는 미국 내 규정 제정 과정을 통제하고 새로운 규제나 기존 규제의 개정 발표에 앞서 논평을 구한다. 특히, 기관들은 관련 사안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 이들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에 기반이 되는 증거 및 대중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 내용을 포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적 제안 내용의 발표가 요구된다. 이후 기관들은 어떻게 논평자들이 제기한 특정 사안들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제안 및 지원 분석 내용과 함께, 대중들로부터의 논평은 기록되어 각 최종 규제에 대한 합리성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APA는 본 과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최종 규정의 사법적 논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 명령 12866(1993)과 13563(2011)에 따라, 대통령 행정부 내 행정 관리 예산국은 계획에 대한 집중 검토를 수행하며 주요 규제사항들은 기관에 제출하기 전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OMB는 i) 예상 비용과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ii)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었는지, iii) 기관들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고려하였는지, iv) 적합한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었는지의 판단을 위해 규제계획을 검토한다. OMB는 검토를 위해 규제계획을 기관에 "반송"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규제적 비용과 이익 평가는 잘 수립되었다. 평가 범위는 일반적으로 규제적 제안의 영향에 비례적이다. 기관들은 1억 달러 이상의 연간 영향이 발생하는 제안에 요구되는 완전히 진행된 RIA와 함께 모든 주요 규제적 제안들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한다. "다수의 소형 규제 단체들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경우 규제적 가변법은 추가적인 분석과 협의 요건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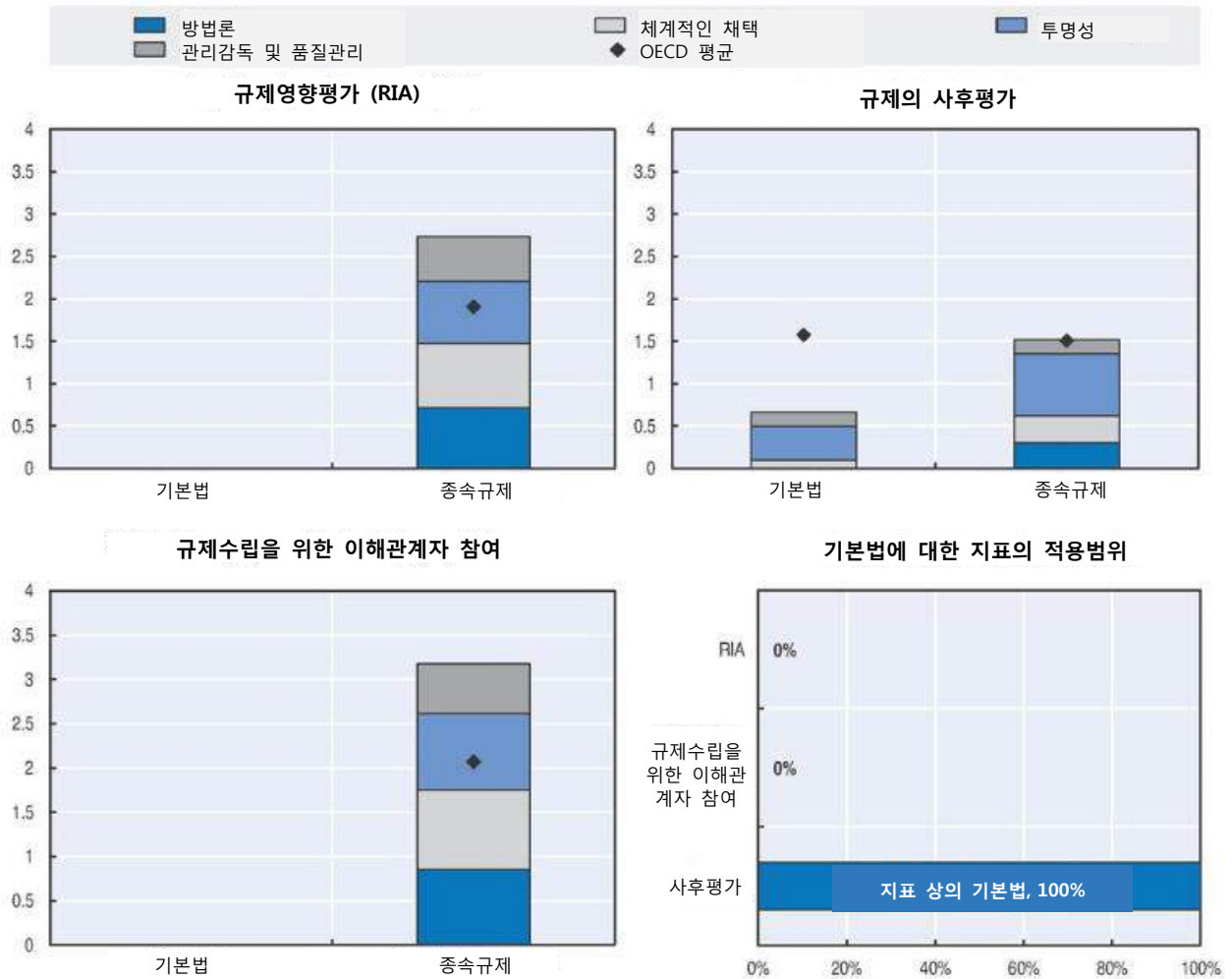
행정 명령 13610, "규제적 부담의 파악 및 축소"는 미국 내 사후평가를 제도화한다. 새로운 사후평가는 정책 결과의 달성 및 향상된 RIA 시스템 상태 도달까지 평가되어야만 하며 사전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목: 행동적 정책결정

행정 명령 13563은 미국에 행동적 경제학을 도입하였다. 행동적으로 전달된 계획들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결과 향상을 위해 소비자 정보를 간소화하거나 표준화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 제정된 신용카드법(CARD)은 경제 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연구적 증거를 기반으로, 이는 일부 "숨겨진" 수수료를 금지하고 카드회사가 더욱 유용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신용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법은 카드회사가 영수증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계산 및 최소 월별 지불 금액을 통해 카드값 지불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36개월까지는 동일한 지불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RIA 에 보여진 지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경영진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들만을 처리할 수 있다. 경영진들은 미국 내에서 어떠한 기본법도 계획 하지 않기 때문에, RIA 결과 및 이해관계자 참여는 하부 규제들에만 나타나며 기본법에는 적용되지 않다. 미국에서는 일반 대중들과의 협의 및 의회를 통해 계획된 기본법 제정을 알리는 RIA 수행에 대한 어떠한 의무적 요건도 없다.

미국의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지표



1. 상기의 그림은 각 지표에 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4개 범주의 합산점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범주의 최대점수는 1점이며, 종합지표의 최대 합산점수는 4점이다.
2.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법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정부에 의해서 발의되는 기본법은 없으며, RIA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는 전체 기본법의 0%이다.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지표에서 나타난 정보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발의된 기본법 관련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85>

부록 A

국법 점유율에 관한 각국의 정보

	의회에서 발의한 모든 국가기본법의 비율 (%)			국가기본법의 비율 (준국가적 수준 법을 포함하는 모든 기본법의 %)			국가의 종속규제의 비율 (준국가적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종속규제의 %)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호주	2.1	0.5	0.7	30	31	22	59	59	54
오스트리아	10-25	10-25	10-25	=30	=30	=30	-	-	-
벨기에	50	40	23	34.9	32	33.5	49.3	50.6	54.2
캐나다	14	28	27.5	-	-	-	-	-	-
칠레	34.5	30.6	33.3	-	-	-	-	-	-
체코공화국	16.5	38.8	34.1	-	-	-	-	-	-
덴마크	-	<1	<1	100	100	100	100	100	100
에스토니아	31.3	33.3	-	-	-	-	-	-	-
핀란드	=1	=1	=1	100	100	100	100	100	100
프랑스	33	37.5	31	-	-	-	-	-	-
독일	12.4	14.1	17	12	11	12	16	14	24
그리스	0	0	0	-	-	-	-	-	-
헝가리	31.9	30.5	26.8	-	-	-	-	-	-
아이슬란드	21.3	22	20.8	100	100	100	95	95	95
아일랜드	0	0	2	100	100	100	-	-	-
이스라엘	49.1	47.3	31	-	-	-	-	-	-
이탈리아	13	23	6	19	17	8	17	17	24
일본	25	33	20	-	-	-	-	-	-
한국	94	68	91	-	-	-	-	-	-
룩셈부르크	-	2.7	10.7	100	100	100	100	100	100
멕시코	-	95.8	70	-	36.5	-	-	-	-
네덜란드	<1	<1	<1	100	100	100	-	-	-
뉴질랜드	0	14	8	-	-	-	-	-	-
노르웨이	4.4	1	2.2	100	100	100	67.7	70.2	73.6
폴란드	40	28	45	-	-	-	-	-	-
포르투갈	34	20	33.4	100	100	100	-	-	-
스페인	10	-	-	-	-	-	-	-	-
슬로바키아	2	32	24	-	-	-	-	-	-
슬로베니아	8.3	6.4	-	-	-	-	-	-	-
스웨덴	0.5	0.9	0.6	-	-	-	-	-	-
스위스	32.8	16.1	17.9	-	-	-	-	-	-
터키	6.6	45.6	26.3	-	-	-	-	-	-
UK	14.3	26.3	16.7	36	56	52	72	74	77
USA	100	100	100	0.9	1.7	-	-	-	-
EU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 "-" 표시는 "제공된 데이터 없음"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에 관한 데이터 정보: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출처: 2014년 규제지표조사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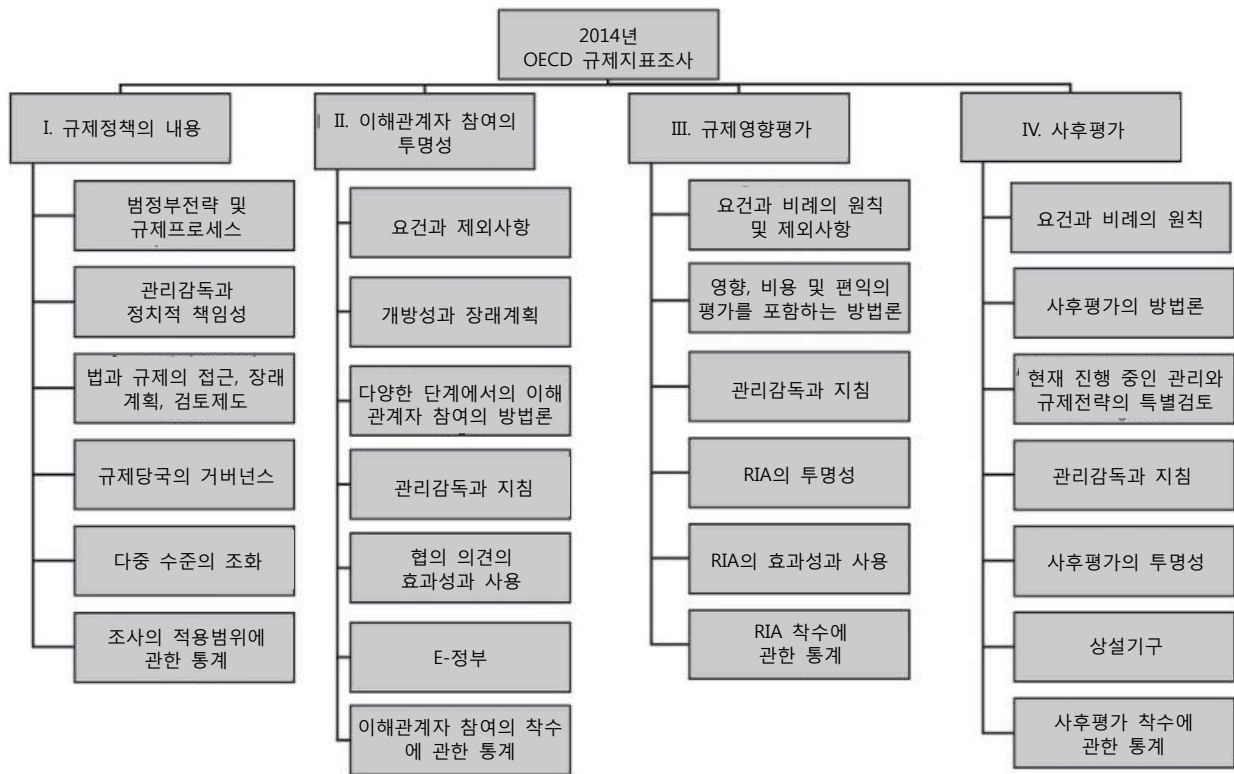
부록 B

2014년 OECD 규제지표조사와 종합지표

2014년 규제지표조사

2014년 규제지표조사 (Regulatory Indicators Survey)는 2012년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서 설명한 모범관행의 분야들로 구성된다 (OECD, 2012).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제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의 각국의 관행 및 요건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의 내용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였다 (그림 B.1의 상세한 조사 구조를 참조).

그림 B.1 2014년 OECD 규제지표조사의 구조



이 조사는, 이전에 1998년, 2005년, 2008년/2009년에 실시하였던 규제관리조사 (Regulatory Management Surveys)에 따라 실시한다. 이전 조사내용과 비교했을 때, 각국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와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유사한 규제정책의 요건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견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대대적이면서 전향적인 규제정책 아젠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에 따르는 규제정책의 진척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규제관행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진척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제 막 규제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사에서는 공식요건에 관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이러한 공식요건을 시행하고 규제관리관행을 활용하고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조사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규제개발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

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내용이다. 회원국들이 다음의 3-10년간에 걸치는 진척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선을 세우는 초기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조사내용에 대해서 3년마다 갱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조사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관련된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가능하면 어떠한 경우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를 하기 위해, 이전의 규제관리조사에서 얻은 시계열 데이터와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교분석한다 (2005년과 2008년/09년).

종합지표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3가지 종합지표 (RIA에 관한 지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지표, 사후평가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종합지표는 4개의 평가범주로 구성된다 (그림 B.2):

- 공식요건 및 실제로 이러한 요건이 얼마나 자주 수행하는지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채택;
-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 예를 들어 평가된 영향의 유형 또는 얼마나 자주 다양한 유형의 협의를 사용하고 있는가;
- 감독과 품질관리는 관리감독기구의 역할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가를 기록
- 열린 정부의 원칙과 관련되는 질문에서 얻은 정보 (예, 정부 결정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투명성

각 범주는 2014년 OECD 규제지표조사의 특정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평가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하위범주에 대한 개요를 표 B.1에 나타낸다.

그림 B.2. 종합지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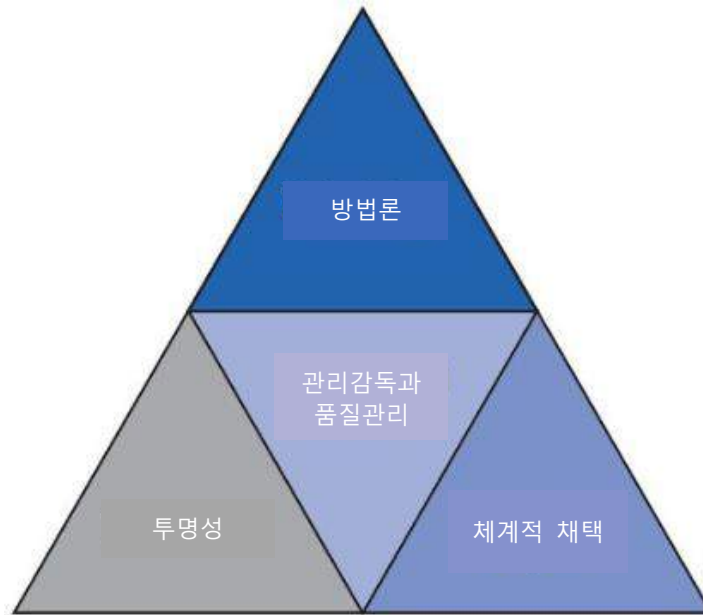


표 B.1. 종합지표의 범주와 하위범주의 개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분석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에 협의 공개: 규제 개발의 초기 단계 ● 일반 대중에 협의 공개: 규제 개발의 마지막 단계 ● 가이드نس ● 규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채택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 ● 규제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채택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방법 ● 최소기간 ● 규제개발의 초기 단계 시, 쌍방향 웹사이트의 사용 ● 규제개발의 마지막 단계 시, 쌍방향 웹사이트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 공공부문 영향평가 ● 경쟁영향의 평가 ● 다른 경제영향의 평가 ● 다른 영향의 평가 ● 환경영향의 평가 ● 사회영향의 평가 ● 분배효과의 평가 ● 폭넓은 비용의 평가 (예, 거시경제비용) ● 특정그룹을 위해 확인된 편익 ● 준수와 집행문제의 고려 ● 특정그룹을 위해 확인된 비용 ● 가이드نس ● 규제방안의 확인과 평가 ● 편익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 ●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 ●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진척상태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 ● 편익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 평가를 정량화하기 위한 요건 ●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요건 ● 위험평가 ● 정량화된 비용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편익의 평가 ● 목표 달성의 평가 ● 영향의 평가 ● 다른 규제와의 일관성 평가 ● 수립한 방법론과 가이드نس
체계적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요건 ● 규제개발의 초기 단계 시에 실제로 수행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규제개발의 마지막 단계 시에 실제로 수행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요건 ● 실제 수행한 RIA ● 비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검토를 포함하는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 공식요건 ● 실제로 수행한 사후평가 ● 심층검토 ● 상설기구의 존재 ● 비례의 원칙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98>

표 B.1. 종합지표의 범주와 하위범주의 개요 (계속)

	이해관계자의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분석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의 투명성 ● 일반 대중에 협의 공개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대응과 고려 ● 정보의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과 투명성 ● 프로세스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 이해관계자의 참여 ● 프로세스의 투명성
관리감독과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과 품질관리기능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RIA의 평가 ●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과 품질관리기능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RIA의 사후분석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263398>

용어의 정의

관리집행비용: 정부가 규제요건을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 이 비용에는 새로운 규제의 홍보, 새로운 허가제나 등록제도의 개발과 시행, 적용상태의 평가와 승인 및 갱신처리 등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검사제도 및/또는 감사제도의 고안 및 시행, 비준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제재체계의 개발 및 시행에 관련된 비용도 포함된다.

행정부담: 규제의 입수, 해석과 이해, 준수전략의 개발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가공, 보고 및 저장을 포함하여 법에 규정된 보고요건에 부합하는 데 관련된 비용. 단,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자본경비 및 규제를 관리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특별자문기구 (consultative body)나 상임자문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선발된 전문가 및/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예, 사회동반자, 환경그룹)를 소집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그룹으로, 공식 절차에 따라 임명된 구성원 또는 공식화된 법규가 존재한다.

준수비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그 외 당사자가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 및 규제관리 및 집행 담당부서에 지불하는 비용. 여기에는 실질적인 준수비용, 행정부담 및 정부의 관리집행비용이 포함된다.

재무비용: 규제에 관한 재무비용은 규제준수 의무에 부합하기 위해 개발된 자본비용이다. 즉,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 (즉, 장비 구매 등), 회사에 대한 비용에는 이러한 물품의 구매가격 및, 부채든 자기자본이든 상관 없이 구매에 자금을 대는 비용이 포함된다.

녹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안한 협의문서. 녹서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기구나 개인)들에게 협의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며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녹서는 토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행동조치에 대한 책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비용: 규제요건에 의해 야기되는 GDP와 고용 등과 같이 주요 거시경제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특정 규제조치는 뚜렷한 거시경제비용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여길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나 지역정부와 달리, 국가의 전체 경제영토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정부나 연방정부.

성능기반 규제: 법에 규정되거나 금지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된 독립체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달성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적 측면에서 명시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또는 결과기반 규제라고도 한다.

시행후 검토: 규칙이나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후에 그 규칙과 규제를 검토하는 것.

기본입법: 의회나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기본입법" 또는 "기본법"이라고 한다.

준비위원회: 공식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규제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preparatory commission"라고도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협의: 대중 누구에게도 토론은 개방되어 있다. 코멘트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명백한 설명과 함께 코멘트를 받기 위해 그들을 초대한다. 대중은 온라인상에서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거나 코멘트를 웹 사이트 상에 명백하게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코멘트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단순한 규제적 제안을 게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공청회: 일반대중 구성원이 코멘트에 참석하고 코멘트를 제공하도록 초대되는 회의. 실질적 대중회의는 대중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대중회의이다.

대중 구성원들이 설문을 보도록 허락되는 경우에조차 이 설문 목적을 위해 예비토론은 공개회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규제: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요건을 부여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집합. 규정은 모든 법, 공식적·비공식적 명령, 종속적 규칙, 행정절차, 정부가 규제권한을 위임한 비정부 또는 자치규율 단체에 의해 발행된 규칙

규제기관: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책임이 있는 정부부서의 관리자 및 다른 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어떤 규제분야, 정책영역, 시장에 대해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다.

규제영향평가 (RIA): 고려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적 또는 비규제적 선택권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 또는 비용의 인지 및 수량화의 체계적 과정. 이익-비용분석, 비용효율성분석, 사업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할 수 있다. 규제적 영향평가는 보통은 규제적 영향분석으로 불리고 때때로 상호교환적으로 이용된다.(규제정책 및 통치체제위원회의 권고, OECD, 2012, 25페이지)

규제정책: 규정의 제정, 집행 및 검토의 명백한 목적을 위해 정부에 의해 도입된 규칙, 절차 및 기관의 일체

규제개혁: 규제적 질, 즉 규정 및 절차의 업무수행, 비용효율성 또는 법적 수준을 높이고 개선시키는 변경. "비규제화"는 규제적 개혁의 부분집합이다.

종속규제: 정부의 수장, 각 부처 장관 또는 내각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규정-즉 의회 이외의 당국에 의하여-. 다수의 종속적 규정들이 의회의 각하의 대상이라는 것에 주의하라. 종속적 규정들은 "2차적 입법" 또는 "종속적 입법" 또는 위임입법"으로 불린다.

실질적인 준수비용: 규정을 준수하는 표적집단에 대하여 행정적 비용 이외의 증가하는 비용이다. 규정에 의하여 준수의무가 부여된 사람이 부담하는 직접적 비용만을 포함한다. 실질준법감시비용은 다음의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 : 실행 비용, 직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장비비용, 물질적 비용 및 외부 서비스의 비용

소멸시효: 시행된 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정의 자동적인 폐지

백서: 상세한 정책 또는 규제적 제안을 제시하는 정부보고서. 백서는 정책/규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전에 피드백을 수집하는 기회를 허용한다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한 기구

OECD는 세계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유일한 포럼이다. 또한 OECD는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정보경제 및 고령화 사회 등과 같은 우려와 새로운 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고 돕기 위하여 최전선에 선다. 이 기구에서는 각 정부가 정책 성과를 비교하고 공통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며 좋은 선례를 확인하여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은 OECD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발행물은 회원국에서 합의한 협정, 가이드라인 및 기준뿐만 아니라 기구에서 수집한 통계 결과와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2015년 OECD 규제정책전망

시민과 기업의 모든 활동은 법과 규제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법과 규제는 경제성장, 사회복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있어서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전망에서는 처음으로 OECD 국가들이 규제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각 OECD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진척과정에 대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모든 OECD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거하여, 본 전망에서는 모범규제에 관한 조건을 수립하는 진척과정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각국이 규제의 설계, 집행 및 개정을 할 때 조직 및 제도적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책결정자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규제주기영역을 밝혀내고, 규제를 수립, 시행 및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를 확인한다. 규제정책의 3가지 중요한 수단의 사용상태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후평가)를 검토하고, 규제의 수립과 전파를 보다 전략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목차

- 제1장. 규제정책의 세계적인 동향: 새로운 OECD 조사 데이터에 입각
- 제2장. 규제정책을 위한 전향적 아젠다
- 제3장.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규제정책
- 제4장.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 제5장.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규제거버넌스 사이클의 종결
- 제6장. 각국의 규제정책현황

본 발행물의 온라인 문이처: <http://dx.dox.org/10.1787/9789264238770-en>.

본서는 OECD의 모든 책자, 정기 간행물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OECD iLibrary에서 출판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oecd-ilibrary.org

